

월·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10

현안분석

- 한·중·일 FTA에 대비한 3국의 관세 비교분석
-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시사점

기획

200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정책토론 리포트

경유 승용차 허용에 따른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美, 감세정책 힘쓸까? 외

정책흐름

2005년 나라살림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재정통계

법인세 Ⅲ편

권말부록

『재정포럼』(Public Finance Forum) 총목차

C · O · N · T · E · N · T · S

권두칼럼	2	미국에서의 소비세 논쟁과 시사점 / 이준규
현안분석	6 27	한·중·일 FTA에 대비한 3국의 관세 비교분석 / 정재호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시사점 / 김현아
기획	54 62 69 76	200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특징 / 김규욱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Ⅰ) / 박형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Ⅱ) / 박정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Ⅲ) / 옥동석
정책토론포트	83	경유 승용차 허용에 따른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좌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101	美, 감세정책 힘쓸까? 외
정책흐름	111 133 136 141	2005년 나라살림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005년 국세세입예산(안) 보유세제 개편 기본방안 확정 '04년 2/4분기말 현재 총 대외채무 · 대외채권 현황(잠정)
재정통계	145	법인세 Ⅲ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149	기초연금제 도입 검토할 만하다 외
권말부록	153	『재정포럼』(Public Finance Forum) 총목차

미국에서의 소비세 논쟁과 시사점

이준규 /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소비세(Consumption-Type Tax)가 소득세에 비하여 우수한 세제라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는 경제학자인 칼도(N. Kaldor)가 지출세(An Expenditure Tax, 1955)를 제안하였으며, 법학자인 앤드류스(W. D. Andrews, 1974)가 소비세의 일종인 현금흐름 개인 소득세(Cash Flow Personal Income Tax)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법학자인 워렌(A. Warren, 1980)이 소비세가 소득세에 비하여 반드시 공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이후 논쟁은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1990년대 후반 들어 미국에서 의원들이 “The Flat Tax”, “The U.S.A. Tax” 등의 구체적인 소비세 법안을 제안하면서 다시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상하였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부시 행정부의 출범을 전후하여 소비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소득은 소비되거나 저축된다고 할 때, 소득세는 저축되는 부분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소비세는 소득세와 달리 저축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는 간접소비세와 직접소비세로 구분된다.

간접소비세는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또는 영업세(retail sales tax)와 같이 소비거래의 상대방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간접소비세는 소득세에 비하여 세법이 단순화될 수는 있지만 개인의 소비수준 및 크기를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비하여 직접소비세는 납세의무자 별로 소비수준 또는 크기를 측정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득세에서와 같이 과세 표준의 측정상 어려움이 있으나 누진세율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직접소비세는 “The Flat Tax”에서처럼 소득에 과세하되 과세된 소득을 운용하여 투자수익을 얻는 경우 비과세하는 방식

(wage tax, prepayment alternative, 또는 yield exemption method)과 “The U.S.A. Tax”에서처럼 소득에서 저축 또는 투자액을 무제한 공제하되 투자회수 또는 저축의 인출시 투자 또는 저축의 원본을 포함한 전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식(standard consumption tax 또는 qualified account alternative)으로 구분되며, 세율이 비례적(proportional)이고 변동하지 아니한다면 양 방식의 결과는 동일하다.

소비세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 한 번 과세하고 과세된 소득을 저축할 경우 저축에서 투자수익이 발생할 때 다시 한 번 과세함에 따라 저축자에게 이중과세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소비되지 않은 자원은 실제로 소비되기 전까지는 사회의 공동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비되기 전에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셋째, 분배적 정의는 담세력보다는 효용의 크기를 기초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소비는 효용의 크기를 나타내는 훌륭한 지표이다. 넷째, 소득세제하에서는 두

사람이 동일한 소비수준을 가졌으나, 한 사람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생활하고 다른 사람은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아서 생활하는 경우 양자를 동일하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후자에게 더 많이 과세하므로 불공평하다. 다섯째, 소비세는 저축에 과세하지 않음에 따라 저축을 증대시키고 투자를 활성화하여 재정적자를 해결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무역수지에 도움이 되는 등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여섯째, 소비세는 소비를 선택할 때에만 과세되기 때문에 소득세에 비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유의 가치를 덜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일곱째, 소비세로 전환할 경우 세법이 단순화되며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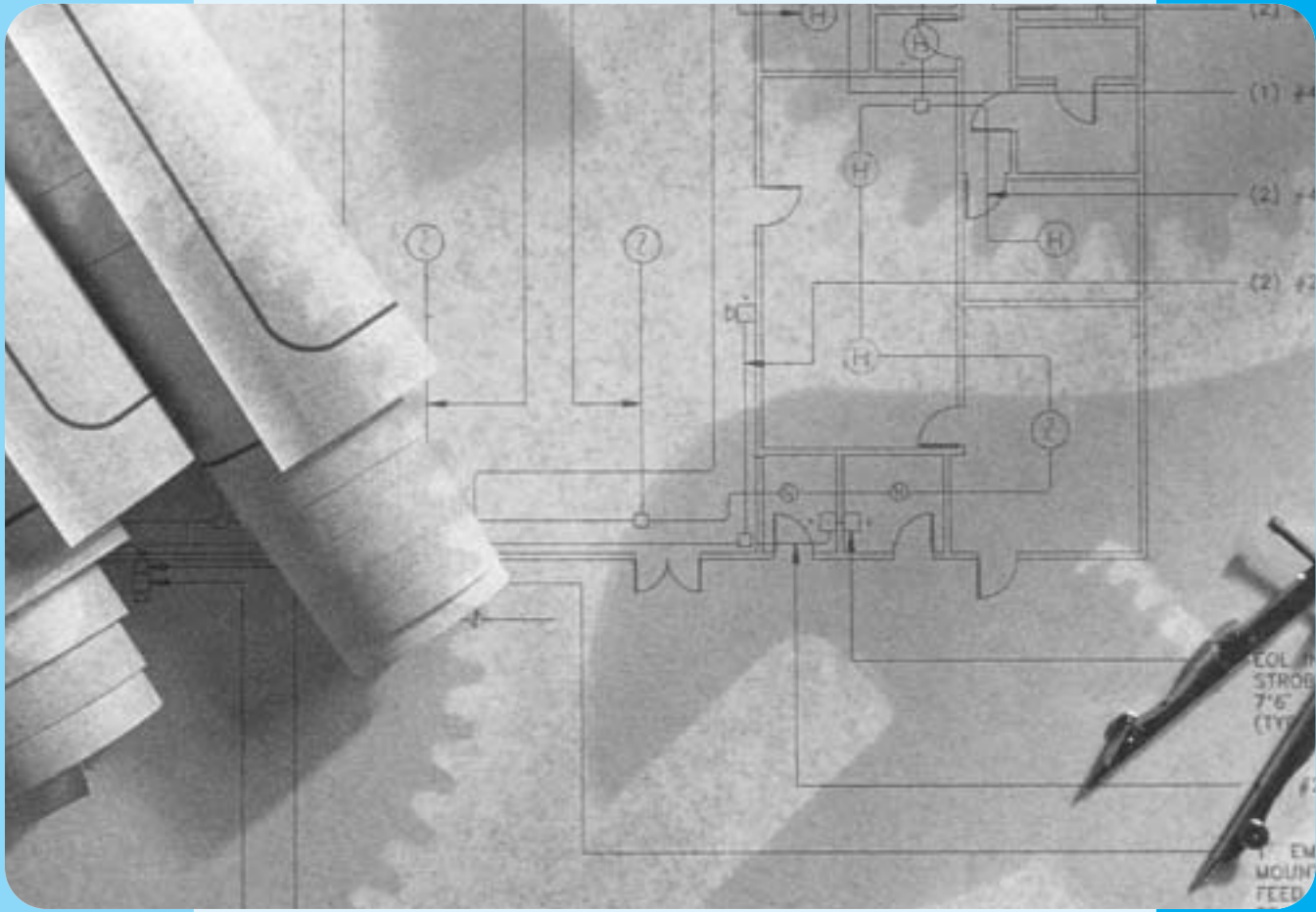
이에 대하여 소비세의 문제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세는 사전적(ex ante)으로 보면 공평한 것 같으나 사후적(ex post)으로 보면 저축 또는 투자에 실패한 자와 성공한 자를 구별하지 못하므로 오히려 불공평하다. 이에 비하여 소득세는 사후적인 관점에서 저축 또는 투자의 결과를 기초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공평하다. 둘째, 부자에게 있어서 소득에서 소비되는 비율은 가난한 자에 비하여 적으므로 소비세로 전환하면 현재 부자가 부담하던 조세부담의 상당부분이 중산층 이하에게로 전가된다. 셋째, 직접소비세로 전환할 경우 소득세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의 측정이 필요하고 저축을 개인별로 추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세법이 생각만큼 단순화되는 것은 아니다. 넷째, 소비세로 전환할 경우 저축에 과세하지 않음에 따라 일과 저축을 더 하게 되는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가 있지만 조세부담의 감소로 가처분소득이 증

가함에 따라 일과 저축을 덜 하게 되는 소득효과(income effect)에 의하여 상계되기 때문에 저축이 실제로 증가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섯째, 소비세로 전환하여 단기적으로 저축이 증대된다고 하더라도 자금의 공급증대로 인한 이자율의 하락과 환율의 조정을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저축이 종전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므로 재정적자의 해소와 무역수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느 세제가 더 우수한 세제인가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것이며 실제로 실행해 보지 않고는 단언하기 어렵다. 결국 정치적인 선택의 문제로 귀착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다만,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에서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단행한 세제개편에 대하여 학자들은 이미 소비세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저축공제의 확대, 추가감가상각의 허용, 배당소득세율의 대폭 인하 등이 단행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소비세의 전형적인 요소인 저축 또는 투자공제 및 투자수익의 과세제외에 해당하는 것이다.

미국의 세제가 완전히 소비세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하여는 속단하기 어려우나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다른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세제가 소비세로 전환될 경우 사업자 또는 기업의 조세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며 다른 나라가 현행 세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자금 및 기업의 국외탈출이 가속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하여 미리 연구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14**



EOL IN
STROB
7'6"
(TY)
EM
MOUN
FEED

현안분석



한·중·일 FTA에 대비한 3국의 관세 비교분석

정재호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시사점

김현아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한·중·일 FTA에 대비한 3국의 관세 비교분석



정재호 전문연구위원(jcheung@kipf.re.kr)

I. 서론

WTO에 의한 다자간 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한편에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혹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서로 통하는 국가간의 FTA 등의 무역특혜협정이 체결되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중국 그리고 일본은 근래 들어 FTA 체결 등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한국과 일본간의 FTA 협상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을 포함한 한·중·일 3국의 FTA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지리적인 여건상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위치로 교역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리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한·중·일 3국간의 FTA 논의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연구는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한·중·일 3국간의 교역이 활발한 것에 비해서 3국간의 관세 구조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얼마 전까지 WTO 회원국이 아닌 관계로 관세 구조가 투명하지 않았고, 또한 WTO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국가간 관세율 비교는 모든 국가들이 세계무역이라는 동일한 환경 아래에서 WTO라는 국제적인 제약에 따라 자국에 가장 최선인 관세율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가정 아래, 이와 동일한 환경 속에서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세율 정책이 다른 국가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은 지리적 밀접성 등으로 교역에서도 우리나라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관계는 지속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이들 3국의 관세구조에 대한 비교분석은 단기적으로는 DDA 협상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한·중·일 FTA 추진 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지, 그리고 그 차이가 개별 국가간의 정책적 차이를 넘어서는 차이점일 경우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 개선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은 지리적 밀접성 등으로 교역에서도 우리나라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관계는 지속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이들 3국의 관세구조에 대한 비교분석은 단기적으로는 DDA 협상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한·중·일 FTA 추진 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II. 한·중·일 FTA 논의 현황

1. 한·중·일 FTA 논의 배경

한·중·일 3국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한·중·일의 지리적 면적의 합은 전세계 면적의 7.5%, 3국의 전체 인구는 14.6억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약 1/5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EU와 NAFTA에 비해 약 4배 정도 많은 인구규모로 그만큼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인 규모면에서 한·중·일 3국의 GDP는 2001년 기준 5.7조달러로 전세계 GDP의 17.6%를 차지하고 있으며¹⁾ 중국이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고 일본이 장기불황에서 벗어남에 따라 그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교역규모를 보면 한·중·일 3국의 수출입 규모는 약 1.7조달러로 전세계 교역규모의 12.4%를 차지하고 있고, 서로에 대해 3대 교역국으로 3국간 교역비중이 전체의 20~30%를 차지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무역장벽을 낮추어 교역이 활성화될 경우 NAFTA 및 EU와 견줄 수 있는 지역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 속에 한·중·일 3국간의 FTA는 1990년대 말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1) NAFTA 및 EU가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6.3%와 26.7%로 NAFTA, EU와 함께 한·중·일 3국의 GDP를 합칠 경우 전세계 GDP의 약 80%를 차지하게 된다.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1999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루어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동북아 3국간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부터 한·중·일 3국의 FTA가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2001년 11월 브루나이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간 경제장관회의 신설 등에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기능적 수준에 머물렀던 동북아 경제협력 관계를 제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마련되고, 200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3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한·중·일 FTA 검토를 공식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한·중·일 3국에서 3국간 FTA 연구가 진행중에 있으며, 200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3국 정상회의에서 2003년도 연구결과가 보고 되었다.

2. 한·중·일 3국간의 역내교역

한·중·일 3국간의 역내교역에 대한 2003년도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는 1.29~4.73%p 성장이 가능하며, 중국과 일본은 각각 0.03~1.05%p와 0.03~0.16%p로 나타났다. 무역자유화보다는 자본축적(FDI 포함)의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한·중·일 중 2국과의 양자간 FTA에 비해 한·중·일 3국간의 FTA가 경제적으로 더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II-1〉한·중·일 FTA의 GDP에 대한 영향

(단위: %p)

	GDP에 대한 영향
중 국	0.03~1.05
일 본	0.03~0.16
한 국	1.29~4.73

자료: 정인교 외(2003) p.91 참고.

교역규모는 한·중·일 FTA로 중국의 대일본 수출은 2002년보다 50% 내외 증가할 수 있고, 대한 수출규모도 거의 2배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은 대중 및 대한 수출을 각각 188~316억달러, 90~194억달러 증가시켜 2002년 기준 55~75% 수출증가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은 각각 85~121억달러, 83~103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중·일 FTA로 중국의 대일본 수출은 2002년보다 50% 내외 증가할 수 있고, 대한 수출규모도 거의 2배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은 대중 및 대한 수출을 각각 188~316억달러, 90~194억달러 증가시켜 2002년 기준 55~75% 수출증가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은 각각 85~121억달러, 83~103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중·일 FTA로 중국이 일본과 한국에 대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품목은 주로 의류, 농산물, 가공식품, 전기전자 등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일본은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류, 철강 등, 그리고 한국은 섬유, 석유화학, 전기전자, 가공식품 등이 주요 수출품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II-2〉 한·중·일 FTA에 의한 교역량 변화

(단위: 억달러)

수출국\수입국	중 국	일 본	한 국
중 국	-	205~254	125~151
일 본	188~316	-	90~194
한 국	85~121	83~103	

자료: 정인교 외(2003) p.92 참고.

현재에도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3국은 FTA는 체결되지 않고 있지만, 지리적인 인접성 등으로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순서이다. 또한 최대 수입국도 일본, 미국, 중국 순서로 전체적인 교역에서 일본, 중국이 미국과 함께 3대 교역국에 속하고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한국, 중국과 함께 미국이 3대 교역국에 속하고 있다. 중국도 이와 유사하나 자국의 특수한 사정으로 홍콩, 대만과의 교역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최대 교역국 중의 하나임은 틀림없다. 결과적으로 한·중·일 3국은 서로에 대해 3대 교역국으로 3국간 교역비중이 전체의 20~30%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3〉 한국의 4대 수출입 교역국(2003년)

(단위: %)

순위	수 출		수 입		교 역	
	국 가	비 중	국 가	비 중	국 가	비 중
1	중국	18.11	일본	20.31	미국	15.84
2	미국	17.66	미국	13.88	중국	15.30
3	일본	8.91	중국	12.25	일본	14.38
4	홍콩	7.56	사우디아라비아	5.18	홍콩	4.67

자료: KOTIS

〈표 II-4〉 일본의 4대 수출입 교역국(2003년)

(단위: %)

순위	수 출		수 입		교 역	
	국 가	비 중	국 가	비 중	국 가	비 중
1	미국	24.58	중국	19.70	미국	20.46
2	중국	12.17	미국	15.39	중국	15.54
3	한국	7.37	한국	4.67	한국	6.16
4	대만	6.62	인도네시아	4.28	대만	5.32

자료: KOTIS

〈표 II-5〉 중국의 4대 수출입 교역국(2003년)

(단위: %)

순위	수 출		수 입		교 역	
	국 가	비 중	국 가	비 중	국 가	비 중
1	미국	21.10	일본	17.96	일본	15.70
2	홍콩	17.41	대만	11.95	미국	14.84
3	일본	13.56	한국	10.45	홍콩	10.27
4	한국	4.59	미국	8.20	한국	7.43

자료: KOTIS

현재에도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3국은 FTA는 체결되지 않고 있지만, 지리적인 인접성 등으로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서로에 대해 3대 교역국으로 3국간 교역비중이 전체의 20~30%를 차지하고 있다.

III. 한·중·일 관세율 구조

한·중·일 3국의 관세율 구조를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어 비교하고자 한다. 첫째, 품목별 관세율 비교로서 이는 HS 분류에 따른다. HS 코드는 전세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제비교가 가장 용이한 기준이 된다. 본고는 이와 함께 평균관세율만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관세율 분포도 함께 살펴본다.

둘째, 가공단계별 관세율 구조를 비교 분석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일부 품목에 한정하여 경사관세구조(tariff escalation)를 분석하기 위해 가공단계별 차등구조 분석을 시도하였다²⁾. 그러나 본고에서는 전체 관세구조를 각국별로 원자재, 중간재, 그리고 최종재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가공단계별 차등구조와 관세율 분포 등을 함께 살펴본다.

셋째, 산업별 관세율 구조를 비교한다. 본고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의 산업구분에 따라 3국의 관세율 구조를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최낙균 외(2000), 최낙균·박순찬(2002) 등에서는 GTAP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산업별 관세율을 사용하거나³⁾, 최낙균·이명현 외(2001), WTO(2001)처럼 WTO 관세인하협상에서 제시한 산업구분 방식⁴⁾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우리나라 산업구분과는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 산업과 연계하여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산업분류는 HS 코드 6단위를 기준으로 개별 산업별로 해당 HS 6단위를 연결하여 분류하였다. 여기서 HS 6단위를 사용한 이유는

2) OECD(1999)에서는 코코아, 커피, 철, 가죽, 설탕, 담배 등 13개 품목에 대해 가공단계별 양허세율을 제시하고 있다. OECD(1997)에서는 1993년 혹은 1996년의 가공단계별 평균관세율만을 제시하고 있다. WTO(2001)에서는 양허세율의 가공단계별 평균관세율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존 연구들은 양허세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 양허세율과 실행세율 간에는 큰 차이가 있어 이를 통한 가공단계별 차등관세율 구조 파악은 불가능하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공산품은 대부분 8% 세율을 가지고 있지만 양허세율은 13% 수준이며, 필리핀은 3%의 실행세율을 적용하면서도 양허세율은 30% 수준으로 그 차이가 크다.

3) GTAP(version 5)에서는 57개 부문(sector)으로 구분하여, 쌀, 밀, 과일, 채소, 섬유, 의류, 철강, 건설, 서비스분야 등이 있다. 특히, GTAP는 농업부문을 세분화하여 전체 57개 부문 중 농업부문에 대해 12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농림수산업이 전체의 약 1/4을 차지한다.

4) 다자간무역협상(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분류(category)는 UR협상에서 이용되었는데, 이는 11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① 목재, 펄프, 제지 및 가구 ② 섬유 및 의류 ③ 가죽, 고무, 신발 및 여행용품 ④ 금속 ⑤ 화학 및 사진 관련품 ⑥ 운송장비 ⑦ 비전기 기계 ⑧ 전기기계 ⑨ 광물, 보석, 귀금속 ⑩ 기타 제조품 ⑪ 수산물에 이에 속한다.

HS 코드는 전세계적으로 6단위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⁵⁾.

1. 관세율의 품목별, 분포별 비교⁶⁾

가. HS 분류에 따른 품목별 비교

HS 품목별 관세율 수준을 비교해 보자. 우선 전체적인 평균세율은 우리나라가 12.7%로 중국의 13.7%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농산물과 관련된 HS 01~04류까지의 평균세율이 높기 때문이다. 대부분 국가들의 HS 01~04까지의 평균세율은 다른 것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우리나라 농산물의 단순평균관세율은 44.2%로 여타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⁷⁾. 특히 식물성 생산품(HS 02)의 세율은 91.1%로 대만·중국의 17%, 일본·미국·EU의 5~6%에 비해 매우 높다. 산 동물 등(HS 01)과 조제식료품(HS 04)의 평균세율은 각각 21%와 24%로 중국, 대만과 유사한 수준이다.

공산품에 대한 단순평균세율은 7.3%로 일본의 3.6%와 중국의 12.7%의 중간에 위치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방직용 섬유와 제품(HS 11)과 신발 및 모자류(HS 12)는 여타 공산품에 비해 관세율을 높은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각각 9.7%와 10.2%의 평균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방직용 섬유와 제품(HS 11)의 관세율은 전체적인 관세율 수준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관세율 수준이 절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다. 특히, 신발 및 모자류(HS 12)의 평균관세율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모피 및 가죽제품(HS 08)과 함께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평균세율이 낮은 품목이다.

5) 우리나라는 HS 코드를 10단위까지, 일본은 9단위, 중국은 8단위까지 사용하고 있다. 더 세세한 HS단위를 이용한 산업분류가 더 정확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겠으나, 각국의 산업별 세세한 HS 코드를 모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HS 6단위를 기준으로 재분류하였다.

6) 본고에서 언급하는 관세율은 분석대상 국가들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된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각국이 WTO IDB자료에 보고한 duty type 02 legal(CD에서는 02 statutory)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기준연도는 2001년이며, 자료에 따라 연도가 다를 경우 구체적인 연도를 명시하였다.

7) WTO IDB 자료에 나타난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율은 기본관세율과 시장접근물량 초과량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주를 이루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관세율 수준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해야 한다.

HS 품목별 관세율 수준을 비교해 보면 우선 전체적인 평균세율은 우리나라가 12.7%로 중국의 13.7%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농산물과 관련된 HS 01~04까지의 평균세율이 높기 때문이다. 공산품에 대한 단순평균세율은 7.3%로 일본의 3.6%와 중국의 12.7%의 중간에 위치했다.

〈표 III-1〉 주요국의 단순평균 실행세율 분포(2001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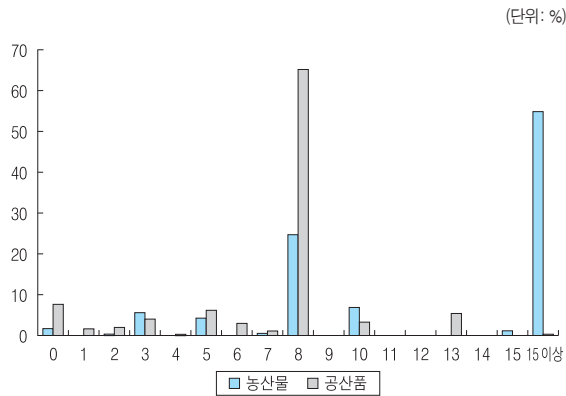
HS	품목명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대만	미국	EU
01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21.2	9.6	17.0	0.0	20.3	6.3	9.6
02	식물성 생산품	91.1	6.4	16.6	0.6	17.1	5.2	5.6
03	동물성 유지 및 분해생산물	10.6	3.6	24.0	1.7	8.8	3.5	5.9
04	조제식료품 등	24.0	14.8	25.4	2.6	23.7	12.0	13.7
05	광물성 생산품	3.7	0.5	4.3	0.4	1.9	0.2	0.9
06	화학 생산품	8.6	2.2	8.6	1.2	3.9	3.8	4.2
07	플라스틱과 고무제품	7.6	2.6	12.5	5.8	5.1	3.7	5.1
08	모피 및 가죽제품	7.8	10.7	15.4	3.8	3.9	4.9	2.7
09	목재와 그 제품	5.7	3.0	7.9	3.3	3.8	2.2	2.7
10	목재 또는 펄프	5.9	0.8	10.8	3.3	5.1	0.6	2.1
11	방직용 섬유와 제품	9.7	7.9	20.0	12.3	10.0	9.3	8.6
12	신발, 모자류	10.2	14.8	21.5	6.5	7.1	11.1	8.0
13	석, 시멘트, 운모 제품	7.9	1.2	15.7	3.8	8.3	5.1	3.8
14	귀금속 제품	5.4	1.4	11.8	1.1	0.5	3.0	0.7
15	비금속과 그 제품	6.5	1.4	8.5	3.7	6.3	2.3	2.5
16	기계류	6.0	0.1	11.5	3.3	5.2	1.6	2.2
17	차량 및 수송기기 관련품	5.8	0.1	19.8	5.3	13.6	2.6	4.6
18	정밀기기	6.6	0.2	12.3	1.0	3.8	2.0	2.1
19	무기류	4.2	6.7	13.4	1.8	1.7	1.2	2.5
20	잡품	7.3	1.8	17.7	3.7	5.8	2.8	2.7
21	예술품, 수집품 및 골동품	0.0	0.0	10.2	0.0	0.0	0.0	0.0
	농 산 물	44.2	10.5	18.9	1.2	19.3	8.3	9.4
	공 산 품	7.3	3.6	12.7	4.7	6.0	4.0	3.9
	총 계	12.7	4.9	13.7	4.3	8.0	4.5	4.8

자료: WTO

나. 한·중·일 관세율 분포 비교 분석

우리나라는 현재 8% 중심관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관세율 분포를 보면 관세율 8%에 세번수 기준 59.2%가 분포되어 있다. 이는 공산품의 경우에 더 두드러져서 8%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번은 전체의 65.2%이다. 농산물은 7.1~8%구간에 24.6%가 분포한 반면 15% 이상에 55%의 세번이 분포되어 있어 농산물에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됨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 한국의 관세율 분포



우리나라의 HS 세번수 기준으로 무세 적용 품목수는 전체 품목의 6.6%이며, 수입비중은 16.3%이다. 일본의 무세 적용 품목수는 미국과 EU보다도 많으며, 수입비중도 69.1%로 미국 44.9%, EU 48.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 EU와는 달리 농산물의 무세 비중은 22.0%로 공산품의 43.2%에 비해 낮았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산물의 진입장벽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무세 적용 품목 비중이 낮아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비중도 1997년 기준 2.3%로 매우 낮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무세 적용 비중은 6.6%로 낮으며 특히, 농산물에 대해 무세를 적용하고 있는 품목수는 25개로 1.5%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산품의 경우 향후 ITA 협정에 의해 무세가 적용될 품목이 추가로 증가할 예정이므로 우리나라의 무세 적용 비중은 상향될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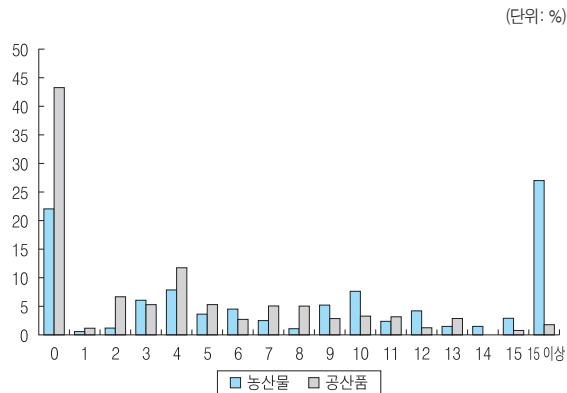
이런 무세화 수준을 바탕으로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관세율은 대부분 5% 이내에 분

일본의 무세 적용 품목수는 미국과 EU보다도 많으며, 수입비중도 69.1%로 미국 44.9%, EU 48.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 EU와는 달리 농산물의 무세 비중은 22.0%로 공산품의 43.2%에 비해 낮았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산물의 진입장벽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포되어 있다. 일본은 무세 적용 품목을 포함하여 증가세율이 5% 이하인 품목수는 전체의 66.0%, 수입비중으로는 83.9%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일본의 무세 비중이 높은 것에 비해 5% 이내의 세율을 부과하는 비중은 그만큼 낮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사항으로는 대만의 무세 적용 비중이 17.2%로 일본, 미국 등보다 월등히 낮지만 품목 대부분(87.3%)에 대해 5% 이하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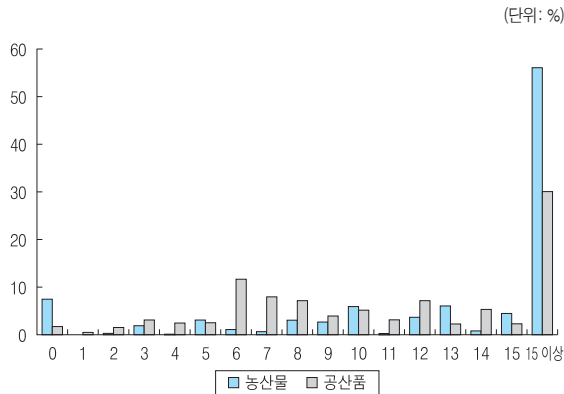
15% 이상을 고관세로 명명할 경우⁸⁾ 일본의 고관세 품목은 미국과 EU보다 많아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관세 품목의 수입비중은 2.3%로 EU의 1.1%에 비해서는 높지만 미국의 5.7%에 비해 낮은 편인데 대부분 농산물이 이에 속한다. 중국은 아직까지 관세율이 높은 수준으로 전체 세목의 34.2%에 대해 15% 이상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농산물에서 15% 이상의 고관세가 적용되는 세번은 전체의 55.9%로 절반 이상이 15% 이상의 고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공산품은 5.1~10% 사이에 36.4%의 세목이 적용되어 가장 많은 세목이 분포되어 있고 15% 이상의 고관세가 부과되는 비중은 30.0%로 농산물에 비해서는 낮았다.

[그림 Ⅲ-2] 일본의 관세율 분포



8) 관세정점(tariff peaks)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없다. OECD에서는 해당국의 국내평균관세율의 3배 이상인 관세율을 국내정점(national peaks)으로 15% 이상인 관세율은 국제정점(international peaks)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편의상 15%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그림 III-3] 중국의 관세율 분포



2. 가공단계별 관세율 구조 비교

가. 우리나라의 현행 가공단계별 관세율 구조

우리나라는 관세인하예시제를 통해 공산품의 중심세율을 8%로 유지하고 있다. 가공단계별 관세율 구조를 살펴보면, 원자재에 대해서는 경쟁과 비경쟁 원자재로 구분하여 비경쟁 원자재는 1~2%의 세율을 그리고 경쟁 원자재는 이보다 조금 높은 3~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중간재는 5~8%, 최종재는 8%를 중심세율로 그리고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은 10~16%의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표 III-2> 공산품의 관세율 구조

(단위: %)

가공도별	1983	1984	1988	1989	1994	2000~	
중심세율	20	20	20	15	8	8	
원료	비경쟁원료	5~30	5~10	5	1~2	1~2	1~2
	경쟁원료		10	10	5	3	3~4
중간재	경쟁력 확립(1차가공품)	20~50	20~30	10~20	10	8(5)	5~8
완제품	일반 공산품	40~80	40~50	20~30	15	8	8
	경쟁력 취약						10~16

자료: 정재호(2003)

우리나라 공산품의 가공단계별 관세율은 가중평균으로 보면 각각 3.60%, 5.84%, 4.92%로 중간재의 관세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최종재로 관세율 차이가 역전되고 있다. 일본은 0.56%, 4.31%, 3.35%로 중간재가 최종재보다 약 1%p 정도 높다. 그러나 가중평균세율에서는 0.05%p로 그 차이가 미미해진다. 반면, 중국은 5.7%, 9.9%, 14.8%로 가공단계별 관세율 차이가 확연히 나타난다.

나. 한·중·일 3국의 가공단계별 관세율 비교

원자재-중간재-최종재로 가공단계가 상승함에 따라 한·중·일 3국의 관세율의 평균적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비교해 보자. 우리나라 공산품의 가공단계별, 즉 원자재, 중간재, 최종재의 관세율 모습은 단순평균 기준으로 각각 3.41%, 7.63%, 7.60%로 원자재의 관세율이 낮고 중간재와 최종재의 관세율이 높지만 중간재와 최종재 사이의 관세율은 큰 격차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중평균으로 보면 각각 3.60%, 5.84%, 4.92%로 중간재의 관세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최종재로 관세율 차이가 역전되고 있다. 일본은 0.56%, 4.31%, 3.35%로 중간재가 최종재보다 약 1%p 정도 높다. 그러나 가중평균세율에서는 0.05%p로 그 차이가 미미해진다. 반면, 중국은 5.7%, 9.9%, 14.8%로 가공단계별 관세율 차이가 확연히 나타난다.

한편, OECD 회원국의 평균을 살펴보면 가공단계에 따라 단순평균 기준으로는 각각 1.74%, 4.68%, 5.76%, 가중평균 기준으로는 각각 0.79%, 3.93%, 4.46%의 경사관세율 구조를 보여준다. 이 같은 구조는 우리나라와 두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첫째, 절대적 수준에 있어서 모든 가공수준에서 관세율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2~3%p 낮다. 둘째, 중간재의 세율이 원자재의 세율보다 높음은 물론, 최종재도 중간재보다 뚜렷이 높은 세율 수준을 보여준다. 다만 개별국가들을 살펴보면, 단순평균 기준으로는 일본·터키·미국·EU와 같이 중간재와 최종재 간의 세율 역전현상을 보이는 국가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가중평균으로 살펴보면 일본과 EU처럼 그 역전의 정도가 감소하거나 미국처럼 최종재의 세율이 중간재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해 미국과 EU 등에서 중간재의 평균관세율이 최종재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 부품·소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높게 책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또다른 해석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ITA 등 부문별 무세화를 추진하면서 중간재보다는 완제품인 최종재를 중심으로 무세화가 적용되어 그 결과 최종재에 비해 중간재의 세율이 높게 형성되었다는 견해가 있다⁹⁾.

9) 무세화 협상과정에서 중간재보다는 완제품에 대한 무세화가 추진된 이유는 완제품에 사용되는 부품까지 무세화에 포함시키기는 것은 기술상 곤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범위가 최종재 쪽에 많이 치우치게 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표 III-3〉 OECD 및 중국의 공산품 가공단계별 평균관세율

(단위: %)

	단순평균				가중평균			
	연도	원자재	중간재	최종재	연도	원자재	중간재	최종재
한국	2001	3.41	7.63	7.60	1999	3.60	5.84	4.92
일본	2001	0.56	4.31	3.35	2000	0.04	1.98	1.93
중국	2001	5.70	9.91	14.77	1997	6.61	15.15	14.01
호주	2001	0.59	4.19	5.48	1999	0.07	3.45	5.33
캐나다	2001	0.66	3.49	4.18	2000	0.09	3.61	3.57
체코	2001	0.54	4.22	4.98	2000	0.12	4.46	4.48
아이슬란드	2000	0.73	0.31	4.12	2000	0.02	0.29	2.62
스위스	2001	0.00	0.00	0.00	2001	0.00	0.00	0.00
멕시코	2001	11.10	12.87	17.36	2000	7.12	13.05	14.52
노르웨이	2001	0.00	1.31	2.97	2001	0.00	0.64	1.66
뉴질랜드	1999	0.33	2.10	5.38	1999	0.01	2.42	3.30
터키	2001	0.37	6.00	4.12	2000	0.22	7.40	4.84
미국	2001	0.60	4.63	3.88	2000	0.17	2.81	3.24
EU	2001	0.54	4.48	3.90	2001	0.08	3.66	3.49
헝가리	2001	2.53	5.34	8.57	2000	0.34	5.05	8.20
폴란드	2000	5.31	9.83	11.34	-	-	-	-
슬로바키아	2001	0.54	4.22	4.97	2000	0.04	4.28	4.79
평균		1.88	4.83	5.76		0.93	4.27	4.75

자료: WTO

다. 한·중·일 가공단계별 관세율 분포 비교

우리나라는 원자재의 0.3%에 대해 무세를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원자재가 0.1~3.0% 구간에 분포되어 있지만, 원유의 세율이 5%인 관계로 단순평균관세율은 3.4%이고 수입 가중평균은 이보다 조금 높은 3.6%이다¹⁰⁾. 이에 비해 일본의 단순평균관세율은 0.6%이고, 특히, 가중평균세율은 일본 0.04%로 EU 0.08%, 미국 0.17%와 같이 거의 무세에 가깝다. 또 한 일본은 원자재의 89.6%에 무세를 적용하고 있고 수입비중은 99.1%로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원자재에 무세를 적용하고 있다¹¹⁾. 이는 미국, EU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참고로, 미국은 원자재에 대해 세번수 기준으로 전체의 86.9%에 무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수입비중을 보

10) 우리나라의 원유를 제외한 원자재의 가중평균은 1.9%이다.

11) 원자재에서 비종가세가 적용되는 9개 세번은 원유(HS 2709), 누에고치(HS 5001)와 생사(HS 5002) 등으로 모두 종량세가 부과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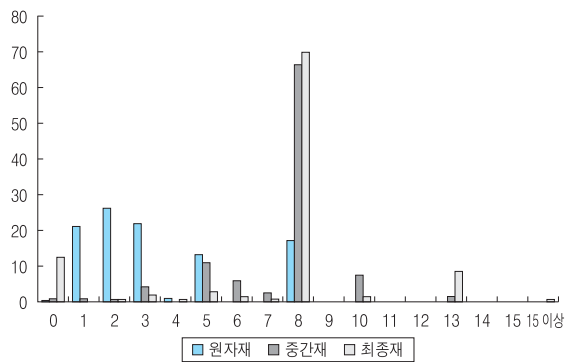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우 원자재에 대해서는 무세를 적용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부 원자재에 대해서만 무세를 적용하고 있다. 2003년 7월을 기해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는 무관세 적용을 원칙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초원자재의 대부분을 무세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무세 비중은 향후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도 원자재에 대한 무세 비중을 높이고 있다.

면 0.1~1% 사이의 수입비중이 53.1%로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무세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원자재 수입의 99.4%를 1% 미만의 낮은 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EU도 원자재의 84.1%가 무세로 수입되고 있다¹²⁾. 즉,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우 원자재에 대해서는 무세를 적용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부 원자재에 대해서만 무세를 적용하고 있다. 2003년 7월을 기해 우리나라도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는 무관세 적용을 원칙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초원자재의 대부분을 무세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무세 비중은 향후 높아질 전망이다¹³⁾.

중국은 원자재의 단순평균세율이 5.7%이고 가중평균세율은 6.6%로 가중평균이 단순평균에 비해 높다. 중국은 원자재의 18.2%에 대해 무세를 적용하고 있고 약 절반(51.5%)의 원자재에 대해 4% 이하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도 원자재에 대한 무세 비중을 높이고 있다.

[그림 III-4] 한국 가공단계 관세율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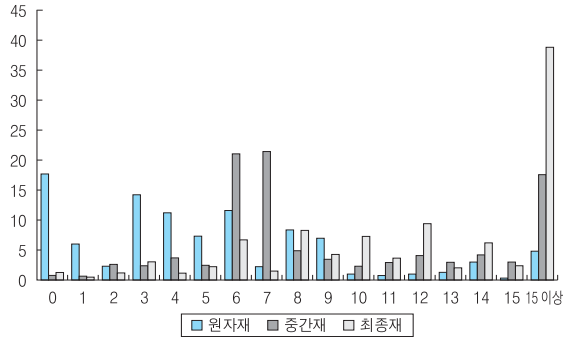


12) 원자재 중에서 비중가세가 부과되는 3개의 세번은 HS 2501.00.51, HS 2501.00.91, HS 2501.00.99로서 모두 소금에 해당된다.

13) 재정경제부에 의하면, 2002년 기준 기초원자재 총 수입액 385억달러 중 약 26%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것이 95% 수준까지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03년 7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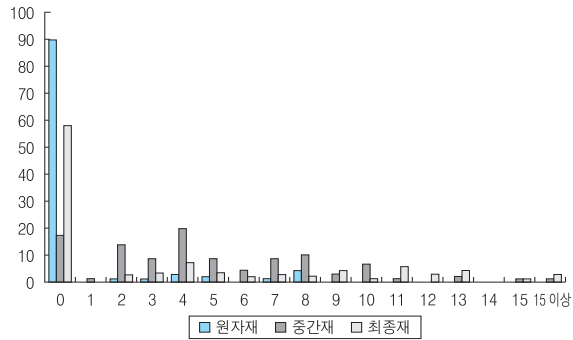
[그림 III-5] 중국 가공단계 관세율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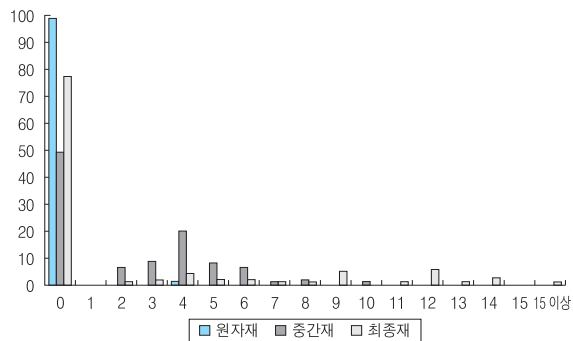
[그림 III-6] 일본 가공단계 관세율 분포

(단위: %)



[그림 III-7] 일본 가공단계 분포(수입비중)

(단위: %)



한·중·일 3국의 산업별 관세율의 특징을 보면, 첫째, 섬유 및 가죽제품의 관세율은 높은 반면, 광업은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공산품 전반에 걸쳐 6~7%대의 평균관세율을 보이고, 일본은 0~2%대, 중국은 7~20%대를 보이고 있다. 셋째, 일본은 수송장비 등 조립가공업종의 관세율이 화학제품 등의 기초소재업종에 비해 낮으나, 중국은 이와 반대를 보이고 있다.

중간재와 최종재에 대해 살펴보자. 일본의 중간재 무세 적용비중은 17.1%로 원자재와 최종재에 비해 낮다. 이런 현상은 미국, EU,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도 이들 국가의 중간재 평균관세율이 최종재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간재는 3%와 1% 구간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 밖의 구간에서도 최종재보다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최종재의 무세비중은 중간재에 비해 매우 높은 58.5%로 나타났고 수입비중도 77.2%에 이른다.

중국은 중간재의 0.8%에 무세를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간재는 6%, 7% 구간에 분포되어 있다. 중간재 중 17.4%는 15% 이상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는 원자재에 비해 높은 비중이지만 후술할 최종재에 비해서는 높지 않다. 최종재의 무세비중은 중간재와 비슷하게 1.2%에 불과하였다. 최종재에서 15% 이상의 고관세가 적용되는 비중은 39.0%로 중간재에 비해 훨씬 높았다. 최종재의 절반 이상이 12%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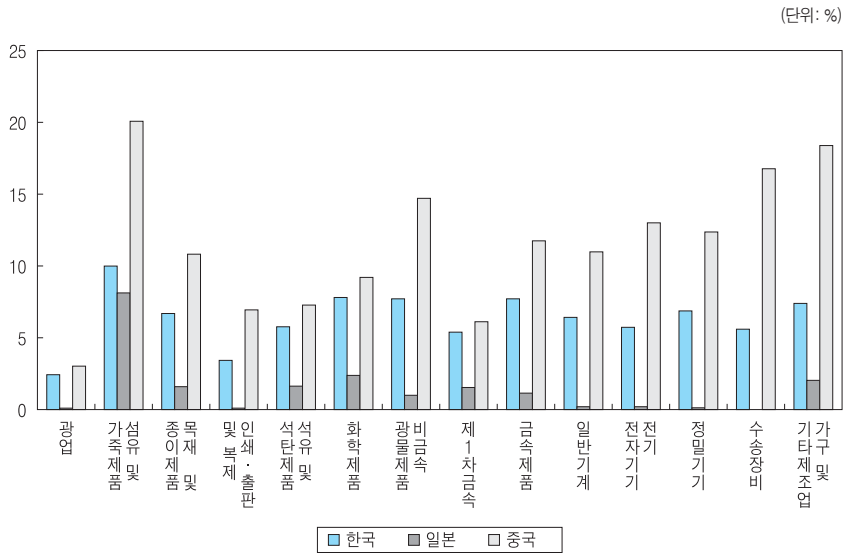
3. 산업별 관세율 비교

한·중·일 3국의 전체적인 산업별 관세율의 특징을 보면, 첫째,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섬유 및 가죽제품의 관세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는 반면, 광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공산품 전반에 걸쳐 6~7%대의 평균관세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0~2%대의 매우 낮은 평균관세율을 보이고 있고, 반면, 중국은 산업별로 편차가 우리나라와 일본에 비해 커서 7~20%대의 평균관세율을 보이고 있다. 셋째, 일본은 수송장비 등 조립가공업종의 관세율이 화학제품 등의 기초소재업종에 비해 낮으나, 중국은 이와 반대를 보이고 있다.

개별 산업별 특징을 살펴보면, 광업은 대부분 원자재와 관련된 부문으로 일본은 거의 0%에 가까운 관세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계속해서 무세화 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반면 중국은 현재의 수준을 2010년까지 유지할 예정으로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다른 정책을 취하고 있다.

소비재 업종 중 섬유 및 가죽제품은 한·중·일 3국 모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도 여타 제조업의 관세율이 2%미만인 것에 비해 섬유 및 가죽제품은 8.13%로 매우 높다.

[그림 Ⅲ-8] 한·중·일 공산품 산업별 관세율 (2001년)



중국도 20.18%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중국은 2010년에 섬유 및 가죽제품의 평균관세율을 12.24%로 대폭 낮출 예정이다. 중국이 이처럼 절반 수준으로 관세율을 낮출 산업부문은 목재 및 종이제품으로 평균관세율 10.88%에서 2005년에 5.69%로 현재 우리나라 수준보다도 낮게 낮출 계획이다. 소비자 업종 중 가구 및 기타제조업에서도 현재 중국의 평균관세율은 18.40%로 일본의 2%, 우리나라의 7.5%에 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까지 14.3%로 낮출 예정이다. 그러나 이 수준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또한 자국의 전체 평균관세율 10.09%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공산품은 기초소재업종과 조립가공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¹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조립가공업종에 비해 기초소재업종의 관세율이 조금 높은 편이다. 반면, 중국은 이와 반대로 조립가공업종의 관세율이 기초소재업종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는 한·중·일 3국의 산업발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중국에서는 아직 조립가공업종에 대한 경쟁력이 낮아 자국 산업을 더 보호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결과 석유 및 석탄제품, 화학제품, 제1차 금속 등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세율

14) 기초소재업종은 섬유 및 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 금속, 금속제품 등이 있고, 조립가공업종은 일반기계,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등이 있다.

조립가공업과 관련해서 일본은 매우 낮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특히 수송장비는 0.02%로 일부 부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에는 무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두드러진 특징으로 미국·EU·호주·대만·중국 등이 조립가공업종 중에서 수송장비에 대해서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조립가공업종에서는 거의 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조립가공업종에 대한 10~17%의 관세를 2010년에 9~11%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어서 산업간 관세율 차이가 그만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수송장비가 동일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인데, 2010년에 10.99%로 낮출 예정이다. 반면 조립가공업과 관련해서 일본은 매우 낮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특히 수송장비는 0.02%로 일부 부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에는 무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두드러진 특징으로 미국·EU·호주·대만·중국 등이 조립가공업종 중에서 수송장비에 대해서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또한 우리나라도 수송장비의 평균관세율이 5.6%로 조립가공업종 중에서 가장 낮지만, 일본의 관세율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

산업연관표 분석에 의하면 조립가공업종이 우리나라 성장을 주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총산출액에서 이들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5.0%에서 2000년에는 19.2%로 높아졌고, 특히 수출비중에서는 1990년 30.4%에서 2000년에는 48.5%로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이런 특징과 함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의 36.7%이고, 수입의존도도 계속해서 증가하여 1990년 18.0%에서 2000년에는 23.1%로 나타났다. 조립가공업종 중 특히 전기 및 전자기기는 수출상품 비중 30.5%, 수입의존도 32.4%로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면서 수출에 따른 수입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조립가공업종의 평균관세율은 약 5.6~6.9% 수준인 반면 일본 관세율은 매우 낮아 거의 무관세에 가까운 수준이다¹⁵⁾. 단순히 한·일간의 관세율 수준만을 보면 만약 한·일 FTA가 체결되어 관세장벽이 철폐되더라도 우리나라 조립가공업종의 대일본 수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여겨진다.

15) 일본 조립가공업종의 수출상품 비중은 2000년 기준 63.5%로 우리나라보다 수출비중이 더 높다. 이 중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수출상품 비중은 29.1%이고 수송장비는 20.5%로 이 두 산업이 일본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산업의 수입 상품 비중은 각각 16.6%와 3.5%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표 III-4〉 공산품의 수출·수입·수입의존도별 구성비

(단위: %)

	수출상품별		수입상품별		수입의존도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공산품	79.5	81.3	74.8	67.1	18.0	21.8
소비재제품	31.4	13.3	13.0	10.0	13.7	12.8
기초소재제품	17.7	19.5	27.4	20.4	23.1	26.4
조립가공제품	30.4	48.5	34.5	36.7	18.0	23.1
전기 및 전자기기	20.8	30.5	13.4	21.5	23.8	32.4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IV. 정책 시사점

한·중·일 3국은 지리적인 근접성으로 역사적으로도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1990년말 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한·중·일 3국 정상은 한·중·일 3국간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연구단계에 이르고 있다.

정인교 외(2003)에 의하면 한·중·일 FTA에 의해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측면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3국간의 교역량도 증가하는데, 다만 우리나라의 대중국 및 대일본 수출 증가액보다는 일본과 중국의 대한국 수출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고는 한·중·일 3국의 관세율 구조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조립가공업종에 대한 관세율 정책의 방향이라고 여겨진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립가공업종은 산출액 비중 19.2%와 수출상품 비중 48.5%에서 보듯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또한 수입상품 비중 36.7%, 수입의존도 23.1%에서 보듯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즉, 조립가공업종이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면서 한편으론 수출에 따른 수입을 그만큼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사항은 수입의 많은 부분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수출은 중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¹⁶⁾. 중국은 조립가공업종의 관세율을 계속해서 인하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한·중·일 FTA가 체결된다면 관세장벽은 없어질 것이다. 관세율 인하가 곧 우리나라 수출신장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기술력 등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대중국 수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일본

16) 한·중·일 3국의 교역에서 특이한 사항은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고,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로부터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어 서로 맞물리는 형상을 보인다.

관세율 정책에서는 중간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중간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성장잠재력이 없거나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닌 경우에 원자재와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고, 반면 고부가가치 부품 및 소재 산업에 대해서는 최종재와 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등으로부터의 수입 또한 계속 증가할 수 있음을 내포한다. 한편 한·중·일 FTA에 의해 우리나라의 관세율 수준이 낮아진다면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출에 따른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소재 및 부품 등 중간재 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 그러나 모든 중간재 산업을 육성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이를 위해 관세율 정책에서는 중간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중간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성장잠재력이 없거나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닌 경우에 원자재와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고, 반면 고부가가치 부품 및 소재 산업에 대해서는 최종재와 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간재 선별은 향후 산업별 세부 연구를 통해 집중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분야로 여겨진다.

이와 연관되어 원자재, 중간재, 최종재의 가공단계별 관세율 구조에서도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일본 등 선진국을 보면 중간재의 평균관세율 수준이 최종재의 평균에 비해 약간씩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입 가중평균관세율을 보면, 일본의 중간재와 최종재 사이의 차이는 $-0.04\%p$ 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중평균 기준으로 오히려 그 차이가 커져서 $-0.92\%p$ 로 증가하였다. 이는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중간 수입재에 대해 그만큼 관세가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중간재 관세율 수준을 낮추는 방향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모든 중간재에 대해 관세율을 낮출 것을 제의하는 것은 아니며,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간재의 관세율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KIP**

참고문헌

정인교 외, 『한·중·일 FTA의 추진 당위성과 선행과제』, 정책연구03-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정재호, 「향후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의 방향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제84호, 한국조세연구원, 2003

최낙균·이명현·주문배, 「WTO 뉴라운드 공산품 협상의 시나리오별 실증분석과 한국의 협상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최낙균·이명현·이경희·정재호,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 협상의 경제적 효과: WTO 뉴라운드 공산품 협상에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최낙균·박순찬, 「DDA 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OECD, “Indicators of Tariff & Non-tariff Trade Barriers,” 1997.

OECD. “Review of Tariffs Synthesis Report,” TD/TC(99)7/FINAL, 1999.

WTO, “Market Access: Unfinished Business,” Special Studies 6, 2001

KOTIS, <http://www.kotis.co.kr>

WTO, <http://www.wto.org>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시사점



김 현 아 전문연구위원 (hyuna@kipf.re.kr)

I. 보유세 논의의 배경

정부는 2003년 10월 29일 과열된 부동산 시장가격 안정화를 골자로 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책의 주요 배경으로 2001년 하반기 이후 재건축 과열에 따른 서울 강남권 부동산 가격 급등, 수도권·신행정수도 지역을 위주로 한 주택가격 상승을 들고 있다¹⁾. 종합대책은 이전의 정부 대책(2003년 5월 23일, 2003년 9월 5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반복하자 보다 적절한 정책대응을 통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 중 부동산 관련세제 개선의 주요 내용으로는 양도소득세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도입 조기시행이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제도를 이원화하여 시·군·구에서는 관할구역 내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하고 국가에서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는 방안과, 재산세의 경우 시가를 반영하는 계획이 실행될 예정이었던 것이, 10·29 조치에서는 ‘토지·주택 등 보유 부동산 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과다 고액 보유자에 대하여는 보유가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보유세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조기 도입의 근거로 삼았다.

2004년 10월 현단계에서의 보유세제 개편 내용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 토지와 건물의 통합평가에 따른 통합과세체제 개편이다. 이는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성 문제를 근본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1)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재정경제부 외 보도자료, 2003. 10. 29.

적으로 해소하고 국민들이 예측가능한 보유세제를 만들기 위하여 실제 재산가액에 기초한 과세원칙에 따른 것이다.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단독주택은 시가에 근접하는 통합평가방법을 개발하여 기존의 토지, 건물 분리과세에서 ‘통합과세’하는 것이 개편의 골자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2004년 주택분 재산세 과표산정시 기준시가를 반영한 결과 재산세가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소송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이미 그 이전에 과표 급등에 따른 재산세액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탄력세율 조정 권한을 적용하여 지역주민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등 과표 현실화에 따른 일련의 재산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현재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투기지역 지정(양도세 강화), 주택거래허가제 실시 등 실가과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출되면서 보유세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세에 있어서도 세부담이 증가하여 국민의 부동산 관련 조세 부담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 밖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낮추고 세대별 주택보유현황 DB 구축 등 다주택 및 고액 부동산 보유에 따른 정부의 과세강화 의지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현재 전반적인 경기 위축과 특히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건설경기 급감 시기에 보유과세 중과부담과 실가과세 정책의지에 대한 불만이 생기자, 정부는 현행 5.8%(부가세 포함)인 취득·등록세를 보유세 배분 이양되는 금액만큼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유세 증가부담에 따라 거래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하는 것은 타당한 정책 수순으로 보이며 이는 오랫동안 추진하고자 했던 주요 과제이다. 그러나 그동안 실현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이번 정부의 인하 발표가 과연 현 지방재정구조 내에서의 충격을 어느 정도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 지방세의 기간세목이라고 할 수 있는 취득세(2003년 최종 징수실적 기준, 5조 5천억원, 지방세수 대비 16%)와 등록세(7조 5천억원, 22%)가 전체 지방세수(33조 1,3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볼 때, 거래세 인하 문제는 ‘앞당겨’ 발표할 만큼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들 세목은 광역자치단체의 세수이면서 이 재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저하와 광역자치단체 자체세수의 감소를 의미한다. 종합부동산세인 국세분을 다시 배분하게 되므로 재정회계상에는 보유세 증감분만큼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보유세는 시·군·구세이고 거래세는 광역시세인 만큼 이해당사자가 다르다는 점 등 지금까지 거래세 인하 문제는 모두가 인식해 왔지만 실현되지 못한 복잡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보유세 배분기준과 거래세 인하에 뒤따르는 재정보전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방안으로는 합산과정에 따른 누진부분을 국세로 하고 그 밖에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세화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원화의 의미는 세입과 세출의 연계성을 통한 재정책임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주요 지방세의 세율 인하를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재산관련 세제와 관련되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효율성, 형평성 등의 조세논리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보전 등 매우 많다.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세는 지방재정과, 그리고 지방재정은 중앙재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큰 틀에서 살펴봐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방의 재정수요와 재정사무 등 세입 및 세출관련 사항부터 살펴보아야 하나 본고에서는 우선 지방세적인 성격의 보유세 자체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주요 국가의 보유세 평가방식을 통하여 재산의 보유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근본적인 개념을 소개하고 개편과정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참고할 만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보유세 이원화의 의미

우리나라 보유세제 이원화 방안 논의는 종합토지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에서 출발한 것으로, 인별 합산과표에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지방세제 내에서 재분배적인 성격은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외의 지방정부의 재정확충 기능은 지방정부가 갖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다²⁾.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방안으로는 합산과정에 따른 누진부분을 국세로 하고 그 밖에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세화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원화의 의미는 세입과 세출의 연계성을 통한 재정책임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종합부동산세는 과거 10년 동안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제로서 역할을 하면서 표출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정상화 방안이며, 당초의 정책목적을 위한 종합토지세의 기능을 중앙정부가

2) 1996년 현재의 종합토지세를 '지방토지세'와 '종합토지세'로 이원화하여 전자는 비례세율로 과세하되 지방세로 하고 후자는 누진세의 정책세제로 하여 국세로 하는 방향이 제시된 바 있었다(『2003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에서 재인용,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의 중장기 발전 방향』, 1996. 7.).

강화하고자 하는 명분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와 비례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은 인별 과표합산 과세제도의 특성상, 해당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보다 더 많은 세수를 징수하는 자치단체가 발생하여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을 계기로 종합토지세가 전국의 토지를 합산함으로써 발생하는 일부지역의 세수편중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또한 새 제도의 도입은 궁극적으로 토지소유에 대한 과세능력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원화의 또다른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은 비거주법인(non-residential) 소유의 보유세분이 해당 지역으로 귀속됨으로써 발생하는 조세수출 효과가 조세부담자와 공공서비스 수익자 간의 괴리를 발생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지역공공서비스 공급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앙정부가 담당하고자 한다는 점이다(Bird and Slack(2002), 김정훈(2002, 2004)).

2. 주택분 과표 합산의 의미

보유세제 개편 내용 중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현행 물건별 누진과세인 재산세 중에서 주택에 한하여 과표를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택과표 합산의 의의로는 현행 물건별 누진세 구조로 인한 세부담 불형평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누진세율하에서는 동일 주택가액(과표)이라 할지라도 ‘하나’를 갖고 있는 경우와 ‘여러 개’로 나누어 갖고 있는 경우에 차별적으로 세액이 부과된다. 따라서 현행 물건별 누진세율체계는 하나의 고액 주택보다는 여러 개의 작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유인하는 정책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김정훈, 김현아, 김현숙, 원종학(2004. 7)). 이 경우에는 주택분 과표합산의 명분이 있으며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정책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주택분 과표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건물을 경제행위를 위한 자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부(wealth)’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토지가 아닌 건물에 대한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개념은 자본의 효율적인 이용을 전제로 한 생산수단 혹은 영업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경우에서도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 재건축비용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그와 같은 이유였다³⁾. 토지와 주택의 통합평가 방식에 따른 주택분 과표를 합산하게 되면 주택분 건물에 대

3) 이종규·변창흠(2000).

토지와 주택의 통합평가 방식에 따른 주택분 과표를 합산하게 되면 주택분 건물에 대한 개념은 금융소득, 근로소득과 같이 일종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보유과세는 실제 가치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과세표준은 임대소득을 근거로 하여 소득세의 개념으로 과세한다.

한 개념은 금융소득, 근로소득과 같이 일종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주택에 대한 보유과세 개념을 평가방식에 기초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보유과세는 실제가치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과세표준은 임대소득을 근거로 하여 소득세의 개념으로 과세한다. 덴마크와 프랑스, 영국의 사업용 재산세가 그러하며 개념상 국세이다. 미국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시가를 반영하되 지방세이다. 향후 우리나라 주택분 과표 산정방식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표 I-1>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마다 다른 실효세율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자체가 지방 공공재의 가격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지방세로서 우리와는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이라는 보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나라마다 다르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향후 주택분 과표합산을 통해 국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과표합산의 개념, 방식, 중앙과 지방의 배분 문제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표 I-1> 미국 주요 도시 재산세의 실효세율(1998년 기준)

도시명	순 위	실효세율
Bridgeport, CT	1	4.59%
Newark, NJ	2	3.99%
Manchester, NH	3	3.33%
Detroit, MI	10	2.34%
New Orleans, LA	19	1.67%
Columbus, OH	19	1.67%
Phoenix, AZ	21	1.66%
Indianapolis, IN	21	1.66%
Wilmington, DE	30	1.34%
Boston, MA	30	1.34%
Virginia Beach, VA	40	1.12%
Cheyenne, WY	50	0.69%

Source: Governmen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Department of Finance and Revenue, Tax Rates and Tax Burdens in the District of Columbia: A Nationwide Comparison, annual.

II. 이론적 고찰

지금까지의 보유과세 논의는 주로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한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서만 이루어져 왔을 뿐 이론적으로 보유세가 가지고 있는 본질과 그 역할에 대한 경제적·사회적인 효과에 대한 논의는 매우 드물었다. 따라서 보유과세에 따른 최종적인 부담자가 누구이며, 조세부담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경제행위 혹은 자원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장에서 간략하게나마 소개해 보고자 한다.

보유세 관련 이론적 논의는 편익적 견해(Benefit View)⁴⁾와 대안적 견해(New View)⁵⁾ 두 가지로 전개되고 있다⁶⁾. ‘편익적 견해’는 Tiebout설에 따른 것으로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선호에 맞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선택하고 그때 지방세는 지역공공서비스를 결정하는 가격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 부동산 보유세는 일종의 사용자료(user charge)이며, 물품세(excise tax effect)처럼 소득분배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된다. 자원배분에 대한 효과에 대한 것으로는 실증적인 결과에서 주거소비에 대하여 보유세가 효율적인 가격기능 역할을 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주장이 강하다(Hamilton(1975), Fischel(1992)).

이와는 달리 ‘대안적 견해’는 부동산 보유세가 자본소득에 영향을 주고 최종적인 세부담자는 자본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 전체에 자본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고 본다면, 전국적인 평균세부담은 자본의 소유자들에게 귀착된다(profits tax)는 것이다. 이 경우 자본 소유자들의 소득에 귀착되는 것인데 자본소득의 상당부분이 상위소득자에게 집중적이기 때문에 계층별 세부담분포는 누진적이라는 것이 대안적 견해의 주장이다. 자원배분에 대한 효과 측면에서 볼 때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이므로 지역마다 세율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 실효세율 격차로 인한 지역간 배분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세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생산되는 재화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토지나 노동과 같은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낮은 생산요소의 보수를 저하시키며, 저세율 지역에서는 상품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이동성이 낮은 생산요소의 보수를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는 자본

4) Hamilton(1975, 1976, 1983), Fischel(1975), White(1975).

5) Mieszkowski(1972), Zowdrow and Mieszkowski(1983, 1986).

6) ‘전통적인 견해(Traditional View)’는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지배적인 논의였다. ‘전통적 견해’에서는 토지의 공급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에게 전적으로 부담되는 반면, 건물 즉 자본의 공급은 매우 탄력적이기 때문에 그 이용자에게 전가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자본은 그 지역 자본의 세후수익률이 전국 평균과 같아질 때까지 세율이 높은 지역으로부터 낮은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건물(자본)은 보유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부분균형분석’에 따른 한 지역에서의 효과만이 고려된 것이고 후에 ‘일반균형분석’의 New View로 발전하게 되며 현재는 New View의 한 예로서 인식되고 있다. “Property Taxation and Local Government Finance,”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Edited by Oates, 2001.

대안적 견해는 해당 지역의 자본 이용에 대한 왜곡적인 조세라는 입장이고, 편익적 견해는 단지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사용료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대안적 견해와 편익적 견해는 여전히 그 견해에 따라 여러 실증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어떠한 것이 보다 현실적이나 하는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논쟁이다.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실질임금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유세의 귀착은 Harberger의 조세귀착이론처럼 수요와 공급 곡선의 탄력성에 의존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편익적 견해에서와 같게 된다. 결론적으로, 대안적 견해에서의 부동산 보유세는 소득재분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으며, 자원배분에 관해서는 시장에서의 탄력성에 따른다는 전통적인 견해와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대안적 견해는 해당 지역의 자본 이용에 대한 왜곡적인 조세라는 입장이고, 편익적 견해는 단지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사용료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대안적 견해와 편익적 견해는 여전히 그 견해에 따라 여러 실증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어떠한 것이 보다 현실적이나 하는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논쟁이다(George Zodrow, "Property Taxation and Local Government Finance", 2001).

〈표 II-1〉 주요 국가의 부동산 보유과세 부담상황(1999년도)

(단위: %)

구 분	영 국	프랑스	독 일	미 국	일 본	한국(2001년)
경상GDP 대비	4.1	2.7	0.6	3.2	2.3	0.7
조세총액 대비	10.2	6.5	1.9	12.0	10.6	3.3

주: 각국의 부동산 보유과세에 포함시킨 세목의 내역

영 국	카운실세(Council Tax), 비거주용 자산세(Non-domestic Rates)	상각자산 등이 일부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프랑스	기건축지 부동산세(Taxe Fonciere sur les Proprietes Baties), 미건축지 부동산세(Taxe Fonciere sur les Proprietes Non-baties), 주거세(Taxe d'Habitation)	
독 일	부동산세(Grundsteuer)	
미 국	재산세(Property Tax)	
일 본	고정자산세(토지·가옥), 도시계획세, 특별토지보유세 및 지가세	
한 국	종합토지세, 재산세(건축물),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건축물), 지방교육세(종토세·재산세 부가분), 농어촌 특별세(종토세 부가분)	

자료: 지대식·최수, 「부동산 관련세제의 정비·개선방안 연구」 재인용.

OECD, Revenue Statistics(1965~2000).

Japan Tax Bureau, Ministry of Finance, An Outline of Japanese Taxes 2001·2002.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2002.

〈표 II-2〉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세제 개요

구분별 세목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체계	세율(일반례)
취득 관련	등록세	등기, 등록	등기·등록자	등기·등록 당시 가액으로서 신고가액(신고가액과 '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 중 큰 금액)	차등비례세율	3%(표준세율); 소유권 유상취득의 경우(농지는 1%)
	취득세	재산의 취득	취득자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서 신고가액(상동)	상동	2%(표준세율)
	상속·증여세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상속인	상속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	초과누진세율	10~50%
	증여세	증여로 취득한 재산	수증인	증여재산가액(상동)	상동	상동
보유 관련	재산세	건축물 소유	소유자	시가표준액	초과누진세율 차등비례세율	0.3~7% (표준세율)
	종합토지세	토지의 소유	소유자	개별공시지가×적용배율	초과누진세율 차등비례세율	0.2~5% (종합합산)
	도시계획세	도시계획구역 내 일정 토지·건축물 소유	재산세·종토세의 납세의무자	재산세·종토세의 과표	단순비례세율	0.2%(표준세율)
	(소방)공동시설세	공동시설에서 얻은 이익	이익을 받은 자	건축물 시가표준액	초과누진세율	0.06~0.16%
	사업소세(재산할)	사업소	사업주	사업소 연면적	단순정액세율	1㎡당 250원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개인의 양도차익	소득자	양도소득금액(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초과누진세율 차등비례세율	9~36%(종합소득세율과 일치)

주: 1) 과세표준의 () 내는 과세대상이 토지인 경우를 보완 설명한 것임.

2) 부가세(농특세, 지방교육세, 주민세)는 제외한 것임.

조세부담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조세형평성 및 소득재분배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이원화 및 과표합산 논의와 개념상 맞는 것은 대안적 견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의 재산세 부담 시뮬레이션 사례에서 대안적 견해의 경우 누진적 세부담이, 사용자 성격의 편익적 견해에서는 재산세 부담이 역진적으로 분석된 바 있다⁷⁾. 최종적으로 자본소유자 즉 주택의 소유자들에게 세부담이 집중될 것을 전제로 하는 대안적 견해가 갖는 경제적

7) Joseph A Pechman, *Who Paid the Taxes 1966-85*, Brookings Institution, 1985

외국의 재산관련 세제 중 국세 형태 또는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된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영국의 NNDR, 일본의 지가세, 스웨덴의 재산세를 들 수 있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재산세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덴마크,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이 있으나 지방서비스 관련 부분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는 '귀속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개념'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

인 단점은 경제행위의 왜곡을 초래하는 재산과세라는 점이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세는 지역공공서비스로서의 가격역할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편익적 견해와는 거리가 있다. 이는 지역마다 공공서비스의 내용이 다른 만큼 그것이 세율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율은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하며 지방재정 구조상 탄력세율의 사용 여부도 특수한 경우에 제한되어 있다. 다만 최근 재산세 관련 탄력세율 권한 사용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주민들은 민선 자치단체장과 의회에게 보다 강력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편익적 견해 입장은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제의 경우 지방자치가 발달할수록 편익적 견해가, 정책세제적인 목적이 강할수록 대안적 견해가 적용될 수 있다. 이론적인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각각의 관점이 보고자 하는 경제적인 효과에 있다. 각각의 관점이 중요시하는 부분은 과연 보유세제로 인하여 경제행위에 어느 정도 왜곡을 주느냐이다. 다시 말해 어떠한 경우에 보유세제가 경제행위에 보다 중립적일 수 있는가에 이론적인 논쟁의 초점이 있다. 주택에 대하여 인별로 통합과세하고자 하는 현단계에서 위와 같은 이론적인 논의는 주택시장 참여자의 경제행위 왜곡 최소화방안의 검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III. 외국의 사례

외국의 재산관련 세제 중 국세 형태 또는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된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영국의 NNDR, 일본의 지가세, 스웨덴의 재산세를 들 수 있다. 그 밖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재산세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덴마크,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이 있으나 이들은 대개 지방서비스 관련 부분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중앙정부는 '귀속임대소득(Imputed rent)에 대한 소득세의 개념'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엄밀한 의미로서의 전통적인 지방세적인 재산세는 지방정부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이원화와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재산세제의 의미로서 관련

하고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들어 지방세인 재산세 중 일부를 국세로 도입한 영국의 사업용 재산세(NNDR)와 토지세를 국세로 채택하고 있는 스웨덴, 지가억세를 위하여 도입된 일본의 지가세를 소개한다.

1. 재산세 국세 도입 사례 : 영국

최근 영국은 지방세인 재산세를 국세로 도입하였다. 기존의 지방세인 Council Tax에서 ① 개인이 해당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Domestic Rates)는 지방정부(Local authority)가 Council tax (community charges)로 부과하고 있으며, ② 법인분 재산세는 기존에 비거주용 재산세(Non-Domestic rate)로서 각 자치단체가 부과했던 지방세를 1990년부터 중앙정부가 과세하도록 한 National Non-Domestic Rates(NNDR, Business rates, 사업용 재산세)라고 하는 국세로 도입하였다. 이처럼 지방세인 재산세 중 일부를 국세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나 그 도입 배경은 다른 점이 있어 이를 소개한다.

가. 도입 배경

1990년 이전에는 지방정부에서 비거주분(Non Domestic rate)을 Council Tax(Domestic rate)와 함께 부과하였다⁸⁾. 비거주분의 경우, 1640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재산(tax on occupied property)’에 대하여 부과하였으며,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1967년부터 지방재정법(Local Act)에 의하여 지방세(Local Tax)로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 각 지방정부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영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비슷한 재산규모의 영업장이라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른 세액이 부과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지역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Council tax)의 특성 때문이었다(No stability, No predictability). 또한 법인들의 경우 투표권이 없고, 지방정부의 세출여건과 상관없는 기업활동이 사업용 재산세에 포함됨으로써 지역간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법인들에 대한 일관적인 정부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1990년 새로운 법령(Local Government Finance Act)을 만들어 거주목적인 아닌 재산의 비거주 사용자(occupiers of non domestic property), 즉 법인들에게 기업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과표 및 세율 결정을 일원화하여 단일 과세결정권자인 중앙정부

8) Rita Hale and Tony Travers, *A National or Local Tax?*, CIPFA, Rita Hale & Associate Ltd., 1994.

영국의 NNDR는 기업활동에 따른 장애요소를 극복하여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국가가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2003년 기준 NNDR의 세수규모(£40billion)는 영국 전체 조세의 약 5%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가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기업활동에 따른 장애요소를 극복하여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국가가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2003년 기준 NNDR의 세수규모(£40billion)는 영국 전체 조세의 약 5%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1〉 Domestic Rate의 주거용 자산에 대한 과표구간(Band)과 세율

주거용 자산 가격 범위	등급(band)	세율(정액) : £	band간 비율: %
4만£ 이하	A	565	6
4만£ 초과 ~ 5.2만£ 이하	B	659	7
5.2만£ 초과 ~ 6.8만£ 이하	C	753	8
6.8만£ 초과 ~ 8.8만£ 이하	D	847	9
8.8만£ 초과 ~ 12만£ 이하	E	1,035	11
12만£ 초과 ~ 16만£ 이하	F	1,223	13
16만£ 초과 ~ 32만£ 이하	G	1,412	15
32만£ 초과	H	1,694	18

주: 1) D 가격대의 세율은 지방의회에서 결정하는데, 2000년도의 잉글랜드 평균이 847 £임.

2) 가격대간 비율(법정)에 의거하여 다른 가격대의 세율이 결정됨(예컨대, A 가격대의 세율은 D 가격대의 6/9).

자료: Local Gov't Finance Act 1992, and <http://www.detr.gov.uk/>.

나. 제도 개요(Outline of the system)

단일세율(unitary)로서 해당 지역의 징수권은 보로(borough council)에 있고 부과 결정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prescribed centrally, collected locally). 납세의무자는 사용자(the occupier of the property)이며, 사용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에게 경감된 세율이 적용된다. 과표 및 세율의 결정권은 중앙정부에 있으며 과세표준은 임대가치(Rental Value)를 기준으로 하고 세율은 단일세율로 40%대이다⁹⁾. 매년 세율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소매물가지수(Retail Prices Index: RPI) 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안하여 결정된다.

9) property value × multiplier = tax amount

〈표 III-2〉 영국의 NNDR 세율

	단일세율(UBR): %
1995~1996	43.2
1996~1997	44.9
1997~1998	45.8
1998~1999	47.4
1999~2000	48.9
2000~2001	41.6
2001~2002	43.0
2002~2003	43.7
2003~2004	44.4
2004~2005	45.6

자료: "Guide to NNDR", ODPM, April 2004.

중앙과 지방간의 이전재원 배분 관계에서는 각 지방정부(Local Authority)에 있는 Council Tax와 NNDR 배분금을 자체수입으로 인정하고 그 밖에 지방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수입은 교부금으로 받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징수한 세액은 중앙정부로 넘겨지고 이는 다시 각 지방정부로 인구(equalization)를 기준으로 하여 재배분된다. 이러한 면에서 징수의 편의나 공평성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세금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다. 세부담 조정(Transitional Arrangements)

중앙정부는 NNDR 도입 후 급격한 조세부담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매년 세부담 조정을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의 최고세율(cap)을 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라. 평가¹⁰⁾(Assessment System)

평가기구 VOA(The Valuation Office Agency)는 모든 비거주용 재산(혹은 사업용 재산 non-domestic properties)에 대하여 과세표준(rateable value)을 결정하고 5년마다 재평가

10) IPTI(International Property Tax Institute)와 IRRV(International Rating Revenue Evaluation), www.ipti.org, www.irrv.org.uk Thai Appraisal Association 등의 주요 기구에서는 재산세 제도 관련 국가간 차이점, 세수규모, 역사적인 배경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 부과(평가) 및 징수하는 지방세(Council Tax)의 납세의무자는 NNDR처럼 토지 및 건물의 사용자가 아니라 소유자(ownership)이다. 국세인 사업용 재산세의 경우 임대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지방세의 경우 실제 보유재산가치(Capital Value)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를 한다. VOA의 연간 평가 건수는 사무실, 상점, 공장 등 부동산(Hereditament) 200만건 정도이다. VOA의 평가에 따라서 ODPM(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은 최종 부과액을 결정하며 해당 지방정부에서 징수토록 한다. ODPM은 평가기구인 VOA에게 과표산정 및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연간 1억 5천만파운드를 지불하고 있으며, 평가기구 규모는 2004년 현재 총 6,000명의 감정사가 85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평가의 근거를 위한 자료는 실제거래가격(actual transaction value)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국에서의 평가 목적은 가능한 과세기반을 확대하여 세수규모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 건물, 공장설비(감가상각자산) 등이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NNDR의 경우, 임대가치(Rental Value)의 평가가 세수의 기반이 되고 있다. 임대가치는 시장가격(open market rental value)을 근거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연간 임대가치(Annual Rental Value)는 대략 실제 보유재산가치(Capital Value)의 1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 부과(평가) 및 징수하는 지방세(Council Tax)의 납세의무자는 NNDR처럼 토지 및 건물의 사용자가 아니라 소유자(ownership)이다. 국세인 사업용 재산세의 경우 임대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지방세의 경우 실제 보유재산가치(Capital Value)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NNDR의 실가평가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 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신빙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하여 영국의 전문가들(Paul Sanderson(VOA))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영국의 경우 소유권 이전 및 임대등록(register)에 따라 인지세(stamp duty)를 내고 있는데 인지세 납부 당시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장가격'이 보고되지 않을 수 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따라서 신빙성 있는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실제가격보다 과소평가될 수도 있지만, 조사에 따르면 연간 200만건 중 1% 미만의 허위가격 사례가 발견되고 있을 뿐이다.

시장(lively market)에서의 거래사례(reliable evidence)가 충분히 존재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단일세율(uniform rate)을 부과하고 기준 면적 이하의 중소기업은 조세경감, 면제(Relief & exemption) 등을 두어 조정하는 것이 다단계 세율방식보다는 적합하다는 것이다. 단, 조세경감 및 면제 해당 기업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의 혜택(benefit)에서 차별을 받

도록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영국의 평가시스템을 분석해 보면 장점으로서는 실가반영에 따른 유연함(flexibility), 단점은 75%의 불복률이 의미하듯 공정성(fairness)을 들 수 있다.

영국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평가가 정확하게만 이루어진다면(Credibility of Assessment)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실제로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평가할 경우, 건물가치가 정확하지 않게(artificial) 평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NNDR 평가방식의 특징은 소유자(ownership)가 아닌 사용자(occupied)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관련 기록을 추적하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로부터 재산관련 소유에 대한 과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조세행정적으로는 영국보다는 쉬운 편이다.

마. 조세불복

ODPM은 영국의 중앙부처로서 NNDR 관련 정책과 법령문제를 담당하는 곳이고 VOA는 과세를 위한 평가기구이며, 실제 고지서는 지방정부에서 발행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는 해당 세금을 각 지방정부에 납부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VOA에 불복할 수 있다.

NNDR의 경우, 연간 2백만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약 150만건 정도가 불복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75% 이상이 불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이유는 첫째, 평가(assessment)에 대한 불복이며 둘째는 임대가치의 45%에 이르는 높은 세율 때문이다. 이는 실제 보유재산가치(capital value)의 약 4.5%로서 단일세율로서는 매우 높은 세율이므로 대부분 납세자의 경우 하향 조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평가에 따른 조세행정비용은 약 1억 5천만파운드 정도이나 전체 재산세수 규모는 400억파운드(상속 증여 관련 세목 포함)에 달하므로 행정비용 대비 세수규모면에서는 효과적인 세수(cost effective)라고 자체 분석하고 있다. 5년마다 재평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와 같이 불복에 따른 조정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이전 평가의 완결기간을 5년 정도로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방세의 불복 이유는 주로 과표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band, ABCDEFGH 8단계)에 대한 것이며 10년마다 재평가가 이루어진다. 인두세(poll tax) 이전에 재산세는 임대가치를 과세기준으로 삼았으나, 현재의 Council tax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해당 지방정부가 평가한 것을 근거로 삼는다.

스웨덴의 주택 조세정책을 살펴보면, 주택정책적 차원에서 도입되었다가 부의 '형평성'에 근거한 과세로 전환하는 등 대개의 나라가 지방공공서비스의 역할을 담당하는 효율적인 가격의 기능으로서 재산세의 성격을 띠는 반면 스웨덴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세제에 반영된 경우라고 해석된다.

바. NNDR의 단점 및 Council Tax와의 차이점

NNDR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내에 있는 기업간의 연계성 약화이다. 법인들은 대개 NNDR의 납세의무자로서 지방정부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지방정부의 경우에도 관할 구역 내에 법인이 있다 하더라도 세수로 연결이 되지 않고 공공서비스만을 제공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는 지방정부가 법인을 유치할 인센티브가 결여되는 시스템이다. 영국은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과거 영국의 경우 철강 등의 중공업이 주요 산업이었는데 점차 산업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지역 내 위치한 기업을 위한 조세환경의 변화가 지방정부나 기업에게 단기적으로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세제 환경면에서 볼 때 영국은 전통적으로 국세가 강하고 지방세의 역할이 극히 미미한 국가이므로 이와 같은 영국적 해석이 일면 타당하기도 하다.

2. 재산세가 국세인 국가 : 스웨덴

스웨덴은 재산관련세가 국세로 되어 있는 국가로서 세율, 평가, 과세표준을 모두 중앙정부가 결정한다. 이는 1985년에 주택보수비용을 줄이고 사용기간이 다른 주택 간의 가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도입되었다. 특정 다가구주택(multi-family housing)에 대한 특별 부과금 대신 귀속임대소득세(imputed rent)가 부과되기 시작하였다¹¹⁾. 그 이후, 1991~1992년 주택에 대한 과세원칙을 재검토하여 귀속임대소득 개념에서 모든 자본소득에 대하여 똑같이 과세하자는 의도로 자본소득과세 관점의 재산세가 도입되어 지금까지 시행중에 있다. 이는 주택에 대한 과세도 일종의 부유세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중앙정부의 강력한 과세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스웨덴의 주택 조세정책을 살펴보면, 주택정책적 차원에서 도입되었다가 부의 '형평성'에

11) 노영훈 외, 『한국의 토지세제』, 한국조세연구원, 1996, p.169.

근거한 과세로 전환하는 등 대개의 나라가 지방공공서비스의 역할을 담당하는 효율적인 가격의 기능으로서 재산세의 성격을 띠는 반면 스웨덴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세제에 반영된 경우라고 해석된다¹²⁾.

3. 지가 인정을 위한 국세 도입 사례 : 일본

일본의 경우, 토지와 건물에 부과하는 고정자산세(지방세)가 있는데 1998년 중앙정부에서 지가 급등을 막기 위하여 지가세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일본 경제가 침체함에 따라 대상 세원이 급감하여 과세가 정지된 상태이다. 중앙정부가 과세하는 지가세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 국세로서 세액은 (과세가격-기초공제액)×0.15%으로 결정되며,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은 시가평가액(상속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토지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세제로서의 종합토지세와 유사한 목적과 방법으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지방정부에서 과세하는 고정자산세는 토지의 경우 매매사례가액, 가옥은 재건축가액을 기준으로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고, 일반적으로 소규모 주택용지는 평가액의 1/6, 일반주택용지는 평가액의 1/3에 해당한다. 서울은 표준세율(1.4%)과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한 예외규정을 인정하고 있다.

4. 토지와 건물 분리과세, 국세 지방세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국가 : 덴마크¹³⁾

토지관련 재산세 세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과 및 징수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덴마크이다. 지방정부에서는 1961년부터 토지세를 부과·징수해 왔고, 중앙정부는 2000년부터 임대소득세의 개념으로 국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덴마크의 경우 두 가지 방식의(second tier system) 재산세가 존재하는데 첫째는 토지 소유(owner)에 부과되는 재산세로서 두 단계의 지방정부가 각각 징수하고 있다(① county level (1% 단일세율), ② Municipal level(0.6~2.4%의 세율, 평균 1.3%)). 둘째는 토지와 건물의 사용에 따른 '임대가치에 따른 재산세'(Property Value Tax, Imputed rent on owner occupied dwellings)가 있는데 1%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은 모두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다만

12) 평가관련 자세한 내용은 Youngman and Malme(1995), pp.181~190 참고하기 바람.

이영희,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종합토지세의 개편방향」, 『지방세』 제2호 통권 82호, 2004.

13) 2004년 6월 Danish Ministry of Finance의 Neils Kleis Frederikson과 Ministry of Taxation의 평가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임.

덴마크의 지방정부가 토지에만 보유세 개념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토지공급의 비탄력성에 따른 토지가치의 전가가 불가능하므로 조세를 통한 토지공급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지방정부 토지세 90% 이상). 반면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Property Value Tax의 경우에는 토지와 빌딩의 합산가치에 부과되는 것으로 일종의 '소득세' 개념이다.

Municipality의 경우 중앙정부가 정해 놓은 세율체계(band) 안에서 지방정부가 탄력세율 개념으로 조정가능하다. Property Value Tax의 경우, 중앙정부가 징수해서 2/3는 Municipalities로 1/3은 County로 재배분한다. 중앙정부의 경우 단순히 징수해서 재배분하는 기능만을 담당하며 배분기준에 형평성은 고려되지 않고, 징수된 만큼 해당 지역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덴마크에 있어서 지역간 불균형 조정의 개념은 재산세를 통해서 하지 않고 소득세를 통한 국세세원 전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덴마크의 지방정부가 토지에만 보유세 개념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토지공급의 비탄력성에 따른 토지가치의 전가가 불가능하므로 조세를 통한 토지공급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지방정부 토지세 90% 이상). 반면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Property Value Tax의 경우에는 토지와 빌딩의 합산가치에 부과되는 것으로 일종의 '소득세' 개념이다. 소유자가 살고 있는 건축물에 한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임대소득(imputed rent)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이 결정되며 물론 세율은 중앙정부가 결정한다. 1998년 이전 소유자와 연금생활자에게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시가 400,000유로 이상의 고가 주택의 경우 6%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덴마크의 경우는 스웨덴과 반대라고 볼 수 있는데 임대소득세가 도입되기 전에는 자본소득세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Property Value Tax의 세수비중을 살펴보면, 1990년 전체 지방세의 12.75%이던 것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0~1995년까지 10% 이하로 하락하였다. 이는 1994년 임대귀속가치의 하락과 이에 따른 세율 하락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임대소득세의 경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점이 있다. 이자율 하락 등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는 바로 임대소득세 증가로 연결되는 등 경기변화에 따른 세수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3〉 덴마크의 재산세 징수현황(1990~200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재산세수(10억DKK)	16.1	16.0	22.0	24.2	25.8	26.8	27.7	28.9
－ 일반재산세	8.9	10.3	13.6	14.7	15.6	16.5	17.1	18.1
－ 거주주택소유에 대한 재산세	7.2	5.6	8.4	9.5	10.2	10.3	10.6	10.8
지방세수 비중(%)	12.7%	9.9%	10.7%	11.0%	11.3%	11.4%	11.5%	11.6%
총세수 비중(%)	4.1%	3.2%	3.5%	3.7%	3.9%	3.9%	3.9%	3.9%
GDP 비중(%)	1.9%	1.6%	1.7%	1.8%	1.9%	1.9%	1.9%	1.9%

주: Danish Ministry of Finance 자료, 2004 & 2005는 자체 추정규모임.

전통적으로 덴마크는 선진적인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덴마크의 재산평가 기본 원칙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치(Capital Value)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Rental Value)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공적인 규제 사항(regulations) 역시 평가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¹⁴⁾. 4년마다 재평가를 하고 있고,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총량평가와 토지만을 별도로 평가하는 개별평가의 두 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건물에 대한 평가는 총량평가에서 토지평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 1965년 제정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단위면적당 일반평가액을 산정하고 해당 지역의 평가액과 일반평가액과의 차이는 토지가격으로 조정한다. 총량평가는 물론 실제 거래가격인 시장가격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이 산정된다.

주요 국가에서 재산관련세를 국세로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며 이 경우 ‘정책세제’로서의 성격을 띠게 된다. 영국의 경우는 기업활동의 안정성을 위하여, 스웨덴과 덴마크의 경우는 부의 공평과세 차원에서, 일본의 경우는 지가 급등을 막기 위한 정책세제의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토지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 종합토지세도 이에 해당한다.

14) 시장가격과 임대가격의 차이를 Bird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Market value is defined as the price that would be struck between a willing buyer and a willing seller in an arm’s length transaction.” “One rationale for using rental value is that taxes are rental Values are paid from income(flow) rather than from wealth(stock) thus it is appropriate to tax the net rental value of real property”, 시장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OECD 국가들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이며, 임대가격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 영국(NNDR), 중국, 인도, 태국 등이다.

재산세제 개편이 있었던 나라들의 개편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조세행정 간소화, 지방정부 자체세수 확보, 조세형평성 개선이다. 한편, 재산세제의 세제개편시 선결과제로는 과세표준 평가 시스템 개선 사항인데 평가로 인해서 위의 세 가지가 모두 달성될 수 있음을 볼 때 이는 당연하다.

5. 최근 지방세제로서의 재산세 개편 사례¹⁵⁾ : 개편 목적 및 개편 내용

최근 재산세제 개편이 있었던 나라들의 개편 배경으로 전체적인 지방정부 세제개편시 재산세제 개편이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캐나다, 인도네시아, 헝가리와 콜롬비아)이었고, 몇몇 나라(영국, 케냐)의 경우 지방정부가 과세주도권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재산세 자체개편을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 이 나라들의 개편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조세행정 간소화, 지방정부 자체세수 확보, 조세형평성 개선이다. 한편, 재산세제의 세제개편시 선결과제로는 과세표준 평가 시스템 개선 사항인데 평가로 인해서 위의 세 가지가 모두 달성될 수 있음을 볼 때 이는 당연하다.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역시 평가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 자체세수 확보가 가능하며 평가의 정확성에 따라 조세형평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정치적 의지→평가→조세행정 개편→부과징수 관련사항). 그 밖에 보유세제 개편에 있어서 이들 국가가 중요하게 인식하였던 사항은 ‘개편 이후의 충격 완화’이다. 개편 이후 세수부담 급증을 막기 위하여 세부담 조정 장치를 하였는데 개편된 세제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정장치가 어느 정도 성공적이냐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이다.

15) Bird, Richard M. and Enid Slack, "Land and Property Taxation : A Review", 「Worldbank working paper」(2002)의 case studies를 정리한 것임.

IV.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국세로서의 재산세 도입을 시도한 영국 등의 나라와 지방세제 내에서의 재산세 개편을 이룬 나라들의 개편 목적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국세 도입의 목적과 효과, 재산세제 개편 목적과 내용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선행연구결과에서도 이들에 대한 평가에서 세후효과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등 재산세제 개편작업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평가시스템 구축(중앙정부)→명확한 과표기준 제시→세율체계 간소화(지방정부)→조세충격 최소화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의 결정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방정부에 세율결정권을 주고 있는 외국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이후 지방정부가 세율을 전략적으로 낮추지 못하도록 하는 과세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방세가 지방공공재의 서비스에 대한 가격과 같은 구실을 함으로써 높은 세율은 품질 좋은 학교시설 및 주거시설 등에 대한 구입가격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유세 이원화를 통하여 과세목적상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분담하게 함과 동시에 기타 부동산 관련세 및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보유세의 개념 정립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실제가치 반영 방법으로 토지 건물 통합과세 체계로 전환한 것은 정부의 개편 목적과 맞는 평가방식의 개편이라고 볼 수 있다. 주요 국가들의 보유과세를 위한 평가방식을 요약하면, 영국의 사업용 재산세, 덴마크의 Property Value Tax, 스웨덴의 종전 주택에 대한 과세체계에서는 모두 '임대소득'에 기초한 국세이다. 스웨덴의 경우는 1992년 이후 주택을 기타 자산과 동등한 자산으로 보고자 하여 실제 보유재산가치에 따른 과세로 전환하였다. 과세를 위한 평가는 근본적으로 소득세 개념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 경우에 주택을 특별한 재화로 볼 경우에는 임대소득으로, 일반적인 자산구성의 한 요인으로 볼 경우에는 실제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함으로써 개념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의 결정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방정부에 세율결정권을 주고 있는 외국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이후 지방정부가 세율을 전략적으로 낮추지 못하도록 하는 과세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국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평가방식의 전환과 함께 주택보유와 금융 및 근로소득, 기타 자산과의 형평성 문제, 실질자산가치를 논할 때 거론되어야 할 부채개념 등 아직까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는 점이다.

3. 부동산 DB 구축 및 시물레이션

과표합산의 대상인 ‘주택’을 구체화한 후에는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과표가 대폭 현실화되므로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시물레이션을 통하여 세율체계, 인별 주택보유 현황 및 보유가액별 분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준금액, 전체적인 세부담 수준, 과세체계 변동에 따른 개인별 세부담액 증감 내역 등을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부표 2>와 같이 1994년 개정 이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재산세 과표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여 과표현실화와 과표합산으로 인한 세부담 급증을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국가들의 세제개편시 토지대장의 정리부터 전산화 작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재산세제 개편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과세 목적에 따른 DB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시물레이션은 매우 중요하다.

보유세 개편의 실행을 앞두고 분석해야 할 기본 데이터는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 배분방안별 지역간 세부담 변화, 거래세 개편방안별 시물레이션, 개편 이후의 부동산 소유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 등 실행 이후 당초의 목적과 맞는 세제가 정착하기 위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도 건별 물세에서 인별 합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시행되기도 전에 세율을 인하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과세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강조하고자 한다¹⁶⁾.

16) 종합토지세는 종전에 ‘토지분 재산세’와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를 주요 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던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합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였다. 이는 1978년부터 거론되기 시작하여 1983년 조기시행하려 한 바 있고, 1986년 토지과다보유세를 제정하고 난 후 1989년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다시 토지과다보유세를 폐지하고 종합토지세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포 후 10개월 만에 세율을 인하 조정하는 등 인별 토지과표합산에 따른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장 문제가 되었다.

4. 조세충격 완화 장치 마련

〈표 IV-1〉 주택의 종류 및 거주가구수별 분포(2000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비거주용	계
1가구	2,810,488 (69.1)	5,223,599 (99.9)	790,117 (97.2)	448,394 (99.0)	277,184 (70.6)	9,549,782 (87.1)
2가구	534,569	7,499	22,075	4,455	68,187	636,785
3가구	305,276	214	620	244	27,732	334,086
4가구	170,645	6	49	19	10,720	181,439
5가구	115,019		5	4	4,568	119,596
6가구 이상	133,466	1	6	1	4,180	137,654
계(주택수)	4,069,463	5,231,319	812,872	453,117	392,571	10,959,342
계(가구수)	7,106,432	5,239,276	836,392	458,138	594,172	14,234,410

주: 노영훈(1995)의 표를 재인용하여 연도를 업데이트 한것임.

1. 주택수는 빈집을 제외함.

2. 비거주용이란 영업용 건물내 주택을 의미함.

3. 가구수는 주택내 거주하는 6,956 집단가구를 포함하며, 주택내 거주 일반가구는 14,227,454임.

자료: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재산세제 개편 이후의 충격완화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것으로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2000년 '주택의 종류 및 가구수별 분포'에서 살펴보면, 전체 1,423만가구 대비 32%에 해당하는 주거형태별 468만가구는 현행 다가구주택(141만주택)에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평균 가구밀도 1.29). 소득수준의 상승에 따라 1가구 점유자의 비율이 10년 전 72.2%에서 2000년 기준 87.1%로 상승하였다. 1가구를 제외한 주택당 평균 가구밀도는 3.32로 1990년 기준 노영훈(1995)의 결과에서의 3.05(614만가구가 201만주택에 거주, 총 1,130만가구, 716만주택, 평균 가구밀도 1.5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1가구점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당 가구밀도가 여전히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들의 주택공급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보다는 상당부분 민간주택 공급업자들로 이루어진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건물과표 합산 정책이 자칫 주택수요에 비탄력적인 일부 계층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서민주거 안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주택 매입을 통한 도심지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가 제안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주택분 과표합산 정책에 따른 주택공급 감소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KIPF**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건물과표 합산 정책이 자칫 주택수요에 비탄력적인 일부 계층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서민주거 안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주택 매입을 통한 도심지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가 제안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주택분 과표합산 정책에 따른 주택공급 감소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정훈, 『국세와 지방세 조정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2
- 김정훈·김현아·김현숙·원종학,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공청회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04. 7.
- 노영훈, 「외국의 부동산 보유과세와 정책시사점」, 『지방세』, 2003
- 노영훈, 「다주택보유 재산세 강화에 따른 세부담 측정 및 예상효과 분석」, 『재정금융연구』, 제2권 제1호, 1995
- 노영훈·이성욱·이진순, 『한국의 토지세제』, 한국조세연구원, 1996
- 안중석·김현아,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
- 이영희, 「재산보유과세 부담의 불공평성 해소방안」, 『지방세』, 2004
- 이종규·변창흠, 「지방세 건물과표 개선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 지대식·최수, 『부동산 관련세제의 정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3
- Bird, Richard M. and Enid Slack, “Land and Property Taxation : A Review,” *Worldbank working paper*, 2002
- Brueckner, J.K. and Hyun-A Kim, “Urban Sprawl and Property Taxation,”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10, 5-23, 2003
- Enid Slack, “Municipal Finance and the Pattern of Urban Growth,” Toronto C.D. Howe Institute, Commentary No. 160, Feb 2002
- Jane H. Malme and Joan M. Youngman, “The Development of Property Taxation in Economies in Transition,” World Bank, 2001
- “Property Taxation and Local Government Finance,”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Edited by Oates, 2001
- Wildasin, David E., “More on the Neutrality of Land Taxation,” *National Tax Journal*, Vol. 35, No. 1, 1982, pp. 105-8.
- Zodrow, George, “The Property Tax as a Capital Tax: A Room with Three Views”, *National Tax Journal*, Vol. 54, March 2001

〈부표 1〉 부동산관련 정부 발표 (2002. 1~2004. 9)

발표일자	주요내용
2002. 1. 8	투기조짐 지역, 투기우려·과열지역 지정계획 발표
2002. 1. 9	제1차 아파트 분양권시장 등 조사대상 1,074명 정밀조사(세무조사 대상 614명)
2002. 2. 5	제2차 아파트 분양권시장 정밀 세무조사 발표(대상: '00. 1~'01. 10 서울·수도권)
2002. 2. 6	제2차 아파트 분양권시장 등 조사대상 4,451명 정밀분석
2002. 3. 6	수요조절대책 발표(투기과열지구 지정 시행, 선착순 분양방식 개선,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개선 등)
2002. 4. 3	국세청, 전국 아파트·연립주택 등 기준시가 3개월 앞당겨 조정(서울 16.5% 등 전국 평균 기준시가 9.7% 인상)
2002. 8. 9	-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투기수요 억제, 재건축 절차 강화, 청약경쟁 완화 등) - 자금출처 조사 및 제3차 아파트 분양권시장 정밀 세무조사 발표
2002. 9. 4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수도권에 강남수준 신도시 2~3곳 추가 개발,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 증과, 재산세·종토세 과표 현실화, 투기과열지역 내 주택 담보비율 60% 이하로 하향)
2002. 10. 11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발표(투기지역 도입-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최고 15%P 탄력세율 부과, 실거래가 6억원 초과 '고급주택' 적용, 주택담보비율 한도 60% 전국 확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03. 5. 23	주택가격 안정대책 발표(분양권 전매금지 수도권 전역·충청권 일부로 확대-투기과열지구 지정, 주상복합 및 조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 아파트 80% 시공 이후 분양, 부동산 과다보유자 5만~10만명 보유세 증과 추진)
2003. 9. 5	재건축시장 안정 대책 발표(재건축 아파트 중·소형비율 60% 이상 건설 의무화 및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강화 2006년 종합부동산세 도입 검토 등)
2003. 10. 29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 발표(2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강북 뉴타운 12~13개 추가 선정, 고속철도 역세권 주택단지 개발, 투기지역 주택담보인정 비율 40%로 하향 조정, 1가구 3주택자 실효세율 82.5%로 인상-양도세율 60%로 상향, 종합부동산세 조기시행 등)
2004. 9. 15	보유세제 개편 기본방안 확정(주택에 대하여 토지 건물을 통합평가 통합과세 하는 방안- 50년이상 시행해 온 현행 토지 건물 분리과세방식으로는 세부담의 불형평성문제를 시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번엔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함)

자료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요약

〈부표 2〉 건물분 재산세의 세율구조 변화

(단위: 만원, %)

	과표(X)구간	법정세율	납부세액
1975~1986년 (1974년 개정)	$X \leq 500$	0.3	$X \times 0.003$
	$500 < X \leq 1,000$	0.5	$1.5 + (X - 500) \times 0.005$
	$1,000 < X \leq 2,000$	1.0	$4.0 + (X - 1,000) \times 0.010$
	$2,000 < X \leq 3,000$	3.0	$14.0 + (X - 3,000) \times 0.030$
	$3,000 < X$	5.0	$44.0 + (X - 3,000) \times 0.050$
1987~1990년 (1986년 개정)	$X \leq 700$	0.3	$X \times 0.003$
	$700 < X \leq 1,000$	0.5	$2.1 + (X - 700) \times 0.005$
	$1,000 < X \leq 1,800$	1.0	$3.6 + (X - 1,300) \times 0.010$
	$1,800 < X \leq 2,600$	3.0	$11.6 + (X - 1,800) \times 0.030$
	$2,600 < X \leq 3,500$	5.0	$35.6 + (X - 2,600) \times 0.050$
	$3,500 < X$	7.0	$80.6 + (X - 3,500) \times 0.070$
1991년 이후 (1990년 개정)	$X \leq 700$	0.3	$X \times 0.003$
	$700 < X \leq 1,300$	0.5	$3.0 + (X - 1,000) \times 0.005$
	$1,300 < X \leq 1,800$	1.0	$4.5 + (X - 1,300) \times 0.010$
	$1,800 < X \leq 2,600$	3.0	$9.5 + (X - 1,800) \times 0.030$
	$2,600 < X \leq 3,500$	5.0	$33.5 + (X - 2,600) \times 0.050$
	$3,500 < X$	7.0	$78.5 + (X - 3,500) \times 0.070$
1994년 이후 (1994년 12월 22일 개정)	$X \leq 1,200$	0.3	$X \times 0.003$
	$1,200 < X \leq 1,600$	0.5	$3.6 + (X - 1,200) \times 0.005$
	$1,600 < X \leq 2,200$	1	$5.6 + (X - 1,600) \times 0.010$
	$2,200 < X \leq 3,000$	3	$11.6 + (X - 2,200) \times 0.030$
	$3,000 < X \leq 4,000$	5	$35.6 + (X - 3,000) \times 0.050$
	$4,000 < X$	7	$85.6 + (X - 4,000) \times 0.070$

〈부표 3〉 부동산세 총괄

(단위: 억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지방세	171,497	185,861	206,006	266,649	315,257	331,329
부동산세	87,530 (51.04)	101,651 (54.69)	108,421 (52.63)	140,629 (52.74)	180,620 (57.29)	189,790 (57.2)
보유세	28,847 (32.96)	27,730 (27.28)	31,663 (29.20)	37,681 (26.79)	40,069 (22.18)	44,164 (23.2)
재산세	6,407	6,699	7,278	7,632	8,275	9,034
종토세	11,903	12,421	12,817	13,650	14,507	16,026
공동시설세	3,014	760	3,414	3,509	3,749	4,109
도시계획세	7,523	7,850	8,154	8,510	8,938	9,984
지방교육세				4,380	4,600	5,011
거래세	58,683 (67.04)	73,921 (72.72)	76,758 (70.80)	102,948 (73.21)	140,551 (77.82)	145,626 (76.7)
취득세	24,798	30,654	31,482	37,825	52,782	55,028
등록세	33,885	43,267	45,276	55,867	75,042	75,499
지방교육세				9,256	12,727	15,099
국세	677,977	756,580	929,347	957,928	1,039,678	1,147,000
양도소득세	21,960	17,470	23,680	26,110	30,680	-
상속세	6,420	6,339	4,709	3,630	4,411	4,853
증여세	5,250	4,395	5,262	5,752	5,679	8,297

주: 1) 부동산세의 ()는 지방세 대비 비중이며, 보유세와 거래세의 ()는 부동산세 대비 비중임.

2) 2001년부터 도입된 지방교육세의 경우, 보유세 부분은 재산세와 종토세의 부가분(각각 세액의 20%)이며, 거래세는 등록세(세액의 20%)의 부가분임. 농특세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3

기획

기획 2005년도 예산안

■ 200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특징

/ 김규옥 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장

■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I)

/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II)

/ 박정수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

■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III)

/ 옥동석 인천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 2005년도 예산안이 9월 24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재정포럼』에서는 200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를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보는 기획특집을 마련하였으며, 『정책흐름』란에 2005년도 예산안 전문을 게재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200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특징



김 규 옥 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장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정부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예산규모로 보면 일반회계가 131조 5천억원,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정부의 총지출은 208조원 규모이다. 동 정부예산안은 국회심의를 거쳐 헌법상 기한인 12월 2일까지 의결될 예정이다.

해마다 정부 내부에서 숱한 논의와 이해관계의 조정을 거쳐 정부안이 마련되고 국회로 이송되지만, 금년 예산안은 그동안의 예산 과정과는 아주 다른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데 큰 특징이 있다. 국정운영 각 분야에서의 혁신 노력에 발맞추어 재정부문에서도 재정운용의 일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개혁 중 금년에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는 분야가 참여정부 5년간의 재정운영의 기본틀을 제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예산을 사전에 부여된 지출한도 안에서 각 부처가 자율 편성하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동안 기획예산처는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나 본격적인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단년도 위주의 예산편성에서 중장기적 국가발전 전략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역시 중장기 재정계획에 입각하여 내년도 가용재원을 분야별, 부처별로 총액배분하고, 각 부처가 이러한 중장기 재정운용의 틀 안에서 자율적으로 소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기획예산처 중심'의 예산편성에서 '기획예산처와 각 부처의 공동편성'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나, 우리나라 재정사(財政史)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전기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재정개혁 중 금년에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는 분야가 참여정부 5년간의 재정운영의 기본틀을 제시하는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수립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예산을 사전에 부여된 지출한도 안에서 각 부처가 자율 편성하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1.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Top-down)의 성과

금년에는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래 약 60년 동안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각 부처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소요를 하나하나 검토해서 예산을 썩아 나갔던 이른바 Bottom-up 방식의 예산편성을 탈피하여 Top-down 방식을 처음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 제도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며, 각 부처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활용하여 예산사업의 구조조정과 우선순위 조정을 촉진하여 성과가 높은 사업에 재원이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인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는 지출한도 결정기간중에 탄핵정국 등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인 여건과 짧은 준비기간 등으로 당초 계획하였던 국무위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각 부처에 '잠정' 지출한도를 부여하여 운영하였으나, 각 부처의 자율적인 재정사업 구조조정 노력이 가시화되는 등 Top-down 제도 도입의 효과를 상당부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예산요구 측면에서 보면, 매년 각 부처의 '일단 많이 요구하고 보자'는 뽕튀기 식의 과다요구·대폭삭감의 관행이 사라졌다. 일반회계 기준

으로 볼 때, 매년 전년 대비 30%대 증가율 수준으로 요구하던 것이 내년 예산의 경우 11.7% 증가율 수준에 그쳤다. 내년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이 9.5%임을 감안할 때 일단 규모면에서는 적정 수준에서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각 부처가 현실적인 예산안 작성을 위해 자발적인 대안 마련 등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표 1〉 일반회계 예산요구 증가율 추이

(단위: %)

	'01	'02	'03	'04	'05안
■ 일반회계 (최종 예산증가율)	32.2 (8.8)	29.9 (12.5)	25.8 (5.3)	30.8 (6.2)	11.7 (9.5)

주: 본예산 기준(추경 미포함).

다음으로 각 부처의 예산 자율편성 및 요구단계, 그리고 기획예산처와 각 부처의 협의·보완을 통한 예산안 조정단계에서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년 예산안은 계속사업을 구조조정(감액)한 규모가 2.7조 원(자연감액사업 제외) 수준에 이르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신규 지원한 규모가 3조원에 달해 과거의 약 2배 수준에 이르렀다. 앞으로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각 부처의 자율적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2006년 예산에

대한 지출한도 통보시에는 사업별 성과분석에 입각하여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2. 2005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131조 5천억원,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총 지출규모는 208조원 수준

내년 일반회계 예산안은 외형상으로 올해보다 9.5% 증가한 131조 5,110억원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동회계의 일부 세입·세출이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교통세의 14.2%(1.6조원)만큼 증가하게 되었으며, IMF 극복과정에서 지원한 공적자금 손실을 상환하기 위한 일반회계 부담분이 금년보다 2조원 증가(0.3조원→2.3조원)하고, '91년 정부보증하에 국내은행단이 러시아에 제공한 경험차관이 구소련 붕괴 등으로 채무상환이 지연되면서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0.7조원 부담하는 등 내년도 채무상환 소요가 금년보다 3.2조원 증가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은 금년보다 5.5% 증가하는 수준이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국세 및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6% 수준(7.1조원) 증가에 불과한 124.7조원 규모이다. 이 중에서 지방양여금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환되는 교통세(1.6조원)를 제외하면 예년보다 증가율이 대폭 낮은 수준(4.7%)인데, 이는 최근 수년간 매년 2조~4조원 수준이었던 한은잉여금 정부세입 납입액이 내년도에는 전혀 없을 것으로 전망('04 예산 1.9조원) 되고 전년도 이월금도 금년보다 1.1조원 감소하는 등 세외수입 전망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출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부족재원은 국채를 발행토록 하였는바 내년에는 2004년보다 4.3조원 늘어난 6.8조원에 달하게 되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이 IMF 직후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9조~10조원대에 이르렀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2조~3조원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내년 국채발행 규모는 다소 높은 수준임을 부인할 수 없으나, 이는 내년의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태에서 경기회복이 아직 부진하므로 재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고령화사회 진전, 남북통일 등 미래 재정위험요인에 대비할 수 있

〈표 2〉 2005년도 세입세출 전망

(단위: 조원, %)

		'04예산	'05예산안	증감	증감률
세 출	■ 채무상환	2.1	5.3	3.2	152.4%
	■ 지방양여금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지출 증가분	-	1.6	1.6	순증
	■ 특이소요 제외	118.0	124.6	6.6	5.5%
	일반회계 합계	120.1	131.5	11.4	9.5%
세 입	■ 국세·세외수입 (지방양여금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세입 증가분)	117.6 (-)	124.7 (1.6)	7.1 (1.6)	6.0% (교통세의 14.2%)
	■ 국채발행	2.5	6.8	4.3	172%

고령화사회 진전, 남북통일 등 미래 재정위험요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나, 내년에는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특별회계와 기금까지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기준(사회보장성 기금 및 공적자금 국채 전환소요 제외)으로 금년보다 적자폭이 1.1조원 확대되는 GDP 대비 1% 적자(△8.2조원) 수준으로 재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나, 내년에는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특별회계와 기금까지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기준(사회보장성 기금 및 공적자금 국채 전환소요 제외)으로 금년보다 적자폭이 1조원 확대되는 GDP 대비 1% 적자(△8.2조원) 수준으로 재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토지관리 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지방의 자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된다. 또한 철도청이 2005년 1월 1일부터 공사화됨에 따라 철도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써 금년에 22개였던 특별회계가 내년에는 20개로 운영되는데, 그 규모는 64조 2천억원으로 2004년보다 5.2% 감소한 수준이나 철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할 경우 3.2% 증가한 수준이다.

한편, 57개 기금의 운용규모는 금년보다 7.3% 증가한 320조원 수준이며, 재정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37개 사업성 기금의 사업비는 7.4% 증가한 25.3조원 수준이다.

이에따라 내부거래를 제외한 예산·기금의 총지출규모는 철도사업특별회계 및 공적자금 상환을 제외할 경우 금년보다 6.3% 증가한 208조원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3. 2005년말 국가채무 243.4조원에 이를 전망, 그러나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2005년말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금년말 전망치인 204.5조원(GDP 대비 26.2%)에서 38.9조원 증가한 243.4조원(GDP 대비 28.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가채무의 증가는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6.8조원과 공적자금 원금상환을 위한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국채발행소요 12.0조원,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발행 16.2조원 등에 주로 기인한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IMF 이후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여타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경우 결코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우선 2005년말 전망되는 국가채무 243.4조원 중에서 실제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40%(97.1조원) 수준에 불과하며 나머지 60%는 외화자산, 융자채권 등 채무와 함께 자산도 보유하고 있는 금융성 채무에 해당한다. 금융성 채무까지 모두 포함을 시키더라도 스위스 IMD에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을 세계 2위 수준으로 평가하듯이 OECD 국가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재정은 매우 건전한 편이다.

* GDP 대비 국가채무('03년말 기준) : 우리나라 23.0%, 미국 62.8%, 일본 157.3%, OECD 평균 76.0%

아울러, 공격자금 원금 상환을 위한 국채발행이 2006년에 종료됨으로써 2007년부터는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우리나라 국가채무 전망

	'03실적	'04전망	'05전망	'06전망	'07전망	'08전망
○ 국가채무 잔액(조원)	165.7	204.5	243.4	271.2	283.5	296.5
(대 GDP 비중, %)	(23.0)	(26.2)	(28.9)	(29.8)	(28.8)	(27.9)

4. 내년도 경제성장률 5% 정도 예상, 조세부담률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

올해는 내수가 침체되고 수출이 경제를 이끌었으나, 내년에는 정부의 각종 투자촉진 대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대책 등 각종 경제 활성화 조치에 힘입어 소비·투자 등 내수의 점진적인 회복과 함께 5% 수준(경상성장률 8%)의 경제성장률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예산은 이러한 경제성장을 전제로 편성된 것이며, 아울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국민들의 국세 및 지방세 부담을 합산한 조세부담률은 금년과 유사한 19.7% 수준이 될 것이며,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관련 부담을 합산한 국민부담률 역시 금년과 비슷한 25.2%로 전망된다. 이는 OECD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 27.5%, 국민부담률 36.9%와 비교할 때 아직 낮은 수준이며 과거 선진국의 1인당 GDP 1만달러 달성시기와 비교해 보아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표 4〉 우리나라 조세·국민부담률 전망

	'03실적	'04전망	'05전망	'06전망	'07전망	'08전망
○ 조세부담률(%)	20.5	19.8	19.7	19.8	19.9	20.0
○ 국민부담률(%)	25.5	25.0	25.2	25.6	25.8	26.3

5. 2005년 재정투자의 중점

- 성장잠재력 확충과 삶의 질 향상

채무상환 소요 증가, 세외수입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내년 예산안은 2008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성장잠재력 확충'과 함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가지 가치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최대한 고심하여 재원을 배분하였다.

먼저, 교육·인적자원 개발 및 미래성장동력 투자, 동북아경제중심 지원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금년보다 14.3% 증가한 15.1조원을 배분하였다. 이에 따라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 미래 유망한 신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등 R&D 예산이 금년 7.1조원에서 내년 7.8조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초·중등 및 대학교육 등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가 금년 33.3명에서 내년 32.5명으로 개선되고, 장학금 지원 혜택을 받는 이공계열 대학생이 1만 1천명 수준에서 5천명이 늘어난 1만 6천명이 된다. 또한 동북아 물류 허브(hub) 구축을 위한 부산신항·광양항·인천공항 투자가 확대되고 경제자유구역 기반 조성 및 외국인투자유치에도 적극 지원된다. 특히, 미래 인적자원인 영유아의 안정적인 성장과 여성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보육투자를 대폭 확대(0.4조원→0.6조

교육·인적자원 개발 및 미래성장동력 투자, 동북아경제중심 지원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금년보다 14.3% 증가한 15.1조원을 배분하였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환경개선 등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금년보다 10.2% 증가한 25.3조원을 배분하였다.

원) 함으로써 사회복지 수준의 향상과 동시에 성장잠재력을 배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환경개선 등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금년보다 10.2% 증가한 25.3조원을 배분하였다.

11세 이하 아동과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를 신규로 지원함으로써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이 금년 2만 2천명에서 내년에는 20만 2천명으로 무려 18만명이 늘어난다.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15만호 건설이 지원된다. 아울러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물·공기 등 환경개선 투자가 대폭 확대되는데, 예를 들어 화물차·버스에 배출가스 감축장치를 부착하여 수도권의 대기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금년보다 무려 8배가 증가한 1,300억원이 투자된다.

〈표 5〉 성장잠재력 확충

(단위: 조원, %)

구 분	'04예산	'05예산	증가율
합 계	13.3	15.1	14.3
• 미래성장동력	8.8	9.7	10.2
• 인적자원 개발	1.9	2.3	22.5
• 동북아경제중심	0.9	1.4	48.8
• 산업경쟁력	1.7	1.8	7.0

〈표 6〉 삶의 질 향상

(단위: 조원, %)

구 분	'04예산	'05예산	증가율
합 계	22.9	25.3	10.2
• 기초생활보장	3.8	4.2	8.7
• 취약계층지원	5.8	6.2	7.7
• 국민건강증진	4.2	4.8	14.0
• 문화·환경	4.7	5.3	13.9
• 농어촌복지	4.5	4.8	7.3

한편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중점 지원한다. 지방재정 지원 규모가 금년보다 4.5조원(14.5%) 증가한 36.1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지방재정 운용 측면에서도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용도가 제한된 기존의 양여금을 폐지하고 보조금을 정비함으로써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규모를 금년 14.5조원에서 내년 25.6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내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여 5.5조원을 배분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을 지자체별로 주어진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자율편성하도록 함에 따라 지역특수성에 맞는 지역발전 촉진을 지원한다.

주한미군 철수 등에 대비한 자주국방 역량 확충을 위해 국방비를 전체 예산증가율 수준 이상으로 증가시켜 20.8조원을 배분한 것도 내년 예산

안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자주국방 핵심 전력 증강을 위해 금년보다 8천억원을 증액한 7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병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에도 중점 지원한다. 이로써 내년 사병들은 평균 올해보다 1만원이 상승한 4만 5천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내년 예산에서 중점 지원되는 또 다른 하나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행정서비스 혁신'에 대한 지원을 크게 강화하였다는 것이다. 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해 금년 3천억원 수준에서 무려 70.8% 증가한 5천억원 수준을 반영하였다. 내년에는 행정서비스 혁신능력 개발을 위해 201억원이 신규지원되고 전자정부 사업에 금년보다 767억원 증가한 1,944억원이 지원된다.

내년 재정투자 규모를 분야별로 살펴볼 때, 통일·외교 분야가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이 금년 1,714억원에서 내년 5,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힘입어 40.7% 증가율로 가장 높게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14.4%), 환경(13.9%)

〈표 7〉 2005년 분야별 지원 규모(예산+기금)

(단위: 조원, %)

분야	'04년	'05년	증감	증감률
1. 교육	24.5	25.9	1.4	5.7
2. R&D	7.1	7.8	0.7	9.9
3. 사회복지	32.4	37.0	4.6	14.4
4. SOC	27.1	27.5	0.4	1.7
5. 농어촌	12.4	13.3	0.9	7.5
6. 산업·중소기업	11.4	11.2	△0.2	△1.6
7. 환경	3.5	4.0	0.5	13.9
8. 문화·관광	2.3	2.5	0.2	11.3
9. 지역균형발전	5.0	5.5	0.5	9.6
10. 사회안정	7.6	8.1	0.5	7.1
11. 국방비(일반회계)	18.9	20.8	1.9	9.9
12. 통일·외교	1.4	1.9	0.5	40.7

순이다.

산업·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금년보다 1.6% 감소한 11.2조원이 지원될 예정인데 이는 IMF 이후 급속히 증가한 신용보증 공급 등 금융지원을 적정수준으로 조정(1.9→1.2조원)한 데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6.1% 증가하게 된다.

6.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SOC투자규모 확대 지적에 대해

SOC분야의 2005년 예산안은 금년보다 1.7% 증가한 16.9조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러한 예산증가율 수준이 낮다며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SOC 투자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SOC는 1990~2003년간 연평균 증가율 16.9%(일반회계 11.9%)의 과감한 재정투자로 이미 그 기반이 상당수준 확충된 상태로서, 2005년에는 전체 투자규모는 금년 수준을 유지하되 도로의 투자비중을 축소하고 철도·항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SOC부문 내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투자 내실화를 기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편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 활성화, 연기금 여유자금 등 예산 외로 다양한 재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주택공사·토지공사 등 공기업으로 하여금 내년중 1.5조원 수준을 추가로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자체 재원조달을 통한 SOC투자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내년 예산안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

앞으로 단년도 예산과 중기계획을 연계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연동계획을 조기에 수립함으로써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 마련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 재정당국과 각 부처와의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 노력을 통해 2006년 예산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가 보다 확실히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할을 무엇보다도 고심한 결과물이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일반회계의 적자 국채발행이 전년보다 4.3조원 늘어난 6.8조원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통합재정수지 역시 사회보장성 기금 및 공적자금 국채전환 소요를 제외할 경우 GDP의 1.0% 적자로 운영하는 것도 세외수입 등 세입여건의 악화에 기인한 점도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경기조절능력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장차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비용의 문제 등 미래의 재정 위험요인이 잠재해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재정의 건전성 유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재정이 국가경제의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균형재정의 목표하에 재정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내년도 세입여건의 악화, 재정의 적극적 역할 기대 등으로 국채발행 수준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는 이를 점차 줄여나가 2008년 이후부터 국채발행을 중단할 계획이다.

앞으로 재정건전성 유지와 동시에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국가재정운용 시스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돌이켜 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한 첫

예산으로 많은 성과와 함께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 연초 정치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잠정 지출한도’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편성하여 요구함에 있어서도 자율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한층 강화된 것이 사실이나, 채무상환 등 필수적 소요를 과소계상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요구하거나, 신규사업의 경우 부처간 중복요구 또는 타당성 검증이 불충분한 사업을 많이 요구하는 등 문제점도 상당부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단년도 예산과 중기계획을 연계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연동계획을 조기에 수립함으로써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 마련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 재정당국과 각 부처와의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 노력을 통해 2006년 예산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가 보다 확실히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금년에는 22개 부처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성과관리제도를 연차별로 확대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예산편성과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재정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중에 있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다 높이는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KIP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I)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9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는 중장기적 재정운용 방향의 구현과 최근 내수회복 지연 및 수출증가세 둔화로 다시 하강조짐을 보이고 있는 국내경기 안정화를 위한 재정확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참여정부의 국가정책 비전과 국정운용 방향을 담아 수립되어 향후 5년간 재정운영의 기본틀이 될 「국가재정운용계획(2004~2008년)」이 적용되는 첫 예산안으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동 계획에서 제시한 재정운용 목표, 지출 규모, 정책 우선순위에 입각한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에 따라 중장기적 시각에서 예산을 배분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계획하였던 2005년도 재정운용계획이 국회제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9월초 당정 협의과정에서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지출확대 및 감세정책이 결정되면서 2005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2004~2008년)」이 변경되는 혼란을 겪었다. 예를 들면, 2005년도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규모가 3조원이었으나 세입감소(2.5조원) 및 세출증대(1.3조원)로 인해 6.8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다만, 금년도에 중단되었던 공적자금 상환의 재개와 더불어 관리대상 재정수지의 2008년 균형회복 및 2006년 이후 국가채무의 대 GDP 비율 안정화라는 중기재정목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편성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top down)’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나름대로 성장과 분배에 적절하게 사용하려는 노력이 깃들여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국가채무의 급증이라는 문제점 이외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 재정정책 기초, 분야별 재정배분 등의 쟁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하자.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top down)'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나름대로 성장과 분배에 적절하게 사용하려는 노력이 깃들여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국가채무의 급증이라는 문제점 이외에 경제에 대한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 재정정책 기조, 분야별 재정배분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1.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이 문제인가?

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년에 5%대의 실질성장 및 8% 수준의 경상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제 하에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냐는 언론 및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국내 예측기관들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4%대 중·후반이고, 해외기관들의 전망치도 비록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평균 4.5%(3.6~5.9%)인 점에 비추어 보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다소 높아 보인다.

최근 정부의 경제상황 판단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필자도 우리 경제의 심각한 중장

기적·구조적인 경제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족을 안타까워 하고 있으나, 다음의 몇 가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정부의 경제전망이 최소한 내년도 재정운용에 있어서만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러한 국내외 예측기관들의 전망은 최근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 및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와 같은 내년도의 확장적인 재정운용의 효과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이를 반영할 경우 정부 전망치와의 격차는 다소 좁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부에서 내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에 미달할 경우 조세수입이 예산목표를 하회하여 재정수지 확대 및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표 1〉 국내외 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한국은행	KDI	KIET	금융연	LG	한경연	현대	삼성
전망시점	7월 1일	7월 15일	6월 14일	8월 26일	9월 22일	9월 24일	9월 21일	8월 2일
2004년	5.2	5.8	5.5	5.7	5.0	5.0	4.9	5.0
2005년	4%후반	4%후반	na	na	4.1	4.4	4.5	3.7

	IMF	World Bank	OECD	ADB	Morgan Stanley	JP Morgan	Goldman Sachs	Citigroup	Deutsche Bank	Lehman Brothers
전망시점	9월	4월	5월	10월	9월26일	9월22일	9월29일	9월22일	9월29일	9월24일
2004년	4.6	5.3	5.6	4.4	4.6	5.2	4.8	4.3	4.7	4.8
2005년	4.0	5.3	5.9	3.6	3.8	4.7	4.0	3.8	4.6	5.5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리 정부는 주요 선진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하고 있어 경제성장률이 전망치에 다소 미달하더라도 세입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물론 내년도도 금년과 같이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은 높지만 내수침체가 지속되어 세수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가능성에는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내년도 재정적자나 재정지출 규모를 보면 정부는 다소 낙관적인 경제전망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 재정배분에서도 경제성장 지원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

2. 내년도 재정정책 기조는 얼마나 확장적인가?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2004~2008년)」을 보면 2004~2008년 기간중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규모 증가율(7.4%)보다 낮게 설정함으로써, 관리대상 재정수지를 2004년 GDP 대비 0.9% 적자에서 2008년 균형수지로 개선시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다만 이러한 중장기적 정책운용 방향을 견지하면서도 단기적인 경기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의 여지는 남겨 두었다. 그렇다면 5%대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수의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해 보이는 내년도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기조는 얼마나 확장적인 것일까?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이 6.8조원으로 크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재정정책의 기조를 알

아보는 데 활용되는 보다 적합한 지표는 통합재정수지이다.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 등 재정의 각 부문을 총괄하는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보면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5.7조원 흑자로 편성되었다. 이 중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는 향후 국민연금 등으로 지급될 재원이므로 현재의 가용재원으로 볼 수 없으며, 2003년부터 시작된 공적자금상환은 이미 금융구조조정단계에서 투입됐던 자금을 국채로 전환해 지원하는 것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한시적(2003~2006년)이므로 이를 제외하는 것이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들 항목을 제외한 '관리대상 재정수지'로 보면 8.2조원(명목GDP 대비 1.0%) 적자로 금년에 이어 2년 연속 명목GDP 대비 1% 정도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정책 기조를 판단하는 다른 지표로는 재정규모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출수수가 조세수수보다 크기 때문에 동일한 규모의 재정수지를 보이더라도 재정규모가 큰 경우가 작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총수요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금년도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9.5%나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증가율도 7.5%(순계기준)로 금년 증가율보다 크게 높아졌다. 여기에 57개 공공기금을 더한 통합재정 기준으로는 재정지출 증가율이 5.9%로 금년(11.8%)보다 낮지만 총수요를 직접적으로 유발시키지 않는 순융자를 제외할 경우에는 6.1%로 금년(5.9%)과 비슷하다. 정부에서 발표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합한 총지출 규모도 금년보다 6.3% 증가하여 「국가재정운용

재정수지, 재정규모, 재정충격지수 등으로 평가한 내년도 재정정책 기조는 금년보다 다소 확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2004~2008년)상의 연평균 증가율(6.3%)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규모 면에서도 내년도 재정정책 기조는 금년보다 다소 확장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IMF에서 회원국들의 재정정책 기조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FI)를 계산해 보았는데, 내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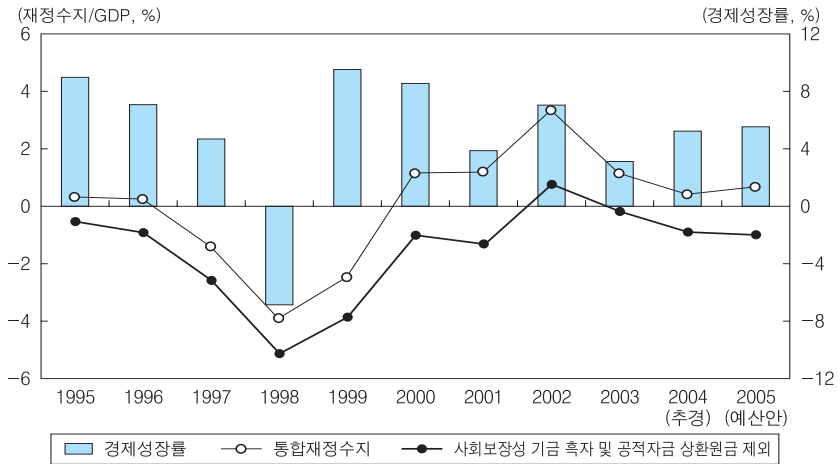
에 0.2% 즉, 경기변동을 감안한 내년도 재정수지(사회보장성 기금, 공적자금 원금 상환, 순융자 제외)가 금년보다 명목GDP 대비 0.2%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내년도 재정정책 기조가 금년도 보다 '상대적으로' 다소 확장적인 것이다.

〈표 2〉 재정정책 기조 판단을 위한 재정지표

	2000 (결산)	2001 (결산)	2002 (결산)	2003 (결산)	2004 (추경)	2005 (예산안)
재정수지						
일반회계 적자국채	3.6	2.4	1.9	3.0	2.5	6.8
통합재정수지	6.5	7.3	22.7	8.1	3.3	5.7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12.5	15.5	17.6	19.6	22.4	25.9
공적자금 원금 상환	0.0	0.0	0.0	13.0	12.0	12.0
관리대상 재정수지 (명목GDP 대비, %)	-6.0	-8.3	5.1	1.5	-7.2	-8.2
	-1.0	-1.3	0.7	-0.2	-0.9	-1.0
재정지출 규모						
일반회계	87.5	98.7	108.9	117.2	120.1	131.5
(증가율, %)	8.7	12.8	10.3	7.6	2.5	9.5
예산총계	152.3	161.7	173.3	188.0	182.4	195.7
(증가율, %)	7.1	6.2	7.2	8.5	-3.0	7.3
예산순계	123.9	137.5	145.2	158.6	156.5	168.2
(증가율, %)	8.2	11.0	5.6	9.3	-1.4	7.5
통합재정	129.3	136.8	136.0	164.1	183.4	194.3
(증가율, %)	6.9	5.8	-0.6	20.7	11.8	5.9
순융자 제외	109.5	126.7	135.6	166.8	176.7	187.5
(증가율, %)	8.1	15.8	7.0	23.0	5.9	6.1
재정충격지수						
(명목GDP 대비, %)	-2.0	1.9	-0.3	0.6	0.0	0.2

자료: 기획예산처 및 필자 계산

[그림 1] 경제성장률 및 재정수지 추이



3. 분야별 재정배분은 적절하였는가?

우선 우리나라의 분야별 재정지출 비중을 주요 선진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2만·3만달러 이었을 당시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경제사업의 지출비중이 높은 반면 보건 분야와 사회보장 및 복지분야의 지출비중은 낮은 편이다. 경제사업지출은 우리나라의 경우 6%가 넘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캐나다만 7%대이고 미국·영국·프랑스는 2~3%대, 독일은 5%대에 그치고 있다. 반면, 보건분야와 사회보장 및 복지분야의 합계는 우리나라는 5%대이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20~30%대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향후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의 향상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경제사업지출의 비중을

점차 낮추어 나가야 한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2004~2008년)」에 따르면 5개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6.3%, 사회복지분야 지출증가율은 12.2%인 데 반해 SOC, 농어촌,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지출증가율은 3.1%, 3.7%, 2.8%에 불과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3.8%(2004년)→12.2%(2008년), 6.3%→5.7%, 5.8%→5.1%로 낮추어 갈 예정이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분야별 자원배분이 이러한 중장기적 정책방향과 일치하도록 편성되었는지 살펴보자. 향후 지출비중이 증가하는 사회복지, 국방, 외교통일, 지방재정지원 분야의 경우 사회복지 및 외교통일 분야의 2005년 증가율이 「국가재정운용계획(2004~2008년)」상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2.0%p 및 27.7%p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출비중이 감소하는 SOC, 농어촌, 산업·중소기업,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SOC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2005년도 분야별 자원배분은 대체로 중장기적 자원배분 방향과 일치하였으나, 일부분에서는 과잉조정되는 점이 발견되었으며, 외교·통일분야는 단기간에 대폭 증가되고 농어촌분야는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지출 비중 조정이 어려웠던 문제점도 일부 발견되었다.

2005년 증가율이 1.6%p 및 4.6%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5년도 분야별 자원배분은 대체로 중장기적 자원배분 방향과 일치하였으나, 일부분에서는 과잉조정되는 점이 발견되었으

며, 외교·통일분야는 단기간에 대폭 증가되고 농어촌분야는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지출비중 조정이 어려웠던 문제점도 일부 발견되었다. **KIP**

〈표 3〉 1인당 국민소득 1만·2만·3만 달러 달성시의 분야별 재정지출

(단위: GDP 대비, %)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2001 (1만)	1988 (2만)	1997 (3만)	1981 (1만)	1990 (2만)	1995 (3만)	1979 (1만)	1990 (2만)	1987 (1만)	1996 (2만)	1980 (1만)	1991 (2만)			
일반공공행정	2.5	2.0	2.6	2.8	3.4	2.4	3.3	3.4	1.2	3.3	3.5	2.6			
국 방	2.7	5.5	3.2	2.9	2.3	1.4	2.7	2.7	4.4	2.7	1.6	1.7			
공공질서 및 안전	1.6	1.3	1.6	1.5	1.4	1.5	0.2	0.8	2.3	0.2	1.4	2.4			
교 육	4.4	6.8	7.2	4.9	3.7	4.4	4.3	4.6	5.2	4.3	8.9	10.7			
보 건	0.3	4.9	7.2	8.3	7.3	8.6	5.8	6.9	5.0	5.8	6.8	8.3			
사회보장 및 복지	4.9	8.1	8.4	19.9	18.1	21.7	17.7	19.9	15.7	17.7	10.3	17.2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	1.5	0.9	0.8	2.4	2.1	2.2	2.3	2.4	2.5	2.3	1.9	1.3			
오락·문화·종교	0.6	0.4	0.4	1.0	0.8	0.9	0.7	1.0	0.7	0.7	1.0	1.3			
경제사업	6.4	3.5	2.7	5.7	5.0	5.6	3.7	3.0	3.2	3.7	7.9	7.4			
연료 및 에너지	0.2	0.2	0.0	0.2	0.1	0.1	0.1	0.5	0.1	0.1	0.0	0.5			
농림수산·수렵	1.9	0.6	0.4	0.7	0.7	0.7	0.4	0.2	0.2	0.4	0.5	1.7			
광업·제조업·건설업	0.7	0.0	0.0	0.2	0.4	0.3	0.3	0.2	0.2	0.3	1.3	0.1			
수송 및 통신	3.0	2.0	1.8	3.4	2.2	2.5	2.0	1.2	1.2	2.0	3.9	3.0			
기타경제사업	-	0.7	0.5	1.2	1.4	2.0	0.8	0.9	1.5	0.8	2.2	2.1			

자료: IMF의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2001)에 제시된 중앙정부·주정부·지방정부의 기능별 지출을 합산하여 구한 KDI(2004)를 재인용

〈표 4〉 정부의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

	금액(조원)							비중(%)						
	2004	2005 (A)	2006	2007	2008	평균 (B)	차이 (B-A)	2004 (C)	2005	2006	2007	2008 (D)	차이 (D-C)	
총지출 (증가율)	196.2	208.0 6.0	220.7 6.1	234.2 6.1	250.9 7.1	6.3	-0.3	100	100	100	100	100	-	
교육 (증가율)	24.5	25.9 5.7	28.2 8.9	30.7 8.9	33.3 8.5	7.9	-2.2	12.5	12.5	12.8	13.1	13.3	0.8	
SOC (증가율)	27.1	27.5 1.5	28.6 4.0	29.6 3.5	30.6 3.4	3.1	-1.6	13.8	13.2	13.0	12.6	12.2	-1.6	
(민자 포함시) (증가율)	29.6	30.5 3.0	32.0 4.9	33.4 4.4	34.9 4.5	4.2	-1.2	15.1	14.7	14.5	14.3	13.9	-1.2	
농어촌 (증가율)	12.3	13.4 8.9	13.7 2.2	14.0 2.2	14.2 1.4	3.7	5.2	6.3	6.4	6.2	6.0	5.7	-0.6	
(132조원 계획) (증가율)	9.7	10.7 10.3	11.3 5.6	11.8 4.4	12.1 2.5	7.2	3.1	4.9	5.1	5.1	5.0	4.8	-0.1	
산업·중소기업 (증가율)	11.4	11.2 -1.8	11.4 1.8	11.9 4.4	12.7 6.7	2.8	-4.6	5.8	5.4	5.2	5.1	5.1	-0.7	
(금융지원제외시) (증가율)	9.5	10.0 5.3	10.3 3.0	10.8 4.9	11.6 7.4	5.3	0.0	4.8	4.8	4.7	4.6	4.6	-0.2	
사회복지 (증가율)	32.4	37.0 14.2	40.6 9.7	45.4 11.8	51.2 12.8	12.2	2.0	16.5	17.8	18.4	19.4	20.4	3.9	
문화·관광 (증가율)	2.3	2.5 8.7	2.6 4.0	2.8 7.7	3.0 7.1	7.0	1.7	1.2	1.2	1.2	1.2	1.2	0.0	
환경 (증가율)	3.5	4.0 14.3	4.1 2.5	4.2 2.4	4.4 4.8	6.1	8.2	1.8	1.9	1.9	1.8	1.8	0.0	
국방 (증가율)	18.1	19.7 8.8	21.5 9.1	23.6 9.8	26.4 11.9	9.9	-1.1	9.2	9.5	9.7	10.1	10.5	1.3	
외교통일 (증가율)	1.4	1.9 35.7	2.3 21.1	2.0 -13.0	1.9 -5.0	8.0	27.7	0.7	0.9	1.0	0.9	0.8	0.0	
사회안정 (증가율)	7.6	8.1 6.6	8.5 4.9	8.9 4.7	9.4 5.6	5.5	1.1	3.9	3.9	3.9	3.8	3.7	-0.1	
일반행정 (증가율)	25.4	26.0 2.4	25.8 -0.8	26.2 1.6	26.6 1.5	1.1	1.3	12.9	12.5	11.7	11.2	10.6	-2.3	
지방재정지원 (증가율)	18.3	19.5 6.6	21.2 8.7	23.1 9.0	25.2 9.1	8.3	-1.7	9.3	9.4	9.6	9.9	10.0	0.7	
국채이자·예비비 (증가율)	12.1	11.1 -8.3	12.3 10.8	11.9 -3.3	12.2 2.5	-	-	6.2	5.3	5.6	5.1	4.9	-1.3	

자료: 기획예산처, 「국가재정운용계획(2004~2008년)」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II)



박 정 수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

1. 서 론

2005년도 예산안은 사실상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이 본격적으로 투영된 작품으로 지금까지 만들어 온 각종 국정과제 로드맵이 실천되는 이해관계의 조정과 타협의 결과물이며 국정비전과 정책의지가 구체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2005년 예산편성의 특징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도입, 성과관리제도의 시행 등 재정운용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한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2005년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 등 내수부문의 회복이 미미하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등한 수출증가율에 대한 기술적 반락과 IT 경기의 둔화로 인하여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상당히 낮아진 4.5%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2005년 예산안에서

내년도 우리 경제를 5%대의 실질성장, 8%대의 경상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의 강화와 적극적 경제정책 노력으로 5%대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달성하리라는 다분히 희망이 반영된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지양해야 할 정부의 관행으로 평가된다. 작년 이맘 때 2004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2004년의 경제성장률을 실질성장률 5.5%, 경상성장률 8% 내외로 전망한 바 있어 낙관적인 전망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예측의 정확성과 함께 재정여건의 보수적인 추계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노력이라 하겠다.

본고에서는 먼저 2005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본 뒤에, 재정의 규모와 경기대응성,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와 부문별 문제점, 그리고 예산편성방식의 개선 등의 측면에서 평가해 본다.

2. 특 징

가. 예산규모

2005년도 나라살림 규모는 일반회계 131.5조원, 특별회계 168.2조원, 기금 320.2조원 수준이다. 이들 사업비 중 중복 계산된 부분을 제외한 정부 총지출은 208조원으로 올해보다 6.3% 증가한 수준이다. 그러나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기준으로 2004년 본예산과 대비해서는 9.5%가 아니라 11.1%나 증가한 셈이다.

<표 1> 2005년도 예산안 규모

(단위: 조원, %)

	2004 본예산(C)	2004 제1회추경(D)	2005 예산안(E)	증가율	
				C/E	D/E
• 일반회계(A)	118.3	120.1	131.5	11.1	9.5
- 국세수입	111.2	111.2	121.0	8.8	8.8
- 세외수입 (채권발행)	7.1 (1.2)	8.9 (2.5)	10.5 (6.8)	47.9 (466.7)	18.0 (172)
• 특별회계(B)	67.7	67.7	64.2	-5.2	-5.2
• 총계(A+B) (순계)	186.0 (159.4)	187.8 (161.3)	195.7 (168.2)	5.2 (5.5)	4.2 (4.3)

2005년 일반회계총액기준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을 포함한 2004년 예산 대비 11.4조원이 늘어나 예산증가율이 9.5%에 달한다. 물론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회계전환분 1.6조원을 감안하면 8.2% 수준으로 올해 대비 9.8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2005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121.0조원 수준으로 2004년 예산 대비 8.8% 증가하였다. 내년도 일반회계 국세세입 예산의 증가율 8.8%는 총국세증가율 7.0%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는 2005년부터 지방양여금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

라 기존의 특별회계 교통세가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데 기인한다.

일반회계는 6.8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여 올해 120.1조원보다 9.5% 증가하게 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각각 7.5%와 7.3% 늘어난 수준이다. 통합재정규모는 IMF가 정한 국제기준(GFS)에 따라 산출되는 지표로서 회계와 기금(외평, 금융성 기금 제외)을 포괄하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다는 점에서 총지출과 유사하나 용자거래를 순용자 개념으로 산출한다는 점과 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영업수입과 영업지출의 크기를 비교하여 그 차액만을 수입 또는 지출로 계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결국 2005년 통합재정규모는 총지출(208조원)에서 용자회수(22.2조원)와 기업특별회계조정요인(3.4조원)을 뺀 182.3조원 수준이며 공적자금 국채전환소요(12조원) 포함시 194.3조원으로 나타난다.

세외수입은 3.7조원으로 세계잉여금의 2004년 추정활용과 2004년 한국은행의 상반기 결손 등으로 인해 2004년 예산 대비 규모로는 2.7조원, 비율로는 42.4%나 감소하였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국채발행이 4.3조원 증가하여 증가율로는 168.8%에 달한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순계 규모는 금년보다 7.5% 증가한 168.2조원 수준이며 57개 기금의 운용규모는 금년보다 7% 수준 증가한 320조원, 따라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지출규모는 금년보다 6.3% 증가한 208조원 수준이다. 재정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37개 사업성 기금의 사업비도 금년보다 7% 수준 증가한 25.3조원 규모이다.

2005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보다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역할을 강조한 팽창예산을 편성하였다. 내수의 점진적 회복과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강화, 적극적 경제정책 노력으로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의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한다.

나. 재정운용의 기초

2005년 예산안은 세입내 세출원칙을 견지하는 재정건전성보다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역할을 강조한 팽창예산을 편성하였다. 내수의 점진적 회복과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강화, 적극적 경제정책 노력으로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의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한다. 한국은행잉여금 등 세외수입의 대폭 감소, 세계잉여금의 2004년 추가경정예산 사용 등으로 세입은 부족한 반면 지출소요는 국정과제의 본격적인 추진과 안보여건의 변화 등으로 증가추세를 시현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지출의 확대에 조속한 경제회복을 촉진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과 공적자금 손실분의 국채전환 소요를 제외한 관리대상 재정수지를 2008년에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수준, 즉 GDP 대비 1% 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표 2〉 재정수지

(단위: 조원)

	2004예산	2005예산안	증감
■ 전체 통합재정수지(A) (GDP대비, %)	3.3 (0.4)	5.7 (0.7)	2.3
•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B)	22.4	25.9	3.1
• 공적자금 국채전환 소요(C)	-12.0	-12.0	-
■ 관리대상 재정수지(A-B-C) (GDP대비, %)	-7.2 (-0.9)	-8.2 (-1.0)	-1.1

3. 평 가

가.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경기대응성

재정지출 확대정책과 감세정책은 경기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나 모두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정책들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재정건전성 확보의 관건이다. 특히 빈번한 추경편성 등의 재정지출확대정책이 국채발행을 통해 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관행은 문제가 있다.

2005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수부진 등 현재의 경기상황에 비추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활용하여 경기회복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배분이 너무 분배에 중점을 둔 나머지 SOC 투자 등을 줄임으로써 미래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소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05년도 나라살림의 규모가 208조원에 이르러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에 들어섰다. 어려운 경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기로 한 것은 적절하나 국내총생산의 1%에 이르는 적자규모와 244조원대나 되는 국가채무는 향후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표 3〉 국가채무관리

	2003실적	2004전망	2005전망	2006전망	2007전망	2008전망
*국가채무잔액(조원)	165.7	204.5	244.2	271.2	282.9	296.1
(대GDP 비중, %)	(23.0)	(26.2)	(29.0)	(29.8)	(28.8)	(27.9)

재정규모의 적정성을 판별하는 하나의 기준은 GDP 대비 통합재정 및 국민부담의 비율로,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크지 않은 편이나,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을 안고 있다. 2004년 GDP 대비 통합재정의 비율은 23.5%로 OECD 회원국 평균 34%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급여가 아직 성숙단계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향후 노령연금급여가 본격화되면 선진국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보장급여금을 제외한 조세부담률은 2003년 20.5%로 OECD 회원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며 과거 선진국이 1인당 GDP 1만 달러 달성시기와 비교해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향후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위험요인이 산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재정규모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재정운영과정에서 국가채무가 1997년 60.3조원에서 2005년(전망)에 244.2조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향후 공적자금 상환부담의 도래, 고령화 및 저출산율 그리고 불합리한 수급구조에 따른 건강보험과 4대 공적연금의 재정부실요인 현재화, 노동투입 증가세 둔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등에 치밀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일반회계 재정운영

이 적자재정으로 편성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채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고채 발행액(6.8조 원)보다 훨씬 많은 39.7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전망은 2005년 경제성장률 5.0%를 전제로 하여 편성된 것으로 만약 2005년 경제성장률이 5.0%보다 낮다면 일반회계의 적자규모 역시 전망치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가까운 장래에 세외수입의 여건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적자규모는 더 증가할 것이다.

2004년 9월에 발표된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에 일반회계 균형을 이루고, 국가채무는 2006년에 정점에 달한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5%대의 경제성장률 유지와 함께 주요 국책사업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강한 전제로 바탕하고 있다. 향후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다면 2008년 일반회계의 균형이라는 목표달성은 어려울 수도 있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하강하는 추이에 있는 경우 5% 성장목표는 무리일 뿐만 아니라 이를 억지로 달성하려고 하면 물가 불안이나 국가부채의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처방은 재정지출 증가와 같은 경기부양정책이라기보다는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특히 공급능력을 증가시키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수단의 동원에서 찾아야 한다.

나.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2005년도 예산안의 부문별 재원배분에 대해서 성장과 분배의 상충관계 및 균형배분에 대한 논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일반회계 재정운용이 적자재정으로 편성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채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고채 발행액(6.8조원)보다 훨씬 많은 39.7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전망은 2005년 경제성장률 5.0%를 전제로 하여 편성된 것으로 만약 2005년 경제성장률이 5.0%보다 낮다면 일반회계의 적자규모 역시 전망치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및 국방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반면, SOC 건설과 산업·중소기업지원 등 경제사업부문에 대한 지출은 감소하거나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OECD 회원국에 비해 구조적으로 경제사업, 교육 및 국방의 비중이 높고 사회복지 비중이 낮은 편이라는 점에서 균형 잡힌 배분상태로 수렴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지난 수십년 동안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과정에서 SOC 건설, 농어업 구조개선 등에 대한 투자에 재원을 집중배분하는 결과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부문별 재원배분에서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우선순위가 상당히 반영되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여성·노인·실업청년 등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14.4%)하였다. 여기에 성장잠재력 확충에 포함되어 있는 인적자원 투자의 보육투자(6,077억원), 중소기업 청년채용 패키지 훈련(175억원)과 취업유망분야 훈련(428억원) 등 청년실업대책지원이 사회복지부문에 포함될 경우 이 비중은 더욱 늘어난다.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도 9.9%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예산출연금을

2004년 1,714억원에서 2005년 5,000억원으로 대폭 확충하였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는 연금제도의 성숙, 경기부진 등에 따라 연금·실업급여 등 사회보험지출이 대폭 확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의 내실화, 그리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국민연금 급여지급이 본격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공적부조가 확대되면 사회복지예산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복지지출은 급속히 증가했지만, 사회복지인프라와 서비스 전달체계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한 개혁과제이기는 하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과제라는 점에서 공적연금제도 개혁 및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자영업자 및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인프라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교육부문도 증가율이 평균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04~'08)에 의하면 교육분야 연평균 증가율은 7.8%로 2005년의 증가율 5.7%보다 향후 3년간의 증가율이 8.7% 수준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다. 대학입학자원 감소 등 여건변화에 맞춰 대학의 체질개선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혁신과 특성화를 중점 지원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교

육복지의 지속적인 확충에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대학 및 연구소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자칫 지역별 대학별로 사실상 안배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체 교육재정투자의 86%를 초·중등교육이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사교육비 절감 등 공교육의 내실화, 그리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구조조정으로 극복해야 한다.

미래성장동력 부문에 집중투자하고 신기술의 주도적 선점을 위해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R&D 사업을 올해보다 9.9% 늘이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전문성을 활용한 R&D 예산의 전략적 배분 및 출연연구소의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비 지원방식을 개선하는 등 국가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여 R&D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한 것도 적절한 정책방향이다.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는 민간부문에서 R&D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전체 R&D 예산의 34%를 지방중소기업·지방대학·연구소 간의 공동연구에 집중 지원하고 이의 비중을 2007년까지 40% 수준으로 제고하려는 것은 수월성과 경쟁,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상충되는 면이 있다는 점에서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비중을 줄인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 금융시장이 미성숙한 상황에서는 재정이 국민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제는

정부와 민간의 적정한 역할분담을 위해서도 산업·중소기업지원 부문은 최소한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특히 GDP 대비 신용보증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9.8%로 일본 7.5%, 미국 0.1%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므로 재정용자가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감안할 때 신용보증 등 금융 지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금융기관이 책임을 분담하는 위탁보증제도, 보증료의 인상, 이차보전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저리의 정책용자는 재정본연의 기능인 이전지출이나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민간금융시장을 대체하고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며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집중되고 수혜대상도 과도한 측면을 고려하여 성과를 엄격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SOC 재정투자도 경제가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선별적으로 시행하여 부문간, 부문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1990~2003년간 SOC 예산증가규모(연평균 16.9%)는 일반회계 규모증가율 11.9%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2005년 SOC 투자는 2004년 수준으로 유지하되 투자재원의 다변화(민자유치, 연기금 여유자금의 유입 등 예산외 재원의 활용과 주공 및 토공 등 공기업 자체 재원조달)로 지속적 투자를 계속할 예정이다. 우리는 아직 SOC 저량의 축적도가 미흡한 실정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기존 시설의 연계체제 구축 및 광역사업, 기추진사업의 완공 위주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SOC의 저량이 증가할수록 효과적인 투자기회는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대상의 선택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농어촌부문의 경우 재정규모 증가율과 비슷한

2005년도 예산안의 특기할 만한 사항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단년도 위주 재정운용을 중장기 재정운용으로 전환했다는 점과 예산편성에 있어서 총액배분 자율편성방식을 도입했으며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해 재정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와 환류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수준(7.5%) 증가하였고 119조원 투융자사업계획상의 투융자사업은 2004년 대비 10.1% 증가한 수준이나 보다 과감한 구조조정을 위해 엄격한 심의가 필요하다. 농어촌부문은 효율성의 논리보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진 분야로 유통구조, 금융부문,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재정투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의 농지관리계정과 영농규모화사업, 축산발전기금 등 복잡한 특별회계 및 기금 간 예산지원체계를 보다 간소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다. 예산편성방식의 개선

2005년도 예산안의 특기할 만한 사항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단년도 위주 재정운용을 중장기 재정운용으로 전환했다는 점과 예산편성에 있어서 총액배분 자율편성방식을 도입했으며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해 재정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와 환류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재정제도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 예산편성과정의 비합리적인 관행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중장기적 재

정운용안의 마련이 문서작업(paper work)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부처가 참여하고 이의 심의에 있어서 국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실현가능한 실질성장률을 기초로 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수립될 때만이 재정정책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희망적인 전망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에 기반한 전망에 기초하여 재정운용계획이 만들어질 때 건전재정의 유지가 가능한 것이다.

내년 예산은 팽창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잠재성장률의 하락, 각종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기반의 취약,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복지지출의 증가, 대형국책사업, 자주국방 등의 재정수요를 고려할 때 수년 내 건전재정 복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경기진작을 위한 추경예산의 편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외국의 경험을 보더라도 지속적인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의 유지가 필요하고 건전재정의 복원을 위해서는 세입확대보다는 지출통제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에 더욱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KIPF**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Ⅲ)

- 2005년도 예산안 편성의 업적과 구태 -



옥 동 석 인천대학교 경상대학교수

내년도 나라살림은 우리나라 재정운용 역사상 상당 기간 그 업적으로 남을 수 있는 세 가지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첫째, 비로소 기금을 예산의 범주에 포함시켜 국가재정운용의 모든 의사결정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체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중기재정계획과 연도별 예산운용의 상호연관성을 강화하고 중기재정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 그 구속력을 강화하였다. 셋째, 예산편성에서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을 도입하여 재정운용에서 현장의 정보와 지식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우리나라가 근대적 재정제도를 본격 도입한 이래 수많은 제도개혁이 있었으나, 이 세 가지에 상응할 만한 개혁조치를 찾지 못한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세 가지는 재정운용에 대한 합리적 사고를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들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재정제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재정운용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재정의 실질적

한도를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재정, 즉 통합재정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시점의 통합재정 운용한도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연도별 한도를 평가하고, 또 재정운용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자들이 각각의 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합재정 기준의 예산편성’, ‘중기재정계획의 구속력 강화’, ‘총액배분 자율편성’의 세 가지 조치는 바로 이런 일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나라가 근본적 재정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최종 단계가 아니라 중간 디딤돌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합계로 평가되는 재정은 여전히 실질적 의미의 그리고 국제적 기준의 통합재정에 크게 미흡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불리는 중기재정계획이 실질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매년도 예산과정과

예산과정은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홍보는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합리적 판단을 무디게 한다면 그것은 비난받을 일이다. 통계수치를 불법적으로 조작하지는 않더라도 애써 객관적 진실을 외면하며 은근히 왜곡된 방향으로 유도하는 일은 곤란할 것이다.

유사한 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총액배분 자율 편성’ 역시 그 본연의 효과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분야별 지출한도가 가능한 조기에 엄격하게 결정·준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을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시킨다면, 이들 세 가지 조치는 ‘역사적 업적’으로 두고두고 칭송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년도 나라살림에서 이와 같은 좋은 제도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거슬리는 의연한 구태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산안 발표의 대표적 구태란 예산안이 미래의 비전을 구현하는 결단이며 알뜰하고 합리적인 나라살림이라는 것을 의욕적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물론 예산과정은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는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합리적 판단을 무디게 한다면 그것은 비난받을 일이다. 통계수치를 불법적으로 조작하지는 않더라도 애써 객관적 진실을 외면하며 은근히 왜곡된 방향으로 유도하는 일은 곤란할 것이다. 이와 같은 ‘통계수치 주무르기’를 줄이도록 노력할 때 비로소 많은 국민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고, 개별 판단들이 모여 이루어진 국가적 판단도 합리적이 될 것이다.

‘통계수치 주무르기’는 재정적자에 대한 평가로부터 시작한다. 2005년도 예산의 총지출규모

는 금년보다 6% 증가하였고 내년도 세입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아 ‘관리대상 재정수지’가 8.2조원의 적자로서 금년보다 1조원 증가하였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한 총지출규모가 208조원임을 감안하면 적자규모 1조원 증가는 재정 운용에 그다지 큰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더구나 국가채무비율을 근거로 판단할 때 ‘우리나라의 재정건정성은 세계 2위’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회원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당분간의 재정적자는 무방한 것도 같다.

〈표 1〉 연도별 재정수지

(단위: 조원)

	'03예산	'04예산	'05예산안
■ 전체 통합재정수지(A) (GDP대비, %)	1.9 (0.3)	3.3 (0.4)	5.7 (0.7)
•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B)	19.4	22.4	25.9
• 공적자금 국제전환 소요(C)	△13.0	△12.0	△12.0
■ 관리대상 재정수지(A-B-C) (GDP대비, %)	△4.5 (△0.6)	△7.2 (△0.9)	△8.2 (△1.0)

그런데 정부가 재정운용에서 근거지표로 제시하고 있는 ‘관리대상 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와 ‘공적자금 국제전환 소요’를 제외하고 평가된다.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재정수

지 계산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 정부의 재정운용 실적과 사실상 무관하기 때문이다. 많은 선진국들도 이러한 이유로 같은 방법을 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공적자금 국채전환 소요’도 이미 이전에 발생하여 정부가 부득이하게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의 재정운용과 무관하다고 정부는 판단하는 듯하다. ‘공적자금 국채전환 소요’는 공적자금 운용을 위해 정부가 이미 보증하였던 채무가 정부의 직접부담으로 전환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한 규모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관리대상 재정수지’를 평가하여 이를 재정운용의 지표로서 삼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정적자가 GDP 대비 1.0%로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주요 선진국과 재정적자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전에 발생하여 정부가 부득이하게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하여 이를 재정수지 계산에서 제외하지는 않는다. 만약 ‘공적자금 국채전환 소요’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재정적자를 평가하면 내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조원이 되고 이는 GDP 대비 3%에 가까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이 세계 2위이며, 다른 선진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다고 평

가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 재정건전성 세계 2위라는 평가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낮게 평가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국가채무에 대한 정의가 우리나라와 OECD 국가 사이에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¹⁾. OECD 국가에서 국가채무는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의 채무’로서 정의되는데, ‘일반정부’는 행정기관들 뿐만 아니라 그 산하기관들을 모두 망라하는 개념이다. 만약 이 정의를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정부투자기관 상당수와 정부산하기관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이들의 부채 또한 국가채무를 구성한다. 특히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 등과 같은 금융관련 산하기관도 일반정부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현재 상당히 과소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또한 과소평가되고 있다. 조세에 대한 정의가 우리나라와 OECD 국가 사이에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세라는 형식적 명칭이 부여된 것만을 조세로 간주한다. 이에 반해 OECD 국가에서는 그 실질적 성격을 판단하여 일반정부에 대한 강제적(compulsory), 비상환적(nonrepayable), 비대가적(unrequited) 성격의 지급이면 모두 조세로 간주한다. 만약 이 정의를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기존의 조세뿐만 아니라 부담금 등의 준조세, 나아가 행정수수료 중의 일부가 조세에 해당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세부담률을 계산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평균에 해당하며

1) 옥동석(2004), 「재정범위의 설정에 관한 연구」, 『재정운영시스템의 개선: 중기재정관리체계, 성과관리, 재정투명성』, pp. 491~640, 한국개발연구원.

2005년도 예산안은 성장보다는 사회복지, 환경, 문화·관광, 통일·외교에 중점을 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도자료에서는 중점 지원분야가, '성장잠재력 확충', '삶의 질 향상',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자주국방·남북협력', '행정서비스 혁신' 등 성장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설명되고 있다.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²⁾.

재정의 총량적 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들뿐만 아니라 분야별 지출규모를 보여줄 때에도 통계수치 주무르기가 나타난다. 예산의 분야별 지출규모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비전과 꿈이 무엇 인지를 알 수 있다. 매년 행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할 때 주요사업비의 분야별 금액을 보여주며 그 변화추이로부터 현 정부의 비전과 꿈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한다. <표 2>는 2005년도 나라살림의 분야별 지원내용을 금년도 예산과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다.

2005년도 예산안에서 지출규모의 평균증가율 6%를 초과하는 분야는 과학기술(R&D), 사회복지, 농어촌, 환경, 문화·관광, 사회안정, 국방비, 통일·외교 등이다. 여기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통일·외교, 사회복지, 환경 등이다. 그리고 증가율이 평균증가율보다 낮은 분야는 교육, SOC이며, 특히 산업·중소기업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았을 때 2005년도 예산안은 성장보다는 사회복지, 환경, 문화·관광, 통일·외교에 중점을 둔 것처럼 보인다.

<표 2> 2005년 나라살림 분야별 지원내용

(단위: 조원, %)

분 야	'04년	'05년	증감	증감률
1. 교육	24.5	25.9	1.4	5.7
2. R&D	7.1	7.8	0.7	9.9
3. 사회복지	32.4	37.0	4.6	14.4
4. SOC	27.1	27.5	0.4	1.7
5. 농어촌	12.4	13.3	0.9	7.5
6. 산업·중소기업	11.4	11.2	△0.2	△1.6
7. 환경	3.5	4.0	0.5	13.9
8. 문화·관광	2.3	2.5	0.2	11.3
9. 지역균형발전	5.0	5.5	0.5	9.6
10. 사회안정	7.6	8.1	0.5	7.1
11. 국방비(일반회계)	18.9	20.8	1.9	9.9
12. 통일·외교	1.4	1.9	0.5	40.7

그런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도자료에서는 중점 지원분야가, '성장잠재력 확충', '삶의 질 향상',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자주국방·남북협력', '행정서비스 혁신' 등이며 이들에 대한 예산 증가는 올해에 비해 각각 14.3%, 10.2%, 14.5%, 9.9%, 70.8%와 같다고 한다. 이들에 의하면 2005년도 예산안은 성장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설명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예산안에서 각종 예산사업의 기능, 목표를 어떻게 분류하여 통계수치를 추출하였기에 이런 상반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예

2) 옥동석(2004), 「정부회계와 조세부담률」, 『정부회계연구』, 제2권 제1호, pp. 17~35, 한국정부회계학회.

산안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분야별 규모가 대단히 중요한 지표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보편적 기준과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공포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예산 항목의 장, 관, 항 분류에서 사용되는 기능별 구분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지침이 없다. 따라서 분야별 지원에 대한 통계수치가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예산안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의 꿈과 비전, 그리고 현 정부의 정치적 이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예산구분이 대단히 중요한 자료다. 분야별 예산구분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분류기준과 지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실무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분야별 예산구분의 장기적인 추세는 예산안을 평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일관성 있는 개념 기준에 따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매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하면 예산의 분야별 구분항목들은 연도별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표 3〉 참조). 최근 4년간 매년 일정하게 파악되고 있는 분야는 교육, 과학기술(R&D), 사회복지, SOC, 농어촌, 산업·중소기업, 환경, 문화·관광, 국방비, 통일·외교 등과 같다. 그 외의 분야는 필요에 따라 구분 표시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2005년도에는 지역균형발전, 사회안정이 따로 구분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정보화, 인건비, 안전·건강, 공적자금·국채이자 등이 구분되었다.

〈표 3〉 매년도의 나라살림 분야별 구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과학기술(R&D)	과학기술(R&D)	과학기술(R&D)	과학기술(R&D)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SOC	SOC	SOC	SOC·주택
농어촌	농어촌지원	농어촌지원	농어촌지원
산업·중소기업	산업·중소기업 (금융지원 제외)	수출·중소기업 (한시적 자금지원 포함)	수출·중소·벤처 기업
환경	환경개선	환경개선	환경보전
문화·관광	문화·관광 (체육·청소년 포함)	문화·관광	문화·관광·체육
국방비	국방비	국방비	국방비
통일·외교	통일·외교	통일·외교	통일·외교
지역균형발전	-	-	-
사회안정	-	-	-
-	정보화	정보화	정보화
-	-	인건비	인건비
-	-	안전·건강	-
-	-	-	공적자금·국채이자

더구나 분야별 예산구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예산합계가 전체 예산 총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예산의 분야별 구분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각색되어 표현될 수 있다. 동일한 예산안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는 성장에 우선하는 모습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복지에 우선하는 모습으로 편의에 따라 그 포장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의 예산안은 재정적자, 국가채무비율, 조세부담률, 분야별 재정 배분 등이 적절히 주물러지고 있는데, 이는 재정 지출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국가의 재정은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와 달리 상당히 건전하며, 조세부담

국회는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낱낱이 들여보며 개별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 국회는 개별 사업의 필요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행정적 체제가 갖추어졌는지 적절히 판단하여야 한다.

의 여력도 어느 정도 있으며, 분야별 재정배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도 불가피한 선택임을 정부는 강조하고 싶을 것이다.

물론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재정지출 확대를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재정지출의 확대가 총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전통적 케인즈 이론에 대한 반론은 경험적으로 많이 확인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우리나라의 연구에 의하면, 재정지출 확대가 단기적인 영향은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것이다³⁾. 외국의 연구결과도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⁴⁾. 1980년대 유럽국가의 경험으로부터는,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재정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⁵⁾.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담고 있는 재정지출의 확대는 부적절한 선택인가? 개별 사업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또 한 두 사람의 의견으로 이에 대한 대답을 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을 책정한 것은 아닌지, 불필요한 곳으로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

지 예리한 검토를 통해 이러한 의문을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제 국회는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낱낱이 들여보며 개별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 국회는 개별 사업의 필요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행정적 체제가 갖추어졌는지 적절히 판단하여야 한다. 국민 모두는 여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국회의 예산심의를 철저히 감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약 국민 대다수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주물러진 통계수치를 그대로 신뢰해 버린다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은 너무도 쉽게 무디어져 버릴 것이다. **KIP**

3) 김용현·김현의(2000),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장기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분석』, 제6권 제3호, 한국은행 특별연구실.

4) Devarajan Shantayanan, et. al.(1996), "The Composition of Public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37.

5) Perotti, Roberto(1999), "Fiscal Policy in Good Times and Bad,"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정책토론회리포트

1. 경유 승용차 허용에 따른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경유 승용차 허용에 따른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 주 제 : 경유 승용차 허용에 따른 에너지 상대
가격 조정방안

■ 일 시 : 2004. 9. 14(화) 10:00~13:00

■ 장 소 :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

■ 진행순서

- 10:00~10:10 개회사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10:10~11:40 주제발표 및 토론

사회자 : 곽태원 서강대학교 교수

발표자 : 권오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에너지대학원 교수

권혁세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심의관

김완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전재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11:40~12:20 업계대표자 지정토론

- 12:20~13: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 본 원고는 2004년 9월 14일(화)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경유 승용차 허용에 따른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에 관한 공청회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발표의 전문은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토론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주제발표 요약

권오성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I. 경유 승용차 허용에 따른 유종별 자동차 수요 전망

1. 차종선택 SP 분석방법론 개요

- 통상적으로 한 도시의 교통수요를 예측할 때나 특정노선의 교통수요를 예측할 때는 시계열 총량자료(time-series aggregate data)를 이용하여 1인당 국민소득과 같은 소득변수와 평균운임과 같은 가격변수를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모형(regression model)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함
- 그러나 신규개설 노선의 수요예측이나 새로운 교통서비스, 새로운 교통수단 등의 수요 예측시에는 과거의 실적자료가 없으므로 이 방법은 사용하기 힘들고, 대신에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자들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향을 묻는 개인별 자료를 수집한 후 로짓모형(Logit model)으로 추정하여 교통수요를 예측하는 Stated Preference의 기법이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음

2. SP 분석방법론에 의한 유종별 자동차 수요 전망

- 휘발유, 경유, 수송용 LPG의 상대가격이 100 : 63 : 45인 경우

<표 I -1> 2004년 4월 현재 자동차 유류의 상대가격 비율이 100:63:45인 승용차 시장의 Market Share(실적치)

구 분	Market Share
휘발유 승용차	48.5%
경유 RV	37.7%
LPG 승용차(RV 포함)	13.8%

- 2004년 4월 기준으로 자동차의 유류가격 상대비율이 100 : 63 : 45인 현재 승용차 시장의 Market Share를 분석하였을 경우 결과는 위의 표와 같음
- 승용차 시장에서 휘발유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48.5%로 가장 높고, 경유 RV 37.7%, LPG RV 13.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휘발유, 경유, 수송용 LPG의 상대가격이 100 : 64 : 50인 경우

<표 I -2> 경유 승용차의 가격이 휘발유 승용차의 120% 수준이고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가격 비율이 100:64:50일 경우의 Market Share

구 분	Market Share
휘발유 승용차	25.3%
경유 승용차	23.9~32.6%
경유 RV	32.7~41.4%
LPG RV	9.5%

〈표 I-3〉 경유 승용차의 가격이 휘발유 승용차의 110% 수준이고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 가격 비율이 100 : 64 : 50일 경우의 Market Share

구 분	Market Share
휘발유 승용차	24.5%
경유 승용차	24.7~33.4%
경유 RV	32.7~41.5%
LPG RV	9.36%

- 경유 승용차의 가격이 휘발유 승용차의 120% 수준에서 도입되고 차량용 유류 가격인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가격 비율이 현재와 유사한 100 : 64 : 50인 경우, 경유 승용차의 도입은 현재의 휘발유 승용차 시장의 약 50% 정도를 잠식할 것으로 추정됨
- 이는 경유 승용차의 도입이 장기적으로 모든 모델에서 도입되고 시장이 안정되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또한 경유 승용차의 도입은 휘발유 승용차 시장도 잠식하지만 경유 RV 시장과 LPG RV 시장도 일정 부분 잠식할 것으로 추정됨
- 경유 승용차의 가격이 휘발유 승용차의 100% 수준에서 도입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의 승용차 시장 Market Share도 120% 수준에서 도입되었을 경우에 비하여 약 1% 정도 시장 점유율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어 크게 다르지 않음

□ 휘발유, 경유, 수송용 LPG의 상대가격이 100 : 75 : 50인 경우

〈표 I-4〉 경유 승용차의 가격이 휘발유 승용차의 110% 수준이고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 가격 비율이 100 : 75 : 50일 경우의 Market Share

구 분	Market Share
휘발유 승용차	32.2%
경유 승용차	20.8~29.6%
경유 RV	27.4~36.2%
LPG RV	10.8%

- 경유 승용차의 가격이 휘발유 승용차의 110% 수준에서 경유 승용차가 도입되고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가격 비율이 100 : 75 : 50일 경우에도 경유 승용차의 도입은 휘발유 승용차 시장의 Market Share를 상당부분 잠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휘발유, 경유, 수송용 LPG의 상대가격이 100 : 75 : 60인 경우

〈표 I-5〉 경유 승용차의 가격이 휘발유 승용차의 110% 수준이고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 가격 비율이 100 : 75 : 60일 경우의 Market Share

구 분	Market Share
휘발유 승용차	32.2%
경유 승용차	20.8~29.6%
경유 RV	32.9~41.7%
LPG 승용차	5.3%

- 경유 승용차의 가격이 휘발유 승용차의 110% 수준에서 경유 승용차가 도입되고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가격 비율이 기존에

정부에서 목표하고 있는 수준인 100 : 75 : 60일 경우에 경유 승용차의 도입은 휘발유 승용차 시장의 Market Share를 상당부분 잠식하고 또한 LPG 승용차의 수요도 상당 부분 잠식하여 경유차량의 비율이 현재보다도 매우 높은 수준인 62.5% 수준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 LPG 차량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퇴조할 것으로 추정됨

□ 휘발유, 경유, 수송용 LPG의 상대가격이 100 : 85 : 50인 경우

〈표 I -6〉 경유 승용차의 가격이 휘발유 승용차의 110%이고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가격 비율이 100 : 85 : 50일 경우의 Market Share

구 분	Market Share
휘발유 승용차	42.3%
경유 승용차	16.4~25.1%
경유 RV	16.5~25.2%
LPG RV	16.1%

○ 경유 승용차의 가격이 휘발유 승용차의 110% 수준에서 도입되고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가격 비율이 100 : 85 : 50 수준으로 변화되었을 경우 경유 승용차를 포함한 전체 경유 자동차 및 LPG RV 차량의 비율이 모두 소폭 증가하여 현재의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됨

□ 휘발유, 경유, 수송용 LPG의 상대가격이

100 : 85 : 45인 경우

〈표 I -7〉 경유 승용차의 가격이 휘발유 승용차의 110%이고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가격 비율이 100 : 85 : 45일 경우의 Market Share

구 분	Market Share
휘발유 승용차	42.3%
경유 승용차	16.4~25.1%
경유 RV	14.2~22.9%
LPG 승용차	18.4%

○ 경유 승용차의 가격이 휘발유 승용차의 110% 수준에서 도입되고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가격 비율이 100 : 85 : 45 수준으로 변화되었을 경우 경유 승용차를 포함한 전체 경유 자동차의 비율은 현재의 수준과 유사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나 LPG 승용차의 비중은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음

○ 휘발유 차량은 현재 수준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II.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환경비용, 혼잡비용, 열량비용)을 반영한 수송용 에너지원별 상대가격비를 산출하면 〈표 II -1〉과 같음

○ 휘발유의 상대가격비율을 100%로 할 경우 경유는 121%, LPG는 60%로 나타남

- 특히, LPG의 경유에 대한 상대가격비는 49.6%로 경유의 절반 정도에 해당
- 동 비율은 정부의 목표 상대가격비(2006년 7월)인 휘발유(100%) : 경유(75%) : LPG(60%)와 비교하여 볼 때, 경유가격에 사회적 비용이 과소 반영되어 있고 LPG가

- 격에 사회적 비용이 과대 반영되어 있음
- 따라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수송용 에너지의 상대가격비를 산출할 경우 경유가격의 상승과 LPG 가격의 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1〉 사회적비용을 반영한 수송용 에너지의 상대가격 비율(%)

	공장도 가격	사회적 비용			마진	VAT	최종 소비자 가격	상대가격 비율
		환경비용*	혼잡비용**	열량비용***				
휘발유(원/리터)	395.50	406.8	518.8	27.20	53.49	140.18	1,541.97	100%
경유(원/리터)	382.22	867.2	389.9	30.15	20.79	169.03	1,859.29	121%
LPG(원/리터)	268.61	207.9	285.9	22.58	56.42	84.14	925.55	60%

주: 공장도 가격, 마진, VAT는 2002년도 평균가격 기준임.

* KDI 추정치(2001년) ** 추정치(2002년) *** 에너지경제연구원 추정치(2002년)

III. OECD 국가의 에너지 상대가격 비교

- 유럽을 중심으로 한 OECD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산업화를 일찍 이루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 우리나라에 비해 에너지 가격정책이 매우 선진적이고 환경친화적이라고 평가됨
- 따라서 선진국의 에너지 가격체계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예로 사료됨
-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기준 및 참고자료로 OECD 회원국과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절대가격, 세금비중 등을 비교
- 상대가격 비교방법은 에너지원 간의 대체관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는 점에서 의의

- OECD 회원국의 에너지 가격정책을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세제개편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 석유제품별 상대가격 비교방법은 OECD 회원국에서의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평균을 100으로 하고 다른 유종의 소비자가격 평균과의 상대가격 비중을 산출함
- 에너지원별 우리나라와 기타 OECD 회원국 전체의 상대가격을 비교
-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맞는 에너지가격을 감안하기 위하여 OECD 회원국 중 1인당 GDP가 US\$15,000 이상인 OECD 선진국과 1인당 GDP가 US\$15,000 이하로서 우리나라와 경제수

준이 비슷한 OECD 기타국을 구분하여 에너지원별 상대가격을 비교

- 또한, OECD 회원국 중 석유를 생산하는 산유국과 석유를 수입해야 하는 비산유국을 구분하여 에너지원별 상대가격을 우리나라와 비교

- OECD 회원국 전체, 선진국과 기타국, 산유국과 비산유국을 구분하여 수송용 에너지의 상대가격을 정리하면 다음 <표 III-1>과 같음
- 휘발유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휘발유가격 대비 비상업용·수송용 경유가격은 85.1~86.7로 선진국과 기타국, 산유국과 비산유국 간 큰 편차가 나지 않으나, 수송용 LPG의 상대가격은 국가별 편차가 심해 30.6~53.7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1> OECD 국가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비교

	무연휘발유	경 유	수송용 LPG
OECD 회원국 전체	100	86	45
OECD 선진국	100	85	42
OECD 기타국	100	87	54
OECD 산유국	100	86	50
OECD 비산유국	100	85	31

IV. 에너지 관련 상대가격 조정방안 및 조세저항 완화방안

1.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안)

- 본장에서는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재조정

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상대가격비를 고려하고 자동차 수요, 에너지 수급 및 환경오염비용 측면에서 분석대상의 상대가격비(휘발유 : 경유 : 수송용 LPG)를 도출하고자 함

- ◇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상대가격비 ⇒ 100 : 121 : 60
- ◇ OECD 평균 상대가격비(국제수준) ⇒ 100 : 86 : 45
- ◇ 1차 에너지가격 개편안(2006년 7월) ⇒ 100 : 75 : 60
- ◇ 2004년 4월 현재 상대가격비 ⇒ 100 : 63 : 45

- 사회적 비용(환경비용, 혼잡비용, 열량비용)을 고려하는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비(100 : 121 : 60)는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교통혼잡, 에너지안보 비용 등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상대가격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본 연구의 조정안 제안에서는 제외
 - 동 상대가격비에 의하면 경유승용차는 수출만 이루어지고 국내 시판은 불가능하게 되어 자동차 산업의 주요 기반인 국내시장이 형성되지 못해 향후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며, 유종간 수급구조의 불안정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유종별 자동차 수요전망, 에너지 수급구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종별 자동차 시장의 수요 및 에너지 수급구조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환경오염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비는 OECD 평균수준에 가까운 100 : 85 : 50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는 이를 채택

할 것을 제안함

-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경유승용차 시판 허용에 따른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개편안을 제시하면 다음 <표 IV-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수송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경유의 가격은 OECD 국가의 평균수준을 고려하여 휘발유 가격 대비 85%로 설정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와 NOx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

- 또한, 경유의 상대가격을 휘발유가격 대비 85%로 설정하는 것이 유종별 자동차 수요 전망을 고려할 때, 휘발유 승용차로부터 경유 승용차 및 RV로의 급격한 전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경우 경유를 많이 소비하는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과 화물자동차의 운송비용 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이 예상됨

- 한편,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등유의 경우 경유와의 가격차가 현저하게 날 경우 등유와 수송용 경유간 대체관계 및 불법전용 문제를 고려해야 함

- 난방부문에서 등유가격이 상승할 경우 서민의 부담이 높아져 조세저항이 우려되므로 등유가격의 추가 인상은 어려운 실정
- 등유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등유와 수송용 경유간 불법전용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수송용 LPG의 가격은 OECD 국가마다 차이

가 있으며 회원국 전체의 평균은 휘발유가격 대비 약 45% 수준이지만, 유종별 자동차 수요 및 에너지 공급구조의 안정적 균형을 위해 휘발유 가격 대비 50%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표 IV-1>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안)

		절대가격(원)			상대가격비(%)		
		현행 (2004. 4)	개편후	가 격 인상분	현행 (2004. 4)	정부 개편안 (2006. 7)	개편후
수송용	휘발유 (원/ℓ)	1,353	1,353	-	100	100	100
	경유 (원/ℓ)	852	1150	+298	63	75	85
	LPG (원/ℓ)	604	677	+73	45	60	50

- 에너지 상대가격의 개편 시기는 GDP, 물가, 에너지소비량 등 가격개편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의 지속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

- 그러나 경유승용차가 2005년 1월부터 시판이 허용되기 때문에 급격한 수요의 변화와 환경오염의 악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1차 에너지 가격개편이 종료되는 2006년 7월 이전에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

□ 에너지 상대가격(휘발유 : 경유 : 수송용 LPG)의 단계적 개편은 현재의 상대가격비와 향후 가격개편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의 2가지 방안을 검토

○ 1안:

개편시기	상대가격비(%)		
	휘발유	경유	수송용 LPG
2005년 7월	100	75	50
2006년 7월	100	85	50

- 이 경우 경유가격의 큰 폭 인상으로 인하여 경유승용차의 급격한 수요증가를 억제하여 환경오염이 악화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
- 그러나 1차 에너지 가격개편에서 경유의 상대가격이 매년 약 5% 증가하던 폭이 2배로 증가하여 물가 및 물류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으며 산업계 및 경유차량 사용자의 조세 저항이 우려됨

○ 2안:

개편시기	상대가격비(%)		
	휘발유	경유	수송용 LPG
2005년 7월	100	72	50
2006년 7월	100	78	50
2007년 7월	100	85	50

- 이 경우 경유가격의 단계적 소폭 인상과 더불어 적응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물가, GDP 등 경제에 미치는 충격과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
- 경유 승용차의 시판 시기와 단계적 개편 시기를 고려할 때, 경유승용차의 운행비용 절감이 차량가격 격차를 초과할 수 있어 경유 승용차의 시판 초기에 급격한 수요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악화가 우려됨

2. 조세저항 완화 및 재정지원 방안

- 세제개편으로 인해 경유, 수송용 LPG 등의 가격이 인상될 경우 이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와 택시 등의 대중교통수단과 화물자동차, 그리고 승합차 및 장애자용 승용차 등의 부담 증가가 예상됨
- 유류세 인상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운행단계의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대중교통 및 물류부분에 대한 수송비의 절감,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유단계의 과세를 축소 또는 감면해 주는 것을 검토
- 경유 및 수송용 LPG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면 이에 따른 비용증가분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방안 검토가 필요
- 버스, 택시 등과 같이 일반 대중교통수단이 지니는 공공성에 기초하여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요금인상 억제에 따른 손실보전 등의 측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 또한 산업보호 및 국가물류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화물자동차, 연안화물선 등에 사용되는 상업용·수송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방안을 검토
- 재정지원을 통해 청정연료를 개발하고 저공해 차량의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환경오염의

-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경유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 청정연료(clean energy) 및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및 기술개발 지원
 - 전기자동차 등 선진화된 자동차 기술개발 시 보조금 지원 및 세제혜택 부여
 - 초저공해 자동차 구입시 보조금 지급 및 세제혜택 부여
 - 저공해 LNG화물차 기술개발 및 보급에 세제혜택 부여

토론 요약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

김완진 /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에너지 상대가격의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런 정책적인 변화나 개편을 추진할 때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정책의 경우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1차 에너지가격 개편 때에는 에너지 가격을 6~7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던 것으로 안다. 이 점에서 정책 추진의 방향이 좋았다고 본다. 이번에 2차 에너지가격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에도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난번 1차 에너지가격 개편 때처럼 점진적인 방향 그리고 time schedule을 미리 확정해서 이에 따라 개편을 진행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 2차 에너지가격 개편안은 사실은 작년 3월 경유 승용차 도입 결정 이후에 1년 남짓 논의가 되었는데 이것은 문제의 중요성에 비춰본다면 비교적 짧은 기간이고 또 이렇게 개편요인이 있을 때마다 새롭게 개편한다고 하면 예측가

능성이 없어진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에너지 가격과 같은 중요한 문제가 이러한 돌발변수에 의해서 자꾸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 하나는 공정성의 문제이다. 이런 중요한 정책개편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의 득실이 달라진다. 그런 경우에 이해당사자들의 득실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가격개편과 같은 정책을 수행할 때는 이해당사자들의 득실 그리고 정책 수행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계층과 이익을 보는 계층간의 이해조정 에 관한 schedule도 명시 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는 여러 연구원들에 의해 상당기간 동안 아주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되어 연구결과를 존중한다. 다만 자동차 수요 전망에 있어서 경유 승용차가 전체 시장의 50% 정도를 점유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성급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유 승용차의 경우 가격도 중요하지만 승차감이라든지 혹은 경유 승용차로 바꿨을 때 가격의 증가 크기 등 경유 승용차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모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차량가격과 에너지 가격만 가지고 시뮬레이션 했다면 조금 불충분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자동차 구입은 최소한 4~5년 길게는 10년을 보는 장기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의 장기적인 예측이 중요하다. 따라서 1~2년이란 짧은 시간안에 에너지 가격을 꼭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외에, 발제에서 교통혼잡비용

에 대해 계산을 했는데 차종에 따라서 교통혼잡 비용이 달라져야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상식적으로는 주행거리에 비례해서 연료량이 소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료 1리터당 혼잡비용을 계산할 때 차종간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그 다음에 OECD 국제가격의 평균을 비교 했는데, 본 연구에서 제시한 OECD 국제가격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맞다고 본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이란 것은 국가별로 다르다. 예를 들면 가스를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가스비용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다. 그러므로 무조건 국제가격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은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

결론적으로 볼 때, 에너지 가격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원가에 비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여러 가지 다른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왜곡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원가에 비례해서 에너지 가격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경유 승용차가 도입되는 이 시점에서 에너지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단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경유 승용차 도입의 경우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그것도 고려사항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격비율 조정에 있어서 경유 가격과 LPG 가격을 올리는 방향뿐만 아니라 휘발유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사실 휘발유 가격에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소비세를 붙이고 있어 가격이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휘발유세를 조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추진

하는 방향이 맞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급격한 변화 혹은 조정에 의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휘발유 가격을 낮춰서 조정을 한다든지 혹은 경유 승용차에 세금을 높인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도 병행을 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이 비율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찬성한다.

보조와 환급은 한시적으로 이뤄져야

민만기 /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첫 번째는 이번 연구결과의 평가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여객 및 화물운송업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원론과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다. 세 번째로, 영세상인과 비조직 소사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형평성을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다.

첫째, 연구결과의 평가와 그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먼저, 에너지 상대가격 비율에 대한 문제인데 발제에서는 100:85:50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실, 이 안은 환경단체들이 포함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 끝에 만든 비율과 일치한다.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환경단체에서는 100:85:50을 이상적인 안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 수치는 산업계, 기술계, 경제계 등의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한 결과 수용 가능한 타협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였

지 이번 연구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원래 환경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가격비는 100:121:60으로 도출되었다. 이 정도는 아니어도 환경단체는 원론적으로 100:100을 요구했던 사안이었다. 그렇지만 100:85:50의 비율이 이미 2년 전에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던 것이고 이 사회적 합의를 환경단체들도 존중하여 이런 정도로 정부에 건의했던 것인데, 당시의 토론과 고민의 내용을 이번 연구결과로 합리성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개편시기에 관한 것이다. 개편이 경유 승용차 시판이라고 하는 상황에 대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유 승용차 시판 전에 완료되어야 된다는 것이 원론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경유 승용차 시판으로 인해 에너지 상대가격 재조정 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격 개편이 일어나는 1월 1일 시점에 변동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래 1차 에너지가격 개편 진행계획에 있는 7월 1일 일정을 변경해서 경유 승용차가 시판되는 1월 1월에 변동을 시작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해에 당장 개편을 다 끝내라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한 해를 더 연장해서 2006년 1월 1일에 완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time schedule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2000년도에 1차 개편을 7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2007년까지로 시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 과정에서 LPG와 경유에 대해서 보조·환급정책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 보조·환급정책은 당연히 시한을 갖는 것이었다. 이 보조·환급정책에 시한을 둔 이유는 시장재편이 쉽

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한을 두어서 그 안에 필요한 개혁조치를 취해서 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보조·환급정책이 장시간을 두어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한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 만일 연장하지 않으면 이해당사자가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시위를 하게 되고 정부는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time schedule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용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time schedule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의 해답은 다른 데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직접 연계시키기 보다는 문제의 핵심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time schedule로 그대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

둘째, 여객 및 화물운송업계의 이해당사자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원칙적으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즉각 개편을 하게 된다면 관련업종이 그 충격으로 경쟁력을 잃거나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조와 환급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제 속에서 본다면 보조와 환급은 한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물류비용은 최고수준인 데 반해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화물·물류업계에서는 알선문제 등의 전근대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먼저 개선하여 물류비용이 왜곡 없이 집행되게 하여 생존권을 위협받는 일이 없게 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란다면 물류비용을 일부 상승시켜 환경비용을 부담하고도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

이 되도록 정부를 포함한 사회 각계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여 영구히 보조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보조가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보조와 환급 또는 업계에서 요구하는 면세유 공급의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다. 제안컨데, 이해당사자를 포함시켜서 재경부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task force를 구성해서 논의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셋째, 영세상인과 비조직 소상공인의 문제이다. 여객, 화물 운송사업계는 나름대로 목소리를 낼 힘이 있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쪽은 영세상인과 비조직화된 소상공자들일 것이다. 이들에게 보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별로 없다. 따라서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이들이 운행하고 있는 중 소형 화물차를 저공해차량으로 개조하는 작업에 대해 보조해 주길 부탁한다. 차량을 LPG 자동차로 개조하고, 노후된 차는 조기폐차를 유도하며, 더 나아가서는 매연 후처리장치를 부착하는 비용을 보조해서 이들이 악화된 경쟁력하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환경부나 재경부, 산자부, 건교부의 4개 정부부처가 협력해서 이들을 도울 수 있다고 본다.

폭넓은 협의 거쳐 보완책 수립해야

전재완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발제에서 제시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에너지 상대가격의 비율을 100:85:50으로 맞추자는 것이고 둘째, 시기에 있어서 2006년까지 완료하자는 1안과 2007년까지 완료하자는 2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단 가격비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100:85:50이 우리 경제와 환경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초를 만들 수 있는 비율이라고 생각하기에 적극 찬성한다. 그리고 이 비율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반대가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원칙이 맞다면 이 원칙을 흔들리지 않고 고수하기 위해서는 세부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차 에너지가격 개편안이 결국 몇 년 못가서 흔들리고 다시 2차 에너지가격 개편안이 나오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1차 에너지가격 개편안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차안에 있어서는 이해의 불일치를 조정해 가면서 고수해 나갈 수 있는 장기비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이해의 불일치를 조정하는 핵심은 보완책의 수립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2000년 9월 당정협의를 통해서 1차 에너지가격 개편안이 결정이 되었을 때 이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보조금 지급안이었다. 그런데 이 보조금제도는 지금까지 4년간 운영해 오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한다. 보조금정책은 엄격히 말하면 이중가격제이며 가격차별을 실시하

는 것이다. 가장 먼저 이것을 적용한 것이 농어업용 면세유이다. 그러나 과연 농어업용 면세유를 지급해서 농어촌의 구조조정이 촉진이 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를 했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만 이루어진다면 수혜자 입장에선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못박아 놓고 면세유를 주장하는 방법보다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폭넓은 협의를 거쳐 가격개편과 동시에 해결방안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차제에 보완책 수립과 관련해서 또 한가지 정부 측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에너지가격 개편을 통해 발생한 세수 초과분에 대해서 지금까지와 달리 물류산업 구조조정 면에도 신경을 써달라는 것이다. 물류산업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지면 보조금 부담 등의 정부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100:85:50의 에너지 상대가격 비율을 언급할 때 실제 절대가격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보유세는 줄이고 주행세를 늘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유가가 높으니 낮으니 말이 많지만 실제 에너지 절약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현재의 유가가 낮은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따라서 휘발유 가격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에너지세제 개편은 세수중립적으로

강승진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에너지대학원 교수

먼저 에너지 수급측면에서 살펴보겠다. 자동차용 연료로는 휘발유, 경유, LPG가 사용되고 있는데 과거 실적을 보면 수요량이 상당히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1997년 휘발유의 가격이 리터당 8~9백원에서 1천 2백원 정도로 높게 인상되고, 거기에 IMF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휘발유의 소비가 순식간에 10~20% 하락하였다. 휘발유 가격이 높아지면서 1998년 이후로는 대체연료인 LPG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수치를 보면 1998년에 31억리터에서 2001년 58억리터로 거의 80% 이상 증가하였다. 이것은 1차 에너지가격 개편 논의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유도 1998년 114억리터에서 현재 175억리터로 전체 수송용 연료의 52%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처럼 에너지의 수급이 가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것처럼 현재 가격체계하에서 경유 승용차가 시판될 경우, 신규 승용차의 50% 정도가 경유 승용차로 전이될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 따라서 앞으로 경유 승용차의 증가는 어느 정도 예상되리라고 보며, 그런 의미에서 100:85:50의 비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연구내용에서 한 가지 지적하자면 여기에는 OECD 국가들의 사례에서 평균만 나와 있는데, 실제 OECD 국가의 에너지 가격은 상당히 다양하다. 일례로, 미국, 영국, 스위스의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은 차이가 거의 없

다. 미국은 세금이 없어서 둘 다 싸고, 영국, 스위스는 세금이 아주 높아서 경유와 휘발유가 모두 리터당 1500원 수준이다. LPG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가장 많이 쓰고 그 외에는 극히 소수 국가만 사용한다. LPG 가격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앞에서 언급한 에너지가격 개편의 절대수준에 관한 이야기이다. 고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산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가격을 인하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반대한다. 고유가를 에너지가격 개편과 연계시켜서는 안되며 고유가는 그대로 반영시키는 것이 맞다. 따라서 에너지가격 개편은 고유가와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전제하에서 에너지세제 개편은 세수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년엔 경유 승용차 시판이 허용되더라도 1500cc급 일부만 먼저 출시되기 때문에 전차종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게 되므로 경유 승용차 시판을 허용하더라도 발제에서처럼 승용차 수요의 50%가 곧바로 경유차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세금이 높은 휘발유 수요의 감소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경유도 세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세수 중립적으로, 즉, 휘발유 가격을 지금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리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최근에 자주 언급되는 면세유 지급의 문제다. 면세유의 지급은 시장경제학에서 이중가격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혼란이 빚어지게 된다. 현재 일부 운송업체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면세유 지급을 추진하는 움직임

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보조금제도는 이와는 전혀 다르다. 이것은 사후에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유럽국가에서도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사후 환급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런 것을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

여객 및 화물운송산업 부문의 차량은 면세돼야

조규석 /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오늘 공청회에서 발표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은 버스나 트럭 등 운송산업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정책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먼저, 금번 에너지상대가격 조정안의 의미는 경유 승용차가 새로이 시판됨에 따라 경유차량의 운행이 크게 증가하여 환경오염과 같은 사회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유가격 인상을 통하여 경유차량의 소유 및 운행을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동안 유지되었던 경유가격의 상대적 저가유지정책은 주로 서민이 이용하는 버스라든지 국가물류망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화물차량의 사회적 편익과 순기능을 고려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경유가격 인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용 차량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고, 만약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유차량 보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경제와 서민생활

을 위해 바람직한 경유의 저가정책을 경유 승용차 생산 때문에 일시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결코 볼 수 없다.

둘째,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고 강조하면서 경유가격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논리는 승용차간에 국한된 사항으로 버스나 트럭과 같은 사회적 편익이 큰 차량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버스교통의 사회적 편익을 2001년도 서울시 통행을 기준으로 승용차 1통행이 버스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가지고 사회·경제적 편익효과를 추정해 보았다. 한 해 동안 교통혼잡비용으로 1,247원이 발생되었고, 교통사고비용, 460원, 대기오염처리비용 188원이 절감되어서 총 1,895원이라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1,895원이라는 것은 승용차 1대당 1.3명이 승차하고 있다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1인당 1,458원이라는 편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수치대로라면 버스는 자가용 승용차에 비해서 굉장히 큰 사회·경제적 이득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짜로 태워줘도 좋다는 논리까지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버스에 대해서 사회적 비용을 이유로 유류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셋째, 유류가 인상은 운송산업의 현 실태를 잘 반영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운송산업에 대한 대책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보유단계의 과세를 축소 또는 감면해 주

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세율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의 경감을 위해 유류세의 일부분을 환급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방안과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경유차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업계의 현 실태를 살펴보면, 2002년 교통개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버스업계는 연간 적자가 7,776억원으로 1대당 1,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금년도 적자금액이 약 1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여 1대당 2000만원이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운송업계도 마찬가지다. IMF 이후부터 2002년까지 물동량은 17% 증가한 데 비해 화물차량은 65%나 증가하여 과당경쟁 운임덤핑으로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 최근 유가상승으로 유류비가 버스운송원가의 32%, 화물운송원가의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더이상 유가를 인상시키면 운송업 유지가 불가능하게 될 심각한 수준이라고 본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하거나 보조하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세수증가에 관한 것이다. 에너지 상대가격 비율을 100:75:60에서 100:85:50으로 조정할 경우, 경유 부분에서 4조 8천억원, LPG 부분에서 2,900억원으로 합계 5조원 가량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이러한 세수 증가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다. 버스나 트럭, 택시 등 운송사업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지원방안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 실행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시된다.

마지막으로, 금번 에너지 상대가격 재조정방안에 포함시켜서 여객 및 화물운송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를 바라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버스는 주로 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고 트럭은 국내 물류수송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버스, 트럭 등 사업용 차량은 높은 가격의 경유를 사용하고 있어 경영이 어려운 실정이고, 요금이 올라 서민부담이 가중이 되고 있으며, 수송비가 높아 상품의 국제경쟁력도 저하되고 있다. 현재 경유가격은 50% 이상이 세금이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통세인데 이는 교통특별회계로 편입되어 버스나 화물운송산업에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는 택시도 마찬가지다.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사업용 차량이 사용하는 경유에 교통세가 부과되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본다. 이 같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해 버스, 택시, 트럭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세금을 면세해 줄 것을 제안한다. 현재 유사업종인 연안여객선이라든지, 연근해 어업용이라든지, 농업용 기계사용연료에 대해서는 면세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유가 및 유류세 부담 줄여야

온기운 /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금번 에너지가격 개편안의 내용은 당초 1차 에너지가격 개편안에 비하여 경유가격을 더 높이

올리고, LPG 가격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추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유업계에서는 부담을 많이 느껴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휘발유나 LPG 업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1차 에너지 가격 개편안이 국회 입법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는 경유 승용차 시판 허용에 대해서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나 경유차 생산업체들은 당초 2001년 7월까지 예고되었던 가격구조하에서 자동차 구매행동을 결정을 했을 것이고, 생산자들은 거기에 대비해 경유차 생산설비를 확충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경유가격을 많이 올리겠다고 하면 경유차를 사놓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이고, 경유차 소위 RV차량을 만드는 자동차 업계도 설비 과잉 부담을 받을 우려가 생길 것이다. 최근에 한국의 RV차량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 한국의 자동차 경쟁력이 이를 중심으로 상당히 높아진 측면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정책이 국가경쟁력 측면에 상당히 충격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환경오염 문제이다. 이번 에너지가격 개편의 변수는 경유 승용차의 시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만약에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면 경유 승용차 시판 자체를 왜 허용하는지 의문스럽다.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현재 경유 승용차가 수출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내수기반을 확대를 꾀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함일 것이

고, 또 하나는 유럽의 경유 승용차에 대한 시장 개방 압력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유 승용차가 환경에 그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면 왜 그것을 허용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그 원인이 내수기반 확대를 위함이라 하더라도 경유가격을 휘발유가격 대비 85%로 높이게 되면 그 편익을 상당부분 상쇄해 버리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세업자들도 문제가 된다. 1톤 트럭을 운행하는 영세자영업자 또는 일반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정부가 영세업자들에게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안하고자 하는 방안은 유가를 낮추거나 유류세를 낮추는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유가는 국제적으로 볼 때, 너무 높은 편이다. 명목소득상으로도 높은 편이고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유가는 더욱 높으므로 유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지난해 국세로 114조원을 거둬들였는데 이 중 유류세가 20조원으로 전체 국세의 17.5%나 차지한다. 전체 세수의 17.5%를 정부가 편안하게 거둬들이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쪽에서 세원을 발굴·확장시켜서 유류세 부담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LPG 쪽에 대한 사용범위를 확대시켜야 된다. 경유가격이 높아 경유차량을 타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재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택시에만 허용하고 있는 LPG차량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어야 된다.

교토협약에 대비해야 한다. 교토협약에서 중요한 것은 CO₂와 CO이다. 경유는 녹스가 많이 배출되지만, CO₂와 CO는 휘발유 차량이 더 많이 배출

된다.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유럽에 경유 승용차가 잘 팔리는 것은 교토협약에 대비해서 이들 국가들이 경유차량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PM, 미세먼지, NOx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지구의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CO₂라든지 CO에 대해서도 환경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영세업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정부도 고민중

권혁세 /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

오늘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2차 에너지가격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히 많은 참고가 될 것 같다. 이번에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방안은 어디까지나 연구원 안이고 최종적으로 정부안으로 확정되기까지는 관계부처 간의 협의도 거쳐야 되는 등 여러 단계가 남아있다.

발제에서 제시된 100:85:50이라는 에너지 상대가격 비율에 대해서는 통계 등의 객관적 분석을 근거를 바탕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할 것 같다. 다만, 에너지 상대가격 도달시기에 대해서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하자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국내산업과 서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세수 문제, 자동차산업과 물가수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서 금년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과

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단계를 거칠 것이다. 아까 논의과정에서 지적된 정책의 일관성 문제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경유 승용차 도입이란 새로운 환경변화가 있었지만 일관성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또 한 가지는 정부내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 task force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내에서 task force를 마련해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경유 승용차를 사용하는 영세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정부도 고민하는 부분이다.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계속 연구를 해보겠다. 그리고 절대가격이 높으나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가격수준으로 볼 때 13번째로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소득으로 비교하면 다소 좀 높은 면이 있다. 이 부분은 단순히 한 가지만으로 볼 수는 없고 전반적인 에너지전략의 문제라든지 산업에 미치는 문제, 그리고 재정여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자료입니다.
원문은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www.kjpf.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편집자 주>

조세 정책

美, 감세정책 힘쓸까?

-재정적자 및 대외부채로 연결, 경제에 악영향 의견 대두-

- 경제상황과 처방이 유사한 레이건 전 대통령과 현 부시 대통령이 자주 비교되는 가운데, 부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영구적인 감세정책을 둘러싸고 재정적자 및 대외부채 증가문제와 연결, 그 효과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 레이건 대통령 당시 경제 자문관이었던 마틴 앤더슨은 현 상황을 레이건 대통령의 첫 임기와 비교, 양 대통령 모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안보문제와 경기정체에 직면하였고, 감세정책을 펼쳤다고 밝힘
 - 그는 양 대통령의 감세정책 및 안보비용의 증가는 재정적자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나, 레이건 대통령의 재정적자는 궁극적으로 소련과의 냉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
 - 부시 대통령도 감세정책을 확대할 것이며, 경기확대를 위한 소비자에 심리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도 영구화되어야 한다고 주장

- 반면, 전 미 의회 예산실장 Robert Reischauer는 막대한 재정적자는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감세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부시 행정부의 초기 감세정책은 적절한 것이었으나 비용이 너무 막대하고 상대적으로 경기자극의 효과는 미약했으므로 이제 감세 확대는 중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감세 확대는 재정지출을 증가시키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경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하며 현재 국내 저축률이 2%에 불과한 상황에서 막대한 적자가 지속되면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야 하는데, 일단 투자자들에게 여타 더 좋은 투자대상이 발견되면 일시에 현금화, 달러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 경고
 - 따라서 의류 등 소비재 가격이 상승할 것이며, 생활수준의 유지를 위해서 다시 외국자금을 차입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논거
- 의회예산실은 금년 부채의 GDP 비중이 3.6%에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항구적인 감세조치는 개선효과를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

英, EU 관세동맹으로 경제적 손실 연 350억파운드

- 영국의 유럽연합(EU) 관세동맹(Customs Union) 회원국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350억파운드(73조 원)에 이른다는 EU에 대한 영국내 부정적인 시각을 담은 연구결과가 발표
- 영국의 리버풀 거시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EU의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과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입재화에 대한 고가 지불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만약 영국이 EU 관세동맹을 탈퇴하게 되면 국내총생산의 약 2.5% 내지 3.5%에 이르는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EU 단일시장 탈퇴로 인한 손실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수개월 내 발간될 예정인 이번 보고서의 내용은 영국의 EU 가입과 관련된 가장 종합적인 비용 편익 분석의 내용을 담을 예정
- 발간시 유럽통합헌법에 대한 최근 영국내 논쟁과 맞물려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내용을 조사한 영국 카디프 대학 교수는 EU가 제조업 분야에서 EU 기업들의 로비로 인해 보호주의적인 대외교역 장벽을 만들어 왔다고 지적
 - 우선 관세에 있어서도 외국 수출업체들이 단가를 하락하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거나 엄밀하게는 위협을 통해 세계 수준보다 약 30~80%에서 수입가격 인상을 초래했다고 분석
 - 또한 이번 보고서는 EU의 또다른 주요 논쟁대상이자 최근 새로이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안정과성장에 관한협약’이 공개된 시점에서 발표됨으로써 EU 차원의 불필요한 규제조치가 회원국의 재정수지 적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논리를 간접적으로 지지

- 안정과성장에대한협약의 개정안에서는 국내총생산 대비 3% 이상의 재정수지 적자 발생시 당해 회원국의 개별적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오스트리아, “세제혜택은 경기부양책으로 부적합”

“법인세 인하 등 세제혜택은 경기부양책으로는 부적합”

뮌 경제연구소 주장: 미래시장에 확신 주어 투자심리 회복

- 오스트리아 양대 경제문제연구소 중 하나인 I.H.S.는 최근 발표한 실증적 연구보고서에서 단기적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법인세 인하 등 세율인하를 실행하는 방안은 경기부양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
 - 이 보고서는 법인세 인하로 인해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획득한 자금이 신규투자를 유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주장. 즉, 법인세를 인하했다고 해서 투자가 당장 살아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가 경기부양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임
 - I.H.S.는 다음 2가지를 근거로 제시
 - 첫째, 기업이 신규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법인세율이 아니라 장래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예측이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 예측 없이는 법인세가 아무리 낮아져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업측 입장임
 - 둘째,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세계화 속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등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획득된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 자금으로 부채 해결과 같은 자기자본을 강화나 경영합리화에 사용하는 것이 상례임
 - 물론 위 두 번째 이유에서 지적한 대로 법인세 인하를 통해 추가적으로 획득된 자금을 이용해 자기자본율을 일단 높이고 나면 훗날 투자심리가 회복되었을 때 좀 더 큰 투자 리스크 규모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장

기적으로 볼 때 투자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음

- I.H.S.연구소장인 펠다라(Felderer) 교수는 거시경제 운용의 중장기적 안목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법인세율 인하나 기타 세제혜택을 준다고 해서 당장 투자가 살아나고 경기가 부양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주장하면서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장래 시장상황에 대해서 기업들이 긍정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

中, 비관세가 최대 시장 장벽

-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중국의 높은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가장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무역협회가 올해 초 중국과 교역중이거나 투자중인 122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역장벽 사례 중 비관세 장벽을 경험했다고 답변한 기업이 43개사(13%)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힘
- 또, 각종 기술표준을 통한 수입규제,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 내에 여전히 높은 무역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
- 설문조사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복잡한 통관절차 △자의적인 관행 △ 높은 수입관세 및 수입관련 세금 등으로 지적됨
- 중국의 내수시장을 목적으로 중국과 교역하거나 투자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중국 내 유통 및 판로 분야의 어려움을 가장 중요한 애로사항으로 지적함
- 반면,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수출이나 내수판매보다는 중국을 수출용 제품의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중소

기업의 경우 수입관련 통관절차의 복잡성과 수입관련 세금 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답변

- 이밖에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법인운영 과정에서 '체도의 불투명성'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지적

EU 내 「법인세 조화」 관련 논란 동향

- 최근 EU 내에서는 독·불 양국이 신규 회원국(10개국)의 낮은 법인세율이 회원국간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며 역내 법인세 조화를 제안함에 따라 법인세제 조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확산

- EU 회원국의 법인세율 실태

○ EU 역내 평균 법인세율은 27%로 미(40%)·일(42%)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독(38%)·불(35%) 등 기존 15개 회원국 평균이 31%인 데 반해 신규가입 10개국은 21%로 회원국간 편차가 현저

○ 특히, 헝가리·체코 등 신규 가입국들이 외자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함에 따라 오스트리아·프랑스 등 기존 회원국들도 세율인하에 착수하는 등 역내 세율경쟁이 확산

* 법인세 인하 현황: 헝가리 18% → 16%(04.1), 폴란드 27% → 19%(04.1), 체코 31% → 24%(2003~2006 계획), 오스트리아 34% → 25%(05.1 예정) 등

- 법인세 조화 찬반 논란 동향

○ 독일·프랑스 양국은 회원국간 법인세 조화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 신규 회원국들이 EU 지원금 혜택을 받으면서 법인세를 EU 평균보다 훨씬 낮게 설정하는 것은 “세금덤핑”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 역내 법인세 하한선을 도입하고, 낮은 법인세율을 고

수하는 국가에게는 EU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공식 제기했으며

- 특히, 독일은 역내 법인세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EU의 2007~2013 회계연도 예산에서 신규 회원국을 위한 기금을 삭감토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시현

○ 이에 대해, EU 집행위 및 신규 회원국 등은 법인세 조화에 반대

- 폴란드·헝가리 등은 EU 지원금이 회원국간 경제 격차를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 아일랜드·영국 등 기존 회원국들도 법인세를 포함한 세제는 각국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EU 차원의 세제조화 시도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했으며

- EU 집행위측도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조세 문제에 있어서도 “경쟁 없이는 경쟁력도 없다”고 주장하고 기본적으로 조세를 결정은 개별 회원국의 문제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

재정 정책

日本, 정부에 대한 요망 ‘의료·연금’이 ‘경기’ 제치고 수위

□ 일본 내각부는 4일 ‘국민생활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함.

○ ‘향후 정부는 어떤 것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복수 회답 가능)라는 질문에서 ‘의료·연금 등의 사회보장 구조개혁’을 선택한 국민이 작년 조사 때보다 5.8%포인트 늘어난 67.7%로 가장 많아 최근에 수위를 차지했던 ‘경기대책’을 상회했음

○ 이는 연금개혁에 대한 불신감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조사는 금년 6~7월 전국의 성인 남녀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7,005명으로부터 회답을 받았음

○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할’ 항목으로는 ‘의료·연금 등의 개혁’에 이어서 ‘경기대책’ 58.6%(작년 대비 8.8%포인트 감소), ‘고령사회대책’ 49.8%, ‘고용·노동 문제’ 41.3%, ‘범죄대책’ 37.0%가 이어졌음.

□ 내각부는 1998년 이후 매년 같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경기대책’이 수위에서 밀린 것은 처음으로 ‘의료·연금 개혁’을 택한 사람을 남녀별로 보면 여성이 72.9%, 남성이 61.5%로 여성의 관심 고조가 두드러졌음.

□ 현재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이 59.8%(1.6%포인트 증가), ‘불만’이 37.3%(2.3%포인트 감소)이고, 일상생활에서의 고민이나 불만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다’가 65.8%로 1958년 조사 개시 이후 최고였던 작년보다 1.4%포인트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이며 구체적인 고민으로는 ‘노후의 생활설계’가 51.8%로 가장 많았음

차이나 리포트 2004 '따로 움직이는 두 정부'

- 중국 지방정부의 지역이거주의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전 중국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로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정부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집행되는 구조였다.
-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경제성장을 위해 중앙정부는 많은 정책결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자율성을 확대시켰다. 중앙정부의 '대리인'에 머물렀던 지방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경제주체가 되었고, 지역의 이익과 상반되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저지하는 '파워'도 갖췄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충돌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됐고 최근 경기과열과 관련하여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이다.
- 비대해진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 개혁·개방 이전까지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중앙의 통일적인 정책 집행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었다. 하지만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한 덩샤오핑(鄧小平)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권력을 지방에 이양하여 바람직한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 분권화(下放權力) 정책을 실시하였다.
 - 먼저 지방정부에도 입법권을 부여하고, 일정 범위 내의 외국인 투자 인허가권과 외자이용 권한을 인정하였으며,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개혁을 단행했다. 종전 중앙정부가 보유한 기업과 시장에 대한 지배권도 지방정부로 이양했다.
 - 지방정부의 권한 확장은 지방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높여 경제성장을 촉진했다. 더욱이 지방의 경제성장을 지방관리들의 업무 실적으로 간주한 인사시스템으로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였다.
 - 그 결과 지방정부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주역이

됐다. 고정자산 투자 통계를 살펴보면 개혁·개방 이후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다. 개혁·개방 직후 48%였던 지방정부 소관의 고정자산 투자 항목의 비중은 2003년에 85%까지 확대된 반면, 중앙정부의 비중은 52%에서 15%로 대폭 축소되었다.

□ 경기과열 주범은 지방정부

- 지난 10년간 연평균 9% 이상의 고속성장을 지속하던 중국경제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중국정부는 지난해 11월 철강, 아연, 시멘트 등 3개 분야의 경기과열 부문에 대해 각 지방정부의 투자억제지침을 시달하고, 그 이행 결과를 조사한다고 밝혀 거시경제 조절정책(宏觀政策)을 내놓았다.
- 그러나 올 1/4분기 철강과 시멘트 부문에 대한 고정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7.2%와 101.4%씩 늘어나 중앙정부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금년 3월 14일 제 10기 전인대회(全人大) 2차 회의에서 "중국의 경기과열 현상은 지난해의 사스 문제만큼 심각한 도전"이라고 언급하고, 4월 28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위반한 '장쑤성철강유한공사(江蘇省鐵鋼有限公司)' 해체 및 관계자 문책을 결정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했다.
- 그리고 인민은행은 3개 부문 이외에 자동차와 부동산 부문을 더한 5개 부문을 경기과열 부문으로 지정하고 대출억제지침을 발표했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항하는 지방정부의 행위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따로 움직이는 두 개의 정부

- 중앙정부의 단호한 조치에 대해 지방정부의 불만은 고조되어 가고 있다. 사회과학원의 청화대(清華大) 후안강(胡鞍剛) 교수는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연해 지역의 경우 시장상황이 좋을 때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내륙지역은 지금까지 차별대우로 제대로 투자를 못했으니 지금부터라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지방의 분위기를 전했다.

- 지방정부의 이러한 불만은 중앙정부의 정책 집행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방정부들은 대외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을 준수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중앙의 정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 올 1~7월 중앙정부의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5%를 약간 상회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고정자산 투자는 여전히 40%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중앙정부는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경제성장을 이유로 여전히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것이다.

□ 합리적 분권구조를 찾아라

-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정치연구소 황구이양(庄貴陽) 박사는 “거시경제조절 정책의 성공은 중앙정부가 어떻게 지방정부들의 이기적인 행위들을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중앙정부의 고민은 지방정부의 할거주의를 통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과도한 긴축정책이 경제를 경착륙시킬지 모른다는 데 있다.
-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의 과열경기를 연착륙시킬 수 있다고 할지라도 현재와 같은 중앙과 지방정부간 제도하에서는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가 필요하나, 효율적인 경제운용이 어려워지고, 지방정부의 권한이 커지면 경제의 효율성은 제고되나 중앙정부의 안정적인 정책수행이 곤란해진다.

□ 분권정책으로 불균형 심카

- 지방분권 정책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져다 주었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도 노출시켰다.

- 덩샤오핑(鄧小平)의 선부론(先富論)에 따라 연해지역에서부터 시작된 계단식 분권정책은 연해와 내륙의 불균등한 지역발전을 초래했다. 서부의 낙후지역과 상하이(上海)의 1인당 소득격차는 현재 무려 8배 이상이다.
- 무엇보다도 ‘제후경제(諸侯經濟)’로 불리는 지역이기주의의 병폐는 심각하다. 분권화로 국유기업 관리권을 넘겨받은 지방정부는 낙후된 산업이라 할지라도 유형·무형의 진입장벽을 설치하여 지역 기업을 보호하고 있다.
- 그리고 돈이 되는 사업이면 지역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지 않고 ‘특화산업’으로 선정,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31개 중 24개 지방정부가 미래 유망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역이기주의는 지방정부의 정책집행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지방정부는 자신의 이익과 상충되는 중앙의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들을 모색하여 무력화시킨다.
- 이러한 현상을 흔히 ‘중앙에 정책이 있으면 지방에 대책이 있다(上有政策, 下有對策)’는 말로 표현한다. 지방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종종 ‘법규나 중앙정부의 지침’에 반하기도 하고 때론 부패와 연계, 중국 경제를 쪼먹고 있는 것이다.
- 최근 발생한 ‘테번사건(鐵本事件)’은 지방정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중앙의 규정을 정면으로 무력화시킨 대표적인 사건이다.
- 장쑤테번강철유한공사(江蘇鐵本鋼鐵有限公司)는 2002년부터 제강능력 840만 톤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철강산업 규제 때문에 중앙정부의 승인이 어렵다고 판단, 지난해 5월 4개의 프로젝트로 나눠 지방정부의 승인만 받고 투자심사를 통과했다.
- 한술 더 떠 중앙정부의 토지사용 허가를 피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14개로 쪼개 지방정부의 승인을 얻어냈다. 자본금 충당을 위해 중국은행 등 6개 은행의 지방

분점으로부터 대출까지 받았다. 이 모든 절차는 지방 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 지방 관리들은 GDP 성장을 통해 자신들의 업무 성적을 높이고, 은행은 지방정부가 승인한 안전한 사업에 대출을 하고, 기업은 번거로운 중앙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 이 사건의 실질적인 책임은 모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중국 행정구조의 치명적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이다.

말레이시아, 2005 예산안 발표-고부가경제로의 도약

□ 둘라 바다위 말레이시아 총리는 지난 9월 10일 재정적자 축소, 저소득층의 소득증대, 민원시스템의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2005년 정부예산안을 발표하며, 아울러 정부의 세수증대를 위해 현행 판매세를 대체하는 상품서비스세(GST)를 200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

- 2005년 예산 핵심전략
 - 정부 재정관리 효율성 제고, 민원시스템 개선 및 경쟁력 강화
 - 고부가가치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 성장 촉진제로서의 인적 자원 개발
 - 국민 복지 향상

□ 올해 경제성장률은 상반기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당초 예상한 6.5%보다 높은 7%가 될 것으로 예측하며 2005년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경제의 둔화 영향으로 6%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압둘라 총리는 공무원들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여 공무원 보너스 1.5개월분 지급과 주택대출금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

- 또한 경찰공무원 급여 인상을 위해 RM107백만을 배

정했고, 교사들에게는 급여인상 및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음

- 그러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건강을 위해 담배 소비세(39.7%)와 주류소비세(21~26%)를 큰 폭으로 인상함
- 현행 28%인 법인세 및 소득세율은 변화가 없음. 압둘라 총리는 상품서비스세가 신규로 도입되면 세수가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법인세 및 소득세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말함
- 그러나 근로자연금, 보험료 공제(RM6,000), 배우자 장애인 공제(RM3,500), 도서 구입(RM700), 컴퓨터 구입(RM500) 등 각종 공제폭을 높임

□ 고부가가치 경제로의 도약을 목표로 성장엔진인 제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강화됨

- 비즈니스 비용 감소와 관세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섬유, 제조제 등 118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고 수술용 장갑, 목재산업 중간재 등 27개 품목의 관세를 폐지
- 현지 기업이 계약업체에게 아웃소싱을 하면 현지에서 조달되지 않는 사용 원재료나 부품에 대해 관세 및 판매세 면제혜택을 계약업체에게도 부여

〈관세조정 주요품목별 관세율〉

HS Code	품 목	현행관세	조정관세
380830	제조제	10	5
401511	의료용 장갑	15	0
440910	목재	20	0
481610	복사지	25	0
5801	편직물	25~30	20
5802	테리직물	25~30	20
701690	도로블록	30	20
852812	칼라TV리시버	35	30

- 말레이시아 제품의 품질력 향상을 위해 국제표준인증에 소요된 비용은 이중공제를 허용
-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마이크로전자센터를 설립해 교육 및 설계 지원을 할 계획
- 개척자 지위(5년간 법인세 면제)나 투자세액공제 혜택(5년간 자본지출 세액 공제)을 받고 있는 기업이 육성지역(반도 동해안, 사바, 사라왁 주)에 제조 기지를 확대하면 추가로 5년간 동일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농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의 핵심 원동력으로 보고, 농업 활동을 상업화하는 기업들을 위해 RM3억의 기금을 조성하고 농업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RM15억을 배정함

□ 말레이시아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최대 5개까지 외국인 증권회사와 펀드매니저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하고, 외국인 딜러수 제한도 폐지키로 함. 또한 유동성 확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선물회사 및 벤처캐피탈 회사의 외국인 지분을 100퍼센트까지 허용키로 함

□ 2005년 예산의 총지출계획은 RM1,174억이며 수입은 RM 992억으로 예상하고 있어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8% 수준(올해 4.5%)으로 낮춰질 전망이다

- 전체 예산 중 RM 891억은 운영예산이고 RM 283억은 교육, 농업, 인프라 등 개발지출로 할당됨
- 2005년은 8차 경제개발계획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대규모 지출 프로젝트는 없음

美, 재정·경상수지 적자 줄여라

라토총재 “세계경제 안정 해치는 주된 요인”

□ 국제통화기금(IMF)의 로드리고 라토 총재가 미국의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가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주된 위험요인이라면서, 미국은 이 같은 쌍둥이 적자의 축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요 외신들이 21일 보도

- 미국 뉴욕 소재 싱크탱크인 외교협의회(CFR)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그는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기 시작할 경우 달러 가치가 폭락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면서 이 같이 언급

□ IMF는 지난달에 발간한 연차 보고서에서도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향후 4년 동안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은 지나치게 신중한 접근이라면서 장기적 재정안정을 위해 세금을 인상할 것을 주문

-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4,5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4.2%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또 미국의 경상수지(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 차이) 적자는 작년 5,307억달러에 이어 올해는 6,000억달러 안팎에 달할 전망

□ 라토 총재는 일본과 유럽경제에 대해서는 성장세를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

- 일본과 유럽의 성장은 그간 세계경제를 이끌어 온 미국의 뒤를 이어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동시에 경상수지의 국가간 불균형 조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특히 각국은 세계경제가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을 때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

동·서독 통일 15년 경제격차 더 벌어진다

□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동·서독이 하나가 되기는커녕 양측의 경제·사회·정치적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23일 분석

기사에서 베를린 장벽 붕괴 15년 후 독일의 현주소를 다뤘다. 독일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329일째인 90년 10월 3일 동독 인민회의가 서독기본법 23조에 의거해 동독의 서독편입을 발표하면서 공식 통일되었다.

□ 우선 경제적 격차다. 통일비용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까지 1조 5,000억유로(약 2,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독일 언론들이 추산하고 있다. 결과는 참담하다. 옛 동독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연간 1.4%, 옛 서독은 2.3%다. 할레경제연구소의 거시경제부문 책임자인 우도 루드비히는 “양측이 비슷해지려면 동독의 경제성장률이 서독 수치의 최소 두 배는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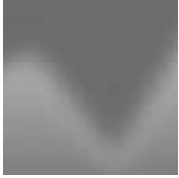
□ 실업률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지난 8월말 현재 동독 실업률은 18.3%다. 통일 직후였던 91년말 16.5%보다 높아졌다. 서독 지역의 지난 8월말 실업률은 8.4%다. 또 동독 5개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 8,000유로로 서독 11개 주에서 가장 가난한 주의 2만 2,900유로에도 못 미친다. 동독 주민의 절반이 국가보조금으로 살고 있다.

□ 경제적 어려움은 정치 불신을 가져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여론조사기관인 유로바로미터가 2000년 동·서독 지역 주민들의 민주주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은 서독 60%, 동독 38%였다. 그러나 2003년 같은 조사에서 서독은 66%로 선호도가 늘어난 반면 동독은 32%로 줄어들었다. 지난 19일 치러진 주 의회선거에서는 공산당의 후신인 민주사회당(PDS)이 동독이었던 브란덴부르크와 작센에서 각각 28%와 23.6%의 지지를 얻었다. 반면 야당인 기민당은 브란덴부르크에서 19.4%, 집권당인 사민당은 작센에서 9.4%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현 정부는 5년 전 베를

린으로 수도만 옮겼을 뿐 “서독 사람을 위해 서독 사람이 운영하는 정부”라는 게 PDS측 주장이다.

□ 현 난국은 정부가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통일 직후 동독 화폐인 오츠마르크와 서독의 도이차마르크를 금융당국의 경고를 무시한 채 ‘정치적 고려’로 1:1로 전환하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없었다. 또 비생산적인 자산을 주로 지원하고 신산업에 대한 세금지원을 꺼려 동독 경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했다.

□ 통일비용이 늘면서 경제부담이 늘고 지난해 독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자 서독 내부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독일 여론조사기관인 포르자연구소가 최근 조사한 결과 서독인의 24%가 베를린 장벽의 복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독경제의 성장은 동독만의 문제는 아니다. 동독재건위 위원장인 클라우스 도흐난위는 “서독이 GDP의 4%를 동독에 쏟아 붓는 한 정부의 어떤 경제개혁도 소용이 없다”며 “동독에 대한 지원방법을 전면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경고했다.



정책흐름

1. 2005년 나라살림 - 예산안 및 자금운용계획안 -
2. 2005년 국세 세입예산(안)
3. 보유세제 개편 기본방안 확정
4. '04년 2/4분기말 현재 총 대외채무 · 대외채권 현황(잠정)



2005년 나라살림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 이 자료는 2004년 9월 24일 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에서 발표한 「내년도 나라살림, 성장잠재력 확충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 지원」의 '2005년 나라살림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I. 예산편성 방식의 혁신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 도입, 성과관리제도 시행 등 재정운용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단년도 위주 재정운용을 중장기적 재정운영으로 전환

- 향후 5년간('04~'08)의 총재정규모, 분야별 재원배분 우선순위, 주요 재정사업별 지출규모 등을 사전에 제시하여 국가재정운영의 기본틀로 활용
- 중장기 국정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

□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을 도입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분야별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각 부처는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 및 각 부처의 자율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촉진

- 일반회계 요구 증가율 : 30% 수준 → 11.7%
- 계속사업 구조조정(△2.7조원) 및 신규사업 반영금액(3.0조원)이 '04년보다 2배 수준 증가

□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및 환류 기능 강화

-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지표를 설정하고, 집행실적을 목표지표와 비교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환류
- 각 부처의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를 사후평가 강화로 보완
- 금년에는 22개 기관으로부터 성과계획서(전체 사업의 30% 수준)를 제출받아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
- 성과목표와 재정투자계획을 연계·분석하여 '05년 예산을 조정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시스템 구축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각 지자체가 총액 범위 내에서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을 신청
- 재원과 기능을 함께 이양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

확대

- 국고 보조사업 163개(1.1조원)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포괄적인 재원인 교부금을 확대(교부세율 : 18.3→19.13%)
- * 국가보조사업 지방이양 예시 :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사회복지관 운영 등

□ R&D 예산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전문성 제고 및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투자 추진

- 미래유망 신기술 개발 등 국가 전략 R&D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부처간 중복여부·타당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

◆ '05 예산(안) 구조조정 현황 ◆

-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에 따라 각 부처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계속사업 구조조정(예산감액) 및 신규사업 반영규모가 예년보다 2배 수준 증가
- 사업 우선순위 및 성과, 집행실적 등을 재검토하여 사업축소·중단 또는 통폐합→신규사업 소요에 충당
 - ☞ A부처는 총 204개 단위사업(기금포함) 중 35개 사업 폐지(△1,028억원)
 - IT839 전략사업에 집중 투자(신규사업 1,433억원)
 - ☞ B부처는 경상적 경비를 절약하여 연례적으로 부족한 필수경비에 충당
 - 특근매식비·여비 감액(△11억원)
 - 형사보상금 증액(5억원)
 - 여성조사실 신설(7억원)
 - ☞ C부처는 경비합 운항방식 변경을 통해 유류비 예산 증가 억제

- 6일 주기교대, 순항 경비→8~10일 주기교대, 표류·거점 경비
- 유류비 예산 : ('04)351억 원→('05)390억원 ('04:17%→'05:11% 증가)

		'04예산	'05예산안	증 감
• 계속사업 구조조정 ¹⁾	사업수	308개	416개	108개
	금 액	△1.6조원	△2.7조원	△1.1조원
• 신규사업 반영	사업수	351개	459개	108개
	금 액	1.5조원	3.0조원	1.5조원

주: 1) 전년 대비 감액사업(자연감소분 및 지자체 이양사업 제외)

- 앞으로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체도가 정착됨에 따라 각 부처의 자율적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
- '06년 지출한도 통보시 사업별 성과분석에 입각하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 지침 시달 예정

II. 2005년 나라살림의 모습

1. 재정운영 여건 및 방향

□ 내년도 우리 경제는 5%대의 실질성장예상

- 내수의 점진적 회복과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 강화, 적극적 경제정책 노력 등을 감안할 때
- 5%대의 잠재성장률 수준 달성 전망(경상성장률 8% 수준)

□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은 어려운 상황

- 세입은 한은잉여금 등 세외수입의 대폭 감소(△2.7조원)
- 지출소요는 국정과제의 본격 추진, 안보여건 변화 등으로 증가

□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하되, 재정적자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 재정지출 확대에 조속한 경제회복을 촉진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
- 관리대상 재정수지를 '08년에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GDP 대비 △1%)

* 관리대상 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과 공적자금 손실분의 국채전환 소요를 제외

2. 재정규모

□ 내년도 일반회계 지출규모는 '04예산 대비 9.5%(11.4조원 증) 증가한 131.5조원

- 공적자금 상환과 양여금 폐지 등 예년과 다른 요인 제외시 일반회계 증가율은 5.5%(6.6조원 증)

(단위: 조원, %)

	'04예산	'05예산안	증감	증감률
■ 일반회계 지출(A)	120.1	131.5	11.4	9.5%
• 채무상환(B)	2.1	5.3	3.2	
•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회계 전환분(C)	-	1.6	1.6	(교통세의 회계 전환분(C))
• 특이소요 제외(D=A-B-C)	118.0	124.6	6.6	5.5

- 세외수입 감소, 채무상환 증가 등으로 일반회계 국채 발행 규모가 금년 2.5조원에서 6.8조원으로 증가(4.3조원 증)

(단위: 조원, %)

	'04예산	'05예산안	증감	증감률
■ 일반회계	120.1	131.5	11.4	9.5%
• 국세수입	111.2	121.0	9.8	(8.8)
• 세외수입	6.4	3.7	△2.7	(△42.4)
• 채권발행	2.5	6.8	4.3	(168.8)

□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규모(순계)는 금년보다 7.5% 증가한 168.2조원 수준

(단위: 조원, %)

	'04예산	'05예산안	증감	증감률
■ 예산 순계 (총 계)	156.5 (182.4)	168.2 (195.7)	11.7 (13.4)	(7.5) (7.3)
• 일반회계	120.1	131.5	11.4	(9.5)
• 특별회계 ¹⁾	62.2	64.2	2.0	(3.2)

주: 1) '05년 폐지되는 철도사업특별회계 제외

□ 57개 기금의 운용규모는 금년보다 7% 수준 증가한 320조원

- 재정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37개 사업성 기금의 사업비도 금년보다 7% 수준 증가(23.6조원 → 25.3조원)

(단위: 조원, %)

구 분	'04(A)	'05안(B)	증감 (B-A)	증감률
■ 전체 운용규모(57개)	298.3	320.2 ¹⁾	21.9	7.3
■ 사업비 규모(57개)	74.8	69.2	△5.6	△7.5
• 사업성 기금 (37개)	23.6	25.3	1.7	7.4
• 사회보험 기금 (6개)	17.0	20.1	3.1	18.2
• 금융성·계정성 기금 (14개) ²⁾	34.2	23.7	△10.4	△30.6

주: 1) '05운용규모(320조원) = 사업비(69조) + 차입금상환·내부거래(135조) + 여유자금운용 등 (116조)
 2) 금융구조조정 지원(△7.5조), 대러차관 대지급(△2.0조) 등으로 금년 보다 감소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한 총지출 규모는 금년 보다 6.0% 증가(196조원 → 208조원)

3. 재정 수치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는 관리대상 재정 수지는 금년보다 다소 악화되어 GDP 대비 1.0% 적자

(단위: 조원)

구 분	'04예산	'05예산안	증감
■ 전체 통합재정수지(A) (GDP 대비, %)	3.3 (0.4)	5.7 (0.7)	2.3
•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B)	22.4	25.9	3.1
• 공적자금 국채전환 소요(C)	△12.0	△12.0	-
■ 관리대상 재정수지(A-B-C) (GDP 대비, %)	△7.2 (△0.9)	△8.2 (△1.0)	△1.1

<참고 1> 국가채무 관리

□ 국가채무는 '06년까지는 공적자금 국채전환으로 증가가 불가피하나 '07년부터는 GDP 대비 비율이 '06년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내년 증가분은 공적자금 손실분의 국채전환,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에 주로 기인

• 공적자금 국채전환 +12.0조원, 외평기금 채권 +16.2조원,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 +6.8조원, 주택채권 +3.3조원 등

	'03실적	'04전망	'05전망	'06전망	'07전망	'08전망
* 국가채무잔액(조원) (대 GDP 비중, %)	165.7 (23.0)	204.5 (26.2)	244.2 (29.0)	271.2 (29.8)	282.9 (28.8)	296.1 (27.9)

□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 26.2%는 OECD국가의 평균 76.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IMD평가에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세계 2위

(단위: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OECD평균
국가채무비율	62.8	157.3	65.1	71.1	51.6	76.0

* 자료: World Economic Outlook('04. 6), '03년말 기준

□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전체의 38% 수준

○ 나머지는 외국환평형기금,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외화자산, 용자채권 등의 형태로 자산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금융성 채무(62%)

(단위: %)

국가채무('04년말)	적자성 채무	금융성 채무
204.5조원(100.0%)	78.3조원(38.1%)	126.2조원(61.9%)

* 국가채권('03년말): 130.6조원

□ 일반회계 국채발행은 '06년부터 점차 감축하여 '08년 이후 중단하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 관리

〈참고 2〉 조세부담률

□ '05년 조세부담률은 소득세 감면(1%p), 특소세 폐지(24개 품목) 등에 따라 '04년과 비슷한 19.7% 유지

	'03	'04	'05	'06	'07	'08
■ 조세부담률(%)	20.5	19.8	19.7	19.8	19.9	20.0
■ 국민부담률(%)	25.5	25.0	25.2	25.6	25.8	26.3

-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조세부담률은 '08년도까지 20% 이내 수준으로 유지
- 국민부담률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이 성숙함에 따라 다소 증가 전망

□ OECD 회원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며, 과거 선진국의 1인당 GDP 1만달러 달성시기와 비교해도 여전히 낮은 수준

- OECD 30개국 중 조세부담률은 4번째, 국민부담률은 2번째로 낮은 수준

(단위: %)

	한국('03)	OECD 평균('01)	영국('02)	프랑스('02)	미국('01)	일본('01)
■ 조세부담률	20.5	27.5	29.7	27.7	21.8	17.0
■ 국민부담률	25.5	36.9	35.9	44.2	28.9	27.3
• 1만달러 달성시(해당연도)	-	-	30.8('86)	23.9('78)	21.6('78)	19.3('81)

* 자료 : Revenue statistics (OECD 2003)

Ⅲ. 2005년 나라살림의 중점

- 성장잠재력 확충, 삶의 질 향상 관련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R&D·교육·보육 등 성장잠재력 확충 투자
 - 여성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보육투자 대폭 확대
 - 미래유망 신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
 -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복지 지원
- 자주국방·남북협력, 행정서비스 혁신 지원을 확대
 - 안보여건 변화에 맞추어 자주국방 구축 및 남북협력 지원확대
 - 세무, 건축 등 주요 민원 인터넷 처리 고도화 및 정책품질향상 등을 통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 인프라 구축이 진전된 분야, 시장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재정투자 내실화에 중점
 - SOC분야는 부문간 구조조정을 통해 지하철·항만 등의 투자비중을 확대
 -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기술개발·인력양성을 중점 지원
- 예산 외의 다양한 재원을 적극 활용
 - 연기금 등 다양한 재원이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공공기업의 자체투자 확대 추진

1. 2005년 예산(안) 편성의 중점

1-1. 성장잠재력 확충

□ 미래성장동력 투자 확대

-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 미래유망 신기술 개발 지원 확대
- 신기술 선점을 위한 기초연구투자 확대(1.2조원→1.5조원) 및 지방 R&D 확충(2.0조원→2.3조원)
-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1.7조원→1.9조원)

□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투자 확대

- 보육투자를 전년 대비 50% 확대하고(4,050억원→6,077억원) 영유아 보육 지원체계를 수요자인 아동 중심으로 전환
- 중소기업 청년채용 패키지 훈련(175억원), 취업유망 분야 훈련(428억원) 등 청년실업 대책 지원
- 대학 혁신역량, 산·학·연 협력체제 등 인적자원 개발 지원(8,517억원→12,437억원)

□ 중소기업·산업 인프라 기반 조성 지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부품소재 기술개발 등 지원
- 산업단지 진입도로(2,550억원), 폐수종합처리장(1,388억원), 공업용수도(395억원) 등 산업기반시설 투자 확대

□ 동북아 경제중심 허브(hub)구축 지원

- 부산신항, 광양항 등 신항만과 인천공항 투자 확대 등 동북아 물류 허브(hub) 구축 지원(8,400억원→10,502억원)
- 인천, 부산,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1,100억원), 토지 매입비 및 보조금(Cash grant) 지원 등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 에너지 절약 및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충 지원

- 에너지 절약시설 및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등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지원(4,699억원→4,990억원)
- 신·재생 에너지개발, 해외자원 개발 등 에너지 개발 지원 확충(4,955억원→5,960억원)

(단위: 억원)

구 분	'04 예산	'05예산안	증감액	비 고
1. 미래성장동력	87,774	96,727	8,953	10.2% 증
• R&D	70,827	77,868	7,041	미래 신기술, 기초연구 등
• 정보화 지원	16,947	18,859	1,912	광대역통합망, 전자정부
2. 인적자원 개발	18,979	23,240	4,261	22.5% 증
• 교육지원	7,236	8,930	1,694	초중등교육, 대학 등 교육지원
• 여성·보육	4,621	6,620	1,999	여성정책, 영유아보육료
• 청년실업	6,057	6,504	447	취업유망분야, 중소기업 패키지
• 농업인·관광인 육성	1,065	1,186	121	후계농업인, 문화 전문인력
3. 동북아 경제중심	9,219	13,718	4,499	48.8% 증
• 물류인프라	8,400	10,502	2,102	부산신항 광양항, 인천공항 토지매입비, 경제자유구
• 외국인 투자유치 등	819	3,216	2,397	역지역 기반시설 등
4. 산업경쟁력	16,573	17,741	1,168	7.0% 증
• 에너지 개발	9,066	10,165	1,099	신·재생에너지, 유전개발
• 산업기반	4,738	4,771	33	산업단지 진입로 등
• 중소기업 육성	2,769	2,805	36	쿠폰제 컨설팅
합 계	132,545	151,426	18,881	14.3% 증

1-2. 삶의 질 향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을 확대(1,400천명→1,466천명)
- 11세 이하 아동과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신규 적용(180천명)
- *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 ('04) 22천명→('05) 202천명
-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범위 확대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 노인일자리 확대(25→35천명), 공적 노인요양보장 제도 시범실시, 농어촌 복합노인시설 신축(5개소) 등 고령화사회 대비 투자를 확대
- 장애수당의 지급 범위를 중증장애인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 장애인 전체로 확대(137천명→276천명)
- 공부방 지원 확대(월 67만원→200만원), 모부자 가정 아동양육비 인상(월 2만원→5만원) 등 저소득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15만호 건설을 지원

□ 국민건강 증진과 문화적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 지역건강보험 재정소요의 50%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질병예방·건강증진, 공공보건의료 투자를 크게 확충

- 주40시간 근무 대비 건전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체육·수련시설 등 문화인프라 확충

□ 직불제 강화 등 농어민의 생활인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

- 농어민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확대(30~40%) 및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지원수준 상향(월평균 1.4만원→2.2만원)
- 농작물 국가재보험 제도 신규 도입(300억원) 및 경영이양직불제 지원 면적 확대(4,650ha→8,278ha)

□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물·공기 등 환경개선 투자 확대

- 화물차·버스의 배출가스 감축장치 부착 지원 등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159억원→1,300억원)
- 광역상수도망을 지속 확충(2,589억원→4,611억원)하고, 농어촌·도서지역 등 낙후지역의 상수도 개발을 지원(1,177억원→1,464억원)
- 생활하수 및 공단 폐수 처리시설 지원확대(11,580억원→12,326억원)

(단위: 억원)

구 분	'04 예산	'05 예산안	비 고
■ 기초생활보장	38,306	41,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아동 의료급여 확대 등 • 장애수당 137천명→267천명 • 노인일자리 25천명→35천명 • 장기공공임대주택 15만호 건설 • 건강증진기금 3,096 증 • 지역건보소요 50% 지원 • 문화예술 4,016억원→4,520억원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등 • 농어민소득 보전·지원 강화
■ 취약계층 지원	57,537	61,984	
■ 국민건강 증진	41,749	47,580	
■ 문화·관광	14,249	16,292	
■ 환경 개선	32,660	37,292	
■ 농어촌복지	44,984	48,279	
합 계	229,576	253,059	

1-3. 행정 서비스 혁신

-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1,026억원→2,043억원)
 - 각 부처별 자체 혁신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고, 행정 서비스 혁신능력 개발 및 연구사업 활성화(346억원, 신규)
 - 정부업무를 고객 입장에서 체계화하고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품질관리제 등 도입(37억원, 신규)
 - 부처별로 분산·운영되고 있는 정보·DB시스템을 통합 활용하는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지원(150억원→750억원)
 - 성과중심의 효과적인 재정정보 산출을 위해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개발추진(33억원, 신규)

- 국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1,612억원→2,550억원)
 - 세무, 건축, 고용, 취업, 무역 등 민생관련 분야의 인터넷 민원 처리를 고도화
 - 2단계 전자정부사업('04~'07, 31개 과제)을 차질 없이 지원(1,177억원→1,944억원)
-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 행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및 이해도를 제고(352억원→513억원)
 - 국민의 행정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 참여 포털 구축 (15억원→64억원)
 - 건설, 주택, 교통, 세무 등 행정정보 공개 및 정책고객에 대한 홍보 강화

(단위: 억원)

구 분	'04 예산	'05 예산안	비 고
■ 일잘하는 정부	1,026	2,043	•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등 • 건축·통관·국세시스템 고도화 등 •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등
■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1,612	2,550	
■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352	513	
합 계 (*전자정부)	2,990 (1,177)	5,106 (1,944)	70.8% 증 (65.2% 증)

1-4. 지방분권·균형발전

- 지방재정 지원규모 확대 : 31.5조원→36.1조원(14.5% 증가)
 - 자립형 지방화와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지방 재정력 확충
-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
 - 지방의 자율재원 규모 확대 : 14.5조원→25.6조원
 - 용도가 한정된 양여금 폐지 및 국고보조사업 중 일부

(163개, 1.1조원)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교부세 인상 등 재원도 확충
 * 지방교부세 : ('04) 15% → (양여금 폐지) 18.3% → (보조사업 이양) 19.13%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혁신주도형 지역발전 촉진
 - 그동안 분산 추진되던 지역사업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 '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5.5조원 규모로 출범

• 지역개발 사업은 지자체별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낙후지역 개발 및 지역 특화발전을 중점 지원

(단위: 억원)

구 분	'04 예산	'05 예산안	비 고
■ 지방교부세	144,806	194,885	교부율 인상 : 15.0 → 19.13%
■ 지방양여금	43,972	-	'05부터 폐지
■ 국고보조금	126,697	105,037	일부 보조금(0.9조원) 이양
■ 균형발전 특별회계	(50,145)	54,980	'05부터 신설(9.6% 증)
■ 담배소비세 인상	-	6,300	'04. 10, '05. 7 각각 500원 인상전제
합 계	315,475	361,202	14.5% 증

1-5. 자주국방·남북협력

□ 안보여건 변화에 따른 자주국방 핵심 전력 증강 및 장비 사기 증진 등에 역점

- 조기경보통제기 등 첨단·정보전력 확충(61,930억 원→69,851억 원)
- 첨단무기체계 자체 개발 등 국방 R&D 투자 확대
 - ※ 국방비 대비 비중 : 4.2%→4.5%
- 내무반 침대형 전환(육군기준 80개 대대, 3,822억 원 →5,121억 원) 및 사병봉급 인상(월평균 3.5만원→

4.5만원, 2,331억원→2,998억원)

- 용산기지 이전(1,000억원), 이라크 파병(1,609억원), 특별법 제정 소요 등 특이소요 반영

□ 남북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뒷받침

-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예산출연금 대폭 확충(1,714억 원→5,000억원)
- 개성공단 건설(285억원), 남북철도·도로 연결(1,421억원) 등 교류협력 사업 지원 확대

(단위: 억원)

구 분	'04 예산	'05 예산안	비 고
■ 국방비	189,412	208,226	9.9% 증
• 전력투자비	62,930	70,851	• 첨단·정보전력 확충, 용산기지 이전 • 병영시설, 연료·탄약, 급식·피복비 등 • 봉급, 연금부담금 등
• 경상사업비	46,771	51,638	
• 인건비	79,711	85,737	
■ 남북협력	7,721	11,837	
합 계	197,133	220,063	11.6% 증

〈참고〉 주요 국책사업 재정요소

- 사업계획이 확정된 국책사업(11개)의 '04~'08 국고지원 소요 167조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기반영
- '04년 27.5조원 → '08년 39.5조원(연평균 9.5% 증가)
- * 국가균형발전계획(44.5조원), 농업농촌대책(45.1조원), 동북아물류중심(8.3조원) 등

- 최근 제기된 국책사업(13개)의 '05년 지원규모는 31.0조원(27.5조원 → 31.0조원, 12.8%증)
- 지역산업 진흥, 낙후지역 개발 등 국가균형발전 지원(7.4조원 → 8.7조원)
- 동북아 물류중심(1.4조원), 농업농촌대책(8.7조원) 지원 등

〈주요 국책사업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사업기간	'04 예산	'05 예산안	증가율	'04~'08	
						연평균증가율
합 계 ¹⁾		27.5	31.0	12.8%	166.7	9.5%
• 국가균형발전계획	'04~'08	7.4	8.7	17.8%	44.5	8.8%
• 농업농촌대책	'04~'13	7.9	8.7	9.9%	45.1	7.0%
• 동북아물류중심	'87~'14	1.2	1.4	13.6%	8.3	14.8%
• 자주국방(전력투자)	'04~'08	6.3	7.1	12.6%	41.7	15.2%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 ²⁾	'04~'30	6.2	7.0	12.1%	38.2	9.8%

주: 1) 국가균형발전계획, 농업농촌대책, 신행정수도건설, 문화비전 등 중복분(총 11.1조원) 제외
 2) 국민임대주택, 전자정부 2단계, 신행정수도건설, 빈곤아동청소년대책, 기초생보 차상위 지원, 보육지원, 문화비전·새예술포함

2.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중점

2-1.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

- 경기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업성 기금의 사업비를 금년보다 1.7조원 증액(23.6조원 → 25.3조원)
- 서민주거 여건 개선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건설 지원(4.0조원 → 4.3조원)
- 중소기업의 자금에로 완화 및 경영구조개선 지원 강화

	'04당초	'04추경	'05안
중소기업 자금지원	2.8조원	3.4조원	3.4조원

- 농안·수산발전기금의 사업비를 금년보다 2천억원 수준 증액하여 농수산물 가격안정 도모(2.2조원 → 2.4조원)

2-2. 기금사업 효율화, 기금준치평가 등 제도개선 추진

- 적립금이 급속히 늘고 있는 연기금의 장기적·안정적 투자처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기금관리기본법상 주식투자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SOC 등 다양한 투자처를 모색

□ 기금 사업구조를 효율화하고 예산과의 역할분담 확립

- 농안기금의 수산관련 사업(3,888억원)을 수산발전 기금으로 이관하여 사업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
- 기금 성격에 적합한 예산사업을 재원여력이 있는 기금으로 이관하여 예산부담을 완화

□ 처음으로 실시한 기금준치 평가를 토대로 기금정비를 추진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제시한 정비방안을 토대로 정부차원의 기금정비방안을 마련
- 관련 법개정을 거쳐 '06년 기금운용계획부터 정비 결과를 반영

IV. 2005년 나라살림의 분야별 지원내용

(단위: 조원, %)

분 야	'04년	'05년	증감	증감률
1. 교 육	24.5	25.9	1.4	5.7
	24.4	25.8	1.4	5.7
2. R&D	7.1	7.8	0.7	9.9
	6.1	6.7	0.6	10.2
3. 사회복지	32.4	37.0	4.6	14.4
	12.9	13.6	0.7	5.7
4. SOC	27.1	27.5	0.4	1.7
	16.8	17.0	0.2	1.1
5. 농어촌	12.4	13.3	0.9	7.5
	8.1	9.0	0.9	10.9
6. 산업·중소기업	11.4	11.2	△0.2	△1.6
	6.2	5.8	△0.4	△6.0
7. 환 경	3.5	4.0	0.5	13.9
	3.0	3.4	0.4	13.2
8. 문화·관광	2.3	2.5	0.2	11.3
	1.3	1.4	0.1	5.8
9. 지역균형발전	5.0	5.5	0.5	9.6
	5.0	5.5	0.5	9.6
10. 사회안정	7.6	8.1	0.5	7.1
	7.6	8.1	0.5	7.1
11. 국방비(일반회계)	18.9	20.8	1.9	9.9
	18.9	20.8	1.9	9.9
12. 통일·외교	1.4	1.9	0.5	40.7
	0.5	0.5	0.0	16.7

* 이탤릭체 숫자는 예산(일반+특별회계), 기금 전출금 제외 금액임

1. 교 육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의 역량 강화 도모

- 대학입학자원 감소 등 여건변화에 맞춰 대학의 체질 개선과 구조조정을 추진
 - 국립대학간 통합, 국·사립대학 학과(부) 통폐합 등 과감한 대학구조개혁 추진(신규 1,000억원)
 -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 내실화 중점 추진
- 이공계열 대학(원)생 무상장학금 지원 확대(10.6천명→15.9천명) 등을 통해 우수학생의 이공계열 진학을 적극 유도(665억원→1,006억원)
- 대학원 연구중심대학(BK21) 육성(1,800억원→2,000억원), 의·치학분야 전문대학원 전환(55억원→65억원)의 차질없는 지원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혁신과 특성화 중점 지원

-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화 발전 및 신성장 동력 창출
 -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 2,200억원→2,500억원(균특회계)
-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산·학·연 중심대학 및 학교 기업 육성
 -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 300억원→450억원(균특회계)

□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

- 경상·보급·중액교부금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단순화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교부율: 13%→19.32%)
- 초·중등교육 관련 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15개 사업, 1,956억원)

- 담배값 인상으로 조성된 자금을 지방교육재원으로 충당 (500원 인상시 3,800억원)

□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의 지속적인 확충

- 저소득층 만5세아(44천명→81천명) 및 만3·4세

- 아(22천명→32천명) 무상교육 지원을 확대
- 차상위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이공계 무상장학금 지원 (1,500명)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 우수고교 육성, 농어촌 통학버스 지원 등을 신규 반영 (100억원)

(단위: 억원)

구 분	'04 예산	'05 예산안	비 고
합 계	245,453	259,405	5.7% 증
■ 예산사업	244,151	258,131	5.7% 증
• 고등교육	15,346	17,065	•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및 지방대학 육성(11.2% 증)
• 초·중·등교육	1,377	2,057	• 유아교육 지원(345억원→871억원)
• 평생직업전문교육	2,357	2,416	• 전문대 다양화·특성화(1,680억원)
• 교육교부금	182,684	196,821	• 경상·봉급·증액교부금 통합
• 교육양여금	42,386	39,772	• 교육세 감소(6.2% 감)
■ 기금사업	1,302	1,274	2.2% 감
• 사학진흥기금	1,302	1,274	• 사립학교 시설 개·보수비 용자(1,280억원→1,250억원)

2. R&D

□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견인할 미래 성장동력 부문에 집중 투자

- 생명공학기술(BT)·나노기술(NT)·정보기술(IT) 등 미래유망 신기술 개발 중점 지원
- BcN등 최첨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 세계적 연구성과를 도출한 복제 및 줄기세포 기반 연구 지원

□ 신기술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기초연구를 지속 지원

- '07년까지 R&D예산의 25% 수준 달성을 목표로 이공계대학의 연구능력 배양 및 인력양성을 지원(20%→22%)
- 학술연구조성(2,264억원→2,339억원), 특정기초연구(640억원→670억원) 등 기초연구 지원 확충

- 이공계대학 우수연구센터(622억원→670억원)·국가핵심연구센터(60억원→80억원) 등 여러 학문 분야간 연구사업 지원 확대
- e-Science사업·글로벌 과학기술 협업연구망 등 사이버 공간에서 과학기술 연구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R&D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신규 추진

□ 지방 R&D 투자를 확대하여 지방주도의 혁신과 균형 발전 패러다임 정립을 지원

- '07년까지 R&D예산의 40% 수준 달성을 목표로 지방중소기업·지방대학·연구소간의 공동연구를 집중 지원(32%→34%)
- 산학협력 중심대학(300억원→570억원) 및 산학연 공동기술개발(391억원→421억원) 등에 대한 투자 확대
-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300억원), 지역임상연구센터(30억원), 지역특성화 연구개발(30억원) 등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신규 추진

□ 국가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여 R&D사업의 효율성 제고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전문성을 활용한 R&D예산의 전략적 배분 및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41억원→91억원)
- 출연연구소의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해 일반사업비를 기본사업비로 전환하는 등 연구비 지원방식을 개선

(단위: 억원)

구 분	'04 예산	'05 예산안	비 고
합 계	70,827	77,868	• 9.9% 증
■ 예산사업	60,995	67,230	• 10.2% 증
■ 기금사업	9,832	10,638	• 8.2% 증
• 기초연구	12,374	14,611	• 우수연구센터(622억원→670억원)
• 지방R&D	19,574	22,640	•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300억원→570억원)

3. 사회복지

□ 내년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규모는 37조원(14.4%, 4.6조원 증)

- 연금제도 성숙, 경기부진 등에 따라 연금·실업급여 등 사회보험지출이 대폭 확대(23.2조원→26.9조원, 전체증가액(4.6조원)의 80%)
- 복지분야에서도 성장잠재력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지원(1.2조원→1.5조원, 29% 증)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보육투자 확대, 청년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 내실화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을 확대(1,400천명→1,466천명)
- 11세 이하 아동과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신규

적용(180천명)

*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 : ('04) 22천명 → ('05) 202천명

-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범위 확대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 노인일자리 확대(25천명→35천명),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실시, 농어촌 복합노인시설 신축(5개소) 등 고령화사회 대비 투자를 확대
- 장애수당의 지급 범위를 중증장애인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 장애인 전체로 확대(137천명→276천명)
- 공부방 지원 확대(월 67만원→200만원), 모부자 가정 아동양육비 인상(월 2만원→5만원) 등 저소득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영유아 보육 지원체계를 수요자인 아동 중심으로 전환하고 보육투자를 전년 대비 50% 대폭 확대(4,050억원→6,077억원)

- 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평균소득의 60% 미만 계층까지 확대(전체 아동의 24%→35%)
- 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수준을 인상(각각 보육료의 60%, 40% → 80%, 60%)
- 도시가구 평균소득 미만 저소득층의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제도를 신설(30천명, 월 3만원~6만원)

□ 국가유공자 예우 개선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적 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

- 독립유공자 예우금 인상(월 20만원~60만원→60만원~100만원), 기본연금 5%, 부가연금 7% 인상 등
- 전역예정자 사회적응교육 확대(700명→3,000명), 제대군인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제대군인 창업지원시스템 구축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내실 있게 지원

- 노사협력사업, 신노사문화 추진, 노동위원회 역할 강화 등 노사갈등 사전예방 및 사후 분쟁조정을 위한 투자 확대
- 청년실업대책은 청년층이 선호하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
 - * 취업유망분야(428억원), 청년채용 패키지 훈련(175억원), 해외취업(107억원)
- 일자리 나누기 및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지원 신설
 - * 전문인력 채용지원금(78억원), 고용환경 개선지원금(204억원) 등

□ 암관리·금연 등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암센터 등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확충

- 암 무료검진 확대(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30%→50%), 저소득층 암치료비 신규지원 등 암관리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 흡연으로 인한 질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금연사업(80억원→251억원)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지역암센터 건립(6개소), 노인전문병원 신축(2개소), 도시지역 보건지소 신축(4개소) 등을 통해 공공보건의료기반을 확충

(단위: %)

구 분	'04 예산	'05 예산안	비 고
합 계	323,610	370,185	14.4% 증
■ 예산	128,688	136,031	• 기금이관 4,820, 지방이양 6,188억원('04년 기준) 미포함
■ 기금	194,922	234,154	• 국민연금 등 15개 기금
• 기초생활보장	38,306	41,628	• 기초수급자 +66천명, 만11세 이하 의료급여 적용 173천명
• 취약계층지원	8,671	9,293	• 노인일자리 25천명→35천명, 장애수당 137천명→267천명 등
	(7,305)	(8,309)	• 공공의료 확충 942억원, 건강생활실천 447억원 등
• 국민건강지원	43,568	49,884	• 국민연금 등 수급자 증가
• 공적연금	139,758	161,270	• 산재 5,843억원 증, 실업급여 4,115억원 증
• 노동	65,657	77,073	•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수준 향상
• 여성·보육	4,556	6,632	• 기본연금 5%, 부가연금 7% 인상
• 국가보훈	23,087	24,405	

* 관련기금(15개) : 복지부(국민연금, 국민건강증진, 응급의료), 노동부(고용보험, 근로자복지진흥,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 장애인고용촉진), 여성부(여성발전, 보훈처(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교육부(사학연금), 국방부(군인연금), 행정부(공무원연금), 총리실(복권기금)

4. SOC 분야

□ '05년 SOC 재정 투자(예산+기금)는 '04년 수준 유지 [도로부문 제외시 5.1% 증가]

- '90~'03년간 SOC 예산 증가규모(연평균 16.9%)는 일반회계 규모 증가율(연평균 11.9%)을 상회
- '00년 국토면적 대비 도로연장 OECD 국가 중 15위

○ 이에 따라 SOC 재정투자는 '04년 수준을 유지하되 투자재원의 다변화를 통해 SOC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충

- 민자유치, 연기금 여유자금의 유입 등 예산 외의 재원 활용
- 주공·토공 등 공기업 자체 재원조달을 통해 SOC 투자 확대('05년중 1.5조원 추가 투자)

□ SOC 부문간 구조조정을 통하여 투자의 효율성 제고

○ 도로의 투자비중을 축소하고 지하철·항만 등의 투자비중을 확대하여 SOC 투자의 효율성 제고

* 부문별 비중(예산기준) : 도로 48.2%→44.7%, 지하철 5.2%→7.3%, 항만 9.9%→10.3%

○ 도로는 신규사업을 최소화하고 기추진사업의 완공 위주로 투자

• 특히,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파주 LCD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지원 강화(2,445억원 →2,550억원)

○ 철도는 도로에 집중된 수송구조 개선 및 장거리·대용량 수송분담률 제고를 위해 지속 지원(25,298억원 →25,313억원)

• 특히, 복선화·전철화 등 기존선 수송능력 증대에 중점

○ 지하철은 지자체 부채해소 지원소요로 대폭 증대 (8,675억원→12,390억원)

• 건설비 국고지원비율 인상(50%→60%) 및 광역시의 지하철 부채 상환 지원(지하철 개통후 10년간 이자상환 지원 등)

○ 항만은 부산신항(4,358억원→4,482억원), 광양항(2,668억원→2,735억원) 등 신항만 중심으로 적극 지원(16,724억원→17,527억원)

○ 동북아 중추공항 육성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투자 확대(1,374억원→2,273억원) 및 지방공항 투자규모 조정(1,794억원→1,226억원)

• 항공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공항은 완공시기 연장

○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지원하고 수해 예방을 위해 치수부문에 지속적으로 투자

(단위: 억원)

구 분	'04 예산	'05 예산안	비 고
합 계	270,568	275,265	1.7% 증
■ 예산사업	167,745	169,588	1.1% 증
• 도로	81,154	76,024	• 도로부문 투자비중 축소
• 철도	25,298	25,313	• 전라선복선전철화(증 1,050억원)
• 지하철	8,675	12,390	• 부산(수영선), 대구(2호선) 완공소요 지원
• 항만	16,724	17,527	• 부산신항(증 124억원), 광양항(증 67억원)
• 공항	3,617	3,954	• 인천국제공항(증 899억원), 일반공항(△568억원)
• 주택	10,226	10,778	• 국민임대주택 건설(증 811억원)
• 수자원	14,773	14,003	• 신규 댐 건설 축소
■ 기금사업	102,823	105,677	2.8% 증
• 국민주택기금	102,823	105,638	• 장기 공공임대주택(43,435억원) 등

5. 농어촌

(조원)

□ 쌀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

○ 119조원 계획상의 투융자사업은 '04년 대비 10.1% 증가한 8.7조원을 지원(7.9조원→8.7조원)

• 농어촌분야 전체 증가율 7.5%보다 높은 수준

	'04	'05	증가율
· 농어촌 합계	12.4	13.4	7.5
· 투융자사업(119조 대상)	7.9	8.7	10.1
· 기타(채무상환, 단기융자금 등)	4.5	4.6	2.2
• 농협자금(1조원)포함, 119조원 계획상 '05연부액 9.7조원 차질 없이 지원			

- 농어민 소득보전을 위해 복지·직불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
 - 농작물 국가재보험기금 신규 설치(300억원) 및 경관보전 직불제 도입(800ha)
 -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 확대(30%→40%) 등
-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농규모화 지원 확대(3,092억원→4,769억원, 농지관리기금)
- 농어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생명공학 등을 활용한 R&D 투자 확대(3,315억원→3,626억원)
 - Bio장기 생산연구사업(45억원) 등 신규지원
- 우리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수출홍보 및 직수출 지원(108억원→127억원)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

- 국민 식생활안전 및 재해대비 안전성 제고 투자 확대
 - 구제역, 가금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가축방역 예산 대폭 확충(277억원→505억원) 및 우수 농산물 관리제 본격 추진(26억원)
 - 초대형 헬기 도입 등 산불 방재 투자 확대(626억원→702억원) 및 수리시설 개보수 등 재해방지투자 지속 지원(3,200억원)
-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투자 효율성을 제고
 - 1천만원~2천만원 농기계 구입자금을 종합자금으로 신규전환, 대출심사 강화 등을 통해 부실대출 축소
 - 328개 RPC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운영자금 지원금 리 차등화

(단위: 억원)

구 분	'04 예산	'05 예산안	비 고
합 계 (119조원 사업)	124,409 (79,107)	133,697 (86,892)	7.5% 증 (10.1% 증)
■ 예산사업	80,994	89,857	10.9% 증
• 생산기반조성	20,400	19,776	• 중규모 용수개발(3,187→2,716)
• 부담경감·소득보전	24,631	32,629	• 부채대책 등(6,713→9,876)
• 기술개발·인력양성	5,990	6,969	• 직불성 예산(7,779→8,478)
• 기타	29,973	30,483	• 농어업 R&D(3,315→3,626)
			• 생산유통 6,130, 수급안정 14,412 등
■ 기금사업	43,415	43,840	1.0% 증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694	19,152	• 산지유통전문조직 지원(2,505→4,000)
• 농지관리기금	7,131	9,171	• 영농규모화사업(3,092→4,769)
• 축산발전기금	7,459	7,133	• 산지생산유통 지원(1,532→1,632)
• 기타	8,131	8,384	• FTA기금 1,650, 수산발전기금 5,527 등

6. 산업·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분야 지원규모는 전년 대비 1.6% 감소하였으나, 금융지원 제외시 6.1% 증가
- R&D, 수출, 외국인투자 등 산업인프라 구축지원 확대(9.5조원→10조원)

- IMF 이후 급속히 증가한 신용보증 공급 등 금융지원은 적정수준으로 조정(1.9조원→1.2조원)
 - * 신용보증공급 추이: ('98) 12조원→('00) 21조원→('04) 42조원
 - * GDP 대비 신용보증비율은 우리나라가 9.8%로서 일본 7.5%, 미국 0.1% 등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

□ 중소기업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1,331→1,447억원), 부품소재 기술개발(1,328억원→1,600억원) 등 R&D기반 확충
- 직무기피요인 해소(287억원), 인력구조 고도화(신규 38억원) 등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
- 중소기업간 공동협력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협동화자금 공급규모 확대(1,800억원→2,400억원)

□ 외국인 투자유치와 중소기업 일류상품의 수출을 적극 지원

-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보조(cash grant) 예산을 신설(50억원) 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되,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경쟁 유도
- 한국국제전시장(202억원), 광주국제무역전시장(169억원), Invest Korea Plaza(60억원) 등 무역·투자관련 인프라 확충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150억원), 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신규 30억원) 등을 통해 수출형 선도 중소기업을 육성

□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지원을 내실화

- 신용보증기관 출연은 양적인 확대보다는 금융기관이 책임을 분담하는 위탁보증제도, 보증료 인상 등 제도개선 추진
 - 시장원리에 따른 민간금융기능 활성화 및 도덕적 해이 방지 유도
 - * 신용보증기관 출연 : ('04본예산) 5,900억원 → ('04추경) 11,400억원 → ('05안) 6,500억원
-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공급규모를 대폭 확대(3,500억원→5,100억원)

□ 신·재생에너지 등 고유가대비 재정지원을 확대

-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한 지원 확대(1,757억원→2,387억원)
 - 이와 병행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가 차액보전 사업비도 대폭 확대(전력기금, 63억원→209억원)
- 베트남, 리비아 등 해외자원 개발 지원 확대(3,198억원→3,573억원)

(단위: 억원)

구 분	'04 예산	'05 예산안	비 고
합 계	113,712	111,877	1.6% 감
금융지원 제외시	94,554	100,276	6.1% 증
■ 예산사업 • 산업기술개발 • 무역·투자유치 • 중소기업 금융지원 • 에너지	61,800	58,065	6.0% 감
	13,800	13,965	• 부품소재 1,328→1,600, 산업혁신 3,170→3,450
	4,453	4,280	• 외국인투자유치 600→902
	14,259	9,571	• 신용보증기관 출연 11,400→6,500
	21,343	20,384	• 석탄공사 용자 1,200→0
■ 기금사업 • 중소기업진흥·산업기반기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 특정물질사용기금	51,912	53,812	3.7% 증
	42,214	42,623	• 중소기업 용자 33,870→34,088
	9,621	11,114	• 전원 개발용자 700→1,500
	77	74	

7. 환경

□ 맑고 깨끗한 대도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보전부 문 예산을 대폭 확대

- 경유차의 배출가스 감축장치 부착(1,618대→33,926대), 저공해 자동차 보급(200대→1,150대) 등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을 본격 추진(159억원→1,300억원)
- 대도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시내버스·청소차를 천연가스차량으로 교체(2,400대→2,500대)
- “새집 증후군” 등 신중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내 공기질관리대책을 신규 추진(45억원)

□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개발 및 수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

- 광역상수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2,589억원→4,611억원)하고, 농어촌·도시지역 등 낙후지역의 상수도 개발을 지원(1,177억원→1,464억원)
- 생활하수 및 공단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11,580억원→12,326억원)하여 수질개선과 함께 지역균형개발을 촉진

-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질개선 기반조성 및 주민지원 강화(4대강 수계기금, 5,271억원→6,208억원)

□ 자연환경 보전 및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 확대

- 국립공원 등 자연환경 보전투자를 대폭 확대(1,087억원→1,262억원)
 - 국립공원 및 생태계 보전지역에 대한 자연생태계 해설요원 운영을 확대(26억원→53억원)
 - 자연생태계 보전과 환경친화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공원의 편의·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552억원→610억원)
-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285억원→315억원)

□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환경R&D투자 확대

- 환경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투자를 확대(934억원→966억원)
- 지자체 및 산학협력체인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지속적으로 지원

(단위: 억원)

구 분	'04 예산	'05 예산안	비 고
합 계	35,142	40,023	13.9% 증
■ 예산사업 • 상하수도·수질부문 • 폐기물 부문 • 대기보전부문 • 자연보전 등 기타	29,871	33,815	13.2% 증 • 하·폐수처리장 설치(11,580→12,326) • 쓰레기 처리시설(1,251→1,077)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159→1,300) • 생태계 해설요원 운영(26→53)
■ 기금사업 • 4대강 수계기금	5,271	6,208	17.8% 증 • 수질개선기반 조성 등

8. 문화·관광·체육·청소년

□ 문화향수 기회 확대로 우리 국민의 문화적 역량 강화

- 초·중·고교 강사풀 지원 확대, 문예시설의 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75억원 →156억원)
- 문화소외지역 순회공연 확대(40억원→48억원) 및 문화·관광 바우처제(문화 40천명, 관광 1,200명) 도입 등 소외계층 지원 강화

□ 문화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반 조성 지속 추진

- 방송영상제작시설(154억원) 등 H/W와 창작소재 개발, 전문인력 양성, 마케팅 등 S/W(859억원) 병행 지원
- 문화 상품개발 및 유통구조 현대화를 위해 문화산업 체에 대한 저리 융자도 지속 지원 (515억원)

□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비, 건전 여가활동 지원 강화

- 관광자원개발(1,011억원→1,183억원), 체육시설(1,104억원→1,186억원), 청소년수련시설(96억원 →379억원), 여가캠핑장 신규 조성(2개소)
- 호텔, 테마공원 등 관광시설·기반 확충을 위한 융자 지원도 확대(1,777억원→2,427억원)
- 생활체육교실 등 참여형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160억원)하고,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을 강화(111억원 →130억원)

□ 동북아시대를 주도할 문화성장거점 육성 및 문화산업 세계화 추진

- 광주 문화중심도시 「아시아 문화의 전당」 부지매입 비를 신규 반영하고, 부산 영상도시 영상센터 건립을 지속 지원
-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문화산업연구센터 5개소를 지방대학에 신설
- 2005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참가를 계기로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적극 홍보(신규 130억원)

(단위: 억원)

구 분	'04 예산	'05 예산안	비 고
합 계	22,596	25,152	11.3% 증
■ 예산사업	12,960	13,713	5.8% 증
• 문화예술·문화산업	6,978	7,336	• 광주문화중심 100→1,031, 문예시설 735→576
• 관광	1,993	1,893	• 관광자원개발 1,011→1,183
• 체육·청소년	1,271	1,616	• 청소년시설 96→379, 체육시설 480
• 문화재	2,718	2,868	• 문화재 보수정비 1,511, 고도보존 25
■ 기금사업	9,636	11,439	18.7% 증
• 문화예술 진흥	866	1,202	• 문화소외지역 전국순회사업 40→48
• 문화산업 진흥	593	518	• 문화산업 상품개발 융자 515
• 방송발전	1,333	1,454	• 시청자 미디어센터건립 70→94
• 관광진흥개발	2,972	4,029	• LA 해외관광문화센터건립 140
• 체육·청소년육성	3,763	4,072	• 축구 인프라구축(신규) 195
• 문화재(복권기금)	109	164	• 청소년 수련활동지원 113→130
			• 문화재 재해대비 긴급보수 70

9. 지역균형발전

□ '05년 균특회계는 5.5조원 규모로 편성(50,145억원→54,980억원, 9.6% 증)

- 지역개발사업은 지출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편성 (3.3조원)
 - 농산어촌 개발은 소득기반 구축에 중점 지원 (14,409억원)
 - 신활력지역 등 낙후지역 개발은 별도 지원(4,313억원→6,937억원)

- 지역의 특화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과제 사업 적극지원
 - 산업단지클러스터(300억원), 대덕 R&D특구(100억원) 등 신규지원
 - 지역산업진흥사업(4+9개지역) 지원 확대(2,345→3,600억원)
- 지역 인적자원 및 R&D 등 지역 혁신역량 확충
 -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2,200억원→2,500억원), 산학연 협력체제활성화(300억원→450억원) 등 연구·인력개발 분야 지원

(단위: 억원)

구 분	'04 예산	'05 예산안	비 고
지역균형발전 계	50,145	54,980	9.6% 증
■ 농산어촌개발	14,171	14,409	• 소득기반구축, 생산기반 정비 등 • 국지도, 주거환경개선 등 • 기초지자체(70개)의 지역혁신 유도 • 4+9개지역(3,600억원), 산단클러스터 등 • 지방대학육성, 지방과학기술혁신 등 • 관광지개발, 지역환경개선 등
■ 지역 SOC	12,615	12,490	
■ 신활력지역	-	2,000	
■ 지역산업진흥	3,565	5,567	
■ 지역인력양성	4,180	4,836	
■ 지역문화관광 등	15,614	15,678	

10. 사회안정

□ 법률구조 확대, 재소자 처우개선, 외국인 체류관리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 지원 강화

-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법률구조 대상자를 전국민의 32.8%→37.1%로 확대(194억원→210억원)
- 인권침해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재소자의 처우 및 수용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861억원→904억원)

-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04. 8)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관리 지원 확대(32억원→54억원)

□ 국민들의 생활안정 및 해상치인력 강화를 위해 지원강화

-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순찰지구대 확충 및 지역순찰 강화(2,233억원→2,453억원)
- 침단범죄예방을 위해 과학수사장비 보강(51억원→64억원)
- 해양광역경비체제 구축을 위해 노후함정 교체 및 항공기 도입을 적극 추진(1,067억원→1,223억원)

(단위: 억원)

구 분	'04 예산	'05 예산안	비 고
합 계	75,644	81,020	7.1% 증
■ 법무부	16,097	17,216	• 법률구조 210, 수용관리 904 • 지역순찰 2,453, 수사장비 64 • 함정건조 1,033, 항공기 190
■ 경찰청	54,241	57,956	
■ 해양경찰청	5,306	5,848	

11. 국 방 비

□ 자주국방 역량 확충을 위한 전력투자 강화(비중 : 33.2%→34.0%)

- F15K 전투기, KDX-Ⅲ 구축함 등 핵심전력에 집중 투자
- 조기경보통제기 등 정보전력 확충사업 본격 추진
- 첨단무기체계 자체개발을 위해 국방 R&D 확대(비중 : 4.2%→4.5%)

□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 사기·복지 증진에 역점

- 내무반시설을 침대형으로 전환(육군 기준 80개 대

대 5,121억원)

- '08년까지 448개 대대(육군 시설의 40%) 대상으로 개선

- 사병봉급을 1만원 인상(월 3.5만원→4.5만원)
- 전투화, 방탄헬멧, 런닝·팬티 등 품질개선

□ 기타 특이소요 반영

- 용산기지 이전 대체부지(52만평) 매입소요 반영
- 이라크 추가파병 실소요 지원(3,700명, 1,609억원)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특별법 제정소요는 연차적으로 지원
- JSA(공동경비구역) 등 주한미군 임무전환 소요 반영

(단위: 억원)

구 분	'04 예산	'05 예산안	비 고
합 계 (일반회계)	189,412	208,226	9.9% 증
■ 경상운영비	126,482	137,3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병봉급 인상 2,331→2,998 • 사병내무반 개선 3,822→5,121
■ 전력투자비	62,930	70,8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라크 파병 265→1,609 • 첨단·정보전력 확충, R&D확대

12. 통일·외교

□ 남북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대폭 확충(1,714억원→5,000억원)
- 개성공단 건설(285억원), 남북철도·도로 연결(1,421억원) 등 교류협력사업 지원 확대

□ 탈북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

- 탈북자들이 우리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간 연장(2개월→3개월)

- 탈북자 정착금 적정소요 반영

※ 지급대상인원 : ('04) 1,029명 → ('05) 1,512명

- 탈북자 청소년학교 설립·운영

□ 국제사회에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 이라크 재건지원 등 개도국 원조 확대

※ KOICA출연 : ('04) 1,184억원 → ('05) 1,596억원 (34.8% 증액 반영)

- 국제기구 분담금도 적정소요 반영

※ ('04) 11,860만달러 → ('05) 12,795만달러(미화 기준 7.9% 증액 반영)

□ 외교역량 제고 및 재외국민 보호 강화

- 싱가포르, 아세안, 일본 등과 FTA 협상 본격화(3.5억 원→9.8억 원)
- 재외국민보호 Call Center 설치운영 지원

□ APEC 등 국가행사 적극 뒷받침

- APEC 행사관련 비용 126억 원, 부산시 APEC관련 시설 지원 335억 원

(단위: 억 원)

구 분	'04예산	'05예산안	비 고
합 계	13,818	19,442	40.7% 증
■ 예산사업	4,492	5,242	16.7% 증
• 통일	654	574	• 남북회담청사확보 완료(△185억 원)
• 외교	3,838	4,668	• 탈북자정착지원 확대(300억 원→365억 원)
			• KOICA출연 확대(1,184억 원→1,596억 원)
■ 기금사업	9,326	14,200	52.3% 증
• 남북협력기금	7,067	11,263	• 개성공단지원(285억 원), 경수로사업(5,092억 원)
• 국제교류기금	236	409	• 재외동포사업이관(133억 원)
• 대외경제협력기금	2,023	2,528	• 대개도국차관사업(2,000억 원→2,500억 원)

13. 공무원 인건비 및 인력증원

□ '05년 공무원 인건비 예산 증가율은 6% (17.9조원→19.0조원)

-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호봉승급에 따른 자연증가 등이 4% 수준
- 일률적인 기본급 인상은 지양하고, 1만명 수준의 인력 증원으로 행정서비스 향상, 일자리 나눔에 기여
 - 학급 신·증설에 따른 교원 증원(5,400명), 민생치안 인력보강(경찰·해경 2,600명), 식품안전 연구 등 행정서비스 개선(2,000명)
- 모범공무원 수당(월3만원→5만원), 위험근무수당(월2~3만원→3~4만원) 등 일부 수당 인상
 - * 민간중견기업(100인 이상)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인사위('00초) 88.4%→('03말) 97.3%→('04말) 97.8

2005년 국세세입예산(안)

※ 이 자료는 2004년 9월 23일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발표한 「2005년 국세세입예산(안)」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2005년 국세수입은 '04년 예산(122조 686억원) 대비 7.0%(8조 5,446억원) 증가한 130조 6,132억원
- 일반회계 : '04년 예산 대비 8.8%(9조 8,118억원) 증가한 121조 498억원
 - 특별회계 교통세의 일반회계 전환분*(1.6조원)을 제외할 경우 '04년 예산 대비 7.4% 증가
- 특별회계 : '04년 예산 대비 △11.7%(△1조 2,672억원) 감소한 9조 5,634억원
 - 특별회계 교통세의 일반회계 전환분(1.6조원)을 제외

- 할 경우 '04년 예산 대비 3.4% 증가
- * '05년부터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특별회계 교통세가 일반회계로 전환
- 조세부담률은 19.7%로 '04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 * 조세부담률(%) : ('03) 20.5 ('04 전망) 19.7 ('05예산) 19.7
- 직접세 비중은 52.2%로 금년 전망(53.1%)과 비슷한 수준

I. 2005년 국세세입예산(안)

1. 개요

- 2005년 국세수입은 '04년 예산(122조 686억원) 대비 7.0%(8조 5,446억원) 증가한 130조 6,132억원 수준
- 일반회계는 '04년 예산보다 8.8% 증가한 121조 498억원
 - 특별회계 교통세의 일반회계 전환분*을 제외시 7.4% 증가

- 특별회계는 '04년 예산보다 △11.7% 감소한 9조 5,634억원
 - 특별회계 교통세의 일반회계 전환분을 제외시 3.4% 증가
 - * '05년부터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특별회계 교통세(전체 교통세의 14.2%, '05년 1.6조원)가 일반회계로 전환
- '04년 기업실적 호조로 법인세의 증가 예상
- 소득세는 세율 1%p 인하, 부동산시장 안정 등의 영향으

로 증가폭 둔화 전망

- * 12월 결산법인 535개사 03년 대비 04상반기 순이익 89% 증가
- * '05년 민간소비증가를 4.0% 내외, 수출증가를 10% 내외로 전망
- * '05년 주택가격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의 추진 등으로 안정세 전망

□ 2005년 국세세입 전망: 130.6조원

(단위: 조원)

구 분	2004년 예 산	2005년 예산(안)	'04년 예산 대비	%
총 국 세	122.1	130.6	8.5	7.0
○ 일반회계	111.2	121.0 (119.4)	9.8 (8.2)	8.8 (7.4)
○ 특별회계	10.9	9.6 (11.2)	△1.3 (0.3)	△11.7 (3.4)

* ()안은 특별회계 교통세의 일반회계 전환분을 제외한 증감액(비율)

2. 일반회계 국세세입예산(안)

□ 2005년 일반회계 국세세입은 121.0조원 수준으로 '04년 예산 대비 8.8%(98,118억원) 증가

- 내년도 일반회계 국세세입 예산의 증가율(8.8%)은 총 국세 증가율 7.0%보다 높은 수준으로
 - 이는 '05년부터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특별회계 교통세(전체 교통세의 14.2%, 1.6조원)가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데 기인
 - 이를 제외할 경우 일반회계 증가율은 '04년 예산 대비 7.4% 증가하는 수준
- 내국세는 '04년 예산보다 8.3% 증가 전망
- 교통세와 관세는 휘발유·경유 소비전망과 수입규모 등을 감안시 각각 1.1%(일반회계 17.9%), 3.1% 증가 전망
 - * 휘발유·경유 소비전망: 휘발유(4.8%↑), 경유(5.7%↑)
 - * 수입규모: (04) 2,250억달러 (05) 2,520억달러(12%↑)

(단위: 억원, %)

	'04년 예산	'05년 예산(안)	'04년 예산대비	
			증감액	증감률
○ 일반회계	1,112,380	1,210,498	98,118	8.8
- 내국세	940,316	1,018,742	78,426	8.3
- 교통세	97,511	114,929	17,418	1.1(17.9) ¹⁾
- 관 세	74,553	76,827	2,274	3.1

주: 1) 교통세 전체 '04년 예산은 113,649억원으로 '05년 교통세는 '04 예산 대비 1.1% 증가

3. 특별회계 국세세입예산(안)

□ '05년 특별회계 국세세입은 9조 5,634억원 수준으로 '04년 예산 대비 △11.7%(1.3조원) 감소

-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특별회계 교통세(전체 교통세의 14.2%, 1.6조원)를 제외할 경우 특별회계는 '04예산 대비 3.4% 증가

(단위: 억원, %)

	'04년 예산	'05년 예산 (안)	'04년 예산대비	
			증감액	증감률
○ 특별회계	108,306	95,634	△12,672	△11.7 ¹⁾
- 주 세	27,969	29,392	1,423	5.1
- 교 통 세	16,138	-	△16,138	△100
- 교육세	42,386	39,772	△2,614	△6.2
- 농어촌특별세	21,813	26,470	4,657	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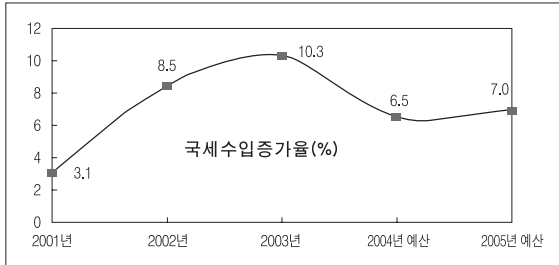
II. 2005년 국세세입예산(안)의 주요 특징

1. '05년 총국세 세입 증가율은 7%로 '04년 세입예산 증가율보다 0.5%p 상승

□ '05년 총국세수입은 '04년 예산 대비 7.0% 증가하여 '04년 세입예산의 국세수입 증가율 6.5%보다 0.5%p 상승

* 민간소비증가율 전망(%): (04) 0.5 (05) 3.8

* 수출(%): (04) 30.0 (05) 10.0%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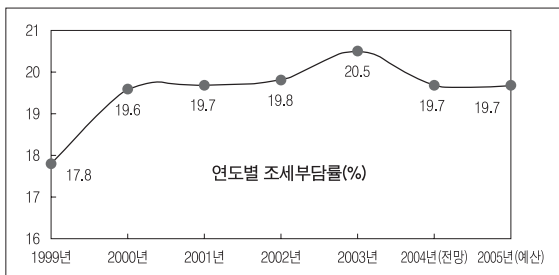


* 연도별 총국세 추이(억원, %)

	'01	'02	'03	'04예산	'05예산
총국세 (증가율)	957,928 (3.1)	1,039,678 (8.5)	1,146,642 (10.3)	1,220,686 (6.5)	1,306,132 (7.0)

2. 조세부담률은 금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 조세부담률은 법인세율 인하(2%p), 소득세율 인하(1%p),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의 축소 등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 (19.7%) 유지 전망



<참 고> OECD 회원국들의 조세부담률 평균('02년) : 27.3%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0개국 중 27번째 수준

3. 직접세 비중은 금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 내년 총조세(국세+지방세) 중 직접세 비중은 52.2%로
 - 소득세율,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05년에 직접세 비중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과거 5년 평균('00~'04

년 중 51.7%) 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직접세 비중(%)

(00) 51.2 (01) 50.4 (02) 50.6 (03) 53.1 (04전망) 53.1
(05예산) 52.2

* 외국의 직접세 비중(%)

구 분	미 국	일 본	독 일	프랑스	이태리
조세('00)	79	67	52	52	58

주: 일본은 03예산, 기타 국가는 00년 기준(일본 대장성, '03. 4)

<참고 1> 2005년 세목별 국세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04년 예산	'05년 예산(안)	'04년 예산 대비	
			금액	비율
총 국 세	1,220,686	1,306,132	85,446	7.0
○ 소득세	220,077	254,829	34,752	15.8
○ 법인세	236,081	263,364	27,283	11.6
○ 상속증여세	11,954	19,971	8,017	67.1
○ 부가가치세	371,966	390,381	18,415	5.0
○ 특별소비세	58,929	51,339	△7,590	△12.9
○ 증권거래세	17,899	16,271	△1,628	△9.1
○ 인지세	4,798	4,944	146	3.0
○ 과년도수입	18,612	17,643	△969	△5.2
○ 교통세	113,649	114,929	1,280	1.1
○ 관 세	74,553	76,827	2,274	3.1
○ 주 세	27,969	29,392	1,423	5.1
○ 교육세	42,386	39,772	△2,614	△6.2
○ 농특세	21,813	26,470	4,657	21.3

보유세제 개편 기본방안 확정

※ 이 자료는 2004년 9월 16일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발표한 「보유세제 개편 기본방안 확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 내용

- 대통령께서는 2004. 9. 15(수) 오후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회의(2차)를 주재하셨음
-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에 이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심의하였음
 - 주택에 대하여 토지·건물을 구분평가·구분과세하는 방안과 통합평가·통합과세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음
 - 50년 이상 시행해 온 현행 보유세 과세방식(구분평가·구분과세)으로는 세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시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번에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은 통합평가·통합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음
- 통합평가로 인해 주택의 과표가 크게 늘어나지만 이에 맞
 - 춰 세율체계를 전반적으로 인하조정할 예정이므로
 - 통합평가·통합과세한다 하여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을 것이며
 - 재산가액에 상응하게 세부담을 하게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공평해지게 됨
- 앞으로 세율체계의 개편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과세방안의 마련을 위해
 - 조속한 시일 내에 인별 주택통합D/B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 10월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여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I. 현행 보유세제의 문제점

- 토지·건물을 현행과 같이 구분평가·구분과세 하는 한
 - 아파트와 단독주택간, 고층아파트와 저층아파트간, 도시와 지방간 세부담의 불형평 문제 해소 불가능

- 부동산 보유자는
 -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평가액(과세시가표준액)이 얼마인지,
 - 자신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지,
 -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하기도 곤란함

〈사례〉	기준시가	03 과표	세액	04 과표	세액
지방APT 75평(①)	3.2억	7,700만원	155만원	6,700만원	79만원
서울APT 26평(②)	3.6억	3,700	9	5,800	17
①/②	0.9배	2.1배	17배	1.2배	4.6배

II. 보유세제의 획기적 개편방안

1. 개편방향

- (기본목적)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국민들이 예측가능한 보유세제를 만들
- (과세체계) 실제 재산가액에 따라 보유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 주택은 토지·건물을 통합평가·통합과세
 - ※ 주택외의 토지·건물은 통합평가기법 개발후 통합과세 추진
 - 토지과표·건물과표를 실거래가액에 근접하게 현실화
 - ※ 예 : 공동주택은 국세청기준시가 적용
- (종합부동산세) 주택·토지 과다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이원화하여
 - (1차) 시·군·구 : 낮은 세율로 과세
 - (2차) 국 가 :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국세) 과세
 - 시·군·구에서 납부한(1차) 세액은 전액공제
 - 종합부동산세액(국세)은 전액을 시·군·구에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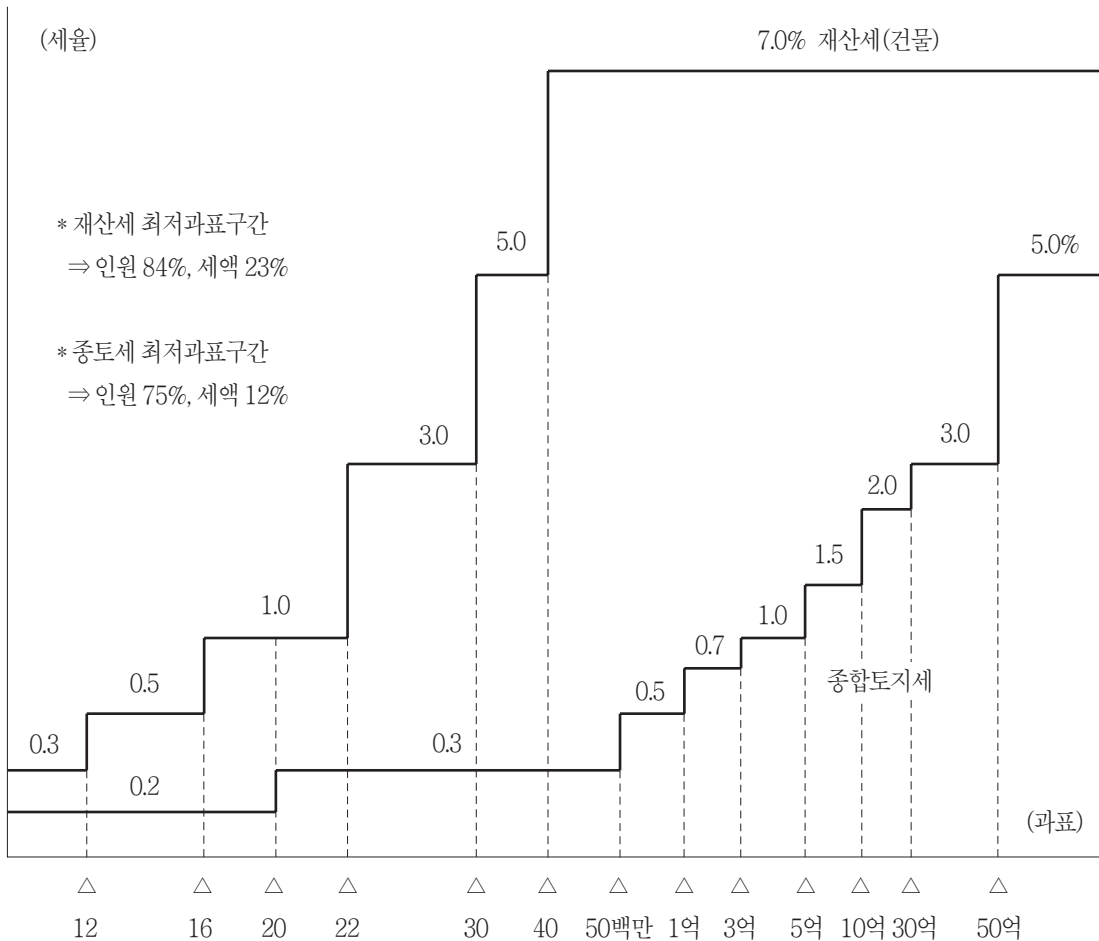
2. 주택에 대한 과세

현 행	개 편 안
① 과세방법 :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과세 ○ 주거용 건물 : 물건별로 재산세 과세(인별합산 안함) ○ 주택용 토지 : 나대지와 함께 인별로 합산하여 종합토지세 과세	① 과세방법 : 주택은 토지·건물을 통합과세 (1차) 시·군·구에서는 관내 주택에 대해 낮은 세율로 재산세 과세 (2차) 국가에서는 인별로 전국의 소유주택가액을 합산하여 일정액 이상인 자는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 1차 세액은 전액공제 - 2차 세액은 전액 시·군·구 양여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 금액은 인별주택DB 구축후 10월중 결정
② 과세표준 : 토지·건물 구분평가 ○ 토지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 ○ 건물 : 지방세 시가표준액	② 과세표준 :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평가 ○ 공동주택 :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평가 ○ 단독주택 : 시가에 근접하는 통합평가방법 개발
③ 세율체계 : 과표현실화율이 낮은 대신 세율은 급진적으로 높아짐 ○ 토지(종합토지세) 0.2%~5% ○ 건물(재산세) 0.3%~7%	③ 과표가 대폭 현실화되므로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세율체계 조정 ○ 세율 : 최저·최고 세율 인하 조정 ○ 세율구간 : 현재보다 넓게 책정 ※ 세율은 인별 주택D/B 구축후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 □ 통합과세로 인하여 현재보다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를 둠

〈참고 1〉평가액 비교

주 택	① 구분평가지 (토지·건물)	② 통합평가지 (기준시가)	②/①
대치동 32평 APT	1.6억원 (1.2, 0.4)	5.5억원	3.4배
" 42 "	2.0 " (1.5, 0.5)	8.1 "	4.0 "
등촌동 53 "	2.2 " (1.5, 0.7)	10.7 "	4.8 "

〈참고 2〉현행 재산세, 종토세 서울체계



3. 주택 외의 건물에 대한 과세

□ 과세방법 : 현행과 같이 물건별로 단일세율로 지방세만 과세함

현행	개편안
① 과세표준 : 지자체에서 결정	① 과세표준 : 법령에 직접 규정
② 세율 : 0.3% 단일세율	② 세율 : 단일세율로 하되 구체적인 세율은 과표현실화 수준을 감안하여 인하조정

4. 주택 외의 토지에 대한 과세

□ 과세방법 : 현행과 같이 인별로 합산과세함

현행	개편안
□ 나대지, 주거용 건물 부속토지 : 종합토지세 ○ 인별로 합산하여 0.2%~5% 세율	□ 주거용 건물 부속토지 : 주거용 토지와 함께 주택 통합과세 □ 나대지 (1차) 시·군·구 : 관내지역 토지에 대해 낮은 세율로 토지세 과세 (2차) 국가 : 인별로 전국소유토지를 합산,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 1차 세액은 전액공제 - 2차 세액 전액 시·군·구 양여
□ 사업용토지 : 인별로 합산, 0.3%~2% 세율	□ 사업용토지 : 과세방법은 나대지와 같음 (1차) 시·군·구 : 관내지역 토지에 대해 낮은 세율로 토지세 과세 (2차) 국가 : 인별로 전국소유토지를 합산,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 과세표준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군·구에서 결정	□ 과세표준 : 법령에 직접 규정

5. 개편 효과

-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통합과세함에 따라 지역별·자산별·주택종류별 다양한 세부담 불형평 문제 해소 가능
- 보유재산의 시가에 상응하는 적정 세부담 체계를 확립하여 보유과세의 정상화 기틀 마련
- 재정이 취약한 시·군·구에 종합부동산세를 더 많이 양여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도모

Ⅲ. 거래세 보완방안

①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보완사항

- ※ 현재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건교부소관)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
- '05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하여 계약서 사본 제출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 개인간 거래시에도 실거래가격 과세 불가피하게 되어
 - 개인간 거래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부담이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05년 상반기중에 지방세법(또는 조례)을 개정하여
 - 실거래가 신고에 따라 거래세 부담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방안 적극 추진

② 보유세 강화에 따른 거래세 완화

- 그동안 재산과세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유

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보유세와 거래세는 그 세입의 귀속주체가 다르기 때문에(보유세: 기초자치단체, 거래세: 광역자치단체)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거래세 인하가 용이하지 않음

이를 위하여 이번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국세로 징수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거나 국세 중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하여

배분·이양되는 금액만큼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음

Ⅲ. 추진일정

① 전산 Data Base 구축, 시뮬레이션 분석(9월~10월중)

세율체계 설정 등을 위한 시뮬레이션 D/B 구축

향후 주택DB·토지DB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분석할 내용

○ 세율체계(최저세율, 최고세율, 세율구간 등)

○ 인별 주택보유 현황 및 보유가액별 분포표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준금액

○ 전체적인 세부담 수준

○ 과세체계 변동에 따른 개인별 세부담액 증감 내역

② 단독주택 종합평가기법 개발(10월말 까지)

단독주택에 대하여도 공동주택과 같이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기법 개발

행자부, 건교부, 한국감정원이 공동으로 수행

③ 보유세제 개편안 확정·발표(10월말 까지)

10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방안 확정

종합부동산세법(안) 및 지방세법개정(안) 작성

④ 여론조사 실시(10월말)

보유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국민의 여론 수렴 및 보유세제 개편안에 대한 전반적 평가 조사

여론조사 결과는 종합부동산세 입법안에 반영

⑤ 법안 국회제출(10월말 또는 11월초)

금년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 심의

⑥ 시행

'05. 1. 1부터 시행

※ 현행 지방세 납부기간은 종합부동산세 실시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음

○ 재 산 세 : 현재 납기 7월말

○ 종합토지세 : 현재 납기 10월말

'04년 2/4분기말 현재 총 대외채무·대외채권 현황(잠정)

“순채권 증가, 단기대외지급능력은 안정수준을 지속 유지”

※ 이 자료는 2004년 9월 18일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에서 발표한 「'04년 2/4분기말 현재 총 대외채무·대외채권 현황(잠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 내용

- '04. 2/4분기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 대외채무는 전분기말 보다 7억불 증가한 1,697억불, 대외채권은 분기중 87억불 증가한 2,516억불로 집계됨
- 장기외채는 1,121억불로서 비거주자의 국채·통안증권 투자 감소(7억불), 은행의 차입금 상환(8억불)에도 불구하고 기업 등의 외화증권발행(17억불), 수출선수금 증가(13억불) 등으로 분기중 16억불 증가하였고
- 단기외채는 576억불로서 비거주자의 은행 예수금 감소(14억불), 원유단기차입 증가(2억불)등으로 분기중 9억불 감소하였음
- 한편, 순채권은 '04. 1/4분기말 보다 80억불 증가한 819억불로서 2000년 6월 이후 순채권 국가 기초를 지속 유지하고 있음
- 단기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지표는 안정수준을 유지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은 전분기말 대비 1.3%p 하락한 34.5%, 유동외채비율은 2.2%p 하락한 45.7%로서 안정수준(각각 60%, 100%미만)을 견지하고 있음

(단위: 억불)

	'97말	'98말	'99말	'00말	'01말	'02말	'03말	'04. 3말	'04. 6말	분기증감
대외채무(A)	1,742	1,638	1,529	1,485	1,308	1,440	1,609	1,690	1,697	7
장 기	1,105	1,249	1,105	991	889	939	1,056	1,105	1,121	16
단 기	637	389	424	494	419	501	553	585	576	△9
대외채권(B)	1,061	1,293	1,461	1,674	1,655	1,861	2,259	2,429	2,516	87
순채권(B-A)	△681	△345	△68	189	347	421	650	739	819	80

'04. 2/4분기말 현재 총대외채무는 전분기말보다 7억불 증가한 1,697억불 수준을 나타낸 반면, 총대외채권은 분기중 87억불 늘어나 2,516억불을 기록
 ⇒ 순채권은 분기중 80억불 증가한 819억불 수준을 시현

1. 총 대외채무 현황

□ '04. 2/4분기말 현재 총 대외채무는 전분기말 대비 7억불 증가한 1,697억불을 시현

- 부문별로는
 - 일반정부·통화당국은 IBRD 등 공공차관 순상환(1.3억불), 비거주자의 국채·통화안정증권투자 등 감소(7.7억불)로 분기중 10억불 감소['04. 6월말 현재 172억불, 총외채의 10.1%]
 - 은행부문은 외은지점의 비거주자 외화예수금 감소(18억불)등으로 분기중 19억불 감소['04. 6월말 현재 751억불, 총외채의 44.3%]
 - 기타부문은 기업의 선박 등 수출호조에 의한 수출선수

금 증가(15억불), 외화증권 발행(17억불) 등으로 분기중 36억불 증가['04. 6월말 현재 774억불, 총외채의 45.6%]

- 장단기별로는
 - 장기외채는 비거주자의 국채·통안증권투자 감소(7억불), 은행의 외화 차입금 상환(8억불), 기업 등의 외화증권발행(17억불), 수출선수금 증가(13억불)로 분기중 16억불 증가['04. 6월말 현재 1,121억불, 총외채의 66.1%]
 - 단기외채는 비거주자의 은행 예수금 감소(14억불), 원유단기차입 증가(2억불)등으로 분기중 9억불 감소['04. 6월말 현재 576억불, 총외채의 33.9%]

□ 단기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지표들은 안정수준을 지속 유지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전분기말 대비 1.3%p 하락한 34.5%, 유동외채 비율은 2.2%p 하락한 45.7%로서 안정수준(각각 60%, 100%미만)을 견지
- * 유동외채: 단기외채 + 1년 이내 만기도래하는 장기외채

(단위: %)

	'97말	'98말	'99말	'00말	'01말	'02말	'03말	'04. 3말	'04. 6말
단기외채/외환보유액 ¹⁾	716.6	80.3	57.3	51.4	40.7	41.2	35.6	35.8	34.5
유동외채/외환보유액 ²⁾	973.4	156.1	88.5	73.0	59.3	56.9	48.1	47.9	45.7
외환보유액(억불)	89	485	740	962	1,028	1,214	1,554	1,636	1,670

주: 1) 안정수준(60% 미만), 경계수준(60~100%), 위험수준(100% 초과)
 2) 안정수준(100% 미만), 경계수준(100~200%), 위험수준(200% 초과)

2. 대외채권 및 순채권

□ '04. 2/4분기말 현재 총 대외채권은 2,516억불로 전분기말보다 87억불 증가

- 일반정부·통화당국은 국민연금의 외화채권투자(12억불), 외환보유액 증가(35억불)등으로 분기중 46억불

증가['04. 6월말 현재 1,731억불, 총대외채권의 68.8%]

- 은행부문은 수출입 호조에 따른 매입외환 확대(24억불), 해외 외화대출 증가(16억불)등으로 분기중 41억불 증가['04. 6월말 현재 590억불, 총대외채권의 23.4%]
- 기타부문은 비은행금융회사의 외화증권투자·외화대

출 증가(1억불), 민간기업의 외화증권투자 감소(1억 불)등으로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 유지['04. 6월말 현재 195억불, 총대외채권의 7.8%]

□ '04. 2/4분기말 현재 순채권은 전분기말 대비 80억불 증가한 819억불로서 2000년 6월 이후 순채권 국가 기초를 지속 유지

〈총 대외채무·채권 현황〉

(단위: 억불)

		'97말	'98말	'99말	'00말	'01말	'02말	'03말	'04. 3말 ^a (A)	'04. 6말 ^a (B)	증감 (B-A)
총대외채무		1,742	1,638	1,529	1,485	1,308	1,440	1,609	1,690	1,697	7
외 화		1,739	1,627	1,499	1,440	1,261	1,374	1,527	1,581	1,588	7
원 화		3	11	30	45	47	66	82	109	109	-
부 문 별	일반정부	112	159	198	192	183	176	128	119	115	△4
	통화당국	115	220	128	113	49	49	53	63	57	△6
	은행부문	911	725	676	618	534	610	718	770	751	△19
	기타부문	604	534	527	562	542	605	710	738	774	36
장 단 기 별	장기외채	1,105	1,249	1,105	991	889	939	1,056	1,105	1,121	16
	단기외채	637	389	424	494	419	501	553	585	576	△9
	통화당국	1	3	12	11	13	14	14	18	18	-
	은행부문	492	311	337	377	324	406	460	481	471	△10
	기타부문	144	75	75	106	82	81	79	86	87	1
총대외채권		1,061	1,293	1,461	1,674	1,655	1,861	2,259	2,429	2,516	87
외 화		1,057	1,287	1,452	1,666	1,645	1,846	2,236	2,405	2,491	86
원 화		4	6	9	8	10	15	23	24	25	1
부 문 별	일반정부	10	9	8	8	10	11	12	26	38	12
	통화당국	210	535	767	989	1,053	1,238	1,575	1,659	1,693	34
	은행부문	665	579	510	488	423	424	479	549	590	41
	기타부문	176	170	176	189	169	188	193	195	195	-
순 채 권		△681	△345	△68	189	347	421	650	739	819	80
외 화		△682	△340	△47	225	384	472	709	824	903	79
원 화		1	△5	△21	△36	△37	△51	△59	△85	△84	1

* p는 잠정치(Prelimin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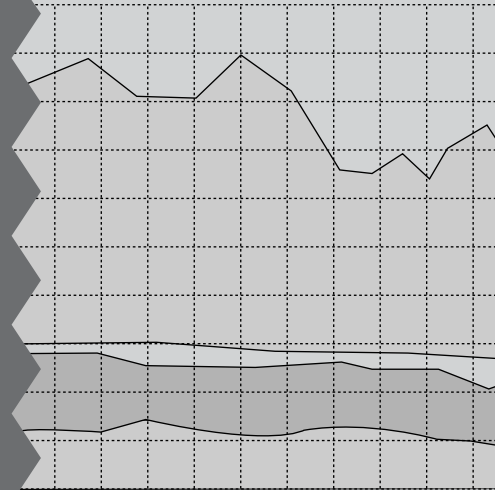
재정통계

• 법인세 Ⅱ편

• 법인세 Ⅲ편

1. 법인세 환급금
2. 법인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이의신청
3. 법인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심사청구
4. 법인세 소송사건

• 자산재평가세 편



1. 법인세 환급금

(단위: 백만원, %)

연도	법인세 총징수결정액(A)	법인세 환급발생액(B)	국세 환급발생액(C)	환급금처리			비율	
				환부	총당	기타	발생(B/A)	점유(B/C)
1987	1,854,814	117,248	2,836,519	107,407	9,841	0	6.3	4.1
1988	2,437,382	111,983	3,297,123	94,583	17,400	0	4.6	3.4
1989	3,495,129	291,253	3,435,697	277,969	13,281	3	8.3	8.5
1990	3,957,061	648,411	4,246,457	627,452	20,959	0	16.4	15.3
1991	5,736,541	1,011,649	5,568,061	988,468	23,168	13	17.6	18.2
1992	7,725,482	1,652,702	5,978,043	1,615,999	36,703	0	21.4	27.7
1993	8,601,450	2,481,850	7,317,098	2,437,772	44,078	0	28.9	33.9
1994	10,552,115	1,652,702	8,504,432	1,615,999	36,703	0	15.7	19.4
1995	12,180,029	3,086,321	10,614,619	3,023,824	62,453	44	25.3	29.1
1996	13,670,496	3,965,793	13,063,550	3,882,444	83,267	82	29.0	30.4
1997	14,299,339	4,228,708	13,621,495	4,140,294	87,877	537	29.6	31.1
1998	18,598,595	7,302,581	19,104,699	7,098,949	203,062	570	39.3	38.2
1999	20,565,740	10,190,220	21,038,012	9,884,344	304,947	929	49.5	48.4
2000	27,338,003	8,114,091	22,621,753	7,722,509	391,313	269	29.7	35.9
2001	25,889,353	7,856,877	23,387,717	7,658,732	197,614	531	30.3	33.6
2002	28,626,866	7,540,012	22,985,739	7,326,651	213,202	159	26.3	32.8

주: 1. 총징수결정액은 내국세, 교통세, 방위세, 교육세, 농특세와 세외수입의 국세환급 전 합계액임.

2. 환급발생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원천징수납부세액, 중간예납 등 세법에 의한 절차상 환급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법인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이의신청

(단위: 건, 백만원)

연도	요처리건수			처리건수				감세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 하	기 각	경 정		
1965	240	27	213	227	16	154	57	20	13
1966	350	13	337	337	22	259	56	48	13
1967	374	13	361	348	29	250	69	24	26
1968	408	26	382	363	32	219	112	178	45
1969	906	45	861	829	100	446	283	160	77
1970	978	77	901	947	97	503	347	370	31
1971	882	31	851	816	94	390	332	187	66
1972	1,047	66	981	962	71	579	312	526	85
1973	1,462	85	1,377	1,455	125	819	511	447	7
1974	517	7	510	513	91	206	216	178	4
1975	446	6	440	427	45	185	197	155	19
1976	429	19	410	412	58	197	157	148	17
1977	362	17	345	332	81	158	93	141	30
1978	544	30	514	533	116	268	149	240	11
1979	234	11	223	228	59	97	72	683	6
1980	281	6	275	270	63	118	89	2,223	11
1981	305	11	294	272	58	131	83	743	33
1982	333	33	300	298	74	150	74	8,663	35
1983	238	35	203	214	57	122	35	308	24
1984	206	24	182	197	57	113	27	2,546	9
1985	156	9	147	146	43	92	11	190	10
1986	141	10	131	133	43	81	9	173	8
1987	99	8	91	97	32	54	11	138	2
1988	90	2	88	89	25	57	7	156	1
1989	85	1	84	81	22	49	10	293	4
1990	98	4	94	92	20	66	6	171	6
1991	86	6	80	81	21	52	8	542	5
1992	90	5	85	87	16	66	5	274	3
1993	151	3	148	144	30	102	12	2,499	7
1994	138	7	131	133	8	103	22	2,868	5
1995	135	5	130	128	22	78	28	20,309	7
1996	128	7	121	123	13	80	30	1,761	5
1997	148	5	143	141	5	90	46	10,762	7
1998	194	7	187	184	14	86	84	8,682	10
1999	262	10	252	230	8	113	109	10,997	32
2000	301	32	269	266	7	130	129	46,895	35
2001	576	35	541	503	26	256	221	41,237	73
2002	803	73	730	697	41	370	286	34,854	106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법인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심사청구

(단위: 건, 백만원)

연도	요처리건수			처리건수				감세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 하	기 각	경 정		
1965	42	4	38	42	-	13	29	37	-
1966	56	-	56	47	-	29	18	21	9
1967	113	9	104	105	3	61	41	57	8
1968	151	8	143	128	3	77	48	440	23
1969	160	23	137	119	6	65	48	383	41
1970	400	41	359	307	43	155	109	1,793	93
1971	252	93	159	213	36	116	61	408	39
1972	381	39	342	362	32	176	154	1,801	19
1973	362	19	343	308	23	159	126	1,433	54
1974	220	54	166	194	23	111	60	987	26
1975	239	26	213	198	12	113	73	971	41
1976	480	41	439	405	21	244	140	1,691	75
1977	441	75	366	377	30	208	139	875	64
1978	743	64	679	671	32	423	216	2,879	72
1979	415	72	343	369	20	210	139	1,866	46
1980	533	46	487	487	52	292	143	2,078	46
1981	492	46	446	432	51	242	139	2,921	60
1982	551	60	491	462	34	270	158	7,924	89
1983	599	89	510	549	39	395	115	3,837	50
1984	400	50	350	354	45	249	60	3,396	46
1985	350	46	304	334	31	257	46	8,457	16
1986	245	16	229	206	19	168	19	433	39
1987	217	39	178	204	22	157	25	587	13
1988	194	13	181	180	17	141	22	1,526	14
1989	250	14	236	226	11	181	34	2,751	24
1990	328	24	304	287	15	244	28	3,106	41
1991	340	41	299	281	23	232	26	1,723	59
1992	377	59	318	331	20	286	25	1,380	46
1993	459	46	413	392	40	311	41	3,622	67
1994	497	67	430	443	13	377	53	4,733	54
1995	415	54	361	377	7	330	40	2,926	38
1996	347	38	309	314	13	263	38	7,956	33
1997	340	33	307	299	15	222	62	11,569	41
1998	425	41	384	341	10	233	98	19,651	84
1999	566	84	482	427	8	238	181	170,678	139
2000	289	139	150	245	5	112	128	70,031	44
2001	187	44	143	134	5	67	62	44,855	53
2002	246	53	193	149	6	77	66	28,292	9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4. 법인세 소송사건

(단위: 건)

연도	처리대상건수			당년도 종결건수						계류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제기	계	취하	각하	국가승소	국가패소	기타	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1973	135	84	51	72	-	-	11	7	54	63	-	-	-
1974	111	63	48	31	-	-	17	14	-	80	-	-	-
1975	105	80	25	53	-	-	19	14	20	52	-	-	-
1976	86	52	34	43	-	-	16	18	9	43	-	-	-
1977	95	43	52	33	-	-	12	12	9	62	-	-	-
1978	115	62	53	34	-	-	19	11	4	81	-	-	-
1979	183	81	102	43	-	-	11	19	13	140	-	-	-
1980	183	140	43	76	-	-	38	29	9	107	-	-	-
1981	214	107	107	56	-	-	23	23	10	158	-	-	-
1982	235	158	77	60	-	-	30	22	8	175	-	-	-
1983	291	175	116	96	-	-	43	41	12	195	-	-	-
1984	316	195	121	99	-	-	46	37	16	217	-	-	-
1985	337	217	120	116	-	-	46	60	10	221	-	-	-
1986	316	221	95	71	-	-	26	38	7	245	-	-	-
1987	339	245	94	115	-	-	40	63	12	224	-	-	-
1988	282	224	58	88	-	-	26	49	13	194	-	-	-
1989	256	194	62	108	-	-	63	45	-	148	-	-	-
1990	250	148	102	73	-	-	50	23	-	177	-	-	-
1991	298	177	121	71	-	-	44	27	-	227	-	-	-
1992	340	213	127	108	-	-	74	34	-	232	-	-	-
1993	389	241	148	156	-	-	94	62	-	233	-	-	-
1994	353	233	120	278	-	-	95	183	-	616	-	-	-
1995	355	213	142	132	-	-	98	34	-	223	-	-	-
1996	346	223	123	123	-	-	79	44	-	223	-	-	-
1997	326	223	103	153	-	-	120	33	-	173	-	-	-
1998	282	173	109	94	-	-	71	23	-	188	-	-	-
1999	294	188	106	92	-	-	76	16	-	202	-	-	-
2000	331	202	129	76	-	-	65	11	-	255	-	-	-
2001	409	255	154	133	47	1	70	6	9	276	158	76	42
2002	451	276	175	127	23	-	88	8	8	324	186	85	53

주: 2001년부터 자료 구분편제 변경.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본란에서는 조세정책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 등에 실린 조세·재정 관련 내용을 발췌, 소개하고 있으며 『재정포럼』 독자께서 보내주시는 의견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편집자 주 -

기초연금제 도입 검토할 만하다

한나라당이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을 대체하는 기초연금제도를 내놓았다. 더 내고 덜 받도록 구조개혁이 불가피한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의 불신과 지역가입자의 48%에 이르는 납부유예자, 270만명에 이르는 체납자 등으로 제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듯하다. 한나라당은 조세방식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비의 5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연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와 급여를 대폭 줄인 소득비례 연금제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우리는 납부유예자만 양산하고 노후생활보장 기능도 상실한 현행 국민연금제를 계속 고집할 게 아니라 기초연금제 도입 여부를 포함해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면 연간 19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지만 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지원되는 생계비와 각종 공공부조, 경로연금 등 중복되는 부분을 상계하면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부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임이 빈곤층 확대로 입증되고 있다.

정부는 6년 전 기초연금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급여 수준의 하락 등 국민연금제와 똑같은 문제점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돼 채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 일본 등 30여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연금제의 실상을 보면 국민연금제보다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연금제의 대안을 모색하길 촉구한다.

2004년 9월 8일자 서울신문사설

건물·토지세 통합 세부담 증가 안돼야

내년부터는 7월에 나오는 건물분 재산세와 10월의 종합토지세가 통합돼 '주택세'라는 단 한번의 세금 고지로 끝날 것 같다. 주택세는 주택에 속한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합쳐 국세청 기준시가를 근거로 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부과 방식이 크게 단순해진다. 종전에는 새 건물이나 헌 건물이나 아니면 철근구조물이나 콘크리트나 등에 따라 차이를 뒀, 같은 크기의 아파트라도 세금이 서로 달랐다.

재정경제부가 주택세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현재의 부동산 보유세가 안고 있는 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는 데 있다. 종전의 재산세나 토지세는 건물과 토지가 분리 처리되는 바람에 시가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더욱이 타워팰리스처럼 초고가 주택은 1가구 1주택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의 적용을 받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건물분과 토지세가

통합되기 때문이다.

시가의 70%를 반영하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과표로 할 경우 고가 아파트일수록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서울 강남이나 전국的高급주택에 등에 집중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방의 아파트나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경우는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번 주택세제 도입의 성공 여부는 세율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면 아파트 과세표준액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종전 세율을 적용하면 보유세가 급격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율 인하 방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납세자들의 불안감을 씻어줄 필요가 있다. 재경부 관계자들도 주택세는 지역별 조세형평을 개선하자는 것이지, 세금 수입을 늘리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놓고 엇치락뒤치락을 거듭해왔다. 합산과세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분리과세의 장점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번 통합세 개편은 또 한번의 뒤집기인 셈이다. 어렵사리 새로운 보유세제가 마련된 만큼 제대로 집행되기를 기대한다.

2004년 9월 11일자 문화일보 사설

재정적자 쌓여 경제 먹구름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계획은 나라 살림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또한 국가채무를 관리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분야별로도 노동이나 복지부문을 예산을 늘리고 또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 분야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배분한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재정운용계획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먼저 세수가 재정계획대로 늘어나기는 쉽지가 않다. 계획에서는 해마다 5%의 실질경제성장으로 연평균 7.4%의 세수와 6.3%의 정부지출 증가를 가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 2008년에는 균형재정을 이루면서 국가부채는 5년 뒤 29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8%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투자가 감소하면서 성장원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기관에서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4% 수준에서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경우 세수가 계획대로 늘어나기 어

렵게 되어 결국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계획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금 우리는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최근에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세율을 내렸다. 경기회복이 늦어질 경우 다시 세율을 내려야 할 가능성이 짙다. 금리정책과 환율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정책밖에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회보장 기여금을 고령화 국민부담률은 이미 25%를 넘어서고 있어 비록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세율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세수를 계획대로 늘리기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정부지출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강하다. 현 정부는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 또한 더 높은 복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정치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면 앞으로 복지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은 지금의 재정운용계획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늘어날 국방비 지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미 계획에서 국방비는 연평균 9.9%로 증가하여 복지·노동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불안정한 국가안보를 고려하면 이 분야에 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짙다.

또한, 재정운용계획에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은 잠재된 정부지출들도 문제다. 먼저, 연기금의 부실 부분이다. 연기금의 부실은 결국 정부가 책임지게 된다. 이러한 연기금의 미래 손실분이 반영된다면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는 재정운용계획안보다 훨씬 커지게 될 것이다. 또, 공적자금 미회수분은 물론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공공부문의 채무도 정부지출을 늘리는 요인이 된다. 공공부문이 비대해짐에 따라 늘어나는 공기업의 채무는 결국 정부재정으로 보전되므로 이 부분 역시 앞으로 국가부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면 우리는 재정운용계획 수립에 있어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많은 외국 학자들은 우리가 남미에 비해 외환 위기를 빨리 극복한 원인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남미보다 적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우리 재정이 과거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건전하고 국가부채가 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복지에 대한 지출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정치·사회적 상황이 바뀌면서 앞으로 복지부문과 공공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세수는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서 가장 큰 문제는 정부부문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일 가능성이 짙으며,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04년 9월 15일자 문화일보 칼럼 · 논단

김정식/연세대 경제학 교수

상속세 신기록

재벌들을 비롯한 ‘가진 사람’들이 사후에 그다지 좋지 않은 이미지로 기억되는 경우가 드물다. 그들이 생전에 이룩한 엄청난 부(富)에도 불구하고 불법 또는 편법으로 은밀히 자손에게 물려주는 공정치 못한 부의 세습 때문이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가며 고스란히 물려주고, 후손들 역시 세금을 한푼이라도 덜 내고 유산을 차지하려고 애쓰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부호들이 감동을 주는 다른 얘기도 많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창설자로 460억달러의 재산을 가진 미국의 부호 빌 게이츠는 세 자녀에게 1000만달러만 물려주고 나머지 재산을 자선사업에 쓰겠다고 선언해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다.

미국의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는 “상속은 자식들의 재능과 에너지를 망치는 것”이라며 전 재산을 털어 도서관 3000개를 세웠다. 우

리나라에도 교육사업에 재산을 쾌척한 경주 최부잣집 유족의 이야기나 유한양행 창업주 고 유일환 씨가 손녀의 학비 1만달러만 남기고 전 재산을 복지재단에 넘긴 예는 이에 버금가는 사례다.

시대의 변화때문일까. 우리나라 재계가 기존 상속관행을 벗어나는 양상이다. 지난 3월 작고한 설원량 대한전선 전 회장의 유족들이 국내 상속세 사상 최고 액수인 1,355억원을 납부하겠다고 자진 신고해 화제다. 국내 굴지의 재벌이 아닌 재계 30위에 불과한 대한전선이 이처럼 상속세 납부 신기록을 세운 것은 ‘법대로 신고’라는 원칙을 지킨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338억원을 납부했던 교보생명이나 1,060억원으로 상속세 납부 기록 3위의 태광산업도 대재벌이 아닌 중견 재벌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납부의 새 모델로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변칙 상속이나 증여로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재벌들에겐 곤혹스러운 사례가 아닐 수 없다.

2004년 9월 18일자 세계일보 칼럼 · 논단

정동길/논설위원

공무원·군인연금부터 개혁하라

공무원·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재정적자를 국고로 메우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지만 그 규모가 수조원에 이른다니 충격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군인연금의 지난 5년간 적자는 2조 6천억원으로 전액을 정부가 지원했다. 이 기간의 적립금이 지원액의 6분의 1에 불과해 국민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군인연금을 보태줬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도 1,147억원의 적자를 고스란히 국고에서 보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세금을 쏟아부으며 공적연금을 끌고 갈 작정인지 궁금하다. 감사원이 지난 7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을 감사한 결과 연금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책임준비금이 1백82조 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1년 예산보다 훨씬 많은 부족액을 세금으로 꼬박 채워넣는다면 국민들이 받게 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잖아도 공적자금 손실까지 떠안아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이 3백만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재정이 부실해진다 해서 연금보험료를 더 올리고 지급액을 더 낮추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추진 중이다. 지금과 같은 인구 고

령화 추세와 저출산 풍조 아래서 '더 내고 덜 받는'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40년 뒤 재정 파탄을 피할 길이 없다.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며 공무원과 군인연금은 혈세로 꾸려나간다면 어느 누구도 납득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20년만 근무하면 적립액의 4~5배를 보장해 주는 혜택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소지가 있다.

공적연금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마냥 세금으로 공무원과 군인들의 연금을 보전해 줘서는 안 된다. 지금보다 보험료를 대폭 올려 혜택을 '낸 만큼 받도록' 바꿔나가야 한다. 국민들의 연금혜택은 줄이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면 연금개혁은 명분과 설득력을 잃어 실패할 수밖에 없다.

2004년 9월 22일자 경향신문 사설

1996년 7월호(창간호)

〈창간축사〉

열린 토론의 장을 기대하며 / 나웅배(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창간사〉

재정정책의 길라잡이가 될 터 / 최 광(한국조세연구원 원장)

〈현안분석〉

Flat Tax의 개념과 경제적 효과 / 전영준

토지초과이득세의 쟁점 / 노영훈

1996년 하반기 경제운영관련 주요 정책과제 / 유일호 외

〈정책연구〉

교육재정 확충방안 / 박정수 · 안중석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 / 현진권

〈정책토론 리포트〉

국세행정의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국제조세워크숍

「신경제 장기구상」 세제부문

〈정책흐름〉

1996년 1/4분기 국세실적

1996년 상반기 세법 개정(안) 내용

조세부담률과 1인당 조세부담액

〈재정통계〉

총재정 규모

공공부문 규모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주요국의 조세부담률

우리나라 세수 구성의 변천

국세체계의 변천

1996년 8월호(통권 제2호)

〈권두언〉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와 정부역할의 변화 / 유일호

〈현안분석〉

금융실명제 실시 3년의 평가와 정책과제 / 이인표 · 정영현

미국 예산회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임주영

업종전문화 시책의 평가와 향후 금융지원정책의 방향 / 이기영

〈정책연구〉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개편방향 / 임주영

〈정책흐름〉

관세환급제도 전면 개편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전환 현황

간이과세제도 안내

1996 상속세법 개정(안)

〈재정통계〉

우리나라의 통합재정

재정규모의 국제비교

재정지출내역의 국제비교

연차별 특별회계 신설 폐지상황

1996년 9월호(통권 제3호)

〈권두언〉

우리 재정이 나아갈 길 / 임주영

〈현안분석〉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예산제도의 개선 / 유일호

근로소득분리과세와 Dual Income Tax / 안중범

〈정책연구〉

유형고정자산의 경제적 감가상각 추정 / 현진권

〈정책토론티포트〉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

〈해외동향〉

일본에서의 법인세 개정 논의 / 신기선

〈정책흐름〉

최근 경제상황과 향후 정책방향

1996 추경편성 및 재정투융자특별회계 개편

1996 세법개정(안)

〈재정통계〉

주요국의 재정제도 비교일람표

주요국의 경제 · 재정관련 주요지표

1996년 10월호(통권 제4호)

〈권두칼럼〉

조세정책과 정보공개 / 현진권

〈특집: 1997년도 예산(안)〉

1997년도 예산(안), 이렇게 편성했다 / 김성진

1997년도 예산(안), 이렇게 본다(Ⅰ) / 윤건영

1997년도 예산(안), 이렇게 본다(Ⅱ) / 임주영

특별좌담 : 1997년도 예산(안)의 배경과 평가

〈정책연구〉

과소자본규제제도의 개편방향 / 김유찬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및 과세방향 / 최흥식 · 김성룡

〈정책토론포트〉

옵션의 경제적 효과와 거래제도 구축방안

〈해외동향〉

일본에서의 법인세 개정 논의(II) / 신기선

〈정책흐름〉

1997년도 예산(안)의 개요 및 분야별 예산 요약

〈재정통계〉

소득세제도의 변천
- 소득세율
- 인적공제 면세점
- 근로소득공제
- 보험료공제
- 의료비공제
- 교육비공제
- 주택자금공제
- 기부금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배당소득세액공제

1996년 11월호(통권 제5호)

〈권두칼럼〉

OECD 가입과 한국경제 / 홍범교

〈현안분석〉

사회복지를 위한 민간참여의 활성화 및 재원조달방안 / 손원익
고금리의 원인과 대책 / 이인표
지역경제와 산업구조의 변화 / 장근호

〈특별기획: 노벨경제학상〉

제임스 밀리스의 인간적 면모와 학문적 업적 / 나성린
윌리엄 비크리와 그의 학문세계 / 노영훈
노벨경제학상을 말한다 / 최 광

〈정책흐름〉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 및 세부 추진계획
199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 활성화 대책

〈재정통계〉

소득세관련 통계(Ⅰ)
- 소득세총괄

- 소득세 예산 및 징수

-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 지역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 종합소득세 결정유형별 신고
- 기장의무자별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세액공제

1996년 12월호(통권 제6호)

〈권두칼럼〉

건전한 납세환경의 조성 / 정영현

〈현안분석〉

순부유세와 그 조세정책적 의의 / 노영훈
외국의 탄소세 도입 현황 / 최준욱
이코노미스트- 그들은 별종인가? / 홍범교

〈정책연구〉

기업의 차입과 세제 / 손원익
조세 관련자료 체계의 변천과 개선방향 / 현진권

〈정책토론포트〉

한일조세조약의 문제점

〈해외동향〉

인터넷과 예산 및 조세정보

〈정책흐름〉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현황 및 실천과제
최근의 경제동향과 경쟁력강화 시책 추진현황
1996년도 3/4분기까지의 국제실적(잠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소득세 조사관리 방향

〈재정통계〉

소득세관련 통계(Ⅱ)

1997년 1월호(통권 제7호)

〈권두칼럼〉

한국경제의 현 위치와 당면과제 / 임주영

〈현안분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 박정수
법인세에 대한 개념의 변화 / 안종석
정보화시대와 조세개념의 재정립 / 정영현
전자지불시스템의 도입과 영향 / 최흥식

〈정책연구〉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와 관련제도의 개선방향 / 한도숙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 김유찬
 한국의 분기별 거시경제 모형 / 박종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 안종석 · 박정수

〈정책토론포트〉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세제 및 관련제도 개선방향 / 손원익 · 김홍균

〈해외동향〉

LIS 자료의 현황 및 활용방안 / 현진권 · 신기선
 중국의 재정 및 조세체계 / 김인웅

〈정책흐름〉

1997년 경제정책방향
 국제발행제도 개선방향 및 1997년도 국제발행계획
 과세적부심사제의 시행성과와 개선안

〈재정통계〉

법인세관련 통계(I)

1997년 2월호(통권 제8호)

〈권두칼럼〉

시장의 질 향상과 거시경제정책의 새로운 역할 / 박종규

〈현안분석〉

주요 외국의 지방소득세제 / 박정수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방지 / 안종석
 개정 노동법의 쟁점과 과제 / 박기백

〈정책연구〉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향 / 김진수
 상속 · 증여세제의 합리화 방안 / 한상국 · 배준호 · 이광재

〈정책토론포트〉

접대비 관련세제의 개편방향 / 손원익

〈정책흐름〉

국세 통합시스템 개동
 1997년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무역수지개선을 위한 관세제도 운영방안
 기업상속에 관한 지원 확대
 1996년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추정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지분 변동현황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현황

〈재정통계〉

법인세관련 통계(II)

1997년 3월호(통권 제9호)

〈권두칼럼〉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제언 / 손원익

〈현안분석〉

경상수지적자와 거시경제운영 / 박종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과 정부운영 - 국제적 인식과 평가 / 장근호
 최근 환율변동이 수출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 김종만

〈정책연구〉

부가가치세 세제와 행정의 개선방안 / 유시권

〈정책흐름〉

1996년 국제실적(잠정)
 1997년 시행 중소기업 지원세제
 199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91일물 단기국채 발행
 금융개혁의 추진실적과 주요과제
 토지초과이득세 시행령 개정(안)

〈재정통계〉

자산재평가세관련 통계

1997년 4월호(통권 제10호)

〈권두칼럼〉

조세의 날 그리고 조세와 하루 / 노영훈

〈현안분석〉

부정부패와 경제성장 - 정부 역할에 대한 실증분석 / 장근호
 OECD의 금융산업 규제 완화 논의 / 홍범교

〈정책연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원조정에 관한 연구 / 박정수
 소유구조와 자본구조의 관계 / 김건우
 조세혜택으로 인한 내재적 조세의 실증연구 / 이준규 · 이태희

〈정책토론포트〉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발전방향 / 정영현 · 전영준

〈정책흐름〉

경제활력 회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경제장관 합동기자회견 부총리
 발표문
 199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1996 회계연도 총세입부 총세출부 마감
 1996 회계연도 정부투자기관 결산

〈재정통계〉

부가가치세 관련 통계

1997년 5월호(통권 제11호)

〈견두칼럼〉

한보그룹의 부도와 재벌의 자기혁신 / 김진수

〈현안분석〉

21세기를 대비한 OECD의 세제개혁 / 박정수
 환경세 도입과 환경친화적 세제개편 - OECD에서의 최근 논의 / 최준욱
 등소평 사후의 한중 경제협력 / 한상국

〈정책토론포트〉

한·EU 주세협 의 대비 주세제도 개편방향

〈정책연구〉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현황과 정책과제 / 홍범교
 조세정책과 외국자본 유입의 형태 / 전주성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후생분석 / 전영준

〈정책흐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담보 시범사업 실시
 다자간투자협정(MA) 협상 추진상황 및 주요내용

〈재정통계〉

특별소비세 관련 통계(I)

1997년 6월호(통권 제12호)

〈견두칼럼〉

국제화·세계화는 경제정책의 자주성 상실인가? / 김종만

〈현안분석〉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주요국의 규제조치 / 정영현·황현리
 통합경제와 인구이동: 현황 및 이론 / 김정훈
 주요국의 민간연금에 대한 조세제도 / 전영준

〈정책연구〉

기업합병 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 김유찬
 한국의 저축률 추이에 관한 연구 / 박대근·이창용
 외환 및 자본자유화가 국내금리에 미치는 영향 / 김종만

〈정책흐름〉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보고회의 개최
 1996 회계연도 정부결산
 재정자금 배정제도 개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1997년 하반기 탄력관세 운영(안)

1998년 예산요구 현황

〈재정통계〉

특별소비세 관련 통계(II)

1997년 7월호(통권 제13호)

〈견두칼럼〉

틀린 현실과 맞는 이론 / 최 광

〈현안분석〉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세제조화 / 김유찬
 주요국의 벤처캐피탈 현황과 지원제도 / 김재진
 홍콩의 주권반환과 우리의 대응전략 / 한상국

〈특집: 『재정포럼』 창간 1주년〉

『재정포럼』에 바란다 I / 차병권
 『재정포럼』에 바란다 II / 박우규
 『재정포럼』주제별 총목차
 창간호(1996년 7월호)~제12호(1997년 6월호)

〈정책연구〉

지방양여금이 지방재정에 미친 효과분석 / 안중석
 중국의 재정제도와 당면과제 / 한상국

〈정책흐름〉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개선
 1997년 4월까지의 국세실적(잠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
 독립공채상환
 한·EU WTO 주세협 의 결과
 1997년 1기 부가세확정신고시 특례자에게 표준신고율 적용 많은
 납세증명서 '전국 온라인 발급'

〈재정통계〉

주세 관련 통계

1997년 8월호(통권 제14호)

〈견두칼럼〉

대통령 후보들이 제시한 조세정책 / 안중석

〈현안분석〉

최근의 경제동향과 1997~1998년도 거시경제 전망 / 박종규
 일본의 재정구조 개혁 / 국중호
 여신전문 금융산업의 특성, 현황 및 개편과제 / 이기영

〈정책토론포트〉
세제개혁과 세정의 합리화

〈정책연구〉
부동산실명제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 노영훈
기업회계기준 개정과 법인세법의 개편방향 / 유시권 외

〈정책흐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수정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을 위한 금융개혁법을 입법예고
1997년 상반기 세수실적(잠정)

〈재정통계〉
기타 간접세 관련 통계

1997년 9월호(통권 제15호)

〈권두칼럼〉
근거과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 박정수

〈현안분석〉
기업분할에 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 / 김진수
국민의료와 조세정책 / 손원익
비크리 교수의 세제개혁안: 세제의 단순화, 누진화 그리고 그 공정한 설계 / 노영훈

〈정책토론포트〉
전자상거래와 조세제도

〈정책연구〉
우리나라 가산세 관련 제도의 합리화 - 가산세와 조세형벌의 경제적 분석 / 손광락

〈정책흐름〉
1997 세법 개정(안)
1997 관세법 개정(안)

〈재정통계〉
상속세 관련 통계

1997년 10월호(통권 제16호)

〈권두칼럼〉
경제의 글로벌화와 조세·재정정책 / 김중수

〈특집: 1998년도 예산(안)〉
1998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특징 / 정해방

1998년도 예산(안)의 평가(I) / 나성린
1998년도 예산(안)의 평가(II) / 박기백
좌담: 1998년도 예산(안) 어떻게 볼 것인가?

〈현안분석〉
사라지는 납세자들: 개방화의 조세정책적 함의 / 현진권
어음제도의 현황 및 정책과제 / 이기영

〈정책토론포트〉
전자상거래와 조세제도

〈정책흐름〉
1998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재정통계〉
증여세 관련통계

1997년 11월호(통권 제17호)

〈권두칼럼〉
자본주의 정신과 조세체계의 선택 / 유시권

〈현안분석〉
미국 은행합병의 동향과 전망 / 김진수
OECD국가들의 민영화 동향과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 / 최준욱
국제적으로 새롭게 부각되는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경쟁 이슈 / 한도숙

〈특집〉
글로벌화, 통일 그리고 조세정책

〈정책연구〉
연구개발과 조세정책 / 손원익
한일 국제행정의 비교평가 / 유시권
우리나라 주세제도의 정책과제와 개편방향 / 성명재

〈정책토론포트〉
단일세(토지세)의 경제적 효과

〈경제단상〉
노벨경제학상 수상(隨想) / 홍범교

〈정책흐름〉
1998년 국제 세입예산(안)
199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재정통계〉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통계

1997년 12월호(통권 제18호)

〈권두칼럼〉

금융위기와 국제시장의 활성화 / 최흥식

〈현안분석〉

개방화된 세계 속에서 부각되는 조세정책 과제 / 김유찬
관세율 정책과 수입구조의 변화 / 장근호
일본체제의 변화와 전망 / 유시권
OECD분류에 따른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평가 / 국중호

〈기획특집: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

IMF 구제금융과 재정 / 임주영
IMF 구제금융과 조세 / 성명재
IMF 구제금융과 금융구조 조정 / 홍범교
IMF 구제금융과 산업정책 / 김재준
IMF 구제금융과 외국의 사례 / 박기백
IMF 자금지원 합의내용

〈정책토론포르트〉

동독의 경제재건과 유럽통합

〈정책연구〉

독일의 재정 / 김유찬
영국의 재정 / 최준욱

〈경제단상〉

세무당국을 위한 변명 / 신기선

〈정책흐름〉

IMF 자금지원 합의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재정통계〉

목적세 관련통계

1998년 1월호(통권 제19호)

〈권두칼럼〉

'큰 정부'와 '작은 정부' / 차병권

〈현안분석〉

예산과 성과 / 박기백
조세경쟁: 유형 및 쟁점 / 김정훈
정부의 변호사 시장 규제 / 김상현
유럽통합 통합의 의의와 영향 / 홍범교

〈기획〉

한국 조세정책 50년: 조세정책의 평가

〈정책토론포르트〉

동남아 국가와 한국의 외환위기

〈정책연구〉

건물분 재산세의 개편방안 연구 / 노영훈
지방세외수입의 현황 및 정책시사점 / 안종석

〈경제단상〉

새 틀에의 단상 / 윤중규
IMF구제금융과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 이기영

〈문화기행〉

이색박물관을 찾아서: 태백 석탄박물관 / 이 준

〈정책흐름〉

1997년 수출입 동향(잠정) 및 1998년 전망
금융실명제 보완입법 추진상황
교통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재정통계〉

지방세 체계의 변천

1998년 2월호(통권 제20호)

〈권두칼럼〉

구조조정을 다시 생각함 / 곽태원

〈현안분석〉

주요 OECD 국가의 기관투자 현황 / 김재진
전자상거래에 대한 OECD의 최근 논의 / 정영현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에 대한 평가-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안과
정부안의 비교 / 전영준

〈기획〉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 윤건영 외

〈정책연구〉

기업의 기부행위와 조세정책방향 / 김진수
접대비 관련세제의 정책방향 / 손원익

〈경제단상〉

IMF시대의 원모심려(遠謀深慮) / 이진오
군살빼기 / 손병준

〈문화기행〉

이색박물관을 찾아서: 화폐박물관 / 이 준

〈정책흐름〉

우리나라 금융기관 단기외채 만기연장협상 기본원칙 타결

1998년 추가경정 예산안
1998년 제1회 국세세입 추경예산(안)

〈재정통계〉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1998년 3월호(통권 제21호)

〈권두칼럼〉
정부조직 개편과 국가예산 / 박종기

〈현안분석〉
국민연금제도 확대 적용을 위한 소득추계방법론의 고찰 / 현진권 외
정리해고제와 실업재정 / 이철인

〈정책토론포트〉
21세기를 향한 선진 세정의 정착

〈정책연구〉
금융기관 합병에 관한 조세정책 방향 / 김진수 외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 / 전영준 외
자본자유화 이후 환율변동과 수출의 가격경쟁력 / 김종만

〈경제단상〉
글로벌시대의 조세정책 / 정은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 최병규

〈문화기행〉
이색박물관을 찾아서: 한국상업사박물관 / 이 준

〈정책흐름〉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자산재평가제도 개선

〈재정통계〉
지방세 시도별 분포 및 1인당·가구당 부담상황

1998년 4월호(통권 제22호)

〈권두칼럼〉
정책토론의 부실과 경제위기 / 윤건영

〈현안분석〉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는 과연 필요한가 / 현진권
유럽 3개국의 재산과세와 지방재정 - 영국, 프랑스, 독일 / 노영훈
국채와 외환보유고 관리 / 이상섭
외국인 직접투자의 역할 / 최준욱

〈한국조세의 이해〉
소득세편

〈정책연구〉
산재보험제도 운용주체의 다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이기영 외
자료포락분석법 및 그 변형기법을 통한 공공부문의 생산성 측정 -
한국 중소도시의 생산성 분석 / 문춘걸
과세소득 산정과 기업회계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이우택

〈경제단상〉
조세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 / 엄기웅
실업에 대한 단상(斷想) / 김건수

〈문화기행〉
이색박물관을 찾아서: 농업박물관 / 이 준

〈정책흐름〉
1998년 2월 말 현재 총대외지불부담 현황(잠정)
1998년 제1차 세제발전심의회 개최 1997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재정통계〉
지방세 비교세 · 감면 현황

1998년 5월호(통권 제23호)

〈권두칼럼〉
경제위기, 경제학자, 모럴 해저드 / 나성린

〈현안분석〉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방안 / 김유찬
다국적기업에 대한 이전가격과세제도 / 김재진
일본 제벌의 해체과정 / 국중호

〈한국조세의 이해〉
법인세편

〈정책토론포트〉
적정조세와 정보

〈경제단상〉
조세교향악 화음법 / 허종구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정보화 마인드 / 이상근

〈문화기행〉
이색박물관을 찾아서: 한국등잔박물관 / 이 준

〈정책흐름〉
1998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총괄분과위원회 개최
 교통세법시행령 개정(안)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조정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보도 참고

〈재정통계〉
 국제비교자료(I)

1998년 6월호(통권 제24호)

〈권두칼럼〉
 구조조정 이후도 염려해야 한다 / 장현준

〈현안분석〉
 보조비율의 계산-WTO 논의를 중심으로 / 박기백
 OECD 각국의 국민연금 개혁방향 / 전영준
 일본 지방세 부문의 개혁방향 / 국중호

〈한국조세의 이해〉
 국제조세편

〈정책연구〉
 소득·소비·자산과세의 분류에 의한 한일 조세구조 연구 / 국중호
 한국의 교육발전과 교육투자 / 윤건영·최영순

〈경제단상〉
 합리적 소비? / 우사임
 어느 샐러리맨의 지갑 이야기 / 심재진

〈문화기행〉
 이색박물관을 찾아서: 용산 전쟁기념관 / 이 준

〈정책흐름〉
 조세감면제도의 개편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방안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종합대책
 자본·외환 자유화와 관련된 과세제도 개선방안
 기업과세제도 개편방안

〈재정통계〉
 국제비교자료(II)

1998년 7월호(통권 제25호)

〈권두칼럼〉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론 / 김용진

〈현안분석〉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대한 과세방안 검토 / 한상국

일본 지주회사의 해체과정과 해금과정 / 김진수
 도로교통정책의 경제수단 - 시행의 어려움 및 극복방안 / 김정훈

〈특집: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운용 방안〉
 재정운용의 방향과 자원조달 방안 / 박기백
 주요국의 적자재정 운용사례 / 김상현

〈한국조세의 이해〉
 자산재평가세 / 현진권

〈정책연구〉
 한국의 산업별·자산별 자본소득 추계(1954~1996) / 표학길
 중앙정부 세출 및 보전수단의 거시경제적 효과 / 박종규

〈기획: 한국조세연구원에 바란다〉
 보다 현실적인 정책의 연구 개발을 / 김경원
 차별화·전문화된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길 / 구정모
 형평과 효율이 조화로운 정책개발을 / 남상돈

〈문화기행〉
 이색박물관을 찾아서: 철도박물관 / 이 준

〈재정통계〉
 OECD 회원국의 개인소득세 비교

1998년 8월호(통권 제26호)

〈권두칼럼〉
 경제구조의 개혁과 인적자본 / 유일호

〈현안분석〉
 토지관련 부담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장근호
 파생금융상품과세 / 홍범교

〈한국조세의 이해〉
 재산과세(I): 총론 및 재산세·종합토지세 / 노영훈

〈정책토론포트〉
 1998년 세제개편방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

〈경제단상〉
 종(鍾)아 왜 우노 / 홍순영
 변해야 산다 / 성주석

〈정책연구〉
 물가지수연계채권 발행의 경제적 효과와 도입 타당성 / 이상섭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박대보 선생의 살신성인을 기린 노강서원 / 이 준

〈정책흐름〉

1998년 제2회 국제세입 추경예산(안)
19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재정통계〉

OECD 회원국의 개인소득세 비교(II)

〈이런의견 저런 생각〉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향 외

1998년 9월호(통권 제27호)

〈권두칼럼〉

인사청문과 납세 성실도 / 최명근

〈현안분석〉

재정지출을 통한 실업감축과 재정운영방향 / 최준욱
최근 일본의 항구감세정책 논의와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 / 국중호

〈한국조세의 이해〉

재산과세(II): 취득세·등록세, 양도세·특별부가세 / 노영훈

〈정책토론포트〉

경제위기와 조세 및 재정운용방향

〈경제단상〉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 / 이부호
엄마소는 얼룩소 / 김정현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조선조 개혁의 화신, 정암 조광조를 배향한
심곡서원 / 이 준

〈정책흐름〉

1998 세제개편안(요약)

〈재정통계〉

OECD 회원국의 법인소득세 비교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내년도 세법개정안 외

1998년 10월호(통권 제28호)

〈권두칼럼〉

경기부양과 재정적자 확대 / 조윤제

〈현안분석〉

부동산시장의 최근 동향과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방향 / 노영훈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및 향후 개선방향 / 한도숙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 김정훈

〈한국조세의 이해〉

재산과세(III): 상속세 및 증여세 / 한상국

〈정책토론포트〉

경제위기하의 재정정책방향

〈경제단상〉

달한 문 앞에 선 고학력 실업 / 김동철
부정부패와 경제성장의 함수관계는? / 김용대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이윤극 선생을 배향한 파주 지문서원 / 이 준

〈정책흐름〉

1999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재정통계〉

OECD 회원국의 법인소득세 비교(II)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목적세 폐지 논란 외

1998년 11월호(통권 제29호)

〈권두칼럼〉

세제·세정 개선을 위한 제언 / 최용선

〈현안분석〉

복권사업과 재정 / 김상영
일본의 신고납세제도 운영과 시사점 / 국중호

〈특집: 1999년도 예산(안)〉

1999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 김동환
1999년도 예산(안)의 평가(I) / 정태원

〈기획〉

1998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Amartya Sen의 학문세계 / 홍범교

〈한국조세의 이해〉

소비세(I) / 성명재

〈경제단상〉

근본으로 돌아가자 / 박성동
지금은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힐 때이다 / 박일호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만고의 청백리 옥고와 강직한 선비 김계행을 배향한 목계서원 / 이 준

〈정책흐름〉

1998 예산 집행상황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상황〉

국세수납자로 전산화(EDI) 전면 시행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업종 확대

〈재정통계〉

OECD 회원국의 원천징수세율 비교(1)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세금부터 아껴라 외

1998년 12월호(통권 제30호)

〈권두칼럼〉

조세제도 개혁과 재정민주주의 / 장오현

〈현안분석〉

남북경제교류 지원을 위한 조세정책 / 김유찬
과표현실화를 위한 신용카드 활성화 방안 / 김재진
에인젤캐피탈의 활성화 방안 / 김진수

〈정책토론포트〉

준조세의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조세의 이해〉

소비세(II) / 김유찬

〈경제단상〉

세법해석과 질의 / 김종진
IMF와 연봉제 / 이근봉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고려 말의 충신 포은 정몽주 선생을 배향한 충렬서원 / 이 준

〈정책흐름〉

조세정책 관련 참고자료
기업교환에 대한 세제지원

〈재정통계〉

OECD 회원국의 원천징수세율 비교(II)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전문직 부가세 반대라니 외

1999년 1월호(통권 제31호)

〈권두칼럼〉

21세기와 재정의 역할 / 김동건

〈현안분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원배분 / 안종석
사회보험 통합 · 일원화에 따른 사회보험 관리 · 운영의 개선방향 / 전영준

〈정책토론포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방향

〈한국조세의 이해〉

지방세 / 김정훈

〈경제단상〉

세상 속에서 / 이기용
새로운 천년을 여는 마음 / 최병준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조선조의 통치사상을 완성시킨 퇴계 이황 선생을 모신 도산서원 / 이 준

〈정책흐름〉

1999년도 경제정책방향
1998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관세법 시행령 개정

〈이런 의견 저런 생각〉

1999 경제의 복병들 외

〈권말부록〉

1998년도 『재정포럼(Public Finance Forum)』총목차

1999년 2월호(통권 제32호)

〈권두칼럼〉

사회의 투명성과 조직의 보고책임 / 이우택

〈현안분석〉

유로화 출범배경과 EU통합관련 과세문제 / 손원익
우회수출에 관한 반덤핑 규제 문제 / 장근호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과 조세 · 재정정책 / 최준욱

〈한국조세의 이해〉

관세 / 장근호

〈정책연구〉

현행 세법상 주식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은상 · 이준규

수요함수 추정을 통한 소비세 세수추계 / 성명재
전자상거래시대의 조세정책 / 김유찬·홍범교

<경제단상>

언제나 시작은 눈물로 / 백승훈
의사결정의 분산화와 회계제도 / 이희수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임진왜란이라는 절대위기를 이겨낸 위기관리의
일인자 서애 유성룡 선생을 배향한 병산서원 / 이 준

<정책흐름>

국민부담경감을 위한 준조세 정비
Mutual Fund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과세기반 구축을 위한 기장신고자 확대사업 추진
1998년 5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상황
IMF가 발표한 "아시아 경제위기 국가에 대한 정책프로그램 평가보
고서" - 재정정책 관련부문 -

<재정통계>

공공부문 통합재정수지(순계기준, 총계기준)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변호사 탈세 뿌리 뽑아야 외

1999년 3월호(통권 제33호)

<권두칼럼>

경제난국과 국민부담 / 이필우

<현안분석>

중국의 收費(Shou-Fei) 현황과 시사점 / 한상국
인적자본과 조세 / 이철인

<정책토론포트>

경제위기 1년의 조세정책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조세행정의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주요국의 조세제도>

일본의 조세(1) / 신기선

<정책연구>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방안 / 국중호

<경제단상>

글로벌시대의 이해 / 정영화
어느 샐러리맨의 주말 / 신영철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남명학의 창시자 남명 조식 선생을 배향한 배산서원 /
이 준

<정책흐름>

국세행정 대개혁 추진
1998년 국세징수실적(잠정)
국채전문딜러제도 도입 계획

<재정통계>

결산회계별 중앙정부 및 공공부문 통합재정수지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국민연금 확대, 졸속은 안돼 외

1999년 4월호(통권 제34호)

<권두칼럼>

서울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 손광락

<현안분석>

표준소득률과 기장세액공제가 신고납부에 미치는 효과 / 국중호
지주회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과세문제 / 김진수
자산유동화 개요 / 이상섭

<정책토론포트>

중소기업 관련 조세제도 개편방향

<주요국의 조세제도>

일본의 조세(II) / 신기선

<경제단상>

멋진 신세계 - Cyber Space - / 김태효
두터움, 치밀함 그리고 독특함 / 오세진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도를 통해 의를 지킨 하서 김인후 선생을 배향한
필암서원 / 이 준

<정책흐름>

1999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1998년 회계연도 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 조정(안)
재정의 효율성과 탄력성 제고를 위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

<재정통계>

공공부문 재정규모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공평과세 이뤄져야 한다 외

1999년 5월호(통권 제35호)

〈권두칼럼〉

거품경제 재현의 우려 / 이만우

〈현안분석〉

바람직한 조세행정의 제원칙과 세정개혁전략 / 김재진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 확충 / 김정훈
계속비제도와 예산편성의 질서 / 옥동석

〈정책토론포트〉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연구〉

1990년대 후반 일본의 재정개혁과 세제개편 / 국중호
우리나라의 기업인수제도 및 기업인수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평가
와 개선방향 /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

일본의 조세(Ⅲ) / 신기선

〈경제단상〉

다시 오늘을 생각하며 / 송은주
어느 증권사 객장에서 / 구본용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카리스마의 대학자 우암 송시열 선생을 배향한
서울에 하나뿐인 서원 필암서원 / 이 준

〈정책흐름〉

중산층 부담 경감을 위한 휘발유 교통세율 인하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의결
국가채무 추이와 국제비교
'ARS와 FAX를 이용' 국민적 탈세감시를 위한 고발전화 개통

〈재정통계〉

일반회계 세입 결산규모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누가 탈세를 하는가의

1999년 6월호(통권 제36호)

〈권두칼럼〉

소탐대실 / 이준구

〈현안분석〉

기준조세체계와 조세지출 - 소득세 - / 박기백
농산물 관세체계의 현황과 개선방향 / 이명헌

부가급여 과세를 위한 정책과제 / 전영준

〈정책연구〉

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방향 / 김재진 · 김진수

〈주요국의 조세제도〉

중국의 조세(Ⅰ) / 한상국

〈경제단상〉

지식관리의 합리성 / 이상렬
합리와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 이용수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유학으로 신라를 중흥시키려했던 국제적 지성의
선구자 고운 최치원 선생을 배향한 무성서원 / 이 준

〈정책흐름〉

국세행정 개혁 추진상황
4대 경제개혁 추진과 경기대책

〈재정통계〉

일반회계 세출 결산규모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카드기맹점을 더 늘려가야

1999년 7월호(통권 제37호)

〈권두칼럼〉

'빅딜'이 갈 길 / 이철송

〈현안분석〉

외환위기 이후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 / 박종규
OECD 부패방지협약과 이행조치에 관한 논의 / 장근호〈특집: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자영자 확대에 따른 주요논쟁
과 개선방향〉최근의 국민연금제도 변화요인과 주요논쟁 / 이철인
국민연금제도 도시지역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전영준
국민연금 도시자영자 확대에 따른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 김용하

〈주요국의 조세제도〉

중국의 조세(Ⅱ) / 한상국

〈정책연구〉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효과분석 / 이용섭
반덤핑제도의 운영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향 / 장근호

〈경제단상〉

도덕적 해이의 덫 / 이병우
 잃은 것과 얻은 것 / 이은경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선비출신의 의병장 김천
 일 선생을 배향한 남고서원 / 이 준

〈정책흐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국세행정 조직개혁
 구조조정 세제지원 보완내용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대책

〈재정통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능별 집행실적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렇게 생각한다 외

1999년 8월호(통권 제38호)

〈권두칼럼〉

개혁은 시장제도 하부구조부터 / 홍기택

〈현안분석〉

중산층 및 생활안정 대책의 검토 / 손원익
 조세범처벌법의 개편방향 / 한상국
 사회보험 통합논의의 근본적 재검토 / 이철인

〈정책토론포트〉

조세개혁의 방향 모색 - 한국과 미국

〈주요국의 조세제도〉

대만의 조세(1) / 한상국

〈정책연구〉

인적자본과 조세 / 이철인

〈경제단상〉

사소한 배려와 큰 감동 / 오승건
 솔로몬의 지혜 / 조태희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백사 이항복 선생을 배향한 화산서원 / 이 준

〈정책흐름〉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적 논의동향과 주요 이슈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사업 실시

1999년 상반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결과
 세금우대저축 안내

〈재정통계〉

지방재정통계(세입·세출)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세제개혁에서 고려할 일 외

〈명언산책〉

정부와 진보

1999년 9월호(통권 제39호)

〈권두칼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세제개편시스템이 정착되어야 / 이장희

〈현안분석〉

국채시장 및 국채관련제도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 이상섭
 OECD의 유해조세제도 판정기준과 우리나라의 관련제도 / 한도숙

〈특집: 1999 세법개정안을 보고〉

종합평가 / 안종석
 소득과세제도 / 안종석
 소비과세제도 / 성명재
 상속·증여세제 / 한상국
 관세제도 / 장근호
 세정개혁 / 현진권

〈정책토론포트〉

사회적 비용 감축과 WTO 주세판정 이행을 위한 주세율체계 개편
 방향
 조세범처벌법 개정(안)

〈주요국의 조세제도〉

대만의 조세(2) / 한상국

〈경제단상〉

납세가 존경의 가치기준이 되는 사회 / 김갑용
 나를 넘어서기 위한 경쟁 / 김근영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난산 윤원형을 제거하고 태평성대를 이끈 박순 선
 생을 배향한 옥병서원 / 이 준

〈정책흐름〉

1999 정기국회 제출 세제개편(안)

〈재정통계〉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총괄)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주세체계 전면 개편해야 외

<명언산책>
과세와 시행착오

1999년 10월호(통권 제40호)

<권두칼럼>
공원의 비극 / 전승훈

<현안분석>
세출구조와 재정적자 / 박기백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이자소득 과세방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
홍범교
지방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이상섭
정부부채와 거시경제 / 박종규

<특집: 2000년도 예산(안)>
2000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특징 / 배국환
2000년도 예산(안)의 평가(1) / 임주영
2000년도 예산(안)의 평가(2) / 홍범교

<정책토론포트>
지식인프라의 개발·확충

<정책연구>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대한 과세방안 / 한상국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의 조세(1) / 이명헌

<현장을 찾아서>
납세자의 충실한 동반자 납세자보호담당관

<경제단상>
전화를 통해 배우는 세상사 / 홍일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겸손과 정직 / 이명진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외교력과 뛰어난 전략으로 전란을 극복한 명재상
한음 이덕형 선생을 배향한 용연서원 / 이 준

<정책흐름>
2000년 예산(안) 의결
2000년 국제 세입예산(안) 및 조세지출보고서
세계개편(안) 수정사항

<재정통계>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일반회계)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소주세와 서민경제학 외

<명언산책>
아담스미스와 분업의 폐해

1999년 11월호(통권 제41호)

<권두칼럼>
부패의 함정과 반부패의 분수령 / 박재완

<현안분석>
전자상거래의 파급효과와 정책적 함의 / 연태훈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향 / 김진수
예산제도와 재정적자 / 이명헌

<반론과 정정>
지방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토론포트>
재정 건전화 위한 특별조치법(가칭) 제정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의 조세(2) / 이명헌

<기획>
1999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먼델 / 이상섭

<현장을 찾아서>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 / 최병규

<경제단상>
IMF가 우리에게 남긴 것 / 정윤미
아시아적 가치와 동질성 / 임동현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임금 앞에서 임금의 부당함을 비난한 선비 심청
현·김세필을 배향한 지천서원 / 이 준

<정책흐름>
OECD 각국의 조세부담률 비교
특별소비세제 개편
국가채권·채무 현황과 대책

<재정통계>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공기업특별회계)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기타 특별회계)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조세 형평성과 생산적 복지 외

〈명언산책〉
그때 우리는 모두 케인지언이었다

1999년 12월호(통권 제42호)

〈권두칼럼〉
지력과 精神力 / 김인철

〈현안분석〉
WTO 뉴라운드와 중요 협상의제에 관한 논의 / 장근호
주요국의 경비처리원칙 / 손원익
공기업의 자산유통화에 따른 과세제도 개선방안 / 한상국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의 조세(3) / 이명현

〈명언산책〉
부와 소득의 불균형

〈정책토론포드〉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 - 세제부문 -

〈현장을 찾아서〉
국세행정개혁을 선도하는 국세행정개혁기획단 / 최병규

〈경제단상〉
소비의 경제학 / 박상봉
Y2K 문제와 우리의 교훈 / 김성동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조정의 여러 관직을 두루 섭리한 행정관료의 전형
모당 홍이상 선생을 배향한 하강서원 / 이 준

〈정책흐름〉
OECD의 유해조세경쟁 규제작업 동향
개정 한·일 조세조약의 개관
1999년도 제2차 IMF정례협의 최종결과

〈재정통계〉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총괄)

〈이런 의견 저런 생각〉
IMF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외

2000년 1월호(통권 제43호)

〈권두칼럼〉
새천년과 정부의 역할 / 유일호

〈현안분석〉
포괄주의 소득과세제도의 주요 이슈 / 이철인
1996년 미국 모델 조세조약의 주요이슈와 미국의 조세조약 체결동향 / 한도숙
알기쉬운 세법 :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박기백

〈특집 : 2000년대 개막과 조세·재정정책〉
2000년대의 조세정책 방향 : 조세정책의 주요논점과 대책 / 김진표
2000년대의 조세정책 방향 / 광태원
2000년대의 재정정책 방향 : 재정운영의 과제와 정책방향 / 장석준
2000년대의 재정정책 방향 / 김동건

〈주요국의 조세제도〉
미국의 조세(I) / 전영준

〈명언산책〉
경쟁의 의미

〈경제단상〉
새로운 세기에는 '하이터치'가 뜬다 / 이우성
새천년에 생각하는 정보화사회 / 김석운

〈문화기행〉
인물탐험: 다산 정약용 / 이 준

〈정책흐름〉
1999 세법시행령 개정(안)

〈재정통계〉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일반회계)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스톡옵션 비과세 축소는 당연 외

2000년 2월호(통권 제44호)

〈권두칼럼〉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과 그 방향 / 황수웅

〈현안분석〉
수도권정책의 현황과 평가 / 김정훈
정부개혁의 성과와 과제 / 옥동석

〈명언산책〉
법과 인간

〈정책토론포트〉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요국의 조세제도〉

미국의 조세제도(II) / 김진수

〈경제단상〉

G-혁명의 아리아 / 이환석

21세기 리더와 우리의 과제 / 김익홍

〈문화기행〉

인물탐험: 백범 김 구 / 이 준

〈정책흐름〉

2000년 경제정책방향(안)

〈재정통계〉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공기업특별회계)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경제운용 자만할 때 아니다 외

2000년 3월호(통권 제45호)

〈권두칼럼〉

경제운용과 경상수지 / 박진근

〈현안분석〉

우리나라 지방도로의 교통량 평가 / 이장규

지방도로 양여금사업의 개선방안 / 박중규

지방교육재정 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안종석

코스닥시장의 급성장과 정책과제 / 김진수

〈명언산책〉

진실과 허구

〈정책연구〉

지방교부세의 구조분석 및 개선방안 / 김정훈

〈정책토론포트〉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평가와 미래(제34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경제단상〉

학교에서 / 최병찬

정보화시대를 바라보며 / 이정미

〈문화기행〉

인물탐험: 흥선대원군 이하응 / 이 준

〈정책흐름〉

개인기부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법인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납세자권리구제제도 운용방향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29개 사업 확정

〈재정통계〉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기타 특별회계)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분배문제 장기대책 필요 외

2000년 4월호(통권 제46호)

〈권두칼럼〉

구체적인 정책대안에 대해 논의해야 / 신영섭

〈현안분석〉

외부위탁을 통한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 연태훈

농업에서의 직접지불제도 / 이명현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제도 정비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 / 홍범고

〈명언산책〉

통계수치의 오류

〈주요국의 조세제도〉

미국의 지방세 / 김정훈

〈경제단상〉

소시민의 기우 / 김진국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 / 김영철

〈문화기행〉

인물탐험: 추사 김정희 / 이 준

〈정책흐름〉

1999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소득세 납부세액 경감 기준 제정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관리대책

〈재정통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OECD 국가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사회보장비 포함)

OECD 국가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사회보장비 제외)

내국세 세목별 구성의 변천

국제체계의 변천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소모적 재정 政爭 이제 끝낼 때 외

〈권말부록〉

『재정포럼(Public Finance Forum)』 총목차 ▶ 1999. 1 ~ 2000. 3

2000년 5월호(통권 제47호)

〈권두칼럼〉

『관성의 법칙』을 경계한다 / 강응선

〈현안분석〉

공익법인 관련 세제의 현황 / 손원익
조세법의 위헌 심판과 향후 입법정책방향 / 한상국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비한 세제 및 세정의 방향 모색 / 이철인

〈재정동향〉

1990년대 일본의 경제현황과 정책방향 / 김영철 · 박종규

〈명언산책〉

소비의 이론을 위해서

〈특별기획〉

고 정영현 박사의 연구업적을 기리며 / 현진권

〈주요국의 조세제도〉

영국의 조세제도(I) / 이철인

〈경제단상〉

한국의 반도체 산업 전망 / 박철수
슈퍼우먼 콤플렉스 벗어나기 / 김윤경

〈문화기행〉

인물탐험: 신라의 승려 혜초 / 이 준

〈정책흐름〉

『세금 · 공과금 인터넷 납부제도』 도입
국제거래 및 벤처자금 유용 기업 중심의 1/4분기 음성 · 탈루소득자
조사결과
표준소득률 조정내용 - 1999년 귀속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재정통계〉

조세 수입 및 조세부담률
국세 · 지방세의 배분 추이
내국세 세목별 구성의 변천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추경예산 꼭 편성해야 하나 되

2000년 6월호(통권 제48호)

〈권두칼럼〉

글로벌 경제와 강력한 정부 / 김종수

〈현안분석〉

재정 안정성 논의와 시사점 / 박기백
사회보장예산의 국제비교 / 전영준 · 백승훈

〈주요국의 조세제도〉

영국의 조세제도(II) / 김진영

〈명언산책〉

소비와 명예

〈경제단상〉

사이버상의 신조어 열풍, 네티즌의 자정노력「절실」/ 김택상
영수증 좀 주세요! / 최병규

〈문화기행〉

인물탐험 : 허난설헌 / 이 준

〈정책흐름〉

1999 회계연도 정부결산
휘발유 · 경유 교통세 및 등유 특별소비세 탄력세를 환원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강 화를 위한』 OECD 회원국의 전자정부 추
진현황 예비조사 결과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변경안내

〈재정통계〉

IMF 체계에 의한 세수 및 구성비(통합재정수지)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유가체계 개편 서둘러야 되

〈한국조세연구원 소식〉

『공공부문 개혁 국제포럼』 개최(2000. 6. 22 ~ 23)

2000년 7월호(통권 제49호)

〈권두칼럼〉

재정의 새로운 역할과 제도의 변화 / 박대규

〈현안분석〉

지방교육재원 조달방법의 재원배분효과 비교 / 안중석
재정분권의 적정 진로 / 김정훈

〈명언산책〉

만인을 독살하는 독사여!

〈특별기획〉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 조세제도 / 한상국

〈정책토론포트〉

공공부문개혁 국제포럼

〈주요국의 조세제도〉

영국의 조세제도(III) / 김진영

〈경제단상〉

소비의 미덕 / 이창훈

침 발라 붙인 우표 / 강미정

〈문화기행〉

인물탐험: 계백장군 / 이 준

〈정책흐름〉

과세자료의 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6860호)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변경안내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재정통계〉

내국세 납세 인원

국세심사 사무처리: 이의신청

국세심사 사무처리: 심사청구

조세 행정소송 건수

세목별 감사 실적

조세범칙 조사 실적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공무원연급제도 개선 논의 외

2000년 8월호(통권 제50호)

〈권두칼럼〉

정부재정기능의 재정립 / 전주성

〈현안분석〉

채권의 주식전환을 통한 부실채권 처리방안 / 한상국

네덜란드 모델의 노동시장정책 / 이장규

〈재정동향〉

최근 5년간 캐나다 재정적자의 변화 / 김현숙·박종규

〈정책토론포트〉

한·일 재정의 현안과 개혁과제

〈주요국의 조세제도〉

캐나다의 조세제도(I) / 이장규

〈정책연구〉

혼합분포 추정을 통한 중심(core)인플레이션을 측정 / 박종규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지원 방향 / 노영훈·연태훈·홍범교

〈경제단상〉

三富者 주연의 / 서문석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 이은정

〈문화기행〉

인물탐험: 유관순 / 이 준

〈정책흐름〉

1999년 통합재정수지(확정)

2000년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 법령해석 개선내용

2000년도 주요투자사업 총사업비 조정

〈재정통계〉

연도별 국세체납현황

세목별 국세체납액 정리 현황(1998)

세목별 과세적부심사제 처리실적

내국세 징세비 추이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국가채무와 공적자금 논쟁 외

2000년 9월호(통권 제51호)

〈권두칼럼〉

한국 경제와 경제기반 구축 / 이수범

〈현안분석〉

담배가격의 국제비교와 세계개편방향 / 성명재

동남아의 부실채권 처리과정과 시사점 / 김진수

〈명언산책〉

『새벽 달빛 아래서』 중에서

〈주요국의 조세제도〉

캐나다의 조세제도(II) / 이장규

〈경제단상〉

전환기의 경제흐름과 대응 / 이은직

신용카드가 생활화된 사회 / 민병수

〈문화기행〉

인물탐험: 녹두장군 전봉준 / 이 준

〈정책흐름〉

2000년 상반기 통합재정 수지

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에 의한 국세전자납부 전면 실시
 국세체납(결손)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제도 시행효과
 1999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
 2000년도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재정통계〉

- 소득세편(I) -
 소득세 예산 및 징수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시도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시도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1994~1998)
 종합소득세 결정유형별 신고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보고 외

2000년 10월호(통권 제52호)

〈권두칼럼〉

適法과 稅政 / 김용표

〈현안분석〉

석유류 관련세제의 개편방향 / 성명재
 호주와 뉴질랜드의 국세체납정리 / 홍범교
 WHO 보고서를 통해 본 우리나라 보건 의료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 김진영

〈명언산책〉

'족한 줄 알면 욕이 없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知足不辱, 知止不殆)' - 『老子』

〈특집〉

2001년 예산(안)의 특징 / 반장식
 2001년 예산(안)의 평가(I) / 안종범
 2001년 예산(안)의 평가(II) / 이명현

〈정책토론포트〉

조세 및 지방재정구조개혁의 방향
 2000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정책과제

〈주요국의 조세제도〉

캐나다의 조세제도(III) / 이장규

〈경제단상〉

디지털경제시대에 대한 소고 / 전흥익
 '허준' 과 같은 마음 / 김현숙

〈문화기행〉

인물탐험: 기생 논개 / 이 준

〈정책흐름〉

2000 정기국회 제출 세제개편(안)
 2000년 세제개편안 수정사항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세정개혁 뿌리를 내리려면 외

2000년 11월호(통권 제53호)

〈권두칼럼〉

표준소득률 폐지와 기준경비율제도의 도입 / 장 춘

〈현안분석〉

재정 투명성 논의와 시사점 / 박기백
 2000년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과 평가 / 전영준
 도로교통의 사회적 비용: 현황 및 정책과제 / 김정훈

〈주요국의 조세제도〉

호주의 조세제도(I) / 정재호

〈명언산책〉

'부정한 부와 지위는 나에게서 든구름과 같은 것(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 - 『論語』

〈경제단상〉

'벤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 최순일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 / 이주희

〈문화기행〉

인물탐험: 만해 한용운 / 이 준

〈정책흐름〉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
 신용카드 복권 당첨인원 확대를 위한 하위등위 당첨건수 결정방법 변경
 제3차 ASEM 정상회의 경제분야 논의의제 및 기대성과
 『공적자금백서』 발간

〈재정통계〉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별 현황
 기장의무자별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소득공제현황(1994~1998)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나랏빛 축소위한 가시적 조치를 외

2000년 12월호(통권 제54호)

〈권두칼럼〉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 원윤희

〈현안분석〉

지난 20년간의 지방재정 세입변화 / 안중석
우리사주제의 개선방향 및 세제지원정책 / 이장규
북구국가들의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 / 한도숙

〈주요국의 조세제도〉

호주의 조세제도(II) / 정재호

〈명언산책〉

‘배가 뒤집혔을 때 수영습씨를 알 수 있고, 말이 달릴 때 말 다루는 습씨를 알 수 있다(舟覆乃見善游, 馬奔乃見良御)’ - 『회남자』

〈경제단상〉

다음의 화두 / 박형필
신자유주의에 대한 나의 생각 / 유인경

〈문화기행〉

인물탐험: 문무대왕 / 이 준

〈정책흐름〉

투자보장 등 4대 합의서의 타결의의 및 주요내용
1998년 OECD 회원국 조세부담률
기업구조조정관련 세정지원
위장기맹점 색출을 위한 전산조기경보시스템 개발·시행
운전면허소지자·자가용소지자·자동차사업자 등에 대한 부담금 전면 폐지

〈재정통계〉

과세표준 계급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급별 현황
원천징수 부과현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10분위 분포(1998)
지방국세청별 종합소득세 조사실적

〈이런 의견 저런 생각〉

피같은 세금 낭비 없도록 외

2001년 1월호(통권 제55호)

〈권두칼럼〉

위기와 개혁 / 전승훈

〈현안분석〉

식량안보와 WTO 체제 / 이명헌

최근 독일의 세계개혁 / 김유찬

미국 국세청 “납세자 순응도 측정 프로그램”의 내용과 시사점 / 현진권

〈OECD 국가의 조세개혁 논의〉

일본의 세계개혁 방향 / 이장규

〈경제단상〉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 고의주

〈문화기행〉

인물탐험: 무령왕 / 이 준

〈명언산책〉

발랑시엔의 교활한 도둑(The Sly Thief of Valenciennes)

〈정책흐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경위 수정사항
2001년도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 확정
2000년도 공기업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2001년 상반기 할당관세 운용
2001년 조정관세 운용

〈재정통계〉

소득종류별 원천징수 부과현황
업종별 표준소득률 조정
소득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이의신청
소득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심사청구
소득세 세무소송 건수
소득세 감사실적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부가가치세율 인하 주장 유감 외

2001년 2월호(통권 제56호)

〈권두칼럼〉

경제정책 정도(正道) 밟아야 한다 / 김준영

〈현안분석〉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과 전망 / 김진수
신경제 논의와 시사점 / 김진영
호주의 전자 세정 / 정재호
〈OECD 국가의 조세개혁 논의〉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대한 OECD의 평가 / 현진권

〈명언산책〉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도지이덕, 제지이례, 유치차격)-孔子, 『論語, 爲政篇』

〈경제단상〉

계몽된 사회에서의 투명성에 대한 소고 / 박승준

〈문화기행〉

인물탐험: 단종을 따른 충신들 / 이 준

〈정책흐름〉

조세피난처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움직임
 공공개혁 추진 현황 및 계획
 디지털 세금계산서 도입-세금계산서, 인터넷을 통해 교부 가능-
 2001년 예산조기집행 점검 1차회의 개최
 2001년부터 재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안내

〈재정통계〉

양도소득세율의 변천
 양도소득세 부과
 양도소득세 국제심사 사무처리: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국제심사 사무처리: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세무소송 건수
 양도소득세 감사실적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재정 흑자 경기처방에 써라 외

2001년 3월호(통권 제57호)

〈권두칼럼〉

조세의 정책적 남용을 경계한다 / 이재은

〈현안분석〉

미국 경제의 경기변동 논의와 시사점 / 이철인
 중국의 서부지구 개발과 외자기업 조세우대정책의 시사점 / 한상국
 복리지표 개발의 필요성 / 김중면

〈정책토론포트〉

제35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국제행정 선진화를 위한 정책 과제

〈명언산책〉

국제청 개혁을 위한 권고
 -Nizam al-Mulk, The Book of Government or Rules for Kings

〈OECD 국가의 조세개혁 논의〉

스위스의 조세개혁 / 이장규

〈경제단상〉

인터넷, 참을 수 없는 사랑의 가벼움 / 김소현

〈문화기행〉

인물탐험: 춘사 나윤규 / 이 준

〈정책흐름〉

주류 구매전용 카드거래제 도입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확대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
 전자상거래 관련 OECD보고서(잠정) 공표
 IMF의 재정투명성 평가결과 및 개선계획
 각국의 중기재정제도

〈재정통계〉

법인세율의 변천
 법인세 예산 및 정수
 자본금 규모별 법인수
 자산 규모별 법인수
 외형 규모별 법인수
 종류별 법인수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정치권의 준조세 경감 노력 외

2001년 4월호(통권 제58호)

〈권두칼럼〉

전환기 재정의 역할 / 구정모

〈현안분석〉

세부담 축정에 대한 논의 / 박기백
 2000년 연금과세 개편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 전영준
 부동산 세제의 현황 및 개선방향 / 김정훈

〈정책연구〉

외환위기 발생후 2년간의 소득·소비패턴 및 개인세부담의 변화 분석 / 성명재
 세수추계의 기법개발 연구 / 박기백·이명현

〈OECD 국가의 조세개혁 논의〉

뉴질랜드 세제에 대한 OECD 평가 / 정재호

〈경제단상〉

최근 경제 현실 속의 월급쟁이 / 박세준
 신용사회로 가는 길 / 김정현

〈인물탐험〉

면담 최익현 / 이 준

〈명언산책〉

보호관세에 대한 아브라함 링컨의 발언
 - David Herbert Donald, Lincoln

〈정책흐름〉

2000년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2001년 1월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자본거래 관련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제도
 2000년 국세세입 분석
 2000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재정통계〉

업종별 법인수
 결산기별 법인수
 시도별 법인수
 유형별 공익법인 현황
 법인세 환급금
 법인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이의신청
 법인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심사청구
 법인세 세무소송 건수

〈이런 의견 저런 생각〉

특하면 목적세인가 외

2001년 5월호(통권 제59호)

〈권두칼럼〉

적자재정과 국채관리 / 강정영

〈현안분석〉

조세피난처를 통한 자본거래 증가와 대응방안 / 안종석
 한계유효세율을 통해 본 우리나라 세 부담 추이 / 현진권

〈OECD 국가의 조세개혁 논의〉

노르웨이의 1992년 조세개혁 / 박창균

〈정책연구〉

연금과세체계개편의 경제적 효과분석 / 전영준·한도숙
 고용관련 조세·재정정책 개선방안 / 이철인·전영준
 저축률 하락과 재정정책 / 박종규·김진영
 도로교통의 외부비용과 적정혼잡과세 / 김정훈
 국제적인 조세경쟁과 조세회피에 대응한 조세협력방안 / 한도숙

〈명언산책〉

상아젓가락이 나라를 망친다
 - 한비자 중에서

〈경제단상〉

전선(戰線)에서의 2년 / 김건수
 Click and Mortar / 이은경

〈인물탐험〉

매현 윤봉길 / 이 준

〈정책흐름〉

IMF의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
 4월 임시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공기업 사회사정리 추진현황
 2001년 2월말 현재 총대외지불부담 현황(잠정)

〈재정통계〉

자산재평가법의 연혁
 자산재평가세 예산 및 징수
 자산재평가세 부과
 자산재평가 산출내역
 자산별 재평가 상황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세계잉여금, 추경 사용 안된다 외

2001년 6월호(통권 제60호)

〈권두칼럼〉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분권화를 위한 변명 / 김경환

〈현안분석〉

미국의 조세감면정책 / 정재호
 전자상거래와 조세 - OECD TAG 보고서 - / 홍범교

〈기획〉

중장기 세제 운용방향

〈명언산책〉

부지런함과 검박함 - 채근담 섭세편 중에서

〈OECD 국가의 조세개혁 논의〉

폴란드의 조세개혁 / 박창균

〈정책연구〉

뉴라운드 대비 관세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 이명현·정재호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 / 손원익
 국고보조금의 개편방안 / 김정훈

〈경제단상〉

주식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이종철
 월 소득 34만원? / 송은주

〈인물탐험〉

소설가 조정래 / 이 준

〈정책흐름〉

2000회계연도 정부결산
 중국의 외국인투자 동향

소득세 무기장신고자 관리강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주요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현황

〈재정통계〉

부가가치세 예산 및 징수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세액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경정현황
업태별 부가가치율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지자체 보조금 체계화 하라 외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2001년 4월까지의 세수실적 분석

〈재정통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업태별 인원(개인)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부가가치세 국제심사 사무처리: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국제심사 사무처리: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무소송 건수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건강보험 해법 없나 외

2001년 7월호(통권 제61호)

〈권두칼럼〉

투명성을 제고하고 냉정함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 이재현

〈현안분석〉

도시가구의 세부담 변화 추이 / 성명재
미국의 연결납세제도 / 김진수

〈명언산책〉

코스(Coase) 교수님 어디에 계신가요? - Speedway Solution
Chicago Sun-Times 중에서

〈특별기획〉

건강보험의 주요 정책과제와 개혁방향 / 권순원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 분석을 위한 소고 / 이혜훈

〈OECD 국가의 조세개혁 논의〉

멕시코의 세제 / 박창균

〈정책연구〉

북구국가들의 여성정책: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 한도숙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김진수 · 김재진

〈경제단상〉

나는 과연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 / 고희탁
휴대폰과 신용카드에 대한 상념 / 심재진

〈인물탐험〉

부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살신성인'의 참 군인들 / 이준

〈정책흐름〉

한·중·일 경제협력 공동연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

2001년 8월호(통권 제62호)

〈권두칼럼〉

장래를 위한 포석 / 전승훈

〈현안분석〉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개선방안 / 한상국
대학재정지원정책의 현황과 평가 / 김진영
소액거래 과표양성화를 위한 직불카드 활성화 방안 / 김재진

〈명언산책〉

인플레이션세에 관한 케인즈의 견해

〈OECD 국가의 조세개혁 논의〉

스페인의 조세개혁 / 권오성

〈경제단상〉

주식투자는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 고희탁
정보화 사회를 보는 시각 / 김용대

〈인물탐험〉

하늘보기 부끄러워 샷샷고 방향한 천재 김삿갓 김병연 / 이준

〈정책흐름〉

OECD 2001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2001년 상반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결과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상금 확대
한·칠레 조세조약 협상타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운용방향

〈재정통계〉

특별소비세 예산 및 징수
특별소비세 주요품목 출고량
특별소비세 주요품목 부과
특별소비세 물품 및 장소별 부과

특별소비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이의신청
특별소비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심사청구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소득공제 확대보다 세율 인하를 외

2001년 9월호(통권 제63호)

〈권두칼럼〉
공평한 조세부담을 위하여 / 우창록

〈현안분석〉
최근 법인세 추이와 시사점 / 박기백
기업연금관련 조세제도 정비방향 / 전영준

〈명언산책〉
조세정책의 시행착오 - 역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정책토포리포트〉
최근 경제동향과 조세·재정 정책과제 / 박기백 외

〈OECD 국가의 조세개혁 논의〉
그리스의 조세개혁 / 권오성

〈경제단상〉
어떤 주식을 사야 하나? / 고희탁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 류인경

〈인물탐험〉
서울에 도움이 조선개국의 풍운아 태조 이성계 / 이 준

〈정책흐름〉
2001년 정기국회 제출 세제개편(안)
재정3법 제·개정 추진현황
전자정부 서비스 내년부터 본격 개시

〈재정통계〉
주세율의 변천
주세 예산 및 징수
주류별 주세 부과
주요 주류 출고 현황
주류 제조면허장 수
주류 판매면허장 수
주세 국세심사사무처리: 이의신청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세제개편안 방향은 옳다 외

2001년 10월호(통권 제64호)

〈권두칼럼〉
감세정책과 불황 극복 / 엄기웅

〈현안분석〉
대규모기업집단제도에 관한 최근의 논의 / 김진수
공기업가격정책이 부채에 미치는 영향 / 현진권
Emerging Market에서의 외환·금융위기: 최근 아르헨티나의 경우
를 중심으로 / 박창균

〈기획〉
기획 I
2001년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과 평가 / 홍범교
2001년 세제개편안의 평가 / 이만우
기획 II
2002년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특징 / 반장식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 / 임주영

〈명언산책〉
돈과 대가

〈OECD 국가의 조세개혁 논의〉
체코공화국의 조세개혁 / 권오성

〈경제단상〉
어떻게 변할 것인가? / 홍록식
주역의 원리와 씬 없는 미로 찾기 / 김익홍

〈인물탐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 이 준

〈정책흐름〉
2002년도 예산(안)
2002년 통합재정수지 전망
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

〈시간안내〉
카리스마 VS 카리스마 이병철·정주영 외

〈재정통계〉
상속세율의 변천
상속세 예산 및 징수
상속세 부과
상속재산가액의 계급별 피납인수, 재산가액 및 상속세 부과
상속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이의신청
상속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심사청구
상속세 세무소송 건수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예산안 거품은 없나 외

2001년 11월호(통권 제65호)

〈권두칼럼〉

경제난국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 이인실

〈현안분석〉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한 과세문제 / 김재진
국가물류비 실태와 철도교통의 중요성 / 정재호

〈명언산책〉

실증적 사고와 규범적 사고

〈정책토론티포트〉

21세기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세·재정 운용방향
- 중장기 세계개편방향 / 손원익
- 세출구조 및 재정운용 개선방향 / 박기백

〈OECD 국가의 조세개혁 논의〉

〈종합1〉일본,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뉴질랜드

〈경제단상〉

정보화와 우리의 선택 / 김광석
갈수록 늘어나는 유치원 교육비 / 강미정

〈인물탐험〉

예로써 나라를 일으키려했던 大老 우암 송시열 / 이 준

〈정책흐름〉

2001년 조세지출보고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신간안내〉

열보다 큰 아홉 외

〈재정통계〉

증여세율의 변천
증여세 예산 및 징수
증여세 부과
증여재산가액의 계급별 수증자수, 재산가액 및 증여세 부과
증여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이의신청
증여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심사청구
증여세 세무소송 건수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재정 효율성 끌어올려야 외

2001년 12월호(통권 제66호)

〈권두칼럼〉

조세법률주의가 세법의 유일한 가치는 아니다 / 윤종훈

〈현안분석〉

상속·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관한 소고 / 한상국
최근 우리나라의 체육재정 현황 / 김진영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경제적 유인수단의 평가 / 권오성

〈명언산책〉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

〈OECD 국가의 조세개혁 논의〉

〈종합II〉한국, 멕시코, 그리스, 폴란드, 체코

〈신간안내〉

혼돈의 기원 - 세계 경제 위기의 역사 1950~1998 외

〈경제단상〉

테러의 경제학 과 대테러의 경제학 / 이상팔
바쁜 서울 생활 속에서의 힘듦과 보람 / 하희유

〈인물탐험〉

주군을 대신해 목숨을 버린 충의의 표상 고려 명장 신승겸 / 이 준

〈정책흐름〉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 비교
2000년 OECD 회원국 조세부담률(잠정)
중국의 WTO 가입 영향과 대응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재정통계〉

기타 소비세 및 목적세(편)
전화세 예산 및 징수
인지세 예산 및 징수
방위세 예산 및 징수
농어촌특별세 예산 및 징수
교통세 예산 및 징수
교통세 부과
교육세 예산 및 징수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재정정책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외

2002년 1월호(통권 제67호)

〈권두칼럼〉

건강한 정치와 활력 있는 경제 / 宋大熙

〈현안분석〉

재정과 경기조절 / 朴寄白
케이블 인터넷의 사회후생과 조세정책 / 全澤勝
경제위기를 초래한 아르헨티나의 재정건전화 정책 실패 / 朴炯秀

〈명언산책〉

진화와 규범

〈해외동향〉

일본 세계개혁의 최신 동향 / 鞠重鎬

〈신간안내〉

이코노미스트 세계대전망 - THE WORLD IN 2002

〈정책흐름〉

2001년 직접세분야 시행령 개정(안)

2001년 간접세분야 시행령 개정(안)

2002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정통계〉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지방세 시도별 분포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법인세 인하 '失' 보다 '得' 많다 외

2002년 2월호(통권 제68호)

〈권두칼럼〉

국제조세의 새로운 경향과 우리의 대응 / 이진학

〈현안분석〉

의료기관 관련세제의 현황 및 정책방향 / 孫元翼

근로소득세제 국제비교 / 全瑛俊

〈명언산책〉

정지의 상태

〈해외동향〉

주요 국가의 조세제도

〈신간안내〉

OECD국가의 최근 조세개혁 논의 동향

〈정책흐름〉

2001년 국세수입 실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외국의 중산층·서민 생활안정대책과 그 시사점

기업의 정보화 및 환경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납세편의 등을 위한 부가가치세 제도개선 내용

〈재정통계〉

지방세 세목별 구성비 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지하경제 줄일 방안 찾아야 외

2002년 3월호(통권 제69호)

〈권두칼럼〉

지방세를 통한 지방재원의 확충 / 이영희

〈현안분석〉

성공적 조세개혁을 위한 접근방법론 / 魯英勳

미국의 근본적 세계개혁안: 내용과 교훈 / 玄鎭權

인구학적 특성 변화가 도시가구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혼과 노령화 문제를 중심으로 / 成明幸

〈기고〉

일본경제, 재생전략은 없는가? / 裴接皓

〈명언산책〉

정치와 경제

〈정책토론포트〉

납세의식 선진화와 국제행정 개선방향 / 전승훈·김재진

〈해외동향〉

주요 국가의 조세제도

〈신간안내〉

일본의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정책흐름〉

2001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주택시장 안정대책

기금제도 개혁 본격 추진

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재정통계〉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고액납세자들 외

2002년 4월호(통권 제70호)

〈권두칼럼〉

현행 합병세제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가능성 / 이준규

〈현안분석〉

지역균형발전의 현황과 과제 / 金正勳

WTO 무역 원활화 논의에 대비하여 / 鄭在皓
일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내용과 시사점 / 金珍洙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유치와 조세정책 / 崔濬旭

〈명언산책〉

파레토 개선

〈해외동향〉

주요 국가의 조세제도(III)

〈시간안내〉

미국의 유산세 폐지와 정책적 시사점

〈정책흐름〉

2001귀속 표준소득률 조정내용
2001년 통합재정수지(잠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

〈재정통계〉

국제조세비교 : 총괄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한국경제, 봄은 왔나 외

2002년 5월호(통권 제71호)

〈권두칼럼〉

투명성은 기업경영의 생명이다 / 신찬수

〈현안분석〉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정립과 전략 모색: 경제성장모형 검증을 통한 시사점 연구 / 權五盛
OECD방식에 의한 우리나라 잠재GDP 추정 / 朴炯秀

〈정책토론포트〉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와 정책과제

〈명언산책〉

합리적 행동

〈정책연구〉

소득분배 변화 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 成明宰
고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세·재정정책 개선방안 / 李哲印
세무조사의 정책방향 / 玄鎭權·朴倉均
우리나라 재정운영 행태에 대한 연구 / 朴奇白
전자상거래와 조세: 국제적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 洪範敎·安鍾錫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 金珍洙·黃國在

자유무역협정하의 최적 관세 및 관세 유예기간 연구 / 鄭在皓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의 지방재정 구조 변화 분석 / 安鍾錫

〈정책흐름〉

정부행정 효율성 크게 상승
인터넷을 통한 1단계 국세서비스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재정통계〉

국제조세비교: 소득과세(I) 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소득분배 개선 급하다 외

2002년 6월호(통권 제72호)

〈권두칼럼〉

포괄과세주의 도입 준비를 / 朴英俊

〈현안분석〉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향 / 韓相國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소득공제 / 金栽鎭
기금에 대한 통제와 자율권의 논리 / 全澤勝
농촌지역정책에 대한 검토: EU의 사례를 중심으로 / 李明憲

〈정책토론포트〉

체육투자의 성과 평가와 정책방향

〈명언산책〉

민주적 토론

〈정책연구〉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 金珍永
관세를 인하의 경제적 효과분석: 소득계층별 후생효과를 중심으로 / 李明憲·成明宰
사회보장정책의 경제적 효과분석 - 사회보장예산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1차연도 과제 - / 全瑛俊·金宗勉
체제전환국 조세정책의 분석과 시사점 - 남북경협 및 경제통합 관련 조세·재정분야 기초 연구(I) / 崔濬旭·李明憲·全澤勝·韓相國

〈정책흐름〉

신용카드 종합대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중기재정지원방향
ASEAN+3(한·중·일) 재무장관회의의 결과

〈재정통계〉

국제조세비교: 소득과세(II) 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租稅마일리지 제도를... 외

2002년 7월호(통권 제73호)

〈견두칼럼〉
개방을 다시 생각함 / 郭泰元

〈현안분석〉
기금 현황과 쟁점 / 朴寄白
NPO 및 기부금 관련 최근 동향 / 孫元翼
목적세와 특별회계에 관한 논의 / 金正勳

〈정책토론포트〉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지노의 공익성 제고 방안 / 金正勳

〈명언산책〉
인간사회의 목표

〈정책연구〉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와 조세정책에 대한 함의 / 金珍永·朴倉均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에 관한 연구 / 金正勳
기업연금 도입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 全瑛俊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 崔濟旭

〈정책흐름〉
2002년 하반기 경제운용
부담금 신설·폐지 및 부담금 징수 현황
2002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세제
새로운 재정기초 판단지표 개발

〈재정통계〉
국제조세비교: 재산과세 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역울한 세금부과 없어야 외

2002년 8월호(통권 제74호)

〈견두칼럼〉
공적자금 논쟁에 있어서 금기사항 / 李晩雨

〈현안분석〉
주택시장의 문제점과 조세정책방향 / 魯英勳
미국의 세수추계로부터의 시사점 / 成明宰
OECD 국가의 환경세 도입방향에 대한 논의 / 權五盛
재정정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曠동석·배근호

〈명언산책〉
현실 직시

〈정책토론포트〉
재정 안정을 위한 중장기 세출구조 개선방안 / 朴寄白
공적자금 상환대책(재정부문) / 朴寄白

〈정책흐름〉
2002년 상반기 통합재정수지(잠정)
장래 가구 추계(2000~2020)
납세관련 서류 제출방법의 전자 송신화

〈재정통계〉
국제조세비교: 소비과세 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청소년 경제교육 관심 가질 때 외

2002년 9월호(통권 제75호)

〈견두칼럼〉
소득분배 악화시킬 고속철 / 배준호

〈현안분석〉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제 비교 / 鄭在皓
국세·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실태 및 정책방향 / 金栽鎭
기금과 특별회계의 비교분석 / 全澤勝

〈기획〉
2002년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 韓相國

〈정책토론포트〉
Global 시대 동아시아의 세제개혁 방향

〈정책흐름〉
2002년 정기국회 제출 세법개정안
2002년 정기국회 제출 세법개정안 보완

〈재정통계〉
중앙재정 I 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자본이득과세 강화해야 외

2002년 10월호(통권 제76호)

〈견두칼럼〉
부동산 투기의 억제방법은 시가과세에 있다 / 李愚澤

〈현안분석〉

조세법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안 / 韓相國
 재정지표의 유형과 적용 / 朴壽白
 경기변동과 재정수지의 관계로 본 우리나라 재정정책 / 朴炯秀
 1996~2001년의 소득 및 소득세 부담 변화추이: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 成明宰

〈특집〉

2003년도 예산안
 2003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 裴國煥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I) / 吳然天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II) / 朴炯秀

〈정책흐름〉

2003년 예산(안)
 2003년도 국세 세입예산(안)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국세청 조세박물관 개관

〈재정통계〉

중앙재정 II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카드 납세 왜 안되나 외

2002년 11월호(통권 제77호)

〈권두칼럼〉

세부담의 구조적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제언 / 李哲松

〈현안분석〉

중소기업 경영의 건전성·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계개편방안 / 金珍珠
 부부자산합산과세의 위험결정과 미국의 혼인세 논쟁 / 魯英勳
 신의주특구와 조세정책 고려 요소 / 韓相國

〈정책흐름〉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정책 대응
 2002년 11월부터 홈택스서비스 확대
 2002년 조세지출보고서
 최근 경제동향과 2003년도 재정운영방향

〈재정통계〉

중앙재정 III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大選에 떠밀린 예산심의 외

2002년 12월호(통권 제78호)

〈권두칼럼〉

고령화사회의 진행과 한국경제 / 趙潤濟

〈현안분석〉

접대비 관련세제와 지출현황 / 孫元翼
 세제 복잡성의 사회적 비용과 세제 단순화를 위한 선진국의 노력 / 金裁鎭
 체제전환국의 재정적자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 崔濟旭
 국민연금제도의 소득 재분배 효과 / 田炳睦

〈해외동향〉

중국의 재정관리체제 / 韓相國

〈정책흐름〉

2002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

〈재정통계〉

중앙재정 IV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거꾸로 가는 소득재분배 외

2003년 1월호(통권 제79호)

〈권두칼럼〉

음식문화와 새로운 경제질서 / 송대희

〈현안분석〉

- 1) 강원도 카지노세 논의배경과 도입방안 / 김정훈
- 2) 지역간 불균형에 관한 소고 / 김현아
- 3) 배당소득세제의 정책과제 / 김진수

〈해외동향〉

일본 소득과세의 경제효과 / 국중호

〈전국 대학생 현상 논문 공모 우수작〉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김선중

〈정책흐름〉

- 1) 2003년 1월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2) 2002 한국의 사회지표

〈재정통계〉

중앙재정 V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희망을 키우는 경제를 외

2003년 2월호(통권 제80호)

〈권두칼럼〉

부동산투기와 세제개편의 과제 / 조주현

〈현안분석〉

- 1) 기금의 투자적 성격 - 계약성과 영향력 - / 전택승
- 2) 국가채무의 개념 및 분류 / 박기백
- 3) 선박 톤세제도 관련 논의 / 손원익

〈정책흐름〉

- 1) 2003년 경제운용방향
- 2) 최근 주요국의 연금제도 개혁동향
- 3)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 4) 2003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운용계획 및 쌀소득보전기금운용계획

〈재정통계〉

중앙재정 VI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부동산 보유세 강화도 좋지만...외

〈권말부록〉

2002년 총목차

2003년 3월호(통권 제81호)

〈권두칼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 나성린

〈현안분석〉

- 1) 우리나라와 OECD 주요 선진국의 에너지관련 세제 비교 / 권오성
- 2)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정책 / 노영훈

〈정책토론〉

- 1)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 2) 「참여정부」의 재정운영방향

〈정책흐름〉

- 1) 2003년도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경비를 신고 안내
- 2) 2002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 3) 2002년 국세수입 실적
- 4) 2003년도 기획예산처 현안 및 주요정책 과제

〈재정통계〉

중앙재정 VII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노무현정부의 세정개혁 기대와 불만 함께 따져봐야...외

2003년 4월호(통권 제82호)

〈권두칼럼〉

SK의 비윤리적 교환 / 최용선

〈현안분석〉

- 1) 건강보험의 장기재정부담 / 김종면
- 2) 소득계층별·연령별 소득분포 분석을 통해 살펴본 소득분배 구조의 현황 / 성명재
- 3) WTO DDA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정재호

〈해외동향〉

독일의 상속증여세 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 김유찬

〈정책흐름〉

- 1)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
- 2) 『200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 3) 2003년 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 4) 외국의 재정분권 동향과 시사점
- 5) 국세청 혁신방향

〈재정통계〉

중앙재정 VIII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적자재정 말할 때인가 외

2003년 5월호(통권 제83호)

〈권두칼럼〉

포괄주의 과세와 납세자 권익보호 / 윤세리

〈현안분석〉

- 1) 연령과 교육수준을 고려한 도농간 소득비교 / 이명현
- 2) 미국조세제도의 역사적 흐름과 시사점 / 현진권
- 3) 국제적 탈세방지를 위한 정책방향 / 최준욱

〈정책토론〉

농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방안

〈해외동향〉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정책흐름〉

- 1) 최근의 경제동향과 정책방향
- 2) 성과관리제도 시행방향
- 3) 2003년도 재정운영 등 현황업무
- 4) 2003년 5월 1일부터는 내집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자
- 5) 2001년도 지방세 최종징수실적

〈재정통계〉

중앙재정 II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부동산 과표, 현실성 있게 고쳐야 외

2003년 6월호(통권 제84호)

〈권두칼럼〉

참여정부의 국제행정방향 / 김중상

〈현안분석〉

- 1)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방간 재정관계 변화와 정책시사점 / 안종석
- 2) 향후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의 방향에 대한 소고 / 정재호
- 3) 미시자료로 분석한 법인의 세부담 / 박기백

〈정책토론포드〉

로또복권 수익금 활용 및 관리방안

〈해외동향〉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정책흐름〉

- 1) SOC 민간투자제도의 개선
- 2) 교통세법시행령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3) 「참여정부 출범 100일」경제정책의 성과와 비전
- 4) 2002회계연도 정부결산
- 5) 투기지역 지정 확대
- 6) 2003년 추경예산(안) 편성

〈재정통계〉

지방재정 I 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세율 내리고 감면 줄여야 외

2003년 7월호(통권 제85호)

〈권두칼럼〉

공공부문 개혁의 원칙에 관하여 / 유일호

〈현안분석〉

- 1) 미시자료로 분석한 법인의 세부담 / 박기백
- 2) 효율적인 정부조직구성 및 인사배치 이론 / 전택승
- 3)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방안

〈해외동향〉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정책흐름〉

- 1) 2003년 5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 2) 부가세법시행령 및 조특법시행령 개정
- 3)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원자재 관세율 인하
- 4) 5월까지의 재정조기집행 실적 및 추경예산 집행 대책
- 5) 2003년 7월 1일자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 안내

〈재정통계〉

지방재정 II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추경보다 더 급한 경기대책은 외

2003년 8월호(통권 제86호)

〈권두칼럼〉

'눈의 시대'의 경제정책 / 전승훈

〈현안분석〉

- 1) 일본의 배후자 공제제도, 사회보험과 여성노동공급 / 원종학
- 2) 일본 재정구조의 변화와 세제개혁 전망 / 국중호
- 3) 프랑스 공공지출의 현안과 시사점 / 김중면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미국 주정부의 재정위기와 시사점 외

〈정책흐름〉

-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 2)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 3) 근로소득공제율 5%p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율 10%p 확대
- 4) 2001 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영상황 분석자료

〈재정통계〉

지방재정 III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연금보험료, 봉급자만 '봉' 안 되게 외

2003년 9월호(통권 제87호)

〈권두칼럼〉

거시경제 안정화가 우선이다. / 이인실

〈현안분석〉

- 1) 공평한 세무조사란 무엇인가? / 김형준
- 2) 부동산 거래세의 실가과세 실행방안 / 노영훈
- 3) 국가채무관리의 개선방안 / 박형수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호주의 2003/04 회계연도 예산 외

〈정책흐름〉

- 1) 9.5 주택가격 안정대책
- 2)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2003년 세법개정(안)
- 3) 부동산보유세 개편방안 발표

〈재정통계〉

조세총괄 1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새 세금보다 보유세 강화를 외

2003년 10월호(통권 제88호)

〈권두칼럼〉

사회경제 구조변화에의 적절한 대응방향 모색 / 장수만

〈현안분석〉

- 1) 한국인의 납세의식 조사결과 / 전승훈·김재진
- 2) 최근의 국제 세수동향 / 성명재
- 3) WTO 제5차 각료회의와 DDA 협상의 진행 / 정재호

〈특집〉

- 1) 중장기 조세정책방향과 200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주영섭
- 2) 2003년 세계개편안에 대한 평가 / 전병목
- 3) 2004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 권해상
- 4) 2004년 예산안에 대한 평가 / 최준욱

〈정책토론포트〉

부동산 보유세제 개선방안: 쟁점과 추진과제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프랑스 내년 소득세 3% 인하 계획 외

〈정책흐름〉

- 1) 2003년 8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 2)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2004년 예산안

〈재정통계〉

조세총괄 2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내년 예산 성장배려 미흡 외

2003년 11월호(통권 제89호)

〈권두칼럼〉

재정의 분석기능 강화를 위한 초석, 재정분석센터 발족에 즈음하여 / 전승훈

〈현안분석〉

- 1) 2003 일본 세제개편 주요내용 검토 / 손원익
- 2) 지방세수 추계의 왜곡요인과 개선방안 / 김현아
- 3) 연안화물운송업에 대한 조세체계 및 개선방안의 검토 / 권오성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프랑스 등 EU국가의 재정적자 장기화와 유로화의 안정성 외

〈정책흐름〉

- 1) 제1차 부동산보유세개편추진위원회 개최
- 2)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
- 3) 지난 5년간 공기업부문 구조조정 평가 결과
- 4) 금년도 종합토지세 1조 6,499억원 부과

〈재정통계〉

조세총괄 3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기술이전 세제지원 유지돼야 외

2003년 12월호(통권 제90호)

〈권두칼럼〉

중위값과 평균의 차이/ 박완규

〈현안분석〉

- 1) 정책인프라로서 소득과약의 문제: 실태와 정책과제/ 현진권
- 2) 소득분배구조의 향후 추이에 대한 알고/ 김중면
- 3) 지방소비세 신설 -필요인가? 안종석

〈정책토론포트〉

KIPF-일본 재정전문가 세미나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미국 감세정책 경기회복 견인 외

〈정책흐름〉

- 1) 2004년도 기금운용의 주요 내용과 특징
- 2) 2003년 정부제출 세법개정안 및 의원입법안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의결사항
- 3) 200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 4)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재정통계〉

조세총괄 IV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적자재정, 경기부양 효과 없다 외

2004년 1월호(통권 제91호)

〈권두칼럼〉

부동산 관련 조세의 투명성 제고 방안/ 송대희

〈현안분석〉

- 1) 근로소득세 부담구조에 관한 고찰/ 전병목
- 2)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박기백
- 3) 지방선거와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수입측면을 중심으로 / 박노옥

〈전국 대학(원)생 현상 논문 공모 우수작〉

고용 창출을 위한 선택적 차별과세 / 이옥진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전자상거래시장 동향 외

〈정책흐름〉

- 1) 2004년 1월 1일부터 조세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 2003년 조세지출보고서 주요 내용
- 3) 2004년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 확정
- 4) 지방양여금법 폐지 및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국회통과

〈재정통계〉

조세총괄 V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양도세 벌금수준으로 올라 외

2004년 2월호(통권 제92호)

〈권두칼럼〉

경제 살리기의 전제조건 / 곽태원

〈현안분석〉

- 1) 실업구조 변화와 실업대책 / 원종학
- 2)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세편에 관한 연구 / 김현숙
- 3) 법인세를 인하에 대한 쟁점 분석 / 박형수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호주 노동당, TCF품목 관세인하계획 수정 촉구 외

〈정책흐름〉

- 1) 2003년 1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 2) 2004년 예산 통합재정수지 분석
- 3) 2004년 상반기 재정집행 54.8%
- 4) 2003년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추진실적 및 금년 계획

〈재정통계〉

조세총괄 VI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접대비 규제 현실화해야 외

2004년 3월호(통권 제93호)

〈권두칼럼〉

경제정책,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하다 / 전주성

〈현안분석〉

- 1) 향후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정책에 대한 소고 / 노영훈
- 2) B2C 국제거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소고 / 홍범교
- 3) 의료기관 관련 조세정책의현황과 정책방향 / 손원익

〈정책토론포드〉

- 1) 우리나라 국세행정의 현황과 과제
- 2) 참여정부의 재정운영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독일 재무장관, 근본적 세제개혁 요구 외

〈정책흐름〉

- 1) 제14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심의결과
- 2) 부동산투기지역 지정현황
- 3) 2003년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 및 소득분배동향
- 4) 2003 회계연도 통세입부·총세출부 마감

〈재정통계〉

소득세 I 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SOC 투자 효율성 점검해야 외

2004년 4월호(통권 제94호)

〈권두칼럼〉

참여정부 1년의 경제회고와 과제 / 김준영

〈현안분석〉

- 1) 담배 관련 세금 및 가격의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 / 성명재

- 2) 부가가치세 감면규모 추정 / 정재호
3) 개별과세정보는 국회에 공개되어야 하나? / 현진권

<정책토론포트>

참여정부의 재정운영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분과별 토론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미국 상원, 향후 5년간 세금감면 관문 높여 외

<정책흐름>

- 1) 고용창출형 창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2) 특별소비세율 인하
- 3) 2003년 통합재정수지 8.1조원 흑자 실현
- 4) 세금포인트제 최초 시행
- 5) 올해 지방예산규모 87조 2,840억원

<재정통계>

소득세 4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신용불량자 대책, 첫발은 땀지만 외

2004년 5월호(통권 제95호)

<견두칼럼>

부유세 도입 신중해야 / 나성린

<현안분석>

- 1) 인구구조 고령화의 재정영향 / 최준욱
- 2) 경제성장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정책 / 안중석
- 3) 네덜란드 환경세제의 변화와 시사점: 에너지세를 중심으로 / 현진권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G7, 세제·노동개혁 합의 외

<정책흐름>

- 1) 2003 회계연도 정부결산
- 2)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6개월 연장
- 3) 원유와 석유제품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
- 4)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대상 소형주택의 범위
- 5) 2003년말 국가채무 165.7조원
- 6) 서비스산업 세제지원 방안

<재정통계>

소득세 4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이제는 물가안정이다 외

2004년 6월호(통권 제96호)

<견두칼럼>

재정의 칸막이식 운영과 Top-down 방식의 자원배분 / 원윤희

<현안분석>

- 1) 주요국의 산업별 관세율 구조비교 및 시사점 / 정재호
- 2)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 및 적정수준 분석 / 박형수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미국 상원, 인터넷 접속세 금지법 통과 외

<정책흐름>

- 1) 제17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심의결과
- 2) OECD, 경제전망 발표
- 3) 2003회계연도 정부결산
- 4) 4월까지 지난해보다 3.1조원 증가한 56.8조원 재정집행

<재정통계>

소득세 4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재산세 개편은 보유세 강화로 외

2004년 7월호(통권 제97호)

<견두칼럼>

재정인정화 특별법 조속한 제정을 / 이만우

<현안분석>

- 1) 중국의 최근 조세정책 / 한상국
- 2) 우리나라 수자원관련 조세정책 방향 / 전병목
- 3) 부유세 도입과 세제개혁 방향 / 노영훈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EU 회원국, 조세부담률 지속적으로 감소 외

<정책흐름>

- 1) SOC 민간투자제도 개선방안
- 2) '04. 7월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제도
- 3) 교통세법시행령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
- 4)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재정운영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
- 5) 국가재원배분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전환
- 6) 2004년 세무조사 운용방향
- 7) '04년 1/4분기 말 현재 총 대외채무·대외채권 현황(잠정)

<재정통계>

양도소득세 1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연금, 국민을 이해시켜라 외

2004년 8월호(통권 제98호)

〈권두칼럼〉
재정개혁의 과제 / 임성일

〈현안분석〉
1)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 김현숙
2) 보육재정의 확충과 시장규제 / 현진권

〈정책토론티포트〉
1)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2) 기업과세제도 선진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일본 경기 살아나 2003년도 법인세수 10조엔대 회복 외

〈정책흐름〉
1) 2004년 상반기 해외직접투자동향
2)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 지원현황
3) 2004년 6월 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4) 추경예산 등 3.2조원 3/4분기에 집행
5)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

〈재정통계〉
법인세 I 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아파트 재산세 반발, 옳지 않다 외

2004년 9월호(통권 제99호)

〈권두칼럼〉
사회적 자본과 지방자치 / 박성배

〈현안분석〉
1) OECD 회원국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동향 / 홍범교
2) OECD 국가의 대학 지배구조 변화 동향 및 시사점 / 안종석

〈기획〉
중점 조세정책 방향 및 2004년도 세제개편안 / 백운찬
2004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I) / 안종석
2004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II) / 곽태원
2004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III) / 손광락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美 하원의장, “부시 재집권하면 국제청 폐지할 것” 외

〈정책흐름〉
1) 소득세 경감 및 특소세 폐지관련 보도 참고자료
2) 2004년 세제개편(안)
3) 기금운용평가단에서 57개 기금을 39개로 축소토록 제안

〈재정통계〉
법인세 II 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연기금 주식투자의 전제조건 외

2004년 10월호(통권 제100호)

〈권두칼럼〉
미국에서의 소비세 논쟁과 시사점 / 이준규

〈현안분석〉
1) 한·중·일 FTA에 대비한 3국의 관세 비교분석 / 정재호
2)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시사점 / 김현아

〈기획〉
200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특징 / 김규욱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I) / 박형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II) / 박정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III) / 옥동석

〈정책토론 리포트〉
경유 승용차 허용에 따른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美, 감세정책 힘쓸까? 외

〈정책흐름〉
1) 2005년 나라살림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 2005년 국세세입예산(안)
3) 보유세제 개편 기본방안 확정
4) '04년 2/4분기말 현재 총 대외채무·대외채권 현황(잠정)

〈재정통계〉
법인세 III 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기초연금제 도입 검토할 만하다 외

〈권말부록〉
『재정포럼』(Public Finance Forum) 총목차

2004년 10월호 통권 제100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한상국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권오성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편집간사 / 김용대 (한국조세연구원 주임연구위원)
박승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과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 인쇄 / 고려문화사

- 월간 재정포럼 / 2004년 10월 15일 발행 / 제9권 제10호(통권 제100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라 7859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2186-2130~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TEL : (02)2186-2133 FAX : (02)2186-2139

E-mail : pub@kipf.re.kr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과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구 한빛은행) 양재남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

